

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

Principles of Economics

Principles of Economics

by

Carl Menger

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

칼 멩거 저 • 민경국, 이상현, 김이석 역

자유기업원

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

칼 멩거 저 • 민경국, 이상현, 김이석 역

1판1쇄 인쇄 • 2002년 2월 8일

1판1쇄 발행 • 2002년 2월 22일

발행처 • 자유기업원

발행인 • 송자

편집인 • 민병균

등록번호 • 제10-1903

주소 • (121-7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92-20

전화 • (대표) 6730-3000 팩시밀리 • 6730-3001

www.cfe.org

© 자유기업원, 2002

자유기업원에서 발간한 연구서는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 • 제작 및 문의 • 홍보실 (02) 6730-3043

ISBN 89-8429-058-0

값 16,000원

대해 오해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 하이에크가 영국에서 멩거전집을 편집·발간할 때 쓴 서문을 번역 게재하려고 했지만 허가를 받는데 여의치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경국의 역자서문으로 대신하였다.

저자 서문과 그리고 제1장 재화의 일반이론 그리고 제2장 경제와 경제제는 민경국이 담당하였다. 제3장 가치이론, 제4장 교환이론, 그리고 제5장 가격이론은 이상헌이 번역하였다. 김이석은 제6장 사용 가치와 교환가치, 제7장 상품이론, 제8장 화폐이론 그리고 부록을 담당하였다.

멩거Carl Menger, 1840~1921는 오늘날 신고전파 경제학의 명실상부한 대안이 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을 창시한 인물이다. 오늘날 탈규제, 민영화, 그리고 자유화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자유주의 그릇도 바로 멩거의 이론적 기반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과 자유주의의 그릇이 되고 있는 것은 1871년 비엔나에서 출판한 그의 저서 『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이다. 이 책은 1950년 덩월James Dingwall과 호슬리츠Bert B. Hoselitz에 의해 1950년 영어로 편집, 번역되었다. 이 영문판을 기초로 하여 민경국·이상헌·김이석 세 사람이 한글로 번역하였다. 이 영문판에는 프랭크 나이트Frank Knight의 서문이 실려 있으나 멩거의 자본이론에

멩거, 오스트리안 학파, 그리고 자유주의

하이에크F.A.Hayek는 자신이 1934년 멩거 전집을 네 권의 총서로 편집하여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출간할 때 쓴 서문에서 멩거의 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¹⁾

“이미 훌륭하게 개발해 놓은 경제학의 기반을 혁명적으로 바꾼 공로에 대해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멩거의 저서만큼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던 학자의 사례를 경제학이나 또는 다른 학문에 서도 찾기가 쉽지 않다.”

멩거는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w.s.jevons, 그리고 레옹 윌라스L. Walras와 나란히 1870년대 세상사람들로부터 학문적 성과를 높이 인정받았다. 그리고 그는 1880년대에는 오스트리안 학파의 창시자라는 호칭도 받았다.²⁾ 그러나 일장춘몽이었다. 이 학파는 잠시 주목을 받다가 하이에크가 멩거의 총서 서문을 쓰던 1930년대에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 그 대신 윌라스적 신고전파의 경제학이 주도권을 장악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 1870년대 이미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비스마르크가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영국의 자유주의도 20세기초에 완전히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사회주의가 주도권을 장악한 것이다.

멩거의 추종자들은 멩거의 사상을 부활시켜 이 주도권에 대항하려 했다. 그리고 그들은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사이의 사회주의 물결을 막아내는 최후의 방어 벽 노릇을 하려고 했다. 멩거의 이론적 철학적 사유를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하여 사회주의를 공격하면서 자유주의를 수호하려 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 인물이 하이에크와 미세스L.Mises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안 학파는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미세스와 하이에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랜 기간 동안 세인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멩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지 이미 오래였다. 20세기에 멩거를 거론한 인물이 있었던가? 오스트리안 학파의 실체를 인정한 인물이 누구였단 말인가? 20세기 문헌들 속에는 그 잔해들만 간간이 엿볼 수 있을 뿐이다.

1) 하이에크의 서문은 *Economica*, N.S.vol.1, 1934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독일어 판 전집에도 거의 수정 없이 재 수록되어 있다.

2) 멩거를 1880년대 이후에서 1920년대 초까지 유명하게 만든 인물은 비저F.V.Wieser와 뵘 바베르크E.V.Böhm-Bawerk였다. 이 두 학자는 멩거의 사상을 확대하고 이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말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 탁월성이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멩거와 그가 세운 오스트리아 학파는 새로운 경제학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가 과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경제학자들의 신전神殿을 세운다고 한다면 멩거는 틀림없이 그 신전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히 커졌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경제학의 새로운 그릇과 자유주의 그릇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사상도 죽었다가 되살아난 것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21세기 새로운 세기에 들어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도처에서 진행 중에 있는 자유화와 탈 규제의 이론적, 정책적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오스트리아 학파이다. 이 학파가 자유주의의 그릇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랜 자유주의 전통을 가진 나라는 영국과 그리고 이 영향권에 있어왔던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까지도 고전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탈 규제와 자유주의 정책은 그 지적인 기반을 오스트리아 학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는 서구의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정치적으로 자유주의를 상실한 나라였다.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사도 길지 못했다. 그러나 영국은 사정이 다르다. 정치적으로나 지적으로 영국의 자유주의 전통은 매우 길뿐만 아니라, 영국의 자유주의가 시들기 시작한 것도 오스트리아보다 훨씬 뒤늦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가 자유주의의 최종 보루로서 오늘날의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된 것은 정말로 진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창시자인 멩거는 19세기 유럽의 쟁

쟁한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 나타난 인물이다. 말하자면 자유주의의 지각생遲刻生인 셈이다.³⁾ 이것 또한 역사의 기묘한 게임이 아닐 수 없다. 자유주의 지각생이 창시한 학파가 오늘날의 자유주의의 그릇이 되었으니까 말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창시자인 멩거의 사상적 요체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주관주의에 입각한 시장과정 이론이다. 그리고 오늘날 경제학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는 법 경제학, 진화론적 제도이론 등, 신 제도주의라는 새로운 경제학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의 제도 이론적 사상이 그 두 번째 요체이다. 세 번째 요체는 사회과학 방법론과 이를 둘러싼 방법론 논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자유주의 사상이다. 방법론 논쟁 그 자체를 제외한다면(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방법론 논쟁은 결과적으로 두 적대적 논쟁이었던 슈몰러G.Schmoller와 멩거 모두에게 제로섬 게임으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 요체들은 멩거를 되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의 간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요체들을 멩거는 자신의 중요한 저서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먼저 그의 생애와 그리고 그가 남긴 문헌을 소개할 것이다.

멩거의 생애와 연구 업적

멩거의 생애는 매우 단순했다. 그는 교수라는 직업을 바꾸어 다른 일에 종사한 적이 거의 없다. 가르치고 읽고 집필하는 일이 그의 전 생애를 차지한다. 현재의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근처의 갈라치아

3) Streissler, E. "Carl Menger", Starbatty, J.(ed) *Klassiker des Oekonomischen Denkens*, Muenchen 1989. 이 책의 한글판은 한길사에서 준비하고 있다. 슈트라이슬러의 논문에서 인용한 것을 이 글에서는 일일이 표시하는 것을 생략할 것이다.

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1840년 2월 23일에 태어났다. 1859년 비엔나 대학의 법학부에서 그의 학문적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1년을 다니다가 프라하 대학으로 옮겨 3년이 지난 후에는 또 다시 크라카우 대학으로 전학했다. 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873년 비엔나 대학 교수로 초빙 받아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루돌프Rudolph의 가정교사로 들어가 그와 함께 여행한 1876년에서 1878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1903년 은퇴할 때까지 줄곧 비엔나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그러나 63세의 나이로 조기 은퇴했다. 조기 은퇴한 공식적인 이유는 하이에크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듯이 “전적으로 학문적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그가 어느 여인과 혼외 정사로 어린아이를 갖게 된 도덕적 이유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다.(이 아이가 나중에 유명한 수학자가 되었다. 그의 이름이 Karl Menger이다.⁴⁾)

어쨌든 멩거는 연구와 집필에 더 많이 몰두할 수 있었다. 그가 세상을 등진 1921년까지 다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은퇴 생활을 하면서 부지런히 읽었고, 읽은 것을 수없이 기록해 놓기는 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발표한 새로운 논문이나 저서가 없다. 따라서 오늘날 그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거의 전적으로 1871년과 1892년 사이에 발간한 저작물 덕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1892년 이후 그는 아무 것도 발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왜 그는 아무 것도 발표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단적으로 그의 생각과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연구 업적은

하이에크가 네 권의 책으로 편집하여 총서로 런던대학에서 출판했다. 그리고 이 총서의 제2판은 독일에서 1968년과 1970년 사이에 수정 없이 발간되었다.

네 권 중에서 제 1권은 멩거의 첫 번째 저서인 국민 경제학의 기본원리』이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업적 중 하나는 재화의 가격형성 원리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재화의 가격을 재화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특히 노동의 투입량)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멩거는 재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통하여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그는 주관주의 가치이론을 작성한 것이다. 가격형성원리를 객관적 가치이론에서 주관적 가치론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제2권은 두 번째 저서인데, 이것은 1883년 발간한 『사회 과학과 특히, 정치경제학의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이 책을 간단히 줄여 “사회과학 방법론”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책제목이 가리켜주는 것처럼 경제학의 연구 방법을 논한 것이다. 이 책은 오스트리안 학파와 독일의 역사학과 사이에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하여 오스트리안 학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고 있다. 이 책은 당시 역사학파가 배격하고 있었던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로써 경제이론의 위상을 복권시켜주었다.

제2권의 내용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제도와 관련된 이론 부분이다. 이 부분이 오늘날 신제도경제학, 헌법경제학, 법 경제학 등으로 부르는 학제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멩거는 이 책에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수많은 사회제도들은 계획이나 의도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계

4) 멩거의 아들이 제공한 수학세미나에 참석한 인물중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O. Morgenstern이다.

획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생겨난 부산물이라는 주제를 정교하게 작성하고 있다. 이 주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아담 스미스A.smith를 포함하는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도덕철학자들의 핵심적 주제였다.

하이에크는 이 도덕철학자들의 주제와 멩거의 주제를 결합하여 “자생적 질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것이다. 멩거는 법과 도덕, 그리고 화폐 등의 예를 들어 “유기적 원천”의 제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이러한 설명은 특히 화폐의 생성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의 총서 제4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제 4권은 화폐와 관련된 멩거의 글을 편집한 것이기 때문이다.

멩거의 총서 중 제3권은 대부분 방법론 논쟁과 관련된 글들을 수집하여 편집한 것이다. 당시 역사학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역사학파를 이끌어 갔던 구스타프 슈몰러G.Schmoller와 논쟁을 벌였던 “국가 및 사회과학 방법론을 위하여”와 그리고 “독일 국민 경제학의 오류”를 수록하고 있다. 이밖에도 5개의 에세이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들 중 두 개는 프리드리히 리스트F.List와 존 스튜어트 밀J.S.Mill의 탄생 100주년 기념 에세이다. 나머지 세 개의 에세이는 로렌츠 폰 슈타인L.V.Stein과 빌헬름 로셔W.Roscher, 그리고 뵘 바베르크E.V.Böhm-Bawerk의 사망에 즈음하여 쓴 글이다.

주관주의, 경제질서 그리고 경제과정

빵 가격과 쌀 가격은 서로 다르다. 밀 가격과 보리 가격도 서로 다르다. 재화마다 제각기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구매된다. 왜

재화의 가격이 이런 차이가 날까? 1870년대 이전에는 경제학자들은 가격의 차이를 재화의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차이로 설명하려고 했다.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그 재화는 비싸지게 된다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격 형성원리의 예외들이 수없이 많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리카아도D.Ricardo와 밀한테서도 예외적인 것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재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재화와 그것이 가능한 재화의 가격형성 원리가 다르고,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와 수입한 재화의 가격이론이 다르다.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비용가격이론(또는 노동가치이론)이다. 신고전파가 가격이론에 몰두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취약점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 취약점이 신고전파의 과학 혁명의 실마리였다.

생산비용에 의한 가격이론과 자원 배분이론을 한계효용이론으로 교체한 것이다. 재화가 한 단위씩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각 단위에서 얻는 효용, 즉 한계효용의 의미로 가격을 설명하려고 했다. 생산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재화의 추가적인 한 단위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1848년에 발간된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의 원리』는 자원 배분 이론과 그리고 가격 이론과 관련하여 당시 광범위하게 인용된 책이었다. 1890년 마셜A.Marshall의 『경제학 원리』가 발간되기까지 그 책은 영국의 중요한 교과서로 이용되었다.

밀은 가치법칙에는 현재의 학자나 장래의 학자가 해결해야 할 것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 주제에 관한 이론은 완벽하다는 것

이다. 그러나 그는 이른바 다이아몬드와 물의 가치모순에 아담 스미스 A. Smith가 거의 1세기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비싸지만 물은 그렇지 않다. 다이아몬드 없이도 사람들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모순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분하고 경제적 설명을 교환가치에 국한함으로써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은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회피였다. 그 모순은 비로소 신고전파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시장가격은 소비자가 물 한 병이나 혹은 다이아몬드 한 단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다이아몬드가 봄에 민들레처럼 도처에서 피어나거나 사람들이 아름다움은 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다이아몬드는 물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한 사람이 물 전부를 혼자 공급하고, 다른 사람이 다이아몬드 전부를 독점한다면 물독점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든 또는 물 수요자와 다이아몬드 수요자가 다수이든 관계없이 재화의 상대가격은 상대적인 한계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과 자원배분을 설명하는데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은 비용가격보다 훨씬 더 분명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멩거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처럼 한계단위에 대한 소비자 평가의 격차를 가지고 가격의 격차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멩거는 아직 한계효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개념은 비저 F. Wieser에 의해 고안된 것이다. 이와 같이 멩거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에게 골치 아픈 문제를 윌라스와 제본스가 해결했던 방식으로 주관주의 가치이론에 의해 해결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바는

사람들은 이 세 학자를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경제학의 “혁명가” 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의 옳고 그름이다.

제본스를 우리는 혁명가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비용가치이론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를 주관적 가치 이론으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윌라스도 역시 혁명가였다. 그러나 멩거만은 혁명가라기보다는 “기존의 경제학” 을 개선했던 개혁가 또는 완성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독일어권의 경제학에서 유포되어 있는 주관적 가치 이론을 정교하게 체계화했고, 그리고 이를 더욱 명확하게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이미 독일경제학자들은 완성된 주관적 가치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슈트라이슬러 E. Streissler가 주장하고 있듯이 우리가 독일어권내에서 멩거를 바라본다면 그는 분명히 혁명가는 아니다. 그러나 영어권내에서 그를 본다면 윌라스 그리고 제본스와 나란히 그는 혁명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멩거의 주관주의 가치이론은 맑스의 노동가치이론에 대한 비판을 위해 개발된 것이라는 주장의 옳고 그름이다. 독일에서는 주관적 가치 이론은 맑스의 첫 저서 이전에 그리고 그의 자본론 제1권이 발행되기 30여 년 전에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가치이론을 멩거가 발전시킨 것이다.

독일어권에서 맑스를 거부한 이유는 그가 독일인들에게는 이미 낯아 보이는 가치이론을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독일 경제학을 확립하고 멩거가 가르침을 받은 로셔는 맑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전 시스템은 리카아도 학파의 오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독일인들에게는 맑스는 한낱 영국의 고전파 영향을 받은 학자로 보였을 뿐이었다.(각주3)E.Streissler에서 재인용)

우리가 가치이론에 관한 멩거의 생각을 여기에서 멈춘다면 그는 한낱 윌라스적 신고전파의 한 사람으로 남을 뿐이다. 그리고 그를 오스트리안 학파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는 신고전파들이 사용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석적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게는 윌라스의 전통에 따라 경제학이란 가격과 자원배분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에도 경제학을 자원배분 이론 또는 가격이론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시장경제를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기제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멩거에게는 가격과 배분문제는 오로지 부차적인 관심이었을 뿐이었다. 그는 가격이론과 배분이론은 그의 경제이론 전체 중 아주 작은 부분이었다.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하면 시장 질서이론, 시장이론이었다. 즉, 서로 다른 지식과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들의 행동들이 어떻게 조정되는가의 문제였다. 바로 이런 점이 멩거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이런 주장을 가장 잘 확립한 인물은 I. Kirzner 이다.)

그러나 윌라스의 세계에서 중심 된 분석대상은 상대가격의 구조와 자원배분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설명에서 그는 오류의 여지가 없는 지식이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틀에서 시간의 변동을 인정할 경우 지식의 변동은 외생적인 충격의 원천으로 여기고 있다.

멩거의 분석적 틀은 이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는 시간의 흐름과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수반하는 지식의 변동, 제도와 조직의 변동이 분석의 전면에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외생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내생적인 것들이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이 가진 지식은 오류가 가능하다.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오류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생산과정의 시간 기간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미래지향적이고 따라서 예측을 필요로 한다. 이런 예측은 주관적이다. 행동과 행동결과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이 시간 간격도 역시 오류의 원천이다.

시간과 오류! 이 캐치프레이즈는 인간 삶의 전형적 현상이다. 이것이야말로 오스트리아 학파 사상의 진수이다. 『국민경제학의 원리』의 소제목 “시간과 오류” 라는 공식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공식은 그야말로 그의 학파를 매력적으로 만든 것이다.

소비자의 평가와 가격은 가상적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지식의 습득, 새로운 상품의 개발 그리고 새로운 제도와 조직의 창출도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멩거는 이런 지식 이론적 시각을 적용하여 그는 『국민경제학의 기본 원리』의 첫머리에서 재화가 재화로서의 질을 가지게 하는 요인을 지식에서 찾는다. 즉, 인간들의 욕구와 이를 충족시키는 재화간의 인과 맥락에 관한 지식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는 경제 발전을 지식의 성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산물의 수량도 사물의 인과적 맥락에 대한 그들의 인식의 한계와 이 사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들의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 사물들과 인간들의 후생간의 인과적 맥락에 관한 인식의 발전과, 그리고 보다 멀리 있는(사물들의)조건들을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들은 척박하고 빈곤한 상태에서 현재 수준의 문명과 후생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오늘날 흔히 말하는 혁신이론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지식경제학이라고 불려도 무방하다.

윌라스는 한계 효용의 논리로 가격의 균형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반하여 멩거는 동일한 상품이 어디에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일물일가(一物一價)는 어떤 특수한 역사적인 조건에서 생성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중심된 분석 과제는 그러한 일물일가의 형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일물일가를 전제하고 이론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멩거의 핵심적 관심은 현실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말하자면 가격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일이지, 가정한 균형가격의 논리를 밝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가 어떻게 진화하는가의 문제, 다시 말하면 경제적 진화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의 특징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상품의 출현이다. 이들은 균형논리에서 보는 것과 같은 외생적 쇼크가 아니라 희소성에 의해 야기되는 경쟁의 자연스런 모습이다.

멩거가 이론화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경쟁과정과 진화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런 멩거의 진화사상을 더욱 정밀하게 발전시키고 정책적 실마리를 확립한 것은 미체스와 하이에크, 그리고 커츠너 등이다.

자생적 질서, 제도의 진화 그리고 입법

멩거는 사회경제적 과정을 어떤 시점에서 달성된 관계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일종의 스냅 사진을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는 사회경제적 과정을 시간을 통한 변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본다. 그의 초점은 변화과정 바로 그것이다. 균형을 찾고, 균형조건을 기술하지 않는다. 균형가격, 균형이자율, 균형지대나 균형노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격형성과정, 가격변동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적 과정,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변화과정을 설명하려고 한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진화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과정을 현실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동으로 보는 그의 관점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도의 진화와 “유기적”(즉 자생적) 형성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역사학과와의 논쟁과정에서 제도의 생성과 변동을 다루고 있다. 제도의 생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가능성을 구분하고 있다. 그 하나가 자생적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의 “유기적” 생성이고, 다른 하나가 국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출된다는 의미의 “실용적” 생성이다.

제도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그는 주관적인 행동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개개인들의 선택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과 그리고 그들의 행동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의도치 않게 생겨나는 결과(또는 그들의 개별 행동의 사회적 결과)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경제활동의 패턴은 일반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지만 그러나 질서가 잡히는 것은 누구의 의도도, 책임도, 창조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산물이다. 사회과학, 특히 정치경제학의 과제는 사회적으로 유익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계획이나 의도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닌 제도적 장치의 생성과 진화를 설명하는데 있다.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하여 멩거는 아담 스미스나 그의 후계자들이 성장된 제도와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국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출한 제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대신 그는 버크E.Burke와 사비그뉴F.K.Savigny를 우리의 과학을 위해 유익한 길을 열어 놓았다고 격찬하고 있다. 그러나 스미스에 대한 이러한 멩거의 비판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암묵적으로 멩거는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다. 이 사상은 멩거 자신의 해석과는 달리 바로 인간행동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디자인이 아닌 질서(제도)의 생성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 버크는 물론 스미스, 흄D.Hume, 액튼L.Acton, 퍼거슨A.Ferguson 등도 성장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하이에크가 명쾌하게 밝혀 주고 있다. 어쨌든 멩거는 법, 언어, 화폐 그리고 시장과 같은 모든 사회구조는 상당 부분 사회적 발전의 무의도적 결과로 이해하고 있고, 이들을 설명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과제라고 보고 있다.

멩거는 그의 일반적인 경제이론에서처럼 역사적 시간의 중요성, 불확실성 그리고 지식의 한계(오류 가능성)를 고려하고 있다. 인간들은 계획을 실천할 때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시간의 필요로부터 계획의 성공가능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신의 행동을 위한 방향지침을 찾게 마련이다. 멩거는 개개인들이 계획을 실시할 경우 확실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언어, 규칙 그리고 판매 가능한 재화(특히 화폐)등을 찾아 이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 이론적 시각을 멩거는 화폐와 법의 생성에 적용하고 있다. 화폐는 물물교환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물물교환은 제도의 대표적 사례이다.⁵⁾ 화폐는 입법에 의해 창출되고, 그 다음 경제과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경제적 관심을 증진하려는 노력의 부산물로서 무의도적으로 생성되었다. 화폐가 없으면 교환 기회는 물물교환에서처럼 욕망이 이중적으로 일치할 때만 가능하다. 쌀을 가진 사람이 돼지와 바꾸고 싶으면, 그는 돼지를 가지고 있지만 쌀을 원하는 사람을 만날 경우에 비로소 두 사람 사이의 물물교환이 가능하다.

점차 사람들은 학습과정을 통하여 어떤 대상은 다른 것보다 더 쉽게 “판매 가능하다” 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이 품목을 직접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환하는 것을 수락한다. 왜냐하면 장래에 생겨날지도 모르는 어떤 욕구의 충족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판매 가능성이 매우 크고 따라서 원하는 물건과 비교적 용이하게 교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그와 같이 용이하게 판매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았다. 그러나 금이나 은과 같은 값진 금속들이 가장 탁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흔히 사람들은 멩거의 제도이론은 거래비용론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멩거의 제도이론을 이런 시각에서 해석한다면 그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결과가 초래한다. 그는 제도의 생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대, 불확실성, 제한된 지식 그리고 경제주체의 학습노력을 고려하고 있다.

제도는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화폐도

5) Wagner, R.의 논문은 “Carl Menger”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자세한 인용장소를 명기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비로소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분업적인 사회 그리고 지식이 분산되어 있는 사회의 전제조건이다. 화폐를 통해서 우회적 생산이 가능하고 개개인들의 계획들이 가격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비용론은 제도가 거래 비용을 줄여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균형 이론적 관점이다.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균형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맹거는 이러한 관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로지 이런 관점에서만 맹거를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화폐는 불균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제도는 균형 지향적 효과를 가지면서 동시에 불균형을 야기한다. 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비로소 새로운 행동가능성이 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맹거의 화폐생성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화폐는 시장보다 먼저 존재했고, 시장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진화가 비로소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맹거는 국가가 화폐의 질을 확립할 때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물론 화폐의 진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규칙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맹거가 시장과 화폐의 공진화Coevolution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다.

맹거의 법의 진화이론은 『사회과학 방법론』의 부록 8에서 다루고 있다. 그에 의하면 법의 진화는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의 무의도적 생성과 변동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교환 관계에서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규칙을 수요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규칙들을 습관적으로 지킨다면, 이 규칙들의 효과에 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유지되고 준수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관습법이 생겨난다.

그리고 습관화 과정을 통하여 그 지식이 일반화된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들 전부가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들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규칙의 효과에 관한 지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든, 아니면 마치 그들이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행동하던 관계없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 지식은 확산된다. 그러나 모두가 그 지식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의 의도적인 행동으로부터 무의도적으로 생겨나는 결과로서 제도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규칙 진화의 한 부분에 해당될 뿐이다. 맹거는 지배자의 의도적인 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비판하고 있다. 첫 번째 생각은 오로지 진화적으로 성장된 제도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은 모두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맹거는 순전히 자생적 원천에 의존하는 진화이론도 반대하고 있다.

두 번째 극단적 생각은 모든 제도들은 합리적으로 창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계약론을 반대하고 있다. 행동 규칙은 인간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경제적 삶이 시작하기 전에 법적인 틀을 의도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법적 틀은 경제활동과 나란히 자생적으로 생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에

크는 전지전능한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법과 도덕, 정의는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윌라스의 세계에서는 제도는 불필요하다.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의도적인 법 제정과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순전히 진화적인 규칙 생성과 똑같이 그러한 의도적인 제도의 창출이 보다 탁월한 제도의 생성을 보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생적으로 생성된 법 규칙은 때때로 공공복지에 역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멩거는 『사회과학 방법론』 부록 8에서 법 규칙의 자생적 생성은 때때로 공공의 복지에 역행하는 규칙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수정하는 것이 입법의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의도적으로 창출된 법도 법 제정자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생성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설명한다고 해서 진화의 결과는 입법을 통해 개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멩거는 커먼 로Common Law는 항상 효율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어떤 조건에서 비효율적인 법관의 법이 생성되는가를 말하지 않고 있다. 그는 경제적 삶이 시작하기 전에 법적인 틀을 의도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도 그는 그런 법적 틀은 경제활동과 나란히 자생적으로 생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어떤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생성된 규칙들은 법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는 무제한적 진화 낙관주의자는 아니다.

이러한 명제는 제도 이론적으로나 제도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명제이다. 그러나 멩거는 구체적인 예시를 하여 이 명제를 정밀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 입법에 의해 수정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을 개발하지도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상가 임대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권리금제도, 자생적으로 형성된 백화점 셔틀버스 제도, 의약醫藥의 미분화된 제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제도를 어느 정도까지 입법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없애거나 바꿀 수 있는가? 실정법을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가? 자생적으로 소망스러운 제도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제도들의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입법에 의해 창출된 중앙은행이 오늘날 자생적인 자유은행을 압도하고 있다. 멩거의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진화적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의 결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을 입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는 멩거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구체적인 사례인가?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도 생생히 살아 있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법 경제학과 제도경제학, 진화경제학, 공공선택 이론 등 오늘날의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의 전면에 있는 문제이다.

멩거는 비엔나 대학에서 은퇴하고 여생을 독서와 집필에 몰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은 하이에크, 레오니B.Leoni, 엡스타인R.Epstein, 벤슨B.Benson 등의 업적에 기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들의 한결 같은 주제는 입법과 비교할 때 커먼 로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방법론 논쟁, 자생적 질서 그리고 논쟁의 제도적 조건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독일의 역사학과 특히 슈몰러를 중심으로 하는 후기 역사학파는 고전과 이론을 거부할 때 고전과의 방법론 자체를 배격한 것이다. 특히 역사학과의 비판 내용의 핵심은 이렇다. 즉 고전과가 그 이론을 모든 세계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후진된 독일의 이익을 무시하는 태도로서, 독일 감정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학파는 추상화와 연역법을 배격하고 각 나라가 처한 고유한 역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 귀납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강조로 인하여 독일에서는 이론 연구가 없이 역사연구에만 몰두하는 태도가 지배하고 있었다.

멩거의 사회과학 방법론은 이와 같은 역사학파의 태도를 반박하고 이론의 복권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경제학의 연구에서 역사적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어디까지나 역사일 뿐 이론은 아니다. 역사로부터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역사 연구에 앞서서 어떤 이론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론이 없으면 역사 연구는 단순한 자료의 수집과 사실의 나열로 끝나버릴 뿐이다. 이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방법론 논쟁의 발단은 이런 입장에 대한 슈몰러의 비판 때문이었다. 슈몰러는 이론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논쟁이 있는 후에도 과학에 관한 논쟁은 계속되었다. 양 진영은 애초부터 하나의 방법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론과 역사의 거대한 모순이라는 인식론적 문제가 20세기 중반까지 항상 반복적으로 등장한 논쟁의 중심 된 주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 오스트리안 학파 경제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경제학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방법론 논쟁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스트리안 경제학과나 또는 독일 역사학파라는 사회적 현상이 자생적으로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각주5)의 R.Wagner에서 인용) 그리고 이 방법론 논쟁을 통하여 또 다른 논쟁이 생겨났다. 이 논쟁은 막스 베버M.Weber로부터 발단이 되었던 가치 판단 논쟁이다. 그는 모든 가치 평가를 “비과학적”이라고 조롱했다. 이에 놀란 슈몰러는 이 논쟁에서는 별로 큰 저항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역사학파의 종말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 지성사에서 벌어진 방법론 논쟁은 이론의 중요성과 제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역사학파의 역사주의적 요소의 종말을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논쟁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관찰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멩거가 말하는 자생적 진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시스템으로서 포퍼K.R.Popper가 의미하는 “제3의 세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멩거와 슈몰러 사이의 방법론 논쟁은 “파괴적인 자생적 진화”라기 보다는 “건설적인 자생적 진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적 측면과 나란히 오스트리안 학파에게는 부정적 결과가 생겨났다. 왜냐하면 방법론 논쟁은 한편으로는 윌라스 전통의 신고전과가 확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다른 한편 오스트리안 학파의 세력이 정지되는 상황,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는 계기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이런 관점은 각주5)의 R. Wagner의 관점이다.)

역사학과와 오스트리안 학파 모두가 자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런 자멸이 그 자체 자생적 질서로서 파악할 수 있는 학문적 논쟁에 대하여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냉정하고 사리 깊게 관찰한다면, 멩거의 사상과 역사학파의 사상에는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았다. 당시 독일 경제학에서 이미 정착되어 있던 주관주의 가치이론이 그 첫째의 공통점이다. 멩거는 고전과 경제학에서 이론의 일관성을 위해 도외시했던 사용가치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룬 것은 바로 독일 경제학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간의 변동 속에서 제도가 어떻게 진화해 가는가에 대한 관심은 멩거나 역사학파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관심이었다. 역사학파는 심지어 과거와 장래의 경제 발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관습, 도덕 법률 등과 같은 제도라고까지 말하고 있었다.⁶⁾ 이것은 오늘날의 법 경제학과 제도 경제학의 연구계획과 동일하다. 그리고 사비그뉴 같은 법사학자들을 통하여 법 이론가들은 법의 변동과 생성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공통점을 우리가 고려하고, 독일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멩거는 독일 경제학을 꽃피우게 만든 인물임에 틀림없다.(각주3)의 E. Streissler 참조) 그가 자신의 『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 서문에서 “거의 예외 없이 부지런한 독일 학자들이 고안해놓은 예비작업들을 발전시키고자 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사교적인 말이 아니다. 그는 당시 지배하고 있던 독일 경제학에서 이론적 기초를 확립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려내어 이를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독일

경제학의 꽃을 피우게 했다.

따라서 오스트리안 학파와 전기 역사학파는 오스트리안 학파와 그리고 당시 점차 세력을 확대해가던 신고전파 사이의 공통점 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오스트리안 학파와 역사학파는 엄밀히 따지자면 그 차이는 경미한 것이었다. 오히려 오스트리안 학파는 비역사적인 자원 배분 논리와 가격 논리에 집착하는 윌라스적 신고전파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방법론 논쟁은 결과적으로 한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의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멩거는 역사와 이론의 관계에 관한 원래의 입장을 도외시하고 슈몰러를 파괴하는데 집착했고, 슈몰러도 마찬가지로였다. 20년이나 계속된 그 논쟁은 감정적이었고 인신공격적이었다. 그들의 논쟁은 비정상적이었다. 서로의 견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솔직하게 논박하지 않고 감정적이었다. 겸양과 솔직성이 결려된 논쟁이었다. 논객들은 급기야 지쳐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논쟁은 청중들로 하여금 오스트리안 학파의 그 고유성과 탁월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전통적인 오스트리안 학파의 지적인 유산이 부적절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마련되었을 뿐이었다.

그 대신 윌라스적 신고전파 경제학이 주도권을 잡을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30년대 이후 오스트리안 학파가 지성계에서 멀어져간 것은 바로 잘못된 방법론 논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론 논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법론 논쟁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멩거가(그리고 슈몰러도 마찬가지로) 보다 냉정하고 이치적으로 논쟁을

6) Winkel.H. “Gustav Schmoller” Starbatty, J.(ed) *Klassiker des Oekonomischen Denkens*, Muenchen 1989. 이 책의 한글판은 한글사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끌어 갔더라면 역사학파들이 중시했던 제도의 진화적 과정을 자신의 이론적 틀 속에 보다 정교하게 구체화 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신제도 경제학, 진화 경제학, 법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학제의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기반을 확립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자생적 질서가 오스트리안 학파에게는 파괴적이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 파괴성은 자생적 성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스런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명제에 대한 도전이다. 그 파괴의 이유는 무엇인가? 자생적 질서가 소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논쟁의 윤리이다. 윤리의 부재에서 파괴성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경쟁이 소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쟁의 제도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윤리의 핵심은 제도로서 비인격적 규칙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을 가지고 놀지 말고, 공을 가지고 놀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멩거와 슈몰러의 방법론 논쟁은 감정적이고 인신공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논리의 내용을 가지고 논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 논쟁한 것이었다. 솔직함과 겸양이라는 비판윤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도덕을 지키지 않고 진행되는 학문적 경쟁과 논쟁은 “파괴적인” 자생적 질서를 야기한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못한다. 공을 가지고 놀았다고 한다면 20세기의 경제학은 달라졌을 것이다.

자유주의 사상과 오스트리안 학파

멩거의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의 자유주의 사상이다.

멩거의 전통에 입각하여 그를 추종하여 형성된 오스트리안 학파의 일차적 이념적 성향은 자유주의이다. 사회주의자는 결코 오스트리안 학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었다. 설사 멩거의 사상을 대중화시키는데 기여한 인물이나 그 인물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개혁주의자나 그런 정책가는 결코 그 학파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런 오스트리안 학파의 자유주의는 멩거로부터 시작된다.

멩거는 자유가 좋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책을 선호한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는 그의 이론적 체계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그의 자유주의는 그의 이론적 구조의 핵심요소인 “시간-오류”라는 공식으로 표현되는 주관주의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공식은 인간의 이성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현실에 관한 중심된 명제이기도 하다. “시간-오류”라는 공식은 단적으로 말해서 모든 인간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하여 행동한다는 것, 따라서 그 예측은 필연적으로 오류가능하고, 그 행동은 잘못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정책을 펼치는 정치가나 관료도 마찬가지이다. 경제 정책적인 간섭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한 간섭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는 효과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화폐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유통속도⁷⁾의 불안정성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⁸⁾ 이 때문에 통화정책도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러한 논조는 아담 스미스의 그것과도 유사하다. 스미스는 예를

7) 유통속도라는 개념 자체도 적합한 개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계론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자연 과학과 사회과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오스트리안 학파에게는 틀린 용어이다.

8) 화폐이론에 대한 멩거의 생각은 당시 영미에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과 전적으로 달랐다. 화폐이론도 불확실성 이론으로 다루고 있다. 지불할 때 사용하는 통화량은 국민 전체가 필요로 하는 현금의 일부일 뿐이다. 지불 준비금, 이것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한다. 예비적 동기가 화폐수요의 주요 원천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각주3에서 언급한 **Streisler**의 논문을 참조.

들면 자신의 『도덕감정론』에서 지적인 자만을 가지고 장기관의 장기를 옮겨 놓듯이 사회를 이렇게 또는 저렇게 만들려는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런 교조주의를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가장 극명하게 비판하는데 일생을 바친 인물은 하이에크이다.

멩거는 총합개념에 기초한 이론적 구상과 이로부터 도출된 경제정책을 반대했다. 왜냐하면 총합은 총합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적 현상은 이 다양성과 이질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소비와 자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1순위 그리고 보다 높은 순위의 무한한 재화 스펙트럼만이 있을 뿐이다. 그에게 있어서 총합개념은 관심이 없었다. 그 대신 구조에 관심이 있었다. 생산구조, 자본구조 등이 그것이다. 통일적인 이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재의 다양한 시간을 연결해주는 가격 구조만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멩거를 추종하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은 케인즈주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케인즈주의는 총합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케인즈주의를 가장 극명하게 비판한 인물도 역시 하이에크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총량변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화폐수량설도 오스트리안 학파는 수용할 수 없다.

국가 개입은 개개인들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근면과 절약정신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되어야 한다. 멩거는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있어서는 안 될 경제체제이다. 그렇다고 그가 이른바 자유방임을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그가 아담 스미스에 대한 독일 해석가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서 여실히 입증

된다. 그는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를 설파한 인물이라거나 그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완전히 자유로운 게임으로부터 경제적 번영을 기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또 그런 말은 역사의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다⁹⁾.

국가 개입의 중요한 이유를 외부효과에서 찾고 있다.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 포도 혹은 벌레나 혹은 나무를 쪼먹는 벌레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도로, 철도, 운하 등 오늘날 공공재화라고 부르는 것들의 생산과제도 역시 국가의 과제이다. 타인들의 신체에 대한 개인들의 침해를 막는 것도 국가의 과제에 속한다. 예를 들면 노동 보호법, 노동시간 규제, 유년 노동의 제한 등이 그것이다.

1890년대는 사회정책(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시기였다. 이미 1870년대에는 독일에서는 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끝났다. 비스마르크Bismark는 사회정책을 “황제의 사명”이라고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멩거의 방법론 논쟁의 상대자였던 슈몰러와 그 추종자들도 황제의 사명이라는 이 복지계획을 열렬히 지지했다. 그러나 멩거는 이런 의료 및 연금 보험과 같은 복지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복지계획에 대한 멩거의 입장은 사회주의를 반대한 이유로부터 유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국가의 복지계획에 대한 오스트리안 학파의 분명한 입장은

9) 멩거에 의하면 스미스는 가난한 자나 약자를 억압하는 입법이나 법집행을 제거하는 문제에서는 언제나 국가개입을 주장하는 등 강자와 약자사이에서는 예외 없이 약자 편을 들어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이에크와 미제스에 이르러 명시적으로 확립된다. 멩거는 사실 이론에 치중한 학자였다. 정책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스트리안 학파의 자유주의 그릇을 만들어 놓았다. 그 후계자들에게 그 그릇을 채울 과제를 부과했다. 그릇을 채운 대표적 인물은 바로 하이에크와 미제스이다. 이 오스트리안 학파는 지난 세기의 80년대에는 수 백년의 자유주의 전통을 지닌 영국을 제치고 최종 중심지가 되었고 자유주의 이론적 기초를 전 세계에 공급했다.

역자들을 대표하여 민경국(강원대 경제학부 교수)

■저자 서문

45 왜 자연과학 분야는 일반인들로부터 열렬한 찬사를 받고 있는가의 이유에 대하여 공정한 관찰자라면 누구나 어떠한 의심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과학은 일반인들로부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과학을 통해 실천적 행동을 위한 지침을 제공받아야 할 바로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그 가치가 심각하게 의심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보다도 경제적 관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시대는 결코 없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 대한 과학적 기초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도 오늘날 보다 더 일반적이고 화급하게 느껴진 시대도 결코 없었다. 경제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학의 성과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도 오늘날보다도

더 큰 시절은 없었다.

46 따라서 그들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경험에만 의존하고 현재의 발전 수준에서 경제과학을 무시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들의 능력의 부족이나 또는 진지한 관심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과학이 그들의 활동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과 관계에 대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깊은 통찰을 거부할 정도로 그들이 건방지기 때문도 아니다. 그들이 경제학에 대하여 이와 같이 특기할 만한 무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학의 현 수준 자체에서, 다시 말하면 경험적 기초를 얻어내려는 과거의 모든 노력의 무용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험적 기초를 찾으려는 모든 새로운 노력은, 이것이 아무리 빈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정당하고도 옳은 노력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과학의 근본적인 기반을 찾아내려는 것은 인간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의 해결에 우리의 능력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공공이익에 봉사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과학의 근본적인 기초를 찾기 위해 걸어가는 길은 걸어가다가 범하는 실수까지도 전적으로 무용한 것이 될 수 없는 길이다.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 학자들이 돌진해 왔던 모든 방향들을 조심스럽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선배들의 견해와 심지어 지금까지 우리 과학의 지적 성취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이론에 대해서까지도 비판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 첫 번째

과제를 무시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수많은 탁월한 인재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수집했던 경험 전체를 경솔하게 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두 번째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과학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우리의 희망을 처음부터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의 견해를 결코 주저하지 않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를 우리의 자산으로 수용함으로써, 그리고 학설을 경험에 호소하고, 인간사상을 사물의 성격에 호소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생각과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이 책을 썼다.¹⁰⁾

47 나는 인간 경제의 복잡한 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요소들로 축소시켜서 이 요소들의 성격에 부합하는 잣대를 그 현상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 잣대를 고수하면서 어떻게 이 요소들로부터 복잡한 경제 현상이 법칙적으로 (명확한 원리에 따라) 진화하는가를 규명하려고 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자연과학에서는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자연과학은 이 방법을 통해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자연과학적 방법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그 방법은 경험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모든 분야의 공통된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경험적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연구 방법은 이를 적용하는 지식 분야의 성격으로부터 그 자

10) 영문판 역자 주: 멩거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대의 용법에 따라 영문판에서는 멩거 자신과 관련하여 사용된 복수 1인칭을 단수 1인칭으로 바꾸어 번역하고 있다.

신의 고유한 특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과학을 자연 과학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려고 애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의 고유성을 무비판적으로 경제학에 적용하려는 과거의 노력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방법론적 오류가 초래되었다. 경제의 현상과 자연의 현상의 겉으로 나타난 유사성을 가지고 실익이 없이 말장난을 했던 것이다. 베이컨F.Bacon은 이러한 종류의 학자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¹¹⁾ “사물들이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유사성과 교감을 … 그들은 기술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허황하게 그러한 유사성과 교감을 고안하고 있다.”¹²⁾ 이 문장은 베이컨이 제안한 방법의 정신을 완전히 오해하면서도 스스로를 그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에게도 액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옳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의 과학은 과학의 모든 분야들의 맥락을 확립하고 가장 중요한 원칙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 학자들의 자격을 진지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믿기에는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학자들이 자신들의 노력의 이러한 공동 목표를 잊어버린다면 틀림없이 그들의 연구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식의 다양한 분야들을 아주 세심하게 검토했을 때, 그리고 각 분야에 고유한 법칙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48 내가 채택한 연구 방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자연 현상과

똑같이 경제 생활의 현상이 분명한 법칙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성공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독자의 몫이다. 내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지적하면서 경제 현상의 법칙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견해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해는 정확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어느 한 사물이 나에게 유용한가, 그리고 유용하다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유용한가? 그것이 재화인가, 그리고 재화라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재화인가? 그것이 경제적 재화인가, 그리고 경제적 재화라면 그것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경제적 재화가 되는가? 그것이 내게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가치가 있다면 어떤 조건 아래에서 가치가 있는가? 이 가치는 얼마나 큰가? 두 사람 사이에서 재화의 경제적 교환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가격은 어떤 범위 내에서 형성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와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많은 문제들도 화학 법칙이 화학자의 의지와는 독립적인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전적으로 독립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채택한 견해는 우리의 과학의 적절한 분야가 무엇인가에 관한 그릇된 생각에(그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사리 분별할 수 있는데) 의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론 경제학은 경제 활동을 위한 실천적인 제안을 작성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중한 활동을 전개하는 조건을 다루기 때문이다.

경제 이론은 경제하는 인간들의 실천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¹³⁾ 이러한 관련성은 화학과 실천적인 화학자의 활동의 관계와

11) Francis Bacon, *Novum Organum*, II, 27.

12) 베이컨의 *The Philosophical Work of Francis Bacon*(Ellis 와 Spedding이 번역).

John M. Robertson(ed), London 1905. 334-5쪽.

전혀 다르지 않다. 인간 의지를 말하는 것은 경제 활동의 완전한 예측 가능성(완전한 법칙성)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정당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인간 의지와 전적으로 독립적인 현상들, 이 현상들이 인간들의 경제 활동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이 현상들의 명확한 법칙에 대한 49 반대로서는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바로 우리의 과학이 다룰 대상이다.

나는 생산물과 관련된 경제 현상과 그리고 이 현상과 관련된 요소들의 인과적 맥락을 연구하는데 각별한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 목적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가격 이론을 확립하고(이자, 임금, 지대 등) 모든 가격 현상들을 하나의 통일적인 관점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완전히 오해되어 온 그 밖의 다른 경제과정 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였다. 특히 이 분야가 경제 생활의 현상들이 가장 분명하게 규칙적인 법칙을 따르는 분야이다. 그리고 그 분야가 우리 과학이 다루고자 하는 분야이다.

이 책에서 다루어진 분야는 우리의 과학의 가장 일반적인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분야의 상당부분은 원래 독일 경제학이 최근에 개발해 낸 결과라는 것, 따라서 부지런한 독일 경제학자들이 창출한 학문적 업적들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우리 과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들을 이 책에서 개혁하려는 것은 나에게 매우 기쁜 일이다.

따라서 이 책을 오스트리아 출신의 한 동업자가 보여주는 친절한 경의의 표시로서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독일이 우리 오스트리아

에 보내준 수많은 탁월한 학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독일의 훌륭한 출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제공한 학문적인 자극에 대한 가 낯픈 메아리로서 여겨주기를 바란다.

칼 멩거

13) 역자 주: “*Wirtschaftender Mensch*”, “*Wirtschaftendes Individuum*” “*Wirtschaftende Person*”이라는 용어가 멩거의 책에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Wirtschaftend*”라는 형용사는 개인들의 특성이 나 동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것은 “이윤 동기”나 “이기 적 관심”의 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은 특기할만한 것이다.

| | |
|---|-----|
| 차 례 | |
| 역자 일러두기 | 5 |
| 역자 서문 | 7 |
| 저자 서문 | 36 |
| 제 1 장 재화에 관한 일반 이론 | 47 |
| 1. 재화의 본질 | 47 |
| 2. 재화들간의 인과관계 | 53 |
| 3. 재화의 성격을 지배하는 법칙 | 57 |
| A. 높은 순위의 재화의 성격은 우리가 이 재화와 보완관계를 가지는 재화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 57 |
| B. 높은 순위의 재화가 갖는 재화의 성격은 낮은 순위의 재화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성격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 63 |
| 4. 시간 · 오류 | 68 |
| 5. 후생증진의 원인 | 74 |
| 6. 재화의 소유 | 78 |
| 제 2 장 경제와 경제적 재화 | 81 |
| 1. 인간의 필요 | 85 |
| A. 제1순위 재화(소비재)의 필요 | 85 |
| B. 높은 순위의 재화(생산 수단)에 대한 필요 | 90 |
| C. 필요를 느끼는 시간적 한계 | 94 |
| 2. 이용 가능한 수량 | 96 |
| 3. 인간 경제의 원천과 경제적 재화 | 103 |
| A. 경제적 재화 | 103 |
| B. 비경제 재화 | 107 |
| C. 경제적 재화와 비경제적 재화의 관계 | 111 |
| D. 재화의 경제적 성격을 지배하는 법칙 | 119 |
| 4. 자산 | 122 |
| 제 3 장 가치론 | 129 |
| 1. 가치의 본질 및 기원 | 129 |
| 2. 진정한 가치 측정The original measure of value | 139 |
| A. 서로 다른 층급들이 갖는 중요성의 크기에 있어서의 차이들 (주관적 요소) | 142 |
| B. 특정 재화들에 대한 각각의 (필요)층급들의 의존성(객관적 요소) | 150 |
| C. 재화들의 품질에 있어서의 차이가 그것들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170 |
| D. 가치 크기의 주관적인 성격, 노동과 가치, 오류 | 177 |
| 3.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를 지배하는 법칙들 The laws governing the value of goods of higher order | 181 |
| A.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원리 | 181 |
| B. 자본의 생산성 | 187 |
| C. 보완재적인 성격을 갖는 일정량의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이 갖는 가치 | 194 |
| D. 보다 높은 순위의 개별적 재화들의 가치 | 201 |
| E. 토지서비스 및 자본서비스, 그리고 특히 노동서비스의 가치 | 206 |

제 4 장 교환 이론 221

- 1. 경제적 교환의 기초들 221
- 2. 경제적 교환의 한계 230

제 5 장 가격 이론 247

- 1. 고립된 교환에 있어서의 가격형성 251
- 2. 독점 하에서의 가격형성 256
 - A. 분할이 불가능한 하나의 독점재화에 대해 여러 경쟁자가 있는 경우의 가격형성 및 재화의 배분 258
 - B. 다량의 독점재화에 대한 경쟁이 있을 때의 가격형성 및 재화배분 263
 - C. 독점적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 독점재화의 판매량 및 경쟁자들간의 재화배분에 미치는 영향 269
 - D. 독점거래의 원리들 (독점적 공급자의 정책) 273
- 3. 상호경쟁상태에서 상품의 가격형성과 배분 280
 - A. 경쟁의 기원 280
 - B. 경쟁자들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의 수량이 가격형성에 미치는 효과, 경쟁자들에 의해 결정된 주어진 가격이 판매량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이 두 경우에 있어서 경쟁적 구매자들간에 재화의 배분에 미치는 효과 282
 - C. 한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의 경쟁이 판매량과 판매가격에 미치는 효과 (경쟁자들의 정책들) 285

제 6 장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293

- A.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본질 293
- B. 재화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관계 296
- C. 재화가치의 경제적 중력센터의 변화 299

제 7 장 상품 이론 305

- 1. 통상적 그리고 과학적 의미에서의 상품이란 개념 305
- 2. 상품의 시장성市場性 312
 - A. 상품의 시장성에 가해지는 외부적 제약들 312
 - B. 상품들간 시장성의 차이 320
 - C. 상품들이 쉽게 순환되는 정도 327

제 8 장 화폐 이론 331

- 1. 화폐의 본질과 기원 331
- 2. 특정한 국민들, 특정한 역사단계에 적합한 화폐의 종류 337
- 3. “가격 측정치”와 교환 가능한 부의 경제적 저장형태로서의 화폐 349
- 4. 주도 화폐 359

부 록 367

색 인 411

재화에 관한 일반 이론

1. 재화의 본질

모든 사물들은 인과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한 위대한 원리에는 예외가 없다.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이 원리와 반대되는 사례를 찾으려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인류가 꾸준히 발전해 감에 따라 점점 더 이러한 원리로부터 벗어나려는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성공적으로 이 원리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에 대한 인식을 더욱 더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인류의 발전이란 이러한 원리를 확고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 원리에 점차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 자신의 인품과 그리고 그 인품의 다양한 모습도 역시 이러한 위대한 만물의 법칙의 구성 요소이다. 우리 자신의 성품이 하나의 상황에서 이와 상이한 상황으로 변화하는 것도 인과법칙에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해야지 다른 방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이것이 충족된 상태로 전환하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유기체 속에서 작동하는 힘이 결핍된 상황을 제거시켜야만 하거나, 아니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외부의 사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야한다.

인간의 욕망 충족과 인과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물들을 우리는 유용한 물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인과적 맥락을 인식하고 동시에 이 인식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러한 사물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사물들을 재화라고 부른다.¹⁴⁾

어느 한 사물이 재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재화의 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인간의 욕구
2. 욕구 충족과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사물의 특성
3.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한 인간들의 인식
4.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실제로 이 사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14) 역자 주: 이와 관련된 독일어판 주석을 영문판에서는 부록A의 첫 세 개의 문단으로 번역했다.

이러한 조건을 동시적으로 충족할 경우에만이 어느 한 사물이 재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물은 재화의 성격goods-character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4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즉시 그 재화의 성격이 소멸하게 된다.¹⁵⁾

따라서 첫째로 어느 한 사물이 욕구충족에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욕구의 영역에 변화가 생겨 충족할 욕구가 없다면, 53 다면 그것은 재화의 성격을 상실한다. 둘째로 어느 한 사물의 특성이 변화되어, 그것이 욕구충족의 인과적 맥락을 갖게 해주는 유용성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언제나 그것은 더 이상 재화가 될 수 없다.

셋째로 어느 한 사물이 욕망을 충족하리라는 인식, 다시 말하면 이 사물과 욕망충족 간의 인과적 맥락에 관한 인식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더 이상 재화가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간들이 어느 한 재화를 가질 수 없다면, 다시 말하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들이 직접 이를 끌어들이 수 없거나, 아니면 이를 손에 넣기 위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에도 그 재화는 재화의 성격을 상실한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 충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이를 재화로 취급하는 독특한 상황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재화로서의 특성과 그리고 이로써 욕구충족 효과를 갖고 있지 못한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에

재화의 성격과 효과를 부여하는 식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아니면 실제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전제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 이러한 두 가지 기이한 상황에서는 사물들이 실제로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견 속에서만 그런 관계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통하여 사물의 재화의 성격이 정당화되고 있다. 전자의 예에 속하는 재화들은 대부분 화장품, 부적, 오늘날 아직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오지의 문화나 또는 원시적인 민족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품, 마법의 지팡이, 사랑을 유혹하기 위한 약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충족시켜야 할 인간들의 욕구를 실제로 충족시키는 데에는 모두 유용성이 없다.

두 번째의 예에 속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질병을 위한 약품, 이교도 민족들이 우상숭배를 위해 사용되는 각종 용구, 입상, 건물과, 그리고 고문기구 등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공의imaginery 재화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재화의 특성을 갖게 된 것은 오로지 상상하여 구상된 것이거나, 아니면 인간들의 가공된 욕구로부터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¹⁶⁾

한 민족의 문화가 높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고 인간들이 사물의 진정한 본질과 이들의 고유한 성격을 깊이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진정한 재화의 수효는 그만큼 더 증가하고, 가공된 재화의 수효는 그만큼 더 감소한다. 그리고 옳은 인식, 즉 지식과 인간들의 번영 사이에는 인과적 맥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15)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재화의 질은 재화에 고착되어 있는 고유한 것, 다시 말하면 재화의 질 그 자체의 성격이 아니라, 어떤 사물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가 소멸되면, 당연히 그것은 더 이상 재화가 아니다.

16) 이미 아리스토텔레스(de anima, III. 10)는 욕구가 이성적 사고에 의해 조종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진정한 재화와 가공된 재화를 구분하고 있다.

54 결코 적지 않다. 경험적으로 볼 때에도 진정한 재화의 수가 가장 빈약한 민족한테는 가공된 재화의 수가 그만큼 큰 법이다.

과학적 관심을 각별히 끄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몇몇 학자들이 “관계”라는 표현을 이용하여¹⁷⁾ 특별한 재화의 범주로 요약하고 있는 재화들이다. 이에 속하는 것은 기업, 고객관계, 독점, 출판권, 특허, 영업권, 저작권이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랑관계 교회공동체와 학문공동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를 재화의 성격에 비추어 엄격하게 검토한다면, 그들은 재화의 범주로 파악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기업, 독점, 출판권, 고객 등은 실제로 재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과정의 수많은 사례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상들을 면밀히 다루었던 이론가¹⁸⁾가

17) 영문판 역자 주: 독일어 표현은 “Verhältnisse”이다. 이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는 없다. 영어단어로서 가장 가까운 뜻을 지닌 것은 “무형적인 것(intangibles)” 또는 “요구권(claim)”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영어 단어는 독일어의 “Verhältnisse”가 의미하는 것보다 좁다. 우리는 이 독일어 단어의 제일차적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서 “관계(relationship)”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그러나 독자들은 텍스트의 문맥을 검토하여 그 충분한 의미를 얻을 수 있다.

18) Schäffle, *Theorie der ausschliessenden Verhaeltisse*, 1867, P. 2, Steuart: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Basil 1796, II, pp.128. 여기에서 스투어트는 재화를 이미 물건, 용역, 권리로 나누고 있다. 역시 판매 가능한 특권도 이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p.141). 제이J.-B.Say는 재화에 속하는 것으로서 변호사 집단, 상인의 고객 신문사, 그리고 군사령관의 명성 등을 들고 있다.(cours complet III. p.219, 1828) 헤르만(Herrmann, *Staatswirtschaftliche Untersuchungen*, 1832, p.2, 3, 7, 289)은 수많은 삶의 관계(우정관계, 사랑관계, 가족관계, 영리관계)를 외부의 재화로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들을 물적 재화와 그리고 재화의 특수한 범주로서 서비스와 대비하고 있다. 로셔(W. Roscher, *System I.*, §3)는 국가도 “관계”로 보고 있다. 반면에 쉘플레는 “경쟁을 밀어내고 사적인 지배를 통하여 독점화한 그리고 이전 가능한 이권(rent)”에 국한하여 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이권”이라는 용어를 자신에게 특유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Das gesellschaftliche System der menschlichen Wirthschaft, 1867, pp.192) 이밖에도 Soden(*Nationalökonomie I.*, §26 ff)와 그리고 Hufeland(*Neue Grundleg. I.*, 1815, p.30)를 참조

재화로서의 이러한 관계의 존재는 명백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존재는 공정한 눈으로 보면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믿기에는 오로지 소재나 힘(물적 재화와 노동실적)만을 사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오로지 그런 것만을 재화로 인정하려는 우리 시대의 무의식적인 현실주의적 태도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더 심층적인 것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의 언어란 일반적으로 “유용한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오히려 특수하게 오로지 “노동 서비스”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법률학자들 측에서 여러 번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서비스라고 부르지 않고서도 특정한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유용한, 매우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일련의 행동들, 심지어 일련의 무작위도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품을 사가거나, 변호사로서 나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상황은 분명히 그의 노동 서비스는 아니지만, 나에게서 유용한 행위이다. 그리고 소규모 도시에서 사는 유복한 의사가, 이 도시에는 자신이외에 오직 또 한 사람의 의사가 살고 있는데, 의업을 중단한다고 할 경우, 후자의 의사는 독점자가 될 것이다. 전자의 의사가 의업을 중단하는 것은 후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부작용(행위의 중단)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노동서비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 혹은 적은 사람들(예를 들면 고객의 수)이 어느 한 사람(예를 들면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행동을 규칙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은 이 유용한 행동의 성격을 변동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지역 또는 어느 한 국가의 몇몇 주민이나 전체 주민이 자발적으로 혹은 법적인 강제를 통하여(자연적 혹은 법적 독점, 출판

권, 상표보호 등으로 인하여) 특정의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한 사람에게 유익한 결과가 초래하는 상황도 이 유용한 무작위의 성격을 전혀 변경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이 고객들, 공중, 독점 등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타인들의 유용한 행동(작위) 내지는 유용한 행동 중단(부작위)이거나 또는, 기업의 경우가 흔히 그렇듯이, 물적 재화, 노동서비스와 그리고 그 밖의 유용한 행동 내지는 행동중단의 총체이다. 우정과 사랑의 관계, 종교공동체 등까지도 우리에게 유용한 타인들의 작위와 부작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유용한 작위와 부작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고객, 기업, 독점권리 등이 실제로 그런 것인데, 왜 우리가 이들에게 재화의 성격을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지의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 라는 막연한 개념을 이용하여 각별한 범주로서 이들을 그 밖의 재화와 대비시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가 믿기에 는 재화의 총체는 물적 재화(재화인 한 모든 자연력을 포함하여)와 유용한 인간행동(내지는 부작위)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유용한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서비스이다.

2. 재화들간의 인과관계

56 우리의 과학에서 재화들끼리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무 엇보다도 각별히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과학 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학에서도 우리가 과학적 관찰의 대상

을 더 이상 고립된 개별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지 말고 이 현상들끼 리의 원인과 결과의 맥락을, 그리고 이 현상들을 지배하고 있는 법 칩을 탐구해낼 경우에만 비로소 진정한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 루어 질 수 있다. 우리가 먹는 빵, 우리가 빵을 만드는 곡식가루, 곡 식가루로 만들 곡식, 곡식을 재배하는 경작지, 이 모든 것이 다 재 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우리의 과학을 위해 충분한 것은 아 니다. 오히려, 모든 경험과학에서도 그런 것처럼, 내적인 요인에 따 라서 재화를 분류하고 재화의 인과적인 복합 속에서 각 재화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내고, 끝으로 재화들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규명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복지 후생이 우리의 욕망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는 한, 그것은 우리의 욕구를 직접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한 량의 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먹고 싶은 욕망을 달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빵과, 그리고 우리의 욕구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사이의 인과적 맥락은 직접적인 맥락(관계)이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기본 원칙에 비추어서 빵의 재화적 성격을 심사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충족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음료수, 의복, 장식품 등과 같은 그 밖의 모든 재화들도 역시 동일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사물들의 범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앞으로 설명을 위해서 간단 히 “제1순위 재화” 에 속하는 위에 열거한 재화들과 나란히 우리는 인간들의 경제에서 욕구충족과 전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있

지 않지만, 그러나 제1순위 재화의 재화적 성격에 못지 않게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른 재화들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시장에서 빵과 그리고 특히 우리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데 유용한 재화들과 나란히 다량의 곡물가루, 연료, 소금을 볼 수 있다. 또 우리는 빵을 굽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가 거래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빵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의 거래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직접적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유용한 것들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빵 굽는 장인의 특
57 수노동을 가지고, 빵 굽는 장비를 가지고, 그리고 생 밀가루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욕구를 직접 충족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건들이 인간 경제에서 제1순위 재화만큼이나 재화로 취급된다면, 그 이유는 이 물건들이 인간욕망을 직접적으로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빵과 그리고 제1순위의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이러한 기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욕구 충족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다른 재화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도 역시 직접적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는 유용성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제1순위 재화를 생산하는 데에 기여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욕구충족과 간접적으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제2순위의 재화라고 부르는 이런 물건들, 그리고 이들과 유사한 물건들의 재화적 성격을 정당화하는 관계는 본질적으로 제1순위 재화의 관계와 동일하다. 제1순위 재화들은 우리의 욕구충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제2순위 재화들은 이와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압도적인 차이는 그러한 관계의 본질적 차이는 아니다. 왜냐하면 재화의 성격의 조건은 인과 맥락이지, 물건과

욕구충족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의 복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제2순위의 재화가 재화적 성격을 가진 물건들 전부를 지칭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위에서 선택한 예를 든다면, 곡물가루, 밀, 호밀 등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노동력 등을 제3순위 재화로 기술될 수 있다는 것, 곡물 경작지, 경작을 위해 필요한 연장과 시설, 농민의 특수 노동을 제4순위의 재화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다. 독자들은 내가 여기에서 기술한 생각들을 이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앞 절에서 보았듯이 어느 한 물건과 인간 욕망의 충족과의 인과적 관계는 재화의 질의 전제 조건중 하나이다. 이장에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했던 생각을 요약하면, 욕구충족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한 물건이 재화의 성격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다. 우리가 동시에 보여주었듯이 인간 욕망의 충족과 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재화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재화의 성격의 본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들은 때로는 우리의 욕구 충족과 가까운 인과적 관계를,
58 때로는 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는 제1순위의, 제2, 제3, 제4... 순위의 재화를 구분했다.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는 애초부터 앞에서 말한 것을 잘못된 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재화의 성격에 관하여 말했던 장소에서 이 성격은 재화에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재화의 인과적 복합에서 어느 한 재화가 차지하는 순위를 다루는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한다. 어느 한 재화가 특정의 용도에 비추

어 인간 욕구의 충족과 때로는 가까운, 때로는 먼 인과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화에 내재된 그 어떤 것도 재화의 특성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재화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설명할 다음 장에서도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순위의 숫자가 아니다. 그 수치는, 옳게 이해하는 한, 어렵고 중요한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바람직한 보조수단일 뿐이다. 우리가 각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재화와 인간 욕망 충족사이의 인과적 맥락에 대한 통찰이다. 그리고 전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후자와의 보다 더 간접적인 또는 보다 덜 간접적인 인과적 관계가 생겨난다.

3. 재화의 성격을 지배하는 법칙

A. 높은 순위의 재화의 성격은 우리가 이 재화와 보완관계를 가지는 재화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제1순위의 재화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욕구 충족에 직접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재화에 해당되는 제2순위의 재화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제1순위의 재화로 바꿀 수 있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욕구 충족에 이용할 수 있다. 제3순위의 재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제2순위의 재화로, 제2순위의 재화를 제1순위 재화로 바꿀 수 있다. 이와 같이 제3순위의 재화를, 물론 간접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해 끌어들이 수 있다. 높은 순위의 모든 재화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방

식으로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높은 순위의 모든 재화도 재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이들을 우리의 욕망 충족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한 그러하다.

그러나 높은 순위의 재화를 고려할 때, 이 마지막 상황에는 매우 중요한 제한이 있다. 높은 순위의 개별 재화를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다른 높은 순위의 재화(즉 높은 순위의 보완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한 경제주체가 직접 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빵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2순위의 재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경우에도 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가 밀가루, 소금, 소다, 빵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그리고 이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연료와 물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욕구 충족을 위해 그는 더 이상 이러한 제2순위의 재화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연료와 물이 없으면, 다른 모든 필요한 재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빵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빵에 대한 욕망을 고려한다면, 제2순위의 재화들은 재화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재화가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4가지 조건 중 하나(이 경우 4번째 조건)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빵에 대한 욕구와 관련하여 재화의 성격을 상실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빵에 대한 욕망 이외의 다른 욕구를 충족하

기 위해 그 물건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물건들만으로도 한가지 혹은 그이상의 보완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느 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재화의 성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보완재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제2순위 재화 혼자서는, 혹은 이 재화가 다른 재화와 연결해서도 어떠한 인간 욕망이든 이 욕망의 충족을 위해 이용될 수 없다면, 그 재화는 보완재가 없기 때문에 재화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고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주체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재화를 더 이상 끌어들이 수 없고, 따라서 재화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중요한 전체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규명해 낸 결과로서 얻은 일차적인 명제는 제2순위의 재화가 재화로서의 질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한 제1순위의 재화의 생산과 관련하여 동일 순위의 보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의 재화가 재화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들이 보완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높은 순위의 재화와 이 보다 한 순위 낮은 순위에 있는 재화의 관계(예를 들면 제3순위의 재화와 제2순위의 재화의 관계, 제5순위의 재화와 제4순위의 재화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재화들간의 인과관계만을 고찰한다고 해도 우리는 제2순위의 재화와 이보다 낮은 순위, 즉

제1순위의 재화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기본명제는 당연히 높은 순위의 재화가 재화로서의 질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 재화의 순위보다 한 단계 낮은 순위의 재화의 생산과 관련된 동일 순위의 보완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명제로 확대될 수 있다. 제2순위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의 경우 우리가 말하는 어려움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에 생겨난다. 즉, 한 단계 낮은 순위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재화들은 반드시 재화로서의 성격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그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동시에 이 마지막 순위와 그리고 이 순위 보다 낮은 모든 순위의 모든 보완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제2순위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제3순위의 모든 재화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제2순위의 보완재를 가질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2순위의 개별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제3순위의 모든 재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는 이 재화들을 인간 욕망의 충족을 위해 실제로 끌어들이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제3순위의 재화(이 재화는 재화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의 대상이다) 제2순위의 재화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제2순위의 재화를 제1순위의 재화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제3순위의 재화들을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끌어들이 수 있는 힘도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재화들은 즉시 재화로서의 성격을 상

실하고야 만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앞에서 밝힌 기본 명제 - 높은 순위의 재화가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순위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적어도 동일 순위의 보완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를 생각해 보면, 이 기본 명제의 결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명제는 높은 순위의 보완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그것을 우리의 욕구 충족에 끌어들이 수 있다는 사실에서 생겨나는 모든 조건들(물건이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제3순위의 재화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재화가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게된 이유는 우리가 이 재화를 제2순위의 재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재화가 재화로서의 질을 갖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제2순위의 재화를 제1순위 재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제2순위의 보완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4, 제5순위의 재화와 그리고 그 이상의 순위의 재화의 경우에도 이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도 욕구 충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건들이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은 우리가 동일 순위의 보완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물건들이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은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우리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순위의 보완재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하 순위의 보완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제1순위 재화의 생산과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인간 욕망의 충족을 위해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1순위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를 끌어들이는데 필요한 재화 전체를 이 재화를 보완하는 재화(넓은

의미로 이해하여)라고 부른다면, 일반적인 기본 명제는 다음과 같이 표
62 현될 수 있다. 즉 높은 순위의 재화가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위의 의미의 보완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화들은 서로를 조건화한다는 법칙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재화의 거대한 인과적 맥락을 생생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1862년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인하여 유럽의 가장 중요한 목화 구입처가 차단되었을 때, 이 목화의 보완재였던 수 천 가지의 다른 재화들이 재화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면직물 공장에서 일하는 영국과 대륙의 노동자들의 노동력이다. 그들은 상당부분 휴업해야 했고, 따라서 공적인 자선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노동력(유능한 노동자들이나 가질 수 있었던 노동력)은 무차별적이었고, 대량의 이 노동력은 재화로서의 성격을 상실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완재로서 면화가 품질 상태가 되었고, 특수 노동력은 대부분 인간 욕구의 충족을 위해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노동력의 보완재, 즉 면화를 일부는 다른 구매처에서 수입되었고, 일부는 남북전쟁이 종식된 후 예전의 구입처로부터 수입할 수 있게 되자, 즉시 그 노동력은 다시 재화가 될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보완재로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어느 한 재화가 재화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특히 특종 작물, 예를 들면 밀을 재배하는 나라에서는 각별한 풍작이 된 해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농촌 노동자는, 애초부터 그 수가 적은데, 풍요의 시기에는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또한 밀을 타작하려면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집약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예를 들면 비옥한 헝가리 평야에서는) 단 기간 내의

노동력의 필요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노동력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량의 곡물이 밭에서 썩어갔다. 그 이유는 밭에 있는 곡물의 보완재(즉 곡물 수확을 위한 노동력)가 부족하고, 따라서 그 곡물 자체가 재화의 성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63 한 나라의 경제가 고도로 발전된 경우 다양한 보완재들은 여러 상이한 사람들의 수중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 상품의 생산자들은 원칙적으로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그리고 보완재를 생산하는 생산자들도 그들이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물건들이 그들이 전혀 갖지 않은 다른 재화의 존재 때문에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은 그 자체 그리고 보완재가 없이도 재화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오류가 가장 쉽게 생겨나는 곳은 활발한 상업과 고도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상품들이 거래를 통해 연결된 다른 사람들이 적시에 보완재를 공급해야만 생산될 수 있는데, 생산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원칙적으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만 그 사실을 전제하고 생산한다. 재화를 지배하는 법칙의 작동이 분명하게 들어내줄 정도로 상황이 바뀌어, 이 암묵적인 전제조건이 들어맞지 않을 때에서야 비로소 습관화된 기계적인 사업운영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여론은 이러한 현상과 그 심층적인 원인에 주목한다.

B. 높은 순위의 재화가 갖는 재화의 성격은 낮은 순위의 재화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성격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앞의 두 절에서 우리가 기술한 바와 같이 재화의 본질과 인과적

맥락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재화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서도 재화 그 자체를 지배하는 또 다른 법칙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인간 욕구의 존재는 물건이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는 것, 인간욕구는 이를 충족시키는 어느 재화와 인과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 욕구가 소멸하면, 이 재화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지 않는 한, 그 재화는 재화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

제1순위에 속하는 재화가 지금까지 충족하는데 기여한 욕구들이 전부 없어지고 바로 그 재화를 필요로 하는 욕망이 새로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 재화는 재화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화의 성격에 관하여 말했던 바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가 어느 한 욕망을 충족하는 것과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화 전체를 염두에 두고서, 그 욕구가 없어지면 이 욕구의 충족과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의 재화적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는다면, 사정은 이제 더욱 복잡해진다.

인간의 취향이 변동하여 담배를 피우고자하는 욕망이 없어지고, 동시에 다른 모든 욕망들이, 인간들에게 이미 제공된 담배가 이 욕망들의 충족에 아직 기여하는데, 마찬가지로 소멸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와 같은 경우, 그 식물을 인간들이 즐기는 형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담배는 재화의 성격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담배와 관련된 높은 순위의 재화들은 어떻게 되는가? 가공되지 않은 담배 잎, 다양한 종류의 담배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연장과 시설, 숙련된 노동력, 간단히 말해서 인간을 즐겁

게 해주는 담배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기존의 제2순위 재화들 전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담배 씨앗, 담배 농장, 담배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노동력, 이때 사용될 연장과 시설, 그리고 담배에 대한 인간 욕망과 관련하여 제3순위의 재화라고 부를 수 있는 기타의 모든 재화들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담배와 관련된 제4, 제5순위 등에 속하는 재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한 물건이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인간 욕망의 충족과 인과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재화와 욕구 충족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어느 한 물건이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물건들은 그들의 재화적인 성격을 갖는 이유는 그들이 욕구 충족과 간접적인 인과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족시킬 욕구의 존재가 사물들이 재화의 갖가지 성격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기본 명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즉, 재화가 직접적으로 인간의 욕구 충족과 인과적 관계를 가질 수 있든, 아니면 재화로서의 성격을 인간 욕구의 충족과 다소의 간접적인 인과적 관계로부터 도출하든, 지금까지 충족시켜온 욕망이 전부 소멸되면 즉시 그 재화는 재화로서의 성격을 잃게 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물이 재화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관계의 모든 기반이 욕구와 함께 소멸된다는 것이다.

치료하는데 키니네Chinarinde를 사용하는 질병이 사라지게 되면, 그

것은 더 이상 재화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키니네는 충족시켜야 할 유일한 욕망과 인과적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욕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니네의 사용 목적이 없어지면 또 다른 결과가 야기된다. 즉 이 키니네와 관련된 높은 순위 재화들의 상당부분도 역시 재화의 성격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한다.

키니네 나무를 찾아 껍질을 벗겨 살아가는 키니네 생산지의 주민들은 지금까지 키니네 생산으로 삶을 유지해왔던 특수 노동력은 말할 것도 없고, 키니네의 재고량뿐만 아니라 키니네 나무, 키니네 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연장과 시설 등이 갑자기 재화의 성격을 상실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변화된 상황아래에서 그들은 인간욕망의 충족과 어떤 인과적 관계도 더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취향의 변동을 통하여 담배를 즐기는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이것은 인간들이 이 식물을 즐기는 형태로 제조되어 있는 모든 담배 재고가 재화의 성격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즉 담배의 원료인 담배 잎, 오로지 담배 잎만을 가공하는 데만 쓸모 있는 기계와 연장 그리고 시설, 담배 공장에서 이용되는 특수 노동, 담배 종자의 재고 등이 재화의 성격을 잃는다.

쿠바, 마닐라, 푸에르토리코, 하바나 등의 곳에서 담배의 품질을 검사하고, 담배를 사들이는데 각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이 지금까지는 아주 높은 노임을 받아 왔는데 그들의 노동력은 더 이상 재화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이 나라들의 담배 공장에 고용된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 유럽의 담배 공장에 고용된 사람들의 노동력도 재화의 성격을 상실할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담배 재배나 담배산

업에 관한 수많은 책까지도 더 이상 재화가 될 수 없고 팔리지 못한 채 출판사의 창고에 쌓여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담배 갑, 모든 종류의 파이프, 파이프를 닦아 내는 도구 등도 더 이상 재화가 되지 못한다.

66 겹으로 보기에 매우 복잡한 이러한 모든 현상에 대한 설명은 위에 열거한 재화들은 담배를 즐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인과적 맥락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욕망이 소멸되면 그들이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상실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재화의 성격을 인간 욕망의 충족과 갖는 개별적인 인과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과관계의 복합에서 도출하는데, 이것은 제1순위에 속하는 재화의 경우는 드물지 않고, 높은 순위에 속하는 재화의 경우는 원칙이다.

따라서 이 후자의 경우에는 그들의 재화다운 성격은 어떤 개별 욕망이나 혹은 욕망들의 일부가 사라진다고 해도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분명한 것은 재화들이 충족시킬 모든 욕망이 제거될 경우엔야 비로소 재화의 성격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들은 변동된 상황아래에서도 아직도 남아 있는 충족시킬 욕망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재화다운 성격을 완전히 법칙적 방식으로 유지한다. 이 경우에도 재화가 욕구 충족과 인과적 관계를 아직도 맺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화의 성격이 유지되고, 이 마지막 욕구가 소멸하면 즉시 그 성격은 사라진다.

위에서 언급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담배를 즐기고 싶은 욕망이 완전히 소멸되면, 예를 들면 인간들이 사용하기 위해 이미 가공하여 만든 담배, 담배 잎 재고와 담배 씨앗 재고, 그리고 담배 욕구 충족과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높은 순위의 재화

들도 재화의 성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모든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담배 재배에 적합한 토지와 이때 사용되는 농기구, 그리고 담배 산업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연장과 기계는 담배 욕구가 소멸된 후에도 인과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욕망과 관련하여 재화의 성격을 계속 보유한다.

따라서 높은 순위의 재화는 낮은 수준의 재화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 낮은 순위의 재화가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순위의 재화가 재화의 성격을 갖는다는 법칙은 위에서 설명한 기본 명제의 본질과 관련된 변형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67 기본 명제의 구체적인 형태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욕구 충족과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들을 전부 고려했다. 그리고 마지막 영향, 즉 인간 욕망의 충족에 이르기까지 인과적 연결고리 전체가 우리의 분석 대상이었다. 위에서 기본 명제를 세워 놓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인과적 연결고리의 몇 가지 구성요소들만을 주목하려고 한다.

우리는 예를 들면 제3순위의 재화가 인간 욕망의 충족과 맺고 있는 인과적 관계 망을 도외시키고, 오직 이 제3순위의 재화와 그리고 임의로 선택한 높은 순위에 속하는 재화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맥락만을 염두에 둘 것이다.

4. 시간 · 오류

높은 순위에 속하는 재화들이 낮은 순위에 속하는 재화들로 단계

적으로 전환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인간 욕구의 충족을 위해 이용되는 과정은 앞 절에서 보았듯이 규칙 없이 이루어지는 전환 과정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전환 과정과 똑같이 인과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인과성 개념은 그러나 시간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변동과정은 생성과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시간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인과적 복합을 시간 속에서 파악하지 않고 그리고 개별 현상들을 인과적 복합과 관련하여 평가하지 않는다면, 이 변동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개별 현상들의 인과적 복합과 복합 그 자체를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높은 순위 재화를 단계적으로 낮은 순위의 재화로 바꾸고 이 재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간 욕구의 충족이라는 상황을 야기하기까지의 변동과정을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우리가 어느 한 높은 순위에 속하는 보완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재화를 먼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재화로, 그리고 그 다음 낮은 수준의 재화를 계속 변화시켜, 결국 제1순위의 재화로 변동시켜야 한다. 이 마지막 순위의 재화들은 비로소 우리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많은 경우 아주 짧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기술이나 유통체계의 발전은 이 시간을 점차 단축시켜 준다.

그러나 시간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눈짓 한 번하여 어떤 높은 순위의 재화를 낮은 순위의 재화로 변동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확실한 것은 높은 순위 재화를 가지고 있

는 사람이 사례의 성격에 따라 때로는 단기간이 지나거나, 때로는 장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한 단계 낮은 순위의 재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과적 연결고리의 개별 요소에 관하여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모든 것은 거의 변형하지 않고서도 전체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개별사례에서 이러한 과정이 걸리는 시간은 이 사례들 각각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르다. 떡갈나무 숲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토지, 노동, 도구 그리고 씨앗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 백년을 기다려야 비로소 벌채할 수 있을 정도로 숲이 자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벌채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 숲을 가꾸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상속받은 사람일 것이다.

이와는 달리 식품이나 음료수를 위한 곡물, 그리고 이 곡물을 수확하기 위해 필요한 연장, 노동력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곡물을 경작하여 수확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곡물을 수확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얼마나 크든 관계없이 확실한 것은 높은 순위의 재화를 이용할 때와 이를 이용하여 낮은 순위의 재화를 얻을 때 사이의 시간간격은 결코 완전히 소멸될 수 없다는 점이다. 높은 순위의 재화가 재화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직접적인 현재의 욕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했던 생산 과정이 이미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충족하리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욕구 때문이다.

이미 설명한 바에 따라 확실한 것은 우리가 특정의 사용목적을 염두에 두는 한, 높은 순위의 재화와 이에 해당되는 낮은 순위의 재화의 차이는 후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전자는 재화의 형

69 성과정의 먼저 단계라는 것, 따라서 사례의 성격에 따라 때로는 긴 기간이, 때로는 짧은 시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재화의 직접 사용과(이 재화에 해당되는 높은 순위의 재화의 소유를 통한) 그 재화의 간접 사용 사이에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이 차이점을 설명할 것이다.

어떤 재화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그 재화의 수량과 질에 대해 확신한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 높은 순위의 재화의 소유를 통하여 오로지 간접적으로 그 재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재화의 생산과정이 끝났을 때 그가 갖게 될 낮은 순위의 재화의 질이 어떨 것인가를, 그리고 그 재화의 수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할 수 없다.

수 백 리터의 곡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접 이 재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량과 품질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수 백 리터의 곡식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토지, 종자, 비료, 노동력, 농기구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우연성을 만나게 되어 필요한 양보다 더 수확할 수도 있고, 적게 수확할 수도 있다. 그에게는 흉작이라는 불운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특히 그 생산물의 품질과 관련해서도 어떤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몇 가지 높은 순위의 재화를 가지고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의 수량 및 품질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생산부문에 따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구두 생산에 필요한 재료, 연장 그리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순위에 속한 재화의 수량과 품질로부터 구두 생산과정이 끝날 무렵에 그가 갖게

70 될 구두의 수량과 품질을 거의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유채 재배에 적합한 토지와 농기구 그리고 필요한 노동력과 종자, 비료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작이 끝날 무렵에 수확할 유채열매의 수량에 대해 미리 판단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품질에 관해서도 완전히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이 두 가지와 관련하여 언제나 불확실성에 처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불확실성은 맥주용 밀 경작자나, 사냥꾼 또는 진주 조개잡이의 불확실성보다는 적다.

이와 같이 생산부문에 따라 불확실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이 불확실성이 불가피하게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사례의 성격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얻는 재화의 품질 및 수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고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그 불확실성이 작은 것이 모든 생산부문의 공통된 현상이란 점이다.

이러한 현상의 최종 원인은 우리가 재화의 생산이라고 부르는 인과과정에서 인간이 놓여 있는 고유한 위치 때문이다. 높은 순위의 재화는 인과법칙에 따라 우선 한 단계 낮은 순위의 재화로 변형되고, 이 재화는 다음 낮은 순위의 재화로 변형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제1순위의 재화가 생겨나, 마침내는 인간의 욕구 충족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야기된다. 높은 순위의 재화는 이러한 인과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요소의 전체는 결코 아니다.

재화의 세계에 속하는 이러한 요소이외에도 우리가 재화 생산이라고 부르는 인과과정이 생산물의 수량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 재화

생산도 그 인과과정의 요인에 속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후생과 밀접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맥락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요소가 생산품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요소는 우리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인간들은 종전까지만 해도 다양한 토질, 토지염분 그리고 비료가 다양한 식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했다. 예를 들면 다양한 토질은 생산과정의 최종결과에 때로는 유리하게, 때로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질적 및 양적 관계로 표현된다. 농화학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현재 그러한 불확실성의 일부는 제거되었고, 이제 그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한 사례와 관련하여 유리한 영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고, 불리한 영향은 제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농화학 분야의 연구가 깊이 이루어졌다.

71

토지 염분과 관련된 예는 일기의 변동에서 찾을 수 있다. 농민은 대부분의 경우 어떤 날씨가 농작물의 성장에 유리한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리한 날씨를 만들 수 없고 묘목을 망가뜨리는 날씨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수확 결과의 질 및 수량과 관련하여 우연처럼 보이는 막중한 영향력에 예속되어 있다. 이 영향력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것이 다른 모든 영향과 똑같이 인과법칙의 불가피한 기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들의 힘의 영역밖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높은 순위의 재화를 가지고 있어야만 산출할 수 있는 생산품의 품질과 수량을 예측하는 경우, 그 예측의 확실성의 정도는 그 생산품의 생산과 인과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인과적 과정의 요소들을

얼마나 완전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요소들을 인간이 얼마나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재화생성의 인과적 과정에 미치는 요인들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우리가 안다고 해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요인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하면 재화의 성격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요인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과과정 전체의 생산물, 즉 이에 해당되는 낮은 순위의 재화들의 품질과 수량의 불확실성은 그만큼 더 크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인간의 경제적 불확실성의 가장 본질적인 계기들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서 알게 되겠지만, 인간의 경제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5. 후생증진의 원인

스미스는 “노동 생산력의 가장 큰 증가와 그리고 노동을 행사할 때의 재주와 재치, 그리고 통찰력의 증가는 분업의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⁹⁾ 그리고 그는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분업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물의 증대는 질서 잡힌 사회에서는 최하의 계층까지도 포함하는 보편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다.²⁰⁾

이와 같이 스미스는 분업의 확대를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인간 경제에 대해 노동요소가 갖는 압도적인 중요

19) *Wealth of Nations*, B. I. Ch. I. Basil 1801, T. 1, P.6

20) 위의 책, 11쪽 이하

성을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믿기에는 그 탁월한 학자 스미스는 그의 저서 중 분업을 설명하는 장소에서 오로지 후생 증진의 한 가지 개별 요인만을 고려했을 뿐, 이에 못지 않게 유력한 다른 요인들은 그의 관찰에서 도외시했다.

호주의 어느 한 부족의 수렵채취를 위한 노동을 생각해 보자. 이 노동에서 그 부족의 구성원들끼리 목적 합리적으로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다. 구성원들 중에는 사냥꾼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야생 식물성 식품만을 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자들 중에는 오로지 음식을 장만하는 일에만 종사하는 여자들이 있고, 또 그들 중에는 옷을 만드는 일에만 종사하는 여자들도 있다. 이 부족의 분업을 좀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특정 종류의 노동활동은 특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즉 더욱더 분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분업이 그 부족이 향유할 수 있는 수단의 증가를, 이것을 아담 스미스가 분업의 확대의 결과라고 말한 것인데,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부족은, 그리고 다른 부족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은 노력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노동결과를, 지금까지의 노력을 가지고 보다 큰 결과를 달성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다 합목적적으로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업적 노동을 행사한다면, 그 부족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73 부족들을 실제로 관찰한다면 이러한 개선은 이 부족들마다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부족이 낮은 순위에 속하는 기존의 주어

진 재화(이 재화는 인간의 원시적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제 1, 제 2순위의 재화이다)를 채취하는 활동에 국한하는 대신에 제3, 제4순위 또는 그 이상의 순위에 속하는 재화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민족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점차 높은 순위에 속하는 재화를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합목적적인 분업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담 스미스가 오로지 이 후자의 상황에만 귀속시키려고 했던 후생증가를 인식할 수 있다.

이 부족이 곤봉을 가지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다가 활과 그물을 가지고 사냥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상태로 전환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가축 기르기를 더욱 집약적으로 종사할 것이다. 오로지 야생식물 식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집약적인 토지 경작에 종사할 것이다. 기업이 생겨나고 연장과 기계를 통해 생산이 더욱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부족의 후생증진의 원인을 이러한 생산 활동과 밀접한 맥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면 나갈수록 재화의 종류는 그 만큼 더 다양해질 것이고 그 결과 노동 활동도 다양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업의 확장도 그 만큼 더 필요하고, 또한 그 만큼 더 경제적인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물의 점진적 증가는 오로지 이 후자의 상황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것, 이 후자가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인류를 야만과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여 문명과 후생으로 이끌어 가는 거대한 영향들 중 단지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점차 더 높은 순위의 재화를 끌어들이는 것이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물(제1순위의 재화)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란 어렵지 않다.

74 채취 경제의 가장 원시적 형태는 자연이 주는 최하의 순위의 재화를 수집하는데 한정된 형태이다. 인간들은 이러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 재화의 생성은 인간의 희망과 욕구와 관계가 없고, 이 희망과 욕구에 비하여 그 생성은 우연적이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원시적인 경제 형태를 벗어나서, 인과적 과정에서 식료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들을 연결하고, 이들을 지배하여 높은 순위의 재화를 변형한다면 식료품이 여전히 인과법칙의 기초에서 생성되기는 하지만, 그 생성은 인간 욕망과 그리고 희망에 비교할 때 이제 더 이상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그리고 자연에 의해 설정된 경계선 내에서 인간 목적에 따라 규제되는 과정이다. 전에는 생성 조건이 우연히 적중하여 생겨났던 식료품은 이 조건을 인식하고 이를 지배하게 되자 자연법칙에 의해 그어진 경계선 내에서 이제는 인간 의지의 산물이 되었다. 그리고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 수량의 한계는 사물의 인과적 맥락에 관한 인식의 정도와 그리고 이 사물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의 크기에 달려 있게 되었다.

따라서 사물들과 인간 복지의 인과적 관계에 관한 인식이 발전하고, 후생증진의 먼 조건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증가함으로써 인간들은 원시적인 궁핍상태에서 벗어나 오늘날과 같은 문화적 단계와 후생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또한 소수의 인간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빈곤하게 살아가던 광대한 토지도 인구밀도가 높은 개간지로 변

동되었다. 따라서 장차 인간의 경제 발전은 인식의 발전과 사물을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6. 재화의 소유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다. 그런데 만약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구 중 하나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수단이 제 아무리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삶과 복지는 확립될 수 없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과 방법은 그 완전성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거의 무제한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
75 그러나 인간의 삶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들의 욕구충족과 관련하여 어떤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한 사람은 궁전에서 살면서 각별히 선택된 요리를 먹고 값비싼 의복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오두막집의 칙칙한 구석에서 잠자리를 찾고, 쓰레기를 먹으면서 낭마를 걸쳐 입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의식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말하자면 분명한 것은 개별 욕망을 가장 완벽하게 충족시킨다고 해도 우리의 삶과 행복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주체들에게 사용 가능한 모든 재화들이 갖는 재화로서의 성격은 서로 의존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별 재화들은 제각기 혼자서는 삶과 행복의 유지라고 하는 목표를, 이것은 재화 모두가 기여하는 목

표 전체인데, 오로지 다른 재화와 결합해서 만이 실현시킬 수 있을 뿐이다.

고립된 경제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도, 심지어 인간들끼리의 교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들이 결합하여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이용 가능한 재화들의 전체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들을 조화롭게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 그 조화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들에 반영되고 있다. 거래 관계가 발전된 상태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높은 문화에서는 어느 한 경제적 재화를 양적으로 충분히 소유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재화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개개인들의 경제와 관련된 위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멸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국민 경제에서는 그 만큼 더 분명히 나타난다.

인간들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은 개별 재화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재화들 전체라는 것이다. 이 전체는 고립된 경제에서처럼 똑같이 혹은 우리의 발전된 상태에서처럼 똑같이 부분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간접적으로 개별 경제 주체들에게 이용 가능한 재화들의 전체이고, 이 전체 속에서 우리가 욕구의 충족과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과 복지의 확립이라고 부르는 결과가 야기된다.

- 76 욕구 충족을 위해 개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전체를 우리는 재화의 소유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전체는 자의적으로 결합한 재화들의 수량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욕망들을 반영한 것, 목적 전체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본질적으로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없는 결합된 전체이다.

욕구는 우리의 충동에서 생겨나고, 이 충동은 우리의 본성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의 본성이 파괴되고 욕구 충족의 결핍은 우리의 본성을 위축시킨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삶과 번영을 의미한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배려하는 것은 삶과 행복을 배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배려하는 인간들의 모든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모든 다른 노력의 전제조건이자 동시에 그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려가 실제 생활에서 표출되는 것은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결정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재화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재화들은 오로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만 좌우될 뿐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우리의 실제 목적은 완전히 달성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삶과 행복은 우리의 손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재화의 수량을 우리는 필요 *requirements*라고 부를 것이다. 따라서 인간들이 자신의 삶과 행복을 배려하는 것은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욕구의 충족과 그리고 이에 따른 인간들의 삶과 행복이 매우 열악하게 확립되면, 이 재화에 대한 욕망이 아직도 직접적으로 유력하게 작동할 경우에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재화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어느 한 나라의 주민들에게 식료품이나 옷가지를 비축하지 못한 채 혹심한 한냉 계절이 닥쳐왔다고 상정해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난관을 극복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고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재화들을 장기적인 생산과정을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애초부터 자신들의 욕구충족을 미리 배려할 필연성, 즉 미래의 필요를 충족할 필연성은 그만큼 더 클 것이다.

이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야만인까지도 배고파야 비로소 사냥을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냉혹한 기후가 발생하고, 기후의 해로운 영향에 노출되었을 때 비로소 뒤늦게 집을 지으려하지도 않는다.²¹⁾ 그러나 문명인이 다른 모든 인간들과 다른 점은 그들이 단기

21) 많은 동물들마저도 식량을 비축해 놓고 겨울에도 식량과 따뜻한 보금자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애초부터 배려한다.

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기간을 걸쳐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미리 준비한다는 점, 수년 동안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아니 일생동안의 욕구 충족을 확립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넘어서 그들의 후세가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결핍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눈을 돌리는 곳이 어디이든 간에 우리는 문명화된 부족들이라면 모두 욕구 충족을 위한 광범위하고 관대한 대비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겨울의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겨울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이미 봄옷이 소매상의 진열대에 걸쳐져 있다. 공장에서서는 이미 우리가 다음 여름에 입을 수 있도록 가벼운 재료로 옷감을 짜고 있고, 또한 다음 겨울에 입을 수 있도록 두툼한 섬유를 짜고 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우리는 의사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일이 누군가에게 발생했을 때 그가 의학지식이나 재주, 또는 법률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거나, 자신을 위해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이러한 지식과 재주를 배우도록 시키려고 한다면 비록 이를 위한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에게 시간적으로 너무 늦다.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또는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미리 대비되어 있다. 수 년 전에 이미 직업적으로 교육받고 그리고 그 동안 실제의 활동을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은 세련된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과거에 마련한 대비책의 결실을 오늘날 향유하는 반면에 장차 유사한 서비

스에 대한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학에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배려는 장차 재화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화에 대한 어느 한 사람의 필요를 대비책이 세워진 기간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의 수량이라고 부를 수 있다.²²⁾

80 인간들이 욕구 충족을 위해 미리 대비책을 세울 때 이것이 성공하려면, 이를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 두 가지 지식이 분명해야 한다.

- a) 필요에 관한 지식, 즉 우리의 대비책이 적용될 기간에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하게 될 재화의 수량에 관한 인식과 그리고
- b)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에 관한 지식

욕구 충족을 위해 미리 대비책을 세우기 위한 모든 활동은 이 두 가지 수량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전자를 알지 못하면 그 활

22) ‘필요’라는 말은 우리의 언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욕망을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의 수량을,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한 사람이 소비하겠다고 의도한 재화의 수량을 의미한다.

이 후자의 의미에서 예를 들면 20,000달러(독일의 옛 3마르크의 은화)의 연금을 받고 이를 모두 소비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큰 수요(필요)를 가지고 있다. 즉 그가 수요할 수 있는 양은 매우 크다. 이에 반하여 100달러의 소득을 가진 농촌의 노동자는 매우 적은 필요량을 가지고 있다. 그가 의도하는 수요는 매우 적다. 극단적으로 가난한 거지는 필요량을 가질 수 없다. 즉, 거지는 가질 수 있는 양이 없다.

전자의 의미에서 인간의 필요는 인간들의 교육과 버릇의 차이 때문에 매우 다르다. 수단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수량과 똑같은 필요를 갖는다. 상인과 기업가들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필요”라는 용어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흔히 어느 한 재화의 “예상수요”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다른 가격으로는 어느 한 상품에 대한 수요는 없지만, “주어진 어떤 가격에는” 수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동은 맹목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활동 목표를 모르기 때문이다. 후자를 모르면 그 활동은 무계획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은 이용 가능한 수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명할 것이다. 즉 장래의 기간 동안에 생겨날 필요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를 우선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인간들이 이 기간동안 사용 가능한 재화의 수량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들에게 사용 가능한 재화의 수량(식량과 생산 수단)을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이용하려는 활동을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설명대상으로 만드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1. 인간의 필요

A. 제1순위 재화(소비재)의 필요

인간은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오로지 제1순위의 재화에 대한, 즉 직접 인간욕구의 충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재화에 대한 욕망을 느낀다(53쪽). 이러한 재화에 대한 필요가 없다면, 높은 순위의 재화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높은 순위의 재화가 필요한 이유는 제1순위의 재화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 후자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필요영역에 대한 연구의 기초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제1순위 재화에 대한 인간의 필요를 다루고, 이어서 높은 순위의 재화에 대한 필요가 해소되는 기본 원리를 설명할 것이다.

어느 한 구체적인 욕구²³⁾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제1순위 재화의 수량(그리고 어느 한 주어진 기간 내에 생겨나는 제1순위 재화에 대한 모든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 소요될 제1순위의 재화의 수량)은 구체적 욕구 그 자체(내지는 전체 욕구들 자체)에 의해 직접 결정되고, 그 수량은 이 욕구와(이 욕구들과) 직접적인 양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들이 대비하고자 하는 기간에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욕망을 가질 것인가, 어떤 강도로 이 욕망이 유력하게 될 것인가에 관한 정확하고 완전한 지식을 과거의 경험의 결과로서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의 수량, 다시 말하면 제1순위의 재화의 필요에 대하여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험으로 볼 때 우리는 대비하고자 하는 장래의 기간 내에 어떤 욕구들이 정말로 나타날 것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하다. 우리가 장래의 주어진 기간 내에 음식, 음료, 옷, 주택 등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애초부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의료서비스, 약물 등과 같은 다른 많은 재화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화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정말로 충족시켜야 할 욕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즉 우리가 대비하고자 하는 기간 내에 정말로 충족시켜야 할 욕구라는 것을 우리가 애

23) 영문판 역사 주: “구체적인 인간 욕구”라는 용어는 맹거의 원전에 빈번히 등장한다. 그에 게는 이 용어는 어느 한 재화의 한 단위를 소비하여 충족되는 어느 한 욕구(혹은 어느 한 욕구의 일부)를 의미한다.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한 재화를 한 단위씩 연속적으로 소비한다면 그는 이런 사람을 연속적인 “구체적인 욕망들”을 충족시키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물론 이 욕망의 중요도는 점차 감소한다. 그는 어떤 장소에서는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느 한 상품의 연속적인 단위들의 소비를 “연속적인 충족행위”라고 말하고 있다.(“구체성”의 의미에 관해서는 제3장과 부록D를 참조할 것 - 역사)

초부터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욕구를 충족하려면 얼마의 재화의 양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욕구는 충족시켜야 할 욕구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애
 82 초부터 그 욕망의 정도, 즉 그 욕구를 충족하는데 소요될 재화의 수량을 알지 못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수량이다.

우리의 불확실성이 어떤 욕망이 우리가 대비하려는 기간에 정말로 충족시켜야 할 욕망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면,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러한 부족한 지식 때문에 우리는 경우에 따라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비책을 세운다. 시골의 건강한 사람들까지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여 수단이 허용하는 한 가정 상비약을, 혹은 수많은 치료수단을 보관하고 있다. 매사에 조심하는 가정들은 화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설비를,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그밖에도 화재 방지시설이나 침입을 막기 위한 시설과 같은 유사한 재화를 보유한다. 내가 믿기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 중에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재화들이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재화에 대한 욕구가 우리의 계획 기간 동안 생겨날 것인가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욕구를 경우에 따라 충족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이 욕구 충족을 위한 재화의 필요가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한, 경우에 따라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대비책을 세우고 그들은 필요를 정하는 장소에서는 어디에서나 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포함하여 계산한다.²⁴⁾

그러나 생겨날 것인지가 완전히 불확실한 욕구에 관하여 여기에서 말했던 것은 어느 한 재화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리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느껴질 욕구의 강도가 완전히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경우에도 인간들은 그들이 모든 예상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재화수량을 가질 수 있다면 그들의 필요가 완전히 충족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믿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인간 욕구의 개발 능력이다. 즉 인간 욕구가 개발될 수 있고,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심지어
 83 무한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면,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재화 수량의 한계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고, 따라서 필요와 관련된 인간의 모든 예측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 욕구의 무한한 개발능력에 관한 한, 무한대라는 개념은 오로지 인간 욕구개발의 무제한성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개념은 특정의 기간 내에서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의 수량에는 적용될 수 없다. 순열이 끝이 없다고 해도 이 순열의 개별 부분은 유한하다. 인간 욕구도 가장 먼 장래의 기간에서는 무한정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주어진 그리고 특히 경제에서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기간에서는 양적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욕구는 끊임없이 개발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도 특정 기간만을 염두에 두는 한, 우리는 유한한 변수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무한적이고, 따라서 완전히 정할 수 없는 변수는 아니다.

24) E. B. Condillac, *Le commerce et le gouvernement*, in E. Daire(ed.), *Mélanges d'économie politique*, Paris 1847, 248쪽

우리가 인간들이 장래의 기간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비책을 세우는 것을 관찰하면,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욕구의 개발 능력을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열정적으로 이 개발 능력을 고려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자신의 가족 수가 늘어나기를, 혹은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기대해야 하는 사람은 주택을 건립하고 시설을 설치할 때, 그리고 자동차 등 보다 큰 내구성을 가진 재화를 구입할 때 장래의 기간 내에서 생겨날 욕망의 증가를 고려한다. 그리고 수단이 충분하다면, 개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재화 소유와 관련해서도 미래를 보다 많이 고려하려고 한다.

이와 유사한 현상을 우리는 마을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우리가 도시의 한 마을을 보면, 그곳에는 수도, 공공건물(학교, 양로원 등), 공원, 길거리 등 이들은 모두 현재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증가될 욕구까지도 적절히 고려하여 설치된 것들이다. 장래에 생겨날 욕구에 주목하는 이러한 경향은 정부의 활동에서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84 앞에서 말한 것을 요약하면, 소비재에 대한 인간들의 필요는 장래의 기간을 고려하여 양적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변수이다. 인간들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에서 가능한 한, 실제의 필연성에 입각하여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하면 수량을 정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대비하고자 하는 장래의 기간에 국한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 그들의 활동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의 정확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B. 높은 순위의 재화(생산 수단)에 대한 필요

장래의 기간을 고려하여 제1순위의 재화에 대한 우리의 필요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재화의 수량으로 직접적으로 충당된다면, 높은 순위의 재화로 이 필요를 충족해야 할 문제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제1순위의 재화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 이 필요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장래기간을 위해서는 높은 순위에 속하는 재화에 대한 필요가 생겨나고, 이 재화의 필요한 양은 관련 생산부문의 기술 수준 여하에 따라 다른데, 그 규모는 제1순위의 재화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양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 수단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고려하여 우리가 지금 막 기술한 간단한 관계는 우리가 곧 알게 되겠지만 아주 드문 사례에서만 관찰될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재화의 인과적 관계의 복합에서 생겨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관계를 변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앞에서(56쪽) 기술했듯이 인간들이 보완재를 동시에 갖지 못할 경우, 낮은 순위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어떤 재화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용 가능한 수량과 관련하여 재화를 고찰하면 우리가 위에서 재화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말했던 것이 여기에서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동시에 보완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비로소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높은 순위의 재화를 낮은 순위
85 의 재화로 변동시킬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용 가능한 수량을 고려하여 재화들을 관찰한다면, 그 원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원리는 우리가 낮은 순위에 속하는 수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높은 순위에 속하는 재화의 수량을 동원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높은 순위에 속하는 그 밖의 재화의 보완적인 수량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비록 아주 적은 양의 곡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씨앗, 노동 등과 같은(토지와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화를 가질 수 없는 한, 아무리 큰 토지라 하더라도 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높은 순위에 속하는 개별 재화에 대한 필요도 결코 생겨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빈번하게 낮은 순위의 재화에 대한 필요가 전혀 충족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완전하게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는 높은 순위의 재화들 각각에 대한 필요가 충족되려면 높은 순위의 보완재에 대한 양적으로 상응하는 필요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어진 기간동안 10,000켈레의 구두가 필요할 경우 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연장과 노동 등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겨우 5,000켈레의 구두를 생산할 정도의 가죽이나 또는 이와는 반대로 5,000켈레의 구두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력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정해 보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어진 기간을 고려할 때 우리의 총 필요는 여전히 구두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순위의 개별 재화가 10,000켈레의 구두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이다. 그러나 우리의 유효 필요(실제로 충족할 수 있는 필요effective requirements)는 다른 보완재를 고려한다면 5,000켈레의 구두

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량일 뿐이다. 나머지는 잠재적인(potential) 필요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보완재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 비로소 유효 필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에서 다음과 같은 법칙이 도출될 수 있다. 즉 장래의 특정 기간동안 높은 순위의 개별재화에 대한 우리의 유효 필요는 높은 순위의 개별 재화에 대한 유효 필요는 이 재화와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는 높은 순위의 재화의 수량을 사용할 수 있는 ⁸⁶ *느냐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북아메리카 남북전쟁의 결과로 유럽으로의 면포 유입량이 대폭 감소했을 때, 면직물의 필요는 거의 변동되지 않았다. 전쟁이 발발했어도 이 재화에 대한 욕구는 거의 변동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주어진 기간에 필요한 면포의 수량이 국내의 제조품으로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순위에 속하는 재화의 수량도 이에 맞추어 부족했다. 이 재화에 대한 필요량도 전쟁을 통해서 결코 변동될 수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필요한 높은 순위의 재화 중 하나인 면포원료로서 면화의 가용량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면포의 생산과 관련된 면화의 보완재(노동력, 기계 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필요의 상당부분도 잠재되었지만 그러나 면화의 보완재에 대한 유효 필요는 면화의 가용 수량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수량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면화의 수입이 다시 증가하게 되자 이 재화에 대한 유효 필요는 즉시 증가하였고, 이에 반하여 잠재적 필요는 감소했다.

발전된 모국에서 습득한 생각을 가지고 타국으로 이주하는 이주자들은 보다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토지와 보완 관계가

있는 다른 재화를 이주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처음부터 이주지역에서 토지를 확장하여 소유하려고 하는 오류를 빈번히 범했다. 그러나 그들이 씨앗, 가축, 농기구 등과 같은 토지와외의 보완재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 토지 이용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이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그들의 행동방식은 위에서 말한 원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원칙은 너무도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 원칙의 타당성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원칙을 무시하면 이로써 생겨나는 처절한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87 인간이 개화되면 개화될수록 고도로 분업화된 사회에서는 개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산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하리라는 암묵적인 그리고 원칙적으로 정확한 가정 하에서 높은 순위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그 만큼 더 익숙해져 간다.

오페라 안경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그 안경의 재료가 되는 안경렌즈, 상아 뼈 혹은 거북이 갑상자와 그리고 청동부분까지도 제조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이 오페라 안경제조업자들은 원칙적으로 각 부분을 특수한 제조업자나 공예가들로부터 구입하여 다만 몇 가지 손을 보아 이 부분들을 짜 맞추는 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렌즈를 깎아서 만드는 유리 연마공, 상아 갑과 거북이 갑을 만드는 장신구업자 그리고 구리제품을 만드는 청동세공업자 등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제품에 대한 필요가 있으리라는 암묵적인 가정 하에서 제조활동을 한다. 더구나 이들의 제조품들의 실제의 필요, 즉 유효 필요는 이들 각 제품의 보완재들의 생산량에 좌우된다

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따라서 안경렌즈의 생산이 중단되면 망원경, 오페라 안경과 기타 안경 생산에 필요한 높은 순위의 재화에 대한 실제 필요는 이제 충족될 수 없는 잠재 필요로 전환되고, 이로써 경제적인 혼란이 초래된다. 이러한 혼란을 일상적인 삶에서 전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그 혼란은 전적으로 법칙적인 것이다.

C. 필요를 느끼는 시간적 한계

우리의 연구에서 아직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시간이라는 변수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어떤 기간 내에서 인간들이 재화에 대한 필요를 계획하는가 이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분명한 것은 주어진 장래의 기간 내에 제1순위의 재화의 수량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 기간 내에 이 재화에 대한 필요는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1순위 또는 낮은 순위의 재화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간접적으로, 다시 말하면 높은 순위의 재화를 통해서만 충족할 수 있다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왜냐 하면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높은 순위의 재화의 생산과정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시간 사용 때문이다.(높은 순위의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88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여 당장 우리가 사용 가능한 제2순위의 재화로부터 제1순위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시점까지 확장한 시점을 기간 I 이라고 표시하자. 기간 I 에 뒤이어서 제1순위의 재화

가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제3순위의 재화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시점까지 확대한 기간을 기간 II라고 표시하자. 이와 유사하게 생각하여 그 다음 기간을 III, IV 등으로 표시하자. 따라서 특정 재화의 종류 각각에 대해 일련의 기간을 규정할 수는 있다. 이 기간들 각각에 대하여 우리는 제1순위의 재화의 직접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기간동안 우리는 그 재화의 필요한 양을 직접 손에 넣을 수 있는 이상 그 필요는 실제로도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제4순위의 재화를 이용하여 기간 II 동안 제1순위의 재화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오로지 제1순위의 재화나 또는 제2순위의 재화를 이용할 경우에만이 이 기간 내에 제1순위의 재화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실제로 충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제1순위의 재화에 대한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높은 순위의 재화와 관련하여 낮은 순위의 모든 재화에 대한 우리의 필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기간 V 동안 제6순위의 재화를 획득하여 그 기간동안 제3순위의 재화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간 II 동안 제6순위의 재화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금년 곡물에 대한 사람들의 필요가 늦가을에 존재하고 있는 곡물 재고로는 직접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를 충족하기 위해 토지, 농기구, 노동 등을 이용하기에 너무 늦다. 그러나 가을은 위에서 말한 높은 순위의 재화를 이용하여 다음 해의 곡물 필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한 시간이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10년 간 유능한 교사의

89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장 이미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유능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따라서 낮은 순위의 재화에 대한 필요와 똑같이 높은 순위의 재화에 대한 필요는 양적인 관계에서 엄격한 법칙에 따라 규정되는, 그리고 동시에 실제로 필요가 생기면 미리 인간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규모일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기간 내에서 그들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규모이다. 우리의 경험이 알려주고 있듯이 인간들은 자신의 욕구에 관한 그리고 재화의 생산 과정에 관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개별 재화의 수량은 물론이거니와 개별 재화에 대한 필요가 발생하는 기간까지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

2. 이용 가능한 수량

인간들이 노력하는 목적이 분명하냐의 여부는 모든 활동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다면, 장래의 기간 내에 생겨날 재화의 필요에 관한 인식은 욕구 충족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인간의 계획적 활동을 위한 제1차적 전제 조건이라는 것도 역시 분명하다. 따라서 인간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외적 조건이 무엇이든, 그 활동의 성공은 기본적으로, 장래의 시점에서 필요한 재화의 수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예측이 전혀 없으면, 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계획적인 활동은 전혀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활동의 성공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통찰이다. 따라서 인간들이 욕구충족을 위해 활동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러한 활동이 이런 목적을 위해 이용 가능한 재화 수량에 대해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한 통찰을 얻어내려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 취하는 행동 방식은 우리가 이곳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다.

어느 한 민족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은 기존의 상황 여부에 의해 주어진다. 그리고 그들은 이 수량을 확인할 경우, 그들이 가진 문제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의 재고 목록을 작성하고 그 재고를 측정하는 일뿐이다. 인간들의 계획된 활동의 이 두 가지 국면의 이상적인 목표는 주어진 시점에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들을 완전히 열거하고 이들을 완전히 동질적인 범주로 분류하여 이들의 수량을 정확하게 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이상을 추구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재고를 정리하고 이를 측정하는 기존의 기술 수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그 결과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실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정확성에 만족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재화 수량에 관한 정확한 지식은 실제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비상할 정도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인, 기업인들 그리고 고도의 신중한 활동을 개발한 사람들이다. 미개한 문명에서조차도 우리는 재화의 이용 가능한 수량에 관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신중한 활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한 언제든지 그들은 이용 가능한 재화 수량에 관하여 분명한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괄목할 만한 재화거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현재 이용가능한 재화의 수량에 관한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눈에 띄게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손에 얼마의 재화들이 있는지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관심이 적다. 그러나 분업의 결과로서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그리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로 교환에 의존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에 관해서는 물론 그들이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재화에 관해서도 알고자 하는 아주 명백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을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교환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사회의 문명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분업의 증가는 교환의 중개자로서 활동하는, 그리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거래 과정의 기계적인 역할(해양 수송업, 물자의 유통업, 창고업 등)을 수행하는 특수직업을 발생시킨다. 그 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재화를 기록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직업도 생겨난다. 따라서 우리는 특수 계층의 사람들은 재화 수량에 관한 자료를 수립하는데 특별한 직업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역을 중개하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이 사용 가능한 수량

에 관한,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의 이른바 스톡Stocks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려고 한다. 그들이 수집하는 자료들은 상업적인 삶에서 그들이 각기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거래 지역(마을, 지방, 혹은 심지어 나라 전체나 혹은 대륙)을 포함한다. 더구나 그들은 이와는 다른 성격의 많은 정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통계기록들은 현대의 규모가 큰 인간 그룹들이나 심지어 전 국가나 국가 그룹들이 현재 이용 가능한 재화의 수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로지 통계 조사에 의존해서만 정확한 스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 조사 절차는 교역지역 전체를 포괄하고 또한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관료기구를 전제로 한다.

그와 같은 기구는 오로지 정부에 의해서만 설치될 수 있고 또한 영토 내에서만 그러한 기구의 설치가 가능하다. 더구나 통계 조사가 관청이 쉽게 수집할 수 없는 재화의 수량과 관련되어 있다면 모든 전문가가 알고 있듯이 그 조사는 이러한 경계 내에서까지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한 통계 조사는 오로지 때때로 편리한 경우에만 92 수행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상당히 긴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통계조사가 수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수량이 매우 심각하게 변동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어느 한 시점에서 얻는 자료의 실용적인 가치가 이미 상실되기 십상이다. 그 수치가 믿을만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는 쓸모 없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어느 한 주어진 민족이나 국가가 어느 한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재화의 수량을 결정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은 자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한 정부 활동이 가능하다: (1) 그 수량이 거의 변동이 없는 재화, 예를 들면 토지, 건물, 가축, 교통시설 등 이러한 품목들을 특정의 시점에서 조사한다고 해도, 그 조사결과는 나중의 어떤 시점에서든 타당성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2) 사용 가능한 수량이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재화. 국가의 통제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통제를 받을 경우, 조사된 수치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위에서 기술한 상황아래에서 사업세계가 거래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재화의 수량에 관하여 가능한 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자 하는 관심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정부의 불완전한 활동 결과에 대하여 사업세계가 만족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만도 하다.

정부는 대부분 상업적인 것을 별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이런 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거래 영역 전체에 걸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국가나 또는 특정 국가의 특정 지역에만 관련하여 조사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업세계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매우 자주 상당한 재정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사업세계의 특수한 관심에 기여하는 수많은 기구가 만들어졌다. 이 기구의 과제는 대부분 생산 부문의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거래 지역의 재고 상태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²⁵⁾ 이러한 기구에 속하는 것은 각 상품의 주요 시장에 있는 거대한 상가가 유지하는 통신원이다. 이 통신원의 주요 의무 중 하나는 위탁자들에게 상품재고 조건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

25) 영문판 역자 주: 다음 구절은 원 저서의 주석이다. 주석을 본문에 넣어 번역했다.

공하는 것이다. 모든 중요한 상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수많은 93
 은 소식지들이 있다. 이들도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런던의 벨
 Bell소식지나 혹은 베를린의 마이어Meyer 소식지는 곡물에 관한 소식
 지이다. 막테브르크의 리히트Licht 설탕 소식지, 리버풀의 엘리스
 Ellison과 하이우드Haywood의 목화 소식지 등을 조심스럽게 추적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소식지 속에서 상품 재고의 현 상황(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업계의 중요한 수많은 자료들)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를 발견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다양한 종류의 조사와 그리고 조사가 가
 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조적인 계산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상품재고의 이러한 추정은 우리가 나중에 볼 것이지만, 경제 현
 상, 특히 가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엘리스와
 하이우드의 목화 소식지는 리버풀, 일반적으로 영국과 그리고 미국,
 인도, 이집트와 기타 다른 생산지에서 다양한 등급의 목화의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목화의 유통 사정이 어떤지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 소식지는 공해로의 해상 수송 중에 있는 목화의
 수량, 탁송될 항구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영국의 목화는 아직 도
 매상의 손에 있는지, 이미 방적업자의 창고나 혹은 그 밖의 바이어
 의 손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수출용으로 할당되었는지에 관한 정보
 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소식지들은 믿을만하다고 판정되면
 업계가 즉시 이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공적인 통계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여러 장소에 있는 전문 통신원들이 수
 집한 정보와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신뢰받고 있는 노련한 비즈니스
 맨의 평가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 소식지는 주어진 어느 시점에서
 사용 가능한 재고뿐만 아니라 장래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

고 예상되는 재화의 수량도 포함하고 있다.²⁶⁾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리히트의 소식지에는 독일과 접촉하고
 있는 모든 거래 지역의 설탕 재고의 변동에 관한 소식뿐만 아니라
 원료와 제조업에 관한 사실들을 포괄적으로 수립하여 알려주고 있
 다. 특히 그 소식지에서는 사탕수수과 사탕무를 재배한 토지들, 사
 탕수수와 사탕무의 수확 조건, 날씨가 추수의 양적 그리고 질적 결
 과에 미치는 영향, 추수 그 자체에 관한 소식, 그리고 설탕 공장의
 94 생산 용량, 가동중인 공장 수와 휴업중인 공장 수에 관한 소식을 전
 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시장에 들어오리라고 예상되는 내외
 의 총 생산량, 독일 시장에 들어올 시점에 관한 것도 들어 있다. 그
 리고 설탕 생산 방법의 기술발전, 유통기구의 장애물 등에 관한 소
 식도 읽을 수 있다. 다른 상품에 관한 자료들은 앞에서 언급한 다른
 비즈니스 소식지에 들어 있다.

그와 같은 소식지들은 각 상품과 관련된 광범위한 거래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 수량에 관한 소식을 업자들에게 알려 주기에 충
 분하다. 그리고 재고의 변화의 전망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화급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소식지들이
 이러한 상황에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특정 거
 래의 결과가 어느 한 재화의 가용수량에 좌우되고 있는 모든 경우
 에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은 업계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한다.

26) 영문판 역자 주: 이 구절 나머지는 원문의 주석이다.

3. 인간 경제의 원천과 경제적 재화

A. 경제적 재화

우리는 앞의 두 장에서 한 나라의 구성원들 그리고 무역에 의해 통합된 나라들의 구성원들은 물론 개별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망 충족을 위한 활동의 불가피한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어떻게 그들이 한편으로는 장래 기간에 그들이 갖게 될 필요에 관한 판단과, 다른 한편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수량에 관한 판단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보았다.

우리가 이제부터 해결하려는 과제는 인간들이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어떻게 이용 가능한 재화의 수량(소비재와 생산 수단)을 조종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잘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 한 재화의 필요와 그리고 이용 가능한 수량을 규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계 중 어느 하나의 존재가 확립될 수 있다 :

- (a) 필요가 이용 가능한 수량보다 크다.
- (b) 필요가 이용 가능한 수량보다 적다.
- (c) 필요가 이용 가능한 수량과 동일하다.

95 우리가 통상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관계 중 첫 번째이다. 이 경우 어느 한 재화에 대한 욕구의 어느 부분은 충족되지 못하는데, 대부분의 재화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는 여기에서 사치재를 언급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이 재화에 있어서 그 관계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아주 남루한 의복까지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

는 거실과 가구까지도, 심지어 가장 일반적인 식품까지도 이와 같은 성격의 재화에 속한다. 흙, 돌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쓰레기까지도 원칙적으로 대규모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가질 수 없다.

주어진 시점과 관련하여 이러한 관계가 등장할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어느 한 재화에 대한 필요가 습득 가능한 수량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들은 이용 가능한 수량 중 어떤 부분도 유용한 성격을 잃지 않으리라는 인식, 혹은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충족되었던 구체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욕구가 전보다도 덜 완전하게 충족되지 못하리라는 인식에 도달한다. 이러한 인식이 될 수 있는 대로 완전하게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인간 활동에 미치는 첫 번째 효과는 그들이 다음과 같이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

(1) 그들은 이러한 양적 관계에 있는 어느 한 재화의 매 단위를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2) 그들은 그 재화의 유용한 특성을 보유하려고 노력한다.

필요와 이용 가능한 수량의 이러한 관계에 관한 지식이 미치는 또 다른 효과는 인간들이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 재화에 대한 그들의 욕구의 일부는 충족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재화의 수량 일부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면 적절히 사용했을 경우에 충족될 수 있는 욕망의 일부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계에 예속되어 있는 재화와 관련하여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분별 있는 활동에서 다음과 같이 행하려고 노력한다.

(3) 그들은 자신들이 해당 재화의 이용 가능한 수량을 가지고 충

족시킬 보다 중요한 욕구와 그리고 충족하지 않고 내버려두어야 할 욕구를 선택하려고 한다.

(4) 그들은 그 재화의 주어진 수량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큰 결과를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수량을 가지고 96 고 주어진 결과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 가능한 소비재의 수량과 그리고 특히 사용 가능한 생산 수단의 수량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욕구 충족에 할당하려고 한다.

이 네 가지 목적에 집착하는 복잡한 인간 활동을 경제 활동 economizing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앞의 논의에서 보았던 수량적 관계를 가진 재화는 경제의 배타적 대상이다. 나중에 볼 것이지만 경제적 재화의 경우에 그렇듯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수량관계에 기인한 이유 때문에 이 재화는 경제적 재화이다. 이것은 경제활동이 필요 없는 재화와 대비된다.²⁷⁾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관계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삶의 현상을 밝히기 전에 우리는 인간 후생에 매우 중요하고, 그 궁극적 원인으로서 우리가 위에서 알게 되었던 것과 동일한 양적 관계에서 생겨난 사회적 삶의 현상을 다룰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사회적 조직을 각별히 고려하지 않고 많은 재화들에 대한 인간의 필요가 사용 가능한 수량보다 큰 것이 매우 일반적이라는 사실로부터 생겨나는 삶의 현상을 설명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고립된 개인에게는 물론 어떻게 조직되어 있든 사회 전체에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적 관심을 추구하는 인간의 사회 생활은 여러 번 언급한 수량관계

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의 경우 특수한 현상을 야기한다. 우리는 이 현상을 설명할 것이다.

우리가 논의한 수량적 관계가 어느 한 사회에 등장하면(즉, 어느 한 재화에 대한 사회의 필요가 습득 가능한 양보다 크면) 앞에서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의 각 욕망을 완전히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 사회의 구성원들 중 어떤 사람들의 97 욕구가 전혀 충족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이든 불완전하게 충족될 수밖에 없는 것이 확실하다. 여기에서 인간의 이기심이 작동할 계기가 생겨난다. 사용 가능한 수량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면, 모든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완전히 자신의 필요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서로 다른 개인들은 상이한 성공을 달성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관계에 예속되어 있는 재화를 분배하는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사회의 구성원들 중에는 필요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로지 불완전하게만 충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습득 가능한 재화의 수량의 몫과 관련하여 현재의 가진 자들의 관심과는 대립되는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이러한 대립 때문에 사회가 이러한 관계에 예속되어 있는 재화를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들을 모든 가능한 폭력에 대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현재의 법 질서의 경제적 원천, 특히 소유의 기초로서 소유권 보호의 경제적 원천에 도달한다.

따라서 인간 경제와 소유는 공동의 경제적 원천을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이 두 가지의 궁극적 존재이유는 이용 가능한 수량이 인간의 필요보다 적은 재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간 경제

27) 영문판 역자 주: 부록B의 첫 다섯 개 문단은 이곳의 주석을 번역한 것이다.

와 똑같이 소유는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성격상 모든 경제재의 필요와 획득 가능한 수량의 괴리 때문에 우리에게 부과된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결론적으로 소유제도를 필연적으로 야기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를 철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경제재의 획득 가능한 수량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필요가 완전히 충족될 수 있는 정도로 증가시키거나 혹은 획득 가능한 재화가 그들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욕구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 필요와 습득 가능한 수량사이의 그와 같은 균형을 확립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질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경제재의 습득 가능한 수량을 현재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재분배를 수행한다고 해도, 경제재에 대한 필요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거나 겨우 불완전하게만 충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제재의 소유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극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소유는 사회 형태에서 인간 경제와 분리될 수 없고, 사회 개혁의 모든 계획은 소유권제도 그 자체를 철폐하는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로지 경제재의 적절한 분배만을 지향해야 한다.

B. 비경제 재화

앞 절에서 나는 어떤 재화에 대한 필요는 습득 가능한 수량보다 크다는 사실에서 생겨나는 일상적인 현상을 기술했다. 이제는 이와

반대되는 관계, 즉 어느 한 재화에 대한 인간의 필요가 습득 가능한 재화의 수량보다 적은 관계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현상을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첫 번째 결과는 인간들은 그와 같은 재화에 대한 그들의 모든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와 같은 재화의 습득 가능한 수량 전부를 다 이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한 마을이 하루 200,000통이 흐르는 산기슭의 시냇물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고 가정하자. 폭풍우가 있을 시에는 그리고 봄날 산의 눈이 녹아 내릴 경우 시냇물은 300,000통으로 증가하고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에는 매일 100,000통으로 감소한다고 상정하자. 마을의 주민들은 음료수와 그 밖의 용도를 위해 항상 하루 200통의 물이, 그리고 그들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껏해야 하루 300통의 물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최고로 필요한 300통의 물은 하루 최소로 이용 가능한 최소 100,000통과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양적 관계가 있는 모든 경우에는 문제의 재화(즉 우리의 예에서는 물)에 대한 모든 욕구는 완전히 충족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절약한다면 그들은 사용 가능한 수량을 오로지 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부분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 재화의 일부 수량은 그들의 사용에서 배제될 것이거나, 혹은 앞에서 언급한 양적 관계가 바뀌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들의 욕구 충족을 줄이지 않고서도 유용한 특성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도 역시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절약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재화의 모든 단위를 전부 이용할 필연성이나 또는 그 단위의 유용한 특성을 유지할 필연성이

없다. 사용 가능한 수량이 필요를 초과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위에서 기술한 경제 활동의 현상 중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관찰될 수 없는 현상이다.

만약 그와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면 인간들이 사용 가능한 재화를 가지고 충족시킬 욕망과 그리고 그들이 모든 욕망을 가장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 가능한 수량 전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충족되지 않은 욕구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도대체 인간들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재화들의 수량을 가지고 최대 가능한 결과에 도달하려고, 아니면 최소로 가능한 수량을 가지고 주어진 결과를 얻으려고 한단 말인가?

따라서 분명한 것은 경제 활동의 다양한 형태는 이용 가능한 수량이 필요보다 큰 경우에는 존재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경제 활동의 다양한 형태는 수량관계가 이와 반대되는 재화의 경우에만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재화의 규모가 필요보다 큰 재화는 경제의 대상이 아니고, 이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비경제적 재화*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재화의 비경제적 성격을 가진 관계들을 다루었다. 다시 말하면 현존하고 있는 인간의 사회적 조직을 고려하지 않고 다루었다. 이러한 양적 관계로부터 결과하는 특수한 사회적 현상을 보여줄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든 다른 구성원들을 배제하고 욕구 충족을 위해 적합한 재화 수량을 차지하려는 사회의 개별 구성원들의 노력은 사회가 이용 가능한 어떤 재화들의 수량이 이들에 대한 필요보다 적다는 사실에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가 존

재한다면 모든 개인들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 각자는 다른 모든 경제적 개인들을 배제하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양한 개인들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하기에는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불충분한 주어진 재화의 수량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면, 우리가 보았듯이 이러한 이해 관계의 갈등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수량 전체 중 여러 부분들을 경제인들 중 일부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경제의 다른 개인들을 배제하여 소유하고 있는 그들은 사회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한 재화의 경우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은 그 필요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개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재화의 이용 가능한 수량 중 일부는 이용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인간 욕망의 충족을 위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개인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전체 중 일부를 확보해야 할 필연성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화의 비경제적 성격에 그 이유가 있는 양적 관계를 단순히 인정하기만 하면,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한다고 해도, 그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직도 충분한 수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개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비경제적 재화의 수량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재화는 경제의 대상도 아니고, 또한 소유하려는 희망의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실

에서 비경제적 성격을 야기하는 관계가 적용되는 모든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종의 공산주의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들은 현존하는 자연적 조건아래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이 있는 강가의 도시에서는 누구나 강가로 가서 원하는 양의 물을 가져올 수 있다. 처녀림에서는 누구나 방해받지 않고 원하는 양의 목재를 벌채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빛과 공기를 집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

101 이러한 공산주의는 소유가 경제적인 재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만큼 비경제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C. 경제적 재화와 비경제적 재화의 관계

앞의 두 장에서 우리는 인간경제의 성격과 원천을 검토했다. 그리고 경제재와 비경제재의 차이는 이 재화의 필요와 그리고 이용 가능한 수량과의 관계에서의 차이에, 이 차이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확인되었으면, 재화의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성격은 그 재화에 내재된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또 그 재화의 어떤 성격도 아니라는 것, 따라서 모든 재화는 내적인 특성이나 그 외적인 성격과 관계없이, 위에서 설명한 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경제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런 관계가 전도되면 재화의 성격을 상실한다.²⁸⁾

28) 영문판 역자 주: 다음의 문구는 원래 주석에 있었던 것을 번역하여 본문으로 처리된 것이다.

경제적 성격은 사회적 맥락에서 경제의 대상인 재화에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다. 어느 한 재화에 대해 고립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필요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보다 크다면,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 단위를 소유하고자 할 것이고, 또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가지고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리고 그가 충족을 포기할 욕망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수량이 필요를 초과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이 재화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경제적 재화와 비경제적 재화는 고립된 개인에게도 존재한다. 따라서 어느 한 재화가 경제적 성격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교환의 대상” 이거나 아니면 “소유의 대상” 이라는 사실과 관계가 없다. 재화 중에 노동의 산물인 것도 있는 반면에 노동이 없이도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것이 있다는 사실도 경제적 재화와 비경제적 재화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와 다르게 경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수많은 현명한 이론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나의 견해가 정당하다고 본다.

102 그도 그럴 것이 어떠한 노동도 들이지 않은 많은 재화들(퇴적 토지, 수력 등)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할 정도의 수량밖에 없을 경우에는 언제나 경제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물건이 노동의 산물이라는 사실 그 자체도 반드시 그것이 경제적 성격은 고사하고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 따라서 재화의 생산에 투하된 노동은 경제적 성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 기준은 오로지 재화의

필요와 사용 가능한 량의 관계 속에서만 찾아야 한다.

더구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동일 종류의 재화라고 하더라도 어떤 장소에서는 경제적 성격을 갖지 못하지만 다른 장소에서는 경제적 재화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일한 종류의 재화가 동일한 장소에서도 상황이 변동함에 따라 경제적 성격을 가질 수 있기도 하고 이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샘이 많은 지역에서 신선한 음료수의 수량, 처녀림에서의 목재원료, 어떤 나라에서는 토지의 수량까지도 경제적 성격이 없는 반면에 바로 이 재화들은 동일한 시점에서 장소가 달라지면 경제적 성격을 갖는다. 특정의 시점과 장소에서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서 시점만 달라지면 경제적 성격을 갖는 재화들의 예는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재화들끼리의 차이와 재화의 변동 가능성은 재화의 성격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경우 이러한 관계를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검토함으로써, 동일한 종류의 재화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동일 시점에서 서로 다른 두 장소에 있다면 필요와 그리고 이용 가능한 수량의 관계는 이 두 장소에서 상이하다는 것, 그리고 한 장소에서 원래 경제적 성격이 없는 재화들이 경제적 재화가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 곳에서는 이 양적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확신할 수 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비경제적 재화가 경제적 재화로 전환되는 이유는 오로지 두 가지만 있을 수 있다. 필요의 증가, 아니면 이용 가능한 수량의 감소가 그것이다. 필요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03 (1) 인구의 증가, 특히 어떤 제한된 지역에 인구가 증가할 경우
- (2) 욕구의 증가, 욕구가 증가하면 그 결과로서 주어진 인구가 가지고 있는 필요는 증가한다.
- (3) 인간들이 사물과 그들의 복지 사이의 인과적 관계에 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발전, 그 결과로서 재화에 대한 새로운 유익한 목적이 생겨난다.

이 모든 현상들은 낮은 수준의 문명에서 높은 수준의 문명으로 인류가 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겨난다는 것은 지적할 필요는 없다. 이로부터 자연적 귀결로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비경제적 재화가 경제적 재화의 성격을 갖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된 요인들 중 하나가 필요의 규모이기 때문이다. 문명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 필요의 규모도 증가된다.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 그것은 전에는 경제적 성격을 갖지 않았던 재화의 사용 가능한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목재, 문화적 발전의 어떤 단계의 탓으로 인한 삼림의 황폐화 그리고 벌채) 따라서 과거의 문명의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수량이 욕망을 훨씬 초과했던 재화가 점차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수많은 장소에서, 특히 신세계에서 비경제적 성격이 경제적 성격으로 변화하는 것은 수많은 재화들, 특히 목재와 토지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현재에도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정보가 빈약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에는 독일은 과거에 삼림이 밀집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후 주민들이 이러한 전환(예를 들면 자작나무의 경우)을 경험하지 못한 장소

란 거의 없다.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부터 분명해진 것은 경제적 재화를 비경제적 재화로 변동시키는 모든 변화, 그리고 역으로 비경제적 재화를 경제적 재화로 변동시키는 모든 변화를 필요와 사용 가능한 수량사이기에 존재하는 관계의 변화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재화와 비경제적 재화의 중간에 위치한 재화들은 각별한 과학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은 특히 정부에 의해 생산
104 되어지고, 사회구성원 중 가장 가난한 사람까지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수량으로 공공이용을 위해 공급되는 그러한 재화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재화는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성격을 갖지 못한다.

예를 들면 고도로 발전된 사회의 공교육도 역시 그러한 재화에 속한다. 순수한 건강 음료도 역시 도시 주민들은 중요한 재화로 여긴다. 따라서 자연이 이를 넘칠 정도로 풍요롭게 만들지 않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수도관을 통하여 음료수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가 완전히 충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 필요를 초과할 정도로 사용 가능한 만큼 대규모로 공공 저수지에 물을 보관한다. 낮은 문명수준에 있는 사회에서 어느 한 교사의 가르침은 이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서 경제적 재이지만,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는 이 가르침은 국가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에 비경제적 재화이다. 마찬가지로 순수한 건강음료는 전에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대규모 도시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경제적 재화가 아니고 비경제적 재화이다. 그 역으로 어느 한 재화가 자연적으로 필요를 초과하는 수량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강력

한 사람이 경제의 다른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 재화를 습득하여 이용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 재화는 그 소비자들에게는 경제재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숲이 밀집되어 우거진 나라에서 목재가 풍부한 자연적인 삼림으로 둘러싸인 수많은 마을이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목재의 사용 가능한 양이 국민들의 필요를 훨씬 초과하고, 벌채되지 않은 숲은 경제적 성격을 갖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느 한 권력가가 숲 전체나 혹은 그 일부를 손에 장악하면 그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목재의 수량을 규제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목재는 이제 그들에게는 경제적 성격을 갖는다.

예를 들면 서부 유럽의 산맥으로서 숲이 밀집한 카르파티아 산맥에는 농민들(전에는 농노)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목재를 거대한 지주들로부터 사야만 하고 반면에 이 지주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그들의 현재의 필요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수천의 통나무를 썩게 내버려두는 장소가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경제적 성격을 갖지 않을 재화가 인위적으로
105 소비자들에게는 경제적 재화로 전환된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재화들은 경제적 재화를 특징짓는 경제적 삶의 모든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²⁹⁾

마지막으로 현재는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장래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 경제인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경제재라고 생각하는 재화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만약 비

29) 우리의 과학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는 표현 방법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후자를(진정한 경제재와 반대되는) 준 경제재라고, 전자를 준 비경제재라고 부른다.

경제적 재화의 사용 가능한 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거나, 혹은 이 재화에 대한 필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 재화가 비경제적 지위에서 경제적 지위로 최종 전환되리라는 것이 예측될 수 있을 정도로 필요와 이용 가능한 수량사이의 관계가 변동한다면, 경제하는 개인들은 항상 사용 가능한 수량의 일부를 그들의 경제 활동의 대상으로 만든다. 그 재화의 비경제적 성격의 원인이 되고 있는 수량적 관계가 아직은 지배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때 항상 필요에 해당되는 수량을 소유하여 스스로 개인적인 필요를 보장한다.

사용 가능한 수량이 심하게 변동하여 희소한 시기의 필요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시기에 여분을 확보해 놓는 경우 이 비경제적 재화에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적용할 수 있다. 필요와 사용 가능한 수량사이의 격차가 이미 아주 적기 때문에(특히 103쪽에서 언급한 세 번째 사례가 이 범주에 속한다) 경제의 어떤 구성원들 편에서 오용하거나 무리하면 쉽사리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거나 혹은(쾌적함과 청결 등과 같은 것을) 각별히 고려하면 비경제적 재화의 수량 일부를 갖는 것이 편리한 경우와 관련된 재화에도 그런 생각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나 이와 유사한 이유 때문에 소유의 현상은 경제 생활의 다른 국면에 비추어 볼 때는 아직 비경제적 재화로 보이는 재화의 경우에서도 목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재화의 경제적 성격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106 어느 한 상황에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싶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재화의 성격적 차이이다. 어느 한 재화의 사용 가능한 총 수량이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면 그 총 수량의 구체적인

부분은 그 성격이 무엇이든 경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만약 어느 한 재화의 사용 가능한 수량이 필요보다 크다면, 따라서 욕구가 무엇이든 그 욕구의 충족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재화의 모든 단위는, 비경제적 재화에 관하여 이미 말했던 바에 따라, 그 부분들이 모두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비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한 재화의 사용 가능한 스톡 중 어떤 부분들이 다른 부분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장점 때문에 덜 유용한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인간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보다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면, 보다 좋은 성격을 가진 재화들은 경제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재화들(즉 열등한 재화들)은 비경제적 성격을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토지가 넘칠 정도로 많은 나라에서는 토양의 구성 때문에 혹은 위치 때문에 더 좋은 토지는 이미 경제적 특성을 획득했을 것이고 반면에 박토는 아직 비경제적 성격을 보여줄 것이다. 열악한 성격을 가진 음료수가 있는 강가의 도시에서는 지금까지는 강물이 경제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물물의 수량은 이미 개별 경제의 대상일 것이다.

따라서 만약 어느 한 재화의 전체 공급 중 상이한 부분들이 동시에 성격에서도 상이하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그 이유는 항상 좋은 급수를 가진 재화들의 사용 가능한 수량은 필요보다 적은 반면에 열악한 재화는 필요(좋은 급수를 가진 재화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필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는 예외를 구성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장에서 언급한 원칙의 재확인이다.

D. 재화의 경제적 성격을 지배하는 법칙

필요를 지배하는 법칙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높은 순위의 재화에 대한 필요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좌우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 107 (1) 우리가 높은 순위와 부합하는 낮은 순위의 재화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
- (2) 낮은 순위의 재화에 대한 필요는 아직 충족되지 못했으나, 아니면 적어도 완전할 만큼 충족되지 못했으나의 여부
- 따라서 우리는 높은 순위의 재화에 대한 필요의 존재는 이에 부합되는 낮은 순위의 재화가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원칙을 갖는다.

순수한 그리고 건강한 음료수가 주민의 필요를 초과할 정도로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이 재화가 따라서 경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장소에서는 이 음료수를 정제하고, 이를 전달하기 위한 유통수단이거나 혹은 다양한 시설의 필요는 생겨날 수 없다. 그리고 자작나무(정확히 말해서 수목)가 넘칠 정도로 자연적으로 풍부하게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재화는 비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오로지 자작나무 생산에만 적합한 높은 순위의 재화에 대한 모든 필요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자작나무나 혹은 음료수가 경제적 성격을 가진 지역에서는 이를 위한 높은 순위의 재화의 필요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높은 순위의 재화의 필요가 낮은 순위의 재화의 경제적 성격에 의해 결정되고, 높은 순위의 재화가 경제적 재화의 생산에

적용될 수 없다면 그 높은 순위의 재화의 필요는 결코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었다면, 높은 순위의 재화의 필요는 이 경우 사용 가능한 수량보다 결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 수량이 아주 적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그 높은 순위의 재화가 경제적 성격을 획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이로 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높은 순위의 재화의 경제적 성격은 이 재화를 통해 생산되는 낮은 순위의 재화의 경제적 성격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높은 순위의 어떠한 재화도 이것이 낮은 순위의 경제적 재화의 생산에 적합하지 않으면 경제적 성격을 획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낮은 순위의 재화를 고려할 경우 108 그리고 이 재화가 경제적 성격을 갖게 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만약 이 재화를 생산하는데 이용된 재화가 생산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제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낮은 순위의 재화가 경제적 재화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를 완전히 전도한 것이다. 그와 같은 가정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는다. 우리의 경험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높은 순위의 재화로부터 전혀 쓸모 없는 것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무지 때문에 실제로도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경제적 성격은 고사하고 재화의 성격도 갖지 못하는 것이 생산될 수 있고 실제로 생산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높은 순위의 경제재로부터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경제적 성격을 갖지 못하는 것도 생산될 수 있는 경

우도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매우 값비싼 경제재를 이용하여 처녀림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신선한 우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음료를 저장하는, 혹은 공기 등을 만드는 사람을 상징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재화의 경제적 성격은 그것이 높은 순위의 경제재로부터 생산되었다는 상황의 결과일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이런 설명이 내적인 모순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높은 순위의 재화의 경제적 성격에 의해 낮은 순위의 재화의 경제적 성격을 설명하는 것은 단지 사이비 설명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옳지도 않고 경험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도외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상 설명을 위한 형식적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제1순위 재화의 경제적 성격을 제2순위 재화의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고, 후자를 제3순위 재화의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이를 다시 제4순위 재화의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등등 설명하려고 한다면, 단일 단계에 의해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화의 경제적 성격의 마지막 그리고 진정한 원인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항상 남아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설명은 욕구와 그리고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 자체는 경제적 삶이 시작되고 끝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애초에는 인간은 제1순위

109

의 재화에 대한 욕망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재화를 자신의 경제 활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어떠한 계기를 갖지 않으면서 사용 가능한 양이 자신의 필요보다 적은 재화를 자신의 경제 활동의 대상으로 만든다.(즉 그는 그 재화를 경제적 재화로 취급한다.) 나중에야 비로소 사

고와 경험이 인간을 사물끼리의 인과적 맥락에 대한, 특히 사물과 후생의 관계에 관한 보다 깊은 통찰로 인도해 간다.

그들은 제2, 제3순위 그리고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나 제1순위 재화와 똑같이 이 재화들과 관련하여 그들은 어떤 것들은 필요를 초과할 만큼 사용 가능한 것들이었고, 또 어떤 다른 재화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따라서 그들은 높은 순위의 재화를 경제 활동 영역에 포함하는 그룹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룰 실제적인 필연성을 느끼지 않는 재화 그룹으로 나눈다. 이것이 높은 순위에 속하는 재화의 경제적 성격의 원천이다.

4. 자산

앞에서(81쪽)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 사용 가능한 재화의 총합”을 소유라고 불렀다. 경제하는 개인이 사용 가능한³⁰⁾ 경제적 재화의 총합을 우리는 *자산*(Wealth³¹⁾ 또는 부라고 부른다.³²⁾ 경제하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비경제적 재화는 그의 경제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의 자산의 일부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경제적 재화란 필요보다도 사용 가능한 양이 적은 재화라는 것을 보았다.

30) 만약 그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어느 한 재화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재화는 경제적인 의미의 용어로 그에게 “사용 가능하다(Cammand, Verfügbar.” 물리적 혹은 법적 장애물이 그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 가능한 이라는 것의 이러한 의미에서 미성년자의 재산은 그의 보호자에게 사용 가능하지 않다.

31) F. B. W. von Herrmann, *Staatwirtschaftliche Untersuchungen*, München 1874, P.21

32) 영문판 역자 주: 여기에 있는 주석은 부록B의 마지막 두 구절에 번역하여 삽입했다.

따라서 자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도 있다. 즉 경제하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총합으로서 그 재화의 수량은 그의 필요보다 적다.

따라서 필요를 초과할 정도의 수량으로 개개인들이 이용 가능한 재화를 가진 사회가 있다면 이 사회에는 경제적 재화도 없고, 또한
110 “자산” 도 없다. 따라서 자산은 어느 한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완전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후생의 절대적인 척도는 결코 아니다.³³⁾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개인들과 그리고 사회의 가장 높은 후생은 사회가 이용 가능한 재화의 수량이 아주 많아서 어느 누구도 재산의 궁핍을 당하지 않는 경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외관상 과학의 기본원리의 옳음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한 해결책, 어느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불신을 불러오는 이유는 그 문제가 모순을 초래하기 때문이다)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 문제는 경제인들에게 사용 가능한 경제재의 수량이 꾸준히 증가하면 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이 재화들이 자신의 경제적 성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그리고 그 증가로 인하여 자산의 구성 요소들이 감소하

33) 자산은 어느 한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완전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오로지 상대적인 것대일 뿐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자산이라는 용어를 어느 한 개인의 경제에 적용할 경우, 그 자산을 경제적 재화의 총합으로, 그리고 그것을 사회경제에 적용할 경우 자산은 모든 재화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첫 번째 정의에서는 상이한 개인들의 상대적인 후생을, 두 번째 정의에서는 사회의 절대적인 후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Lauderdale의 저서: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Origin of Public Wealth, Edinburgh. 1804, 39쪽 이하, 특히 56쪽 이하를 참조* 로셔(W. Roscher: *System der Volkswirtschaft, 20, ed. Stuttgart 1892, I. 16쪽 이하*)는 최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사회적 자산은 사용가치에 의해 측정될 수 있고, 사적 자산은 교환 가치로 측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 이 문제는 위와 같은 동일한 구분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게 된다는 사실로부터 생겨난다.³⁴⁾

사람에게 이용 가능한 어떤 광천수의 수량이 필요보다 적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다양한 경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재화의 분량은 물론 광천수의 원천(샘) 그 자체는 경제적 재화이고 따라서 자산의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이제 약용으로 쓰이는 이 광천수가 갑자기 여러 샘에서 흘러나와 과거의 경제적 성격을 상실할 정도로 넘친다
111 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이 사건이 있기 전 경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천수의 수량은 물론 광천수 샘물 그 자체는 이제 자산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따라서 이것은 자산의 구성 요소들이 급진적으로 증가하면 자산의 감소를 야기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이러한 모순은 지극히 인상적이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관찰하면 그 모순은 하나의 표피적인 것을 뿐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재화들은 그 수량이 필요보다 적은 재화들이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부족한 재화이다. 그리고 경제하는 사람들의 부(자산)는 이 재화들의 총합일 뿐이다. 만약 사용 가능한 수량이 그들이 자신의 경제적 성격을 상실할 때까지 급진적으로 증가한다면 부족 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인들의 자산을 구성하는 재화의 범주를 벗어난다. 즉 그들은 부분적으로 부족한 재화의 부류를 이탈한다. 전에 부족했던 재화가 급진적으로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그 재화의 공급 부족이 끝난다는 사실에는 확실히 모순이 없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 재화가 급진적으로 증가하면 결국 전에는 부족했던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풍족하

34) 이미 앞에서 인용한 Lauderdale 43쪽 참조.

게 사용 가능한(비경제적)재화가 계속해서 감소하면 결국 어느 정도가 지나면 그들이 희소하게 되어 자산의 요소가 증가된다는 역 가정만큼 누구에게나 직접적으로 분명하다.

따라서 자산의 대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 재화의 가치 및 가격과 관련하여³⁵⁾ 제기되었던 위의 모순은 오로지 표피적인 것뿐이다. 그리고 그 모순은 부의 성격과 그 요소에 관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는 부를 경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재화의 총합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부의 목록의 존재는 경제인을, 아니면 적어도 그를 대신하여 경제하는 행동을 수
112 행하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특수한 목적이 예정된 경제재의 수량을 자산의 경제적 의미에서 본다면 부(자산)가 아니다.

법인이라는 허구는 법적 관행을 위해서나 혹은 심지어 사법적 구성을 위해서는 타당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허구를 단호히 부인하는 우리의 과학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소위 “특정 목적을 위한 자산”³⁶⁾은 따라서 특수 목적에 헌신하는 경제재의 수량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자산)의 경제적 의미에서 볼 때는 자산이 아니다. 이것은 공공자산의 성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국가, 지방, 공동체 그리고 연합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정치 경제학자에게는 법인이라는 허구는 필요하지 않다. 어떠한 허구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정치학자는 경제하는 단위체로서 사회적 조직을 관찰할 수 있다. 조직의 직원이 그 조직의 욕구

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재화를 관리하고 이 목적을 위해 그 재화를 다룬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정부, 지방, 도시의 자산과 회사 자산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부Volkvermögen; National Wealth”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사정은 다르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족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민족에게 사용 가능한 경제적 재화의 총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개인들과 연합들이 제 각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총합을 다룬다.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자산이라는 것과 상이한 개념을 취급해야 한다. 한 사회에서 경제하는 사람들은 빈번히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대립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고유한 욕구를 추구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경제인들의 총합을 하나의 커다란 경제하는 단위체로 생각하는 허구를 이용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경제하는 개개인들에게 사용 가능한 경제적 재화의 수량은 특정 욕구의 충족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구성하는 개인들 전체의 욕망 총
113 족에 이용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집단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어느 한 경제 단위(여기에서는 민족: Nation, Volk)에게 사용 가능한 경제재들의 총합개념에 도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개념을 “국가자산National Wealth”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옳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 상황 아래에서 사회의 경제인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재의 총합은 자산(부)의 경제적 의미에서 볼 때 분명히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의 상호작용과 교역에 의해 서로 연결된 부의 복합을 형성한다.³⁷⁾

그러나 지금 막 언급한 재화들의 총합에 대한 과학적 명칭을 갖

35) Pierre-Joseph Proudhon, *Système des contradictions économique*, 3.ed. Paris 1867. I. 59쪽 이하.

36) 영문판 역자 주: 독일어 판: Zweckvermögen. 영문 번역판: Trust Fund(신탁기금)

고자 하는 욕망은 아주 정당하다. 그리고 그 개념으로서 “민족자산”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민족 자산의 확실한 성격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이 개념을 버리는 것은 과학적 명칭을 갖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에 그만큼 덜 부합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된 구분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생겨날 오류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소위 민족자산을 수량적으로 정하는 것이 문제의 전부라면, 그 민족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총합을 민족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민족자산의 규모로부터 한 민족의 후생을 유추하거나 수 많은 개인들끼리의 접촉으로부터 결과하는 현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글자 그대로 민족 자산이라는 개념은 틀림없이 빈번히 오류를 야기할 것이 틀림없다. 이 모든 경우에 민족자산은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복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개별 자산의 상이한 규모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37) Carl Dietzel, *Die Volkswirtschaft und ihr Verhältniss zu Gesellschaft und Staat*, Frankfurt am Main 1864, 106쪽 이하

1. 가치의 본질 및 기원

사람들이 행하는 경제적 활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을 만큼의 일정한 기간을 상정해보자. 만일 그러한 기간 중에 어떤 재화에 대한 요구, 곧 수요가 공급량보다 크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자신들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앞서 이미 묘사했고 또 다음과 같이 명칭을 붙였던 활동, 곧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economizing” 활동을 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관관계relationships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또 다른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그러한 현상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과학, 곧 경제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문제이다. 나는 바로 재화의 가치value of goods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어떤 재화에 대한 필요량requirements이 이용(공급) 가능한 그 재화의 양 보다 크다면,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재화에 대한 필요needs 중의 일부가 만족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면 그 재화의 이용(공급) 가능한 총량 중 그 어떤 부분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감소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15 그 조건이란 이전까지는 충족되어 왔던 필요needs의 일부가 이전보다 덜 충족되거나 혹은 전혀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 있어 어떤 한 가지 필요의 충족 여부는 이와 같은 수량적 관계quantitative relationship에 의해 지배를 받는 모든 재화들 각각의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중요성을 갖는 이용(공급) 가능한 양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만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인간들economizing men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게 된다면(즉, 그들이 자신들의 필요 중의 한 가지를 충족시킨다거나 혹은 그러한 충족도의 크기가 자신들이 그 재화의 양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혹은 위에서 말한 수량적 관계에 의해 지배를 받는 각각의 개별적인 재화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이러한 재화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치value라고 부르는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가치란 개별적인 재화들 혹은 그 재화들의 양이 우리에게 있어서 갖는 중요성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needs의 충족 여부가 그 재화들에 대한 지배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

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화의 가치는 재화의 경제적 특성economic character과 동일한 근원 - 곧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재화들에 대한 필요량 requirements과 이용 가능한 그 재화들의 양available quantities of goods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현상인 것이다.³⁸⁾

하지만 이 두 현상들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수량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사려 깊은 행동 곧 계획적인 활동을 하도록 자극하며 따라서 이러한(수량적) 관계에 의해 지배를 받는 재화들이 우리의 경제행위economizing의 대상(곧 경제재 116 economic goods)이 되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량적 관계에 대한 이 동일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재화들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해준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재화들의 이용 가능한 양 중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단위에 대한 지배 여부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이 수량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그 재화들 각각의 단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value를 가지도록 한다.³⁹⁾

38) 앞장에서 우리는 줄곧 경제재가 노동의 산물이자 교환의 대상이고, 비경제재는 자연이 주는 무상의 선물이고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경제재와 비경제재의 차이를 찾기 위해 이루어져 왔던 시도들에 대한 평가에 몰두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 곧 재화의 경제적 성격이 이 요소들 중의 어느 하나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가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재화의 경제적 성격과 마찬가지로 가치도 필요량과 이용 가능한 재화의 양간의 관계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결정된다. 경제재를 노동의 산물 혹은 교환의 대상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와 바로 동일한 이유들이, 가치가 있는 재화와 없는 재화를 구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기준들을 채용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만든다.

39) 사용가치의 유용성, 유용성의 정도, 혹은 추정된 유용성과의 혼동은 재화의 추상적 가치에 관한 학설에 기인한다.(Karl Heinrich Rau,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Heidelberg, 1847, pp.79ff. 참고) 어떤 종species은 유용한 특성을 가질 수 있어서 그것의 구체적인 단위들이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키는데 적합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종species은 어떤 하나의

사고과정mental process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는 외부 사물에 대한 인지라는 것이, 단지 외부 사물이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하는 인상impressions에 대한 의식현상consciousness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으며, 최종적으로 분석해보면 결국 우리 자신의 (의식)상태에 대한 인지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부세계의 사물에 부여하는 중요성이라는 것도 단지 우리의 연속적인 존재와 발전(곧 생명과 후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갖는 중요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란 재화들이 갖는 내재적인 속성이 결코 아니다. 가치란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자신의 필요 충족,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lives과 후생well-being에 부여하는 중요성이며 그런 연후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 충족에 있어서 유일하게 중요한 요소라고 인정하는 경제적 재화들에게 부여하는 중요성인 것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 또한 명확해진다. 즉 왜 오직 경제재들만이 우리들에게 있어 가치를 가지며 반면에 왜 비경제적인 특성을 갖는 수량적 관계에 의해 지배를 받는 재화(비경제재)들은 전혀 가치를 갖지 못하는 지가 명확해진다. 비경제적인 성격을 갖는 재화들의 (수량적)관계란, 재화들에 요구량이 이용(공급) 가능한 재화량보다 작은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비경제재non-economic goods의 총공급량 중에서 인간의 충족되지 않은 필요need와 전혀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않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인간의 필요의

주어진 사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정도의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 종species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 혹은 하위 종의 변동적인 유용성의 정도 역시 가치라고 불릴 수 없다. 종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들만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후자만이 재화가 될 수 있고 오직 재화만이 우리의 경제행위와 가치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Michaelis, *Das Kapital vom Werthe*, *Vierteljahrsschrift für Volkswirtschaft*, I (1863), 16ff. 참조)

충족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으로써 그 재화적 성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그 어떠한(필요의) 충족도 비경제적 성격을 갖는 재화의 그 어떠한 단위에 대한 우리의 소유 여부에 의해 좌우
117 되지 않으며,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수량적 관계에 의해 지배를 받는 재화들(비경제재들)의 일정한 수량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가치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목재에 대한 자신의 필요량을 완전히 충족시키는데 일년에 단지 스무 그루 가량의 목재만이 필요한 원시림에 거주하는 한 원주민이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럴 경우 설사 산불이 나서 수 천 여 그루의 나무가 불에 타 버린다고 하여도, 만일 그가 나머지 나무들을 가지고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 그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산불에 의해 그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그 어떠한 부분도, 그 어떤 한 그루의 나무에 대한 그의 지배 여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게 되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 그루의 나무는 그에게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숲 속에 열 그루의 야생 과실수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과일이 이 동일한 원주민에 의해 소비된다고 가정하자. 동시에 그가 가질 수 있는 과일의 양이 그 과일에 대한 그의 필요량보다 크지 않다고 가정하자.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과실수 중의 그 어느 하나라도 불에 탈 경우 이는 반드시 그에게 배고픔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또는 적어도 그가 것처럼 자신의 필

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과실수 하나 하나는 그에게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만일 한 마을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필요량을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 매일 천 개 물통 분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수십만 통 분량의 물이 매일 흐르는 개울이 그 마을에 있다면 이러한 수량의 구체적인 한 부분, 예컨대 한 개 물통 분량의 물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설사 이 부분적인 수량이 사라져 그들이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도, 또는 그것이 그 물적 속성을 완전히 잃는다 해도 그들은 물에 대한 자신들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수천 물통 분량의 이 재화(물)가 매일 바다로 흘러가게 하면서도 물에 대한 자신들의 필요 충족에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물이 비경제적 성격을 갖도록 하는 수량적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들의 그 어떠한 필요 충족도 한 통의 물에 대한 그들의 사용가능 여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것이며 설사 그들이 그 특정 분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그들의 필요 충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한 통의 물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한편 개울의 하루 유출량이 갑작스러운 가뭄이나 또 다른 어떤 자연적인 작용으로 인해 물통 오 백 개 분량으로 줄어든 반면,
118 마을 주민이 또 다른 급수원을 갖지 않는다면 이렇게 줄어든 물의 양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물 수요량을 채우기에 충분치 않게 된다. 더불어 주민들의 물 수요를 조금이라도 더 충족시키려면 비록 한

통의 물이라도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구체적인 물의 양은 그들에게 확실히 하나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경제재는 우리의 주제에 관한 문헌에서 이미 가정된 바와 같이 교환가치를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가치를 갖지 않는다. 즉 어떤 사용가치도 갖지 않는 것이다.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관계를 고려하는데 있어서의 몇 가지 원칙들을 다루게 될 이 책의 뒷부분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가치라는 일반개념에 종속되며 따라서 상호 연관성 아래 통합되는 두 가지 개념이라는 점만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가치 일반에 관해 내가 이미 말했던 내용은 교환가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용가치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그런데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비경제재에 사용가치(교환가치는 아닐지라도)를 부여하려고 한다. 그리고 최근의 몇몇 영국 경제학자들이나 프랑스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으로부터 사용가치의 개념을 전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그것을 유용성 개념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이들 두 개념간의 중요한 차이점이나 이들 개념들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현상들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119 유용성Utility이란 인간의 필요 충족에 기여하는 어떤 사물의 능력이다. 그러므로(만일 유용성이 인식된다면) 유용성이란 재화적 성격 goods-character의 일반적인 전제 조건이다. 비경제재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제재와 마찬가지로 유용성을 갖는다. 또한 이들 재화는(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재화적 성격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성격을 갖게 하는 수량적 관계에 의해 지배를 받는 재화경제재와 비경제재를 구별짓는 것은 인간의 필요 충족이 비경제재의 구체적인 양에 좌우되기 보다 경제재의 구체적인 양에 좌우되도록 하는 환경이다. 이런 이유에서 비경제재는 유용성만을 가지고 경제재는 그에 더해 우리가 가치라고 부르는 중요성을 추가로 갖는 것이다.

물론 유용성과 사용가치의 혼동을 초래한 오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현실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 왔다. 그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economizing 개인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 입방 피트의 공기에서 가치를 부여한 적은 없으며,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일 파인트pint의 물에다 가치를 부여한 적도 없다. 현실 속의 인간practical man은 한 사물의 능력, 곧 자신의 필요 중의 하나를 충족시키는 그 사물의 능력과 그것의 가치를 너무나 잘 구별한다. 반면에 이에 대한 혼동은 경제학의 보다 일반적인 이론들의 발전에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되어 왔다.40)

하나의 재화가 우리에게 있어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 곧 그 재화에 대한 지배는 우리의 필요의 충족, 곧 우리가 그 재화를 지배하지 못하였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어떤 필요의 충족을 가져다주는데 그러한 필요의 충족이 우리에게 있어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필요는 부분적으로는 그리고 최소한 그 기원에 관한 한 우리의 의지 또는 우리의 습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그 필요가 존재하게 되

40) 프루동Proudhon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즉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간에는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고 말하도록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오류이다.

면 재화들이 우리에게 있어 갖는 가치와 관련하여 더 이상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가치는,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과 후생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 곧 우리의 필요 중 하나의 충족 여부가 우리가 그 재화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경우에 그 재화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 곧 우리의 필요의 충족 여부가 그 재화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경우에 그 재화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화의 가치란 결코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다음과 같은 사실, 곧 (우리의) 생명이나 후생의 유지 혹은 (그것들보다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들 중의 일부의 유지 여부가 한 재화 또는 일정한 양의 재화들에 대한 (우리의) 통제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간 지식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모든 다른 대상들에 대한 지식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식과 관련하여서도 사람들은 재화들에 가치에 대하여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잘못 가정하는 경우, 즉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필요 충족의 정도, 곧 보다 더 완전한 또는 보다 덜 완전한 충족 여부가 한 재화 또는 일정한 양의 재화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실제로는 가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물들에게 가

치를 부여할 수 있다. 곧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 우리는 상상적 *imaginary*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을 관찰하게 된다.

재화들의 가치는 그것들과 우리들의 (그것들에 대한) 필요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들의 가치는 재화들 그 자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생길 경우 그에 따라 가치는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오아시스의 거주민들, 곧 자신들의 물 필요량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샘에서 나오는 일정한 양의 물 그 자체는 전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지진으로 인해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그 오아시스 거주민들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된다면 물에 대한 그들의 구체적인 각각의 필요들은 일정한 양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그 충족 여부가 좌우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 일정한 양의 물은 각각의 거주민에게 있어서 즉각적으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전 관계가 다시 확립되고 그리하여 그 샘이 이전처럼 많은 양의 물을 생산하게 된다면 이 가치는 급격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 만일 오아시스의 인구가 늘어나서 샘물이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치 못하게 된다면 유사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소비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이러한 변화는 카라반들 *caravans*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도 규칙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치란 재화 그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며 재화의 속성도 아닐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후생수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중요성에 관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economizing individual)이 행하는 판단이다. 이런 까닭에 가치란 인간의 의식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가치를 갖는 재화를 하나의 가치라고 부르거나, 경제학자들이 독립적인 실재로서 가치들에 대해 언급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객관화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들이란 늘 특정한 사물이거나 사물들의 양이며, 그것들의 가치는 사물 자체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어떤 것이다. 가치란, (어떤 사물들이 존재한다고 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그 사물들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지배)가 자신들의 생명 및 후생의 유지와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 내리는 판단일 뿐이다. 본질적으로 재화의 가치란 전적으로 주관적인(subjective) 것임에도 그러한 가치를 객관화시키고자 함으로써 (바로 그러한 시도들이) 결국 우리 과학(경제학)의 기본 원리들과 관련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데에 크게 기여해 왔다.

2. 진정한 가치 측정 The original measure of value

앞에서 우리는 가치의 본질과 그 궁극적인 요인들, 다시 말해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치에 공통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주목했다. 그러나 실제의 현실생활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재화가 갖는 가치들이 그 크기에 있어 대단히 상이하며 한 재화의 가치조차도 수시로 변한다는 점을 발견한다. 따라서 재화들의 가치가 왜 서로 다른지에 대한 탐구와 가치측정에 대한 탐구가 이 절의 주제이다. 이러한 탐

구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에 의해 이끌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배하는(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가치를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필요 충족만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lives)이나 후생(well-being)이 그 필요 충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도 지적하였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즉 그 재화들이 사람들에게(자신들의) 필요 충족, 특히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그러한 필요 충족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들에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경제재(economic goods)에만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화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중요성을 만나게 된다. 즉 우리의 필요의 충족,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lives)과 후생(well-being)에 우리가 부여하는 중요성만을 만나게 된다. 내가 만일 재화들의 가치가 갖는 본성을 적절하게 기술했다면, 그리하여 최종적인 분석에서 우리의 필요 충족만이 우리에게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이 잘 입증되었다면, 그리고 또한 모든 재화의 가치란 경제재에 대해 이러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 역시 잘 입증되었다면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 결론이란 실제의 현실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서로 다른 재화들의 가치의 크기에 있어서의 차이는 이러한 재화들에 대한 우리의 소유(지배)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우리의 필요의) 충족이 (우리에게) 갖는 중요성의 크기의 차이에 의해서만 뒷받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가치크기에 있어서의 차이

를 그 궁극적인 원인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즉 우리는 (1) 서로 다른 (필요) 충족들이 우리에게 있어 어느 정도로 서로 다른 중요성을 갖는지(주관적 요소) 그리고 (2) 어떠한 구체적인 필요 충족이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특정한 재화에 대한 우리의 소유(또는 지배) 여부에 좌우되는지(객관적 요소)를 조사해야만 한다. 만일 이러한 조사가 다음과 같은 점, 즉 각각의 구체적인 필요충족이 우리에게 있어 서로 다른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입증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다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충족들이 특정한 경제제에 대한 우리의 소유(지배)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입증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풀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에 비로소)우리는 경제현상, 곧 그에 대한 설명이 우리 연구에 있어서의 중심적 문제였던 경제현상을 그것의 궁극적인 요인들로 환원시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재화의 가치의 크기에 있어서의 차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재화들의 가치의 차이의 궁극적인 원인들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해서 각각의 다양한 상품들의 가치 자체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다. 모든 변화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차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련의 크기들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간의 차이(곧 서로 다른 재화들 사이의 가치 크기의 차이)의 궁극적인 원인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경우 우리는 그것들의 변화에 대해 보다 깊은 통찰력 역시 가지게 된다.

A. 서로 다른 충족들이 갖는 중요성의 크기에 있어서의 차이들 (주관적 요소)

서로 다른 충족들이 우리에게 있어 갖는 중요성의 차이에 관한 한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점이 가장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사실이다. 그 사실이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중요성을 갖는(필요) 충족들은 보통 생명의 유지 여부가 그것들에 달려 있는 충족들이라는 것, 그리고 여타의 (필요)충족들은 그것들에 기초하고 있는 즐거움의 정도(지속도와 강도)에 따라 중요성의 크기가 등급 매겨진다는 것이다.

123 그러므로 만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economizing 사람들이 다음의 두 가지 (즉 그들의 생명의 유지 여부가 그것에 달려있는 필요의 충족과 단지 후생well-being 수준에 있어서의 보다 높은 정도나 낮은 정도가 그것에 달려 있는 또 다른 필요의 충족)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그들은 보통 전자를 선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보통 자신들에게 보다 높은 후생well-being 수준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요의)충족들을 선호할 것이다. 만일 강도에 있어서 동일하다면, 보다 짧게 지속되는 즐거움보다는 보다 길게 지속되는 즐거움을 선호할 것이다. 또 지속성에 있어서 동일하다면 보다 작은 강도의 즐거움보다는 보다 큰 강도의 즐거움을 선호할 것이다.

우리의 생명 유지는 식량에 대한 우리의 필요의 충족여부에 달려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 하에서는 우리의 신체를 위해서 옷을 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안식처를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보다 높은 수준의 후생well-being은 우리가 마차, 체스 판 등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관찰하게 된다. 즉 사람들은 양식, 의복 그리고 집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마차나 체스 판을 가지지 못하는 것보다 더욱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두 번째 종류의 필요의 충족보다는 첫 번째 종류의 필요의 충족에 보다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경우들에 있어서와 같이, 단지 일시적인 즐거움 또는 안락함의 증대(다시 말해서 단지 보다 높은 수준의 후생)만이 두 번째 종류의 필요 충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충족들은 또한 매우 다른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 생명의 유지는 안락한 침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체스 판을 가지고 있는지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재화들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 그 정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의 후생의 증진에 기여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안락한 침대 없이 사는 것과 체스 판 없이 사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분명 전자보다는 후자 없이 살려고 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충족들이 그 중요성에 있어서 매우 불균등하다는 것을 보았다. 즉 어떤 것들은 그들의 생명의 유지에 있어서 큰 중요성을 가진 충족들이고 반면, 다른 것들은 높은 정도로 그들의 후생(수준)을 결정하는 충족들이고 또 다른 것들은 보다 낮은 정도로 그들의 후생(수준)을 결정하는 충족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단지 일시적이고 별로 크지 않는 즐거움만을 가져다주는 충족들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삶의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서로 다른 충족들이 갖는 중요성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필요의 충족과 관련하여 관찰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필요의, 보다 더 완전하거나 보다 덜 완전한 충족과 관련하여서도 관찰된다는 사실이다.

- 124 사람들의 생명은 일반적으로 음식물에 대한 그들의 필요 충족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소비하는 모든 음식물을 그들의 생명의 유지 또는 심지어 그들의 건강(다시 말해서 그들의 지속적인 후생)의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한 끼의 일상적인 식사를 거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나 건강에 전혀 위협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사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물의 양은 부유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양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한 건강의 유지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음식물과 음료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음식물을 소비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소비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음식물을 소비한다. 왜냐하면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사는 경험이 말해주듯이 신체기관의 무질서를 방지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생명으로 유지하고 건강을 보존하는데 충분한 양을 이미 소비하였을 경우 사람들은 단지 소비로부터 파생되는 즐거움을 위해 음식물을 먹는다.

따라서 음식물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각각의 구체적인 행위들은 매우 다른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 자신의 생명이 그것에 의해 보장되는 양만큼의 음식물에 대한 필요의 충족은 그 누구의 생

명의 유지에 있어서나 가장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이 양을 넘어서는 소비는 다시 일정한 정도로까지 그의 건강(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지속적인 후생)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정도조차도 넘는 수준의 소비는 (현실생활에 대한) 관찰이 잘 보여 주듯이 점차적으로 그 정도가 감소하는 즐거움이 갖는 중요성만을 갖는다. 그리하여 그것은 결국 일정한 한계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한계점에서는 음식물에 대한 필요의 충족이 너무나 완전해서 더 이상의 섭취는 생명의 유지 및 건강의 보존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도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 우선 더 소비하는가 마는가의 문제가 그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며 나중에는 고통의 원인이 되고 건강에 위협이 되며 그리하여 결국에는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되게 된다.

이러한 필요 이외의 인간의 모든 필요를 보다 더 완전하게 충족시키거나 보다 덜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문제에 관련하여서도 우리는 유사한 관찰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 또는 최소한(열악한) 기후 조건으로부터 보호되는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장소는 생명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125 적당하게 넓은 집 역시 건강의 보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그 외에도 사람들은 만일 자신들이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지 즐거움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다 많은 시설들(예컨대 응접실, 무도장, 오락실, 별장, 사냥용 오두막집 등등)을 보통 소유한다. 따라서 집shelter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각각 매우 다른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된다. 우리의 생명은 일정한 한도에 이르기까지는 집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가의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이 한도를 넘어서서는 우리의 건강이 보다 더 완전한 충족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그 이상의 시도들은 처음에는 보다 큰 즐거움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다 적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며, 나중에는 각각의 개인에 있어서 더 소비를 하던지 말던지 완전히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며 결국에는 (그에게)부담이 되기조차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동일한 필요를 보다 더 완전하게 또는 보다 덜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유사한 측면, 곧 사람들의 서로 다른 필요들과 관련하여 앞서 보았던 측면과 유사한 측면을 관찰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앞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필요들을 충족시켰다고 할 때 그 충족들이 갖는 중요성이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 그리하여 그 중요성은 자신들의 생명이 갖는 중요성만큼 큰 중요성으로부터 작은 일시적인 즐거움에 그들이 부여하는 중요성과 같은 적은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게다가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게 된다. 즉 어느 한 특정한 필요의 충족은 그 충족의 정도가 일정한 한도에 이르기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충족은 점차적으로 적은 중요성을 가지며 결국에는 그 특정한 필요의 보다 완전한 충족이 중요치 않은 문제가 되는(즉 보다 더 충족시키는가, 보다 덜 충족시키는가가 상관이 없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 곧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이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든 행동이 그 소비자 자신에게는 더 이상 중요성을 갖지 않을 뿐만 아

나라 오히려 부담과 고통이 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까지의 논증과정을 숫자를 가지고 다시 설명함으로써 이후의 어려운 탐구과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의 생명의 유지 여부를 좌우하는 정도의 충족의 중요성을 10으로 표시할 것이다. 그리고 여타의 충족들이 갖는 보다 적은 중요성을 연속적으로 각각 9, 8, 7, 6 등으로 표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10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서로 다른 (필요의)충족들이 갖는 중요성의 등급을 얻게 된다.

이제 이들 서로 다른 충족들 각각에 있어서(한 단위를 더 소비함으로써 부여되는) 추가적인 중요성에 대하여 숫자적 표현을 주도록 하자.

126 이때 어떤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행위가 갖는 중요성을 표시하는 숫자는 그 특정한 필요가 이미 충족된 정도를 표시하는 숫자로부터 단계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한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며 그 한도를 넘어서서는 단지 우리의 후생만을 좌우하는, 따라서 이미 달성된 충족의 정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충족들에 대하여 우리는 1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는 등급을 얻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의 최고치가 9인 충족들에 대하여 우리는 9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는 등급을 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여 얻어진 10개의 등급이 아래의 도표에 표시되어 있다.⁴¹⁾

41) 첫 번째 행의 로마 숫자들은 한 개인에 의해 소비되는 서로 다른 상품들(또는 상품군들)을 표시한다. 각각의 열에서 보여지는 연속적인 숫자들은, 표시된 상품에 대한 소비의 증가로부터 초래되는, 총 만족에 대한 순차적인 추가 만족을 연속적으로 나타내준다.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 IX | X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7 | 6 | 5 | 4 | 3 | 2 | 1 | 0 | | |
| 6 | 5 | 4 | 3 | 2 | 1 | 0 | | | |
| 5 | 4 | 3 | 2 | 1 | 0 | | | | |
| 4 | 3 | 2 | 1 | 0 | | | | | |
| 3 | 2 | 1 | 0 | | | | | | |
| 2 | 1 | 0 | | | | | | | |
| 1 | 0 | | | | | | | | |
| 0 | | | | | | | | | |

127 첫 번째 열(I)에서의 등급이 어느 한 개인에 있어서 음식물에 대한 그의 필요 충족이 갖는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이때 이 중요성은 이미 달성한 충족의 정도에 따라 감소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열(V)에서의 등급은 앞의 경우와 유사하게 담배에 대한 그의 필요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그렇다고 할 때 이 개인에게 있어 음식물에 대한 그의 필요의 충족은, 일정한 정도로 그것이 충분히 충족되기 전까지는 담배에 대한 그의 필요의 충족보다도 확실히 더 큰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만일 음식물에 대한 그의 필요가 일정한 정도로까지 충분히 충족되었다면(예컨대 만일 음식물에 대한 그의 필요의 추가적인 충족이 그에게 있어 우리가 숫자 6으로 표시한 정도의 중요성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담배 소비는 음식물에 대한 그의 필요의 추가적인 충족과 마찬가지로의 중요성을 갖기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개인은 이제부터 담배에

대한 자신의 필요 충족과 음식물에 대한 필요 충족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비록 그 개인에게 있어 일반적으로는 음식물에 대한 그의 필요의 충족이 담배에 대한 필요 충족보다도 분명 보다 큰 중요성을 가지겠지만, 전자에 대한 충족의 정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위의 도표에서 예시되고 있듯이) 다음과 같은 단계, 즉 그에게 있어서 음식물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추가적인 행동은 담배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첫 번째 행위보다 더 적은 중요성을 갖게 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비록 후자(담배에 대한 필요의 충족)가 일반적으로는 덜 중요하지만 이 단계에 있어서는 아직 전혀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상적인 삶의 현상을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도표에 있는 숫자들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믿는다. 사실 이러한 숫자들은 매우 어렵고 또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심리학 분야에 대한 논증을 쉽게 하기 위해 선택된 것들일 뿐이다. 비록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현상들이 이제까지 학자들에 의해 별다른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자신들의) 각각의 구체적인 필요들의 충족이 갖는 중요성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economizing 모든 사람이 의식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 늘상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수준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다양한 필요들을 충족시켰을 때 그 각각의 필요 충족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얼마나 비교 평가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으며, 또 각각의 필요의 보다 더 완전한 또는 보다 덜 완전한 충족으로 이끄는 각 행위들의 상대적인 중요

성을 얼마나 잘 비교 평가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고, 그리하여 결국 이러한 비교 평가의 결과에 의해 안내되어 얼마나 자신들의 필요를 가능한 최대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사실 필요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이렇게 비교 평가하는 것 - 다시 말해 충족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필요들과 충족되기로 되어 있는 필요들간의 이러한 선택 그리고 후자에 의해 충족되어질 정도를 결정하는 것 - 은, 그 어떤 다른 것들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리고 자신들의 경제적 노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든 개인들에 의해 거의 항상적으로 행해지는 경제적 활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필요들의 충족이 갖는 중요성의 정도의 차이에 대한 인간지식 및 각각의 필요 충족 행위가 갖는 중요성의 차이에 대한 인간지식 또한 재화의 가치에 있어서의 차이의 첫 번째 원인이 된다.

B. 특정 재화들에 대한 각각의 (필요)충족들의 의존성(객관적 요소)

만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정한 그리고 구체적인 필요에 대하여 우리가 이용 가능한 그리고 그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가 단 한 개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 재화는 오직 그 한 가지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적합하다면(따라서 한편으로는 만일 그 특정한 재화가 우리의 수중에 없다면 그 필요의 충족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재화는 오직 그 특정한 필요의 충족에만 쓰일 수 있을 뿐 다른 필요의 충족에는 전혀 쓰일 수 없을 것이다), 그 재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일 것이다. 이 경우 그 재화

의 가치는 우리가 그 특정한 필요의 충족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주어진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재화의 사용 가능성 여부에 의해 자신의 필요의 충족 여부가 좌우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다시 말해서 만일 우리가 그 재화를 우리의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필요의 충족이 일어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동시에 그 재화가 그 밖의 다른 유용한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화는 그 주어진 (필요)충족이 우리에게 갖는 중요성만을 가질 수 있을 뿐, 그 이외의 다른 어떤 중요성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주어진 (필요)충족이 우리에게 있어 갖는 중요성이 크거나 작아질 것이다. 예컨대 만일 근시인 어떤 사람이 외딴 섬에 내 던져졌다면, 그리고 만일 난파선에서 그가 인양한 재화들 중에서 그의 시력을 교정 시켜줄 수 있는 렌즈를 오직 한 쌍만 발견하였다면 이 렌즈들이 그에게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성, 곧 그가 자신의 교정된 시력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정확히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 렌즈들은 그 밖의 필요의 충족에는 거의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와 이용 가능한 재화들(available goods)간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다. 보통 하나의 재화가 아닌 일정한 양의 재화가 하나의 구체적인 필요가 아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필요들과 마주 선다. 어떤 때는 보다 많은 수의 충족들이 그리고 어떤 때는 보다 적은 수의 충족들이 - 그 각각이 (우리들에게 있어) 갖는 중요성은 서로 매우 다른 가운데 - 어떤 주어진 양의

재화를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그리고 그 재화들 하나 하나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필요)충족들을 이루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어떤 한 농부가 풍작으로 인해 큰 수확을 거둔 덕분에 2백 부셸(bushel)이 넘는 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 중의 일정 부분은 그가 자기 자신 및 가족들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쓰일 것이며, 또 다른 일정 부분은 건강을 보존하는데 쓰일 것이고, 또 다른 일정 부분은 내년의 농사를 위해 종자로 남겨질 것이며, 또 다른 일정 부분은 맥주, 위스키 그리고 그 밖의 사치품들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일정 부분은 그의 가족들을 먹이는데 쓰일 것이다. 그리고도 남은 여러 부셸(bushel)의 밀, 곧 그가 이렇게(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필요)충족을 위해 사용하고도 남은 밀을 그는 애완동물에게 줌으로써 그는 자신의 곡식을 유용하게 사용함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130 따라서 이 농부는 서로 매우 다른 중요성을 갖는 (필요)충족을 달성함에 있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곡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그는 그 곡식으로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장하게 되며, 그 다음으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장하게 된다. 그리고도 남은 곡식으로 그는 자신의 농장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게 되는데 이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후생의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부의 곡식을 즐거움을 위해 사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는 다시 자신에게 있어 매우 다른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목적들을 위해 자신의 곡식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사례 그것도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 매우

전형적인 사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그 중요성의 정도가 매우 다른 여러 (필요)충족 여부가 일정한 양의 재화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좌우되는데, 여기서 우리의 논의를 보다 단순화하기 위해 이 재화들이 완전히 동질적인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농부에게 있어 일정한 분량의 곡식은 주어진 조건들 하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가?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장하여 주는 몇 부셀의 곡식들은 그에게 있어 내년의 농사를 위해 종자로 쓰여지는 동일한 양의 곡식들과 비교하여 볼 때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이 두 번째 용도로 쓰여지는 몇 부셀의 곡식들은 그에게 있어 즐거움을 위해 그가 사용하는 동일한 양의 곡식들에 비해 보다 큰 가치를 가질 것인가?

이용 가능한 곡식들 중 여러 부분들에 의해 보장될 것으로 여겨지는 (필요)충족들이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 즉 우리가 앞서 나타낸 도표를 중심으로 볼 때 10부터 1까지 등급 매겨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일정한 분량의 곡식이(예컨대 농부가 다음 추수 때까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사용하는 어떤 일정한 분량의 곡식) 그에게 있어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일정한 분량의 곡식들(예컨대 그가 사치제적 성격의 음료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곡식들)보다 (항상)높은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서로 다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필요)충족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의 여부가 주어진 일정한 양의 재화에 대한 (우리의)지배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이 이외의 모든 다

른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특정한 (필요)충족이 문제의 재화 중 과연 어떤 특정한 수량에 의해 좌우되는가?

가치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가치의 본질과 인간경제(human economy)에 대한 성찰로부터 얻어진다.

131 우리는 사람들의 노력이 자신들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쪽으로 방향 지워진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로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방향 지워진다는 것을 보았다. 만일 사람들에게 있어 그 중요성에 있어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의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정한 양의 재화들이 존재할 경우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우선 자신들에게 있어 그 중요성이 가장 큰 필요들을 충족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러고도 남는 재화가 있다면 이미 충족된 필요보다 한 단계 낮은 중요성을 가진 필요들을 충족시키는데 그 재화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고도 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차례 차례로 그 중요성에 있어서 점차로 낮은 필요들을 충족시키는데 사용되어질 것이다.

한 재화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필요의 만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자. 또한 종류가 다른 각각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연속적인 각각의 행위들이 점차 그 중요성이 감소해간다고 하자. 물론 이때 중요성은 문제의 필요가 이미 얼마나 완전하게 충족되어졌는지 하는 충족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정량의 재화들을 먼저 자신들에게 있어 가장 큰 중요성을 갖는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고 나서도 남는 양의 재화들을

그 중요성에 있어서 전자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구체적인 필요들을 충족시키는데 사용할 것이며, 그리고도 남는 양의 재화들을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 떨어지는 필요 충족에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마지막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이루어 질 수 없는 충족들 중에서 가장 중요성이 큰 충족은 모든 종류의 필요에 있어서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필요들은 각각의 충족 행위들이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정도로까지 충족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에 의해 소유된 일정량의 재화들 중 어떤 주어진 한 단위가 그에게 있어 어떤 가치를 갖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우리의 질문은 만일 그것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기된다면 가치의 본질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 만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이 그 주어진 단위를 자신의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만일 그가 총량에서 하나 작은 양만큼만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면 얼마만큼의 충족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인간경제human economy의 본질에 대한 앞서의 설명으로부터 이끌어 낸다면 다음과 같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든 개인은 이 경우에 있어, 그에게 아직 남아 있는 재화들을 가지고 자신의 보다 중요한 필요들을 충족시키려고 할 것이며, 보다 덜 중요한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행위보다도 이러한 보다 더 중요한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먼저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달성되었던 모든 충족들 중에서 오직 그에게 있어 가장 적은 중요성을 가진 충족만이 이제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132 따라서 모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 개인의 수중에 있는 재화의 총량에 의해 보장되었던 모든 충족들 중에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적은 중요성을 가지는 충족들만이 총량 중의 어떤 주어진 일정량의 지배 여부에 좌우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 있어 이용 가능한 그 재화의 총량 중에서 - 어떤 부분portion이 갖는 가치는, 그 재화의 총량에 의해 보장되었던 충족들 중에서 가장 적은 중요성을 가지는 충족들이 그에게 있어 가지는 중요성과 동일하다.

어떤 사람이 한 재화에 대한 자신의 필요들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각 분리된discrete 10단위의 재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들 필요들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10에서 1까지 다양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는 7단위뿐이라고 하자. 인간경제human economy의 본질에 관해서 이미 언급한 것으로부터 곧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즉 이 개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의 양(7단위)을 가지고서는 재화에 대한 자신의 필요들 중에서 그 중요성에 있어서 10에서 4까지의 범위 내에 있는 재화에 대한 필요들만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 3에서 1까지의 범위 내에 있는 또 다른 필요들은 충족되지 않은 채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economizing individual에게 이 7단위 중 하나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가? 재화들의 가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이 질문은 다음 질문과 동일한 것이다. 즉 문제의 이 사람이 사용(소비)할 수 있는 재화가 7단위가 아니라 6단위인 경우에 그에 따라 달성되지 못 할 충족들은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갖는가?

만일 어떤 사고로 인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7단위의 재화 중 하나가 없어졌다면 이 개인은 보다 중요한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아 있는 6개 단위를 사용할 것이며, 가장 낮은 중요성을 갖는 것은 무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하나의 재화를 상실하게 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그 중요성이 10에서 5까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충족들(혹은 필요 충족 행위들)은 예전처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7단위라는 이용 가능한 총량에 의해서 보장되었던 모든 충족들 중에서 가장 적은 중요성을 갖는 것(즉 그 중요성이 4로 표시되는 충족)만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중요성이 4로 표시되는 충족만이 한 단위의 재화의 지배 여

133 부에 의해 좌우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이 사람이 7단위의 재화를 계속 소유(지배)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어떤 하나의 재화가 갖는 가치는 이 충족의 중요성과 동일할 것이다. 왜냐하면 4라는 중요성을 갖는 이 충족만이 이용 가능한 재화의 양 중 한 단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만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사람이 사용 가능한 재화가 오직 5단위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적어도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한 명백해진다. 그것은 재화의 각 단위나 부분적인 양은 그에게 있어 6이라는 수치로 표현된 중요성만큼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만일 문제의 이 사람이 3단위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단위는 8이라는 수치로 표현된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일 이 개인이 단 한 개의 재화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요성은 10이 될 것이다.

많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여기서 설명한 원리들이

보다 완전히 이해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일이 몇몇 독자들을 지루하게 할 것임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게을리 하고 싶지 않다. 아담 스미스 Adam Smith가 그렇게 했듯이 나 역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약간의 지루함을 불사할 것이다.

가장 간단한 경우로부터 시작해 보자. 즉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 고립된 개인이 바다 한 가운데의 바위섬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그는 이 섬에서 오직 단 한 개의 샘을 발견했으며, 신선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 필요를 충족시키에 있어서 오직 전적으로 이 샘에 의존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더불어 이 고립된 개인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해 보자. (a)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루에 한 단위의 물; (b) 그가 그곳에서 생존하는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수단인 우유와 고기를 제공하는 동물들에게 줄 19단위의 물; (c) 40단위의 물, 그 중의 일부는 그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하는데 쓰일 양이며, 또 다른 일부는 목욕, 세탁, 연장 세척 등 건강 유지 및 일반적인 후생을 위해 쓰일 양이다. 그 중의 또 다른 일부는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유와 고기를 제공하게 될 몇몇의 특별한 가축들에게 줄 양이다; d) 거기에 더해 매일 40단위의 물, 그 중의 일부는 그의 정원에 필요한 양이며, 또 다른 일부는 그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보다 다양한 식품을 얻기 위해서 혹은 단지 함께 살기 위해 키우고 있는 몇몇 동물들에게 줄 양이다. 더불어 그가 이 총 100단위보다 더 많은 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 모른다고 가정해 보자.

134 샘이 물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어 그가 물에 대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일 바다로 수천 양동이(pail)의 물을 흘려 보낼 수 있는 한, 또 그럼으로써 이 개인의 물 수요 중 그 어떤 부분에 대한 충족도 그가 물 한 단위(예를 들어 한 양동이 분량)를 더 많이 갖든 더 적게 갖든 그 여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한 단위의 물은 이 개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성격이나 가치도 갖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그 가치의 크기 magnitude에 대한 그 어떤 문제도 제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자연적인 사건으로 인해 이제 갑자기 이 샘이 부분적으로 마르게 된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서 문제의 섬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단지 90단위만큼만 가지게 되는 반면에 그가 자신의 필요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100단위의 물을 필요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빚어질 것이 명백하다. 즉 (이제까지 달성되어 왔던 충족들 중)일부의 충족은 전체 물 공급량 중의 일부분을 그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따라서 각각의 구체적인 물 단위는 이 개인에게 있어 우리가 소위 가치라고 부르는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 이제 우리가 그의 충족들 중 과연 어떤 충족이 그가 사용할 수 있는 90단위의 물 중 어떤 일정량(예를 들어 10단위의 물)에 의해 좌우될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의 고립된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공급량 중에서 이 주어진 일정량만큼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 즉 그가 90단위 대신에 80단위만 갖게 된다면 - 이 개인이 자신의 충족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

하게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비록 그가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물을 80단위만큼만 가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개인은 자신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양만큼은 계속 소비하고자 할 것이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만큼의 가축들만큼은 계속 키우고자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목적을 위해서는 매일 20단위만큼의 물만이 요구되어지므로 그는 나머지 60단위의 물을 우선적으로 자신의 건강과 일반적인 후생유지를 위한 필요 전부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는 매일 40단위의 물만이 요구되어지므로 그는 나머지 20단위의 물을 순전히 즐거움을 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는 이 나머지 20단위의 물을 정원을 가꾸는데 사용하거나 혹은 애완동물들을 키우는데 사용할 것이다. 그는 틀림없이 두 가지 충족 중에서 자신에게 보다 중요해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며, 따라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크루소 Crusoe가 매일 자신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을 90단위
135 만큼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이만큼의 물의 양을 계속 가질지 아니면 10단위만큼 적게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 곧 그에게 있어 매일 10단위의 물로써 충족되어지고 있는 가장 덜 중요한 필요를 앞으로도 계속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90단위의 총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한 10단위의 물은 이들 가장 덜 중요한 충족들이 갖는 중요성만을, 곧 상대적으로 별 볼일 없는 즐거움의 추구가 갖는 중요성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고립된 경제 속에 있는 이 개인에게 물을 제공하던 샘이 좀 더 말라서 매일 40단위의 물만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량이 줄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개인의 생명과 후생의 유지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총량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였다. 즉 이전에는 전체 공급량의 각 부분(예컨대 한 단위)을 사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해 좌우되던 것이 단지 그의 즐거움이나 안락함 중의 하나였다면 이제는 매일 사용 가능한 물이 한 단위만큼 더 많은지 적은지의 문제는 우리의 크루소에게 있어 곧바로 자신의 건강이나 전반적인 후생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지 없을 지의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만일 그가 한 단위의 물을 잃게 된다면 그 결과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필요들 중의 하나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며 그에 따라 그의 계속적인 건강과 전반적 후생의 유지 여부가 좌우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크루소가 매일 수백 양동이의 물을 가지는 한 한 양동이의 물은 그에게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단지 90 단위의 물만을 가질 수 있었을 경우 각 단위는 그것에 의해 충족이 좌우될 몇몇 특정한 즐거움의 중요성만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이 40단위의 물의 각 부분은 그에게 이전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충족을 달성하게 해주므로써 보다 큰 중요성을 갖게 된다. 이제 만일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의 건강이나 지속적인 후생을 저해하게 될 필요들의 충족 여부가 40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단위의 물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이 재화의 각 단위가 갖는 가치는 그것에 의해 좌우되는 충족이 갖는 중요성과 동일하다. 만일 첫 번째 경우에 있어 우리의 크루소에게 물 한 단위의 가치가 처음

에는 제로이고 두 번째 경우엔 1이라면 이제는 6정도의 어떤 수치로 표현되어 질 것이다.

이제 가뭄이 계속되어 샘이 더욱 더 고갈됨에 따라 드디어는 이 고립된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겨우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의 물만
 136 나온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 20단위의 물에 해당하는데, 이는 그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무리 중 일부, 특히 그 고기와 우유가 없으면 그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들을 위해 그 만큼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점이 명백해진다. 즉 그가 이용할 수 있는 각각의 물의 양은 그의 생명의 유지가 갖는 중요성만큼의 중요성을 가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 단위의 물의 양은 바로 앞에서 경우보다도 훨씬 큰 중요성, 곧 수치적으로 표현할 경우 10이라는 수치로 표현되는 가치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본 경우들 중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본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이 고립된 개인이 매일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수천 양동이만큼의 분량이라면 이 분량 중 아주 작은 부분, 예컨대 한 양동이 분량의 물은 그에게 전혀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종류의 필요충족도 그 한 양동이의 물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본 것은 다음과 같다. 즉 그가 사용할 수 있는 90단위의 물 중에서 한 단위의 물은 그에게 있어 어떤 사소한 즐거움이 갖는 중요성만큼의 중요성만을 가졌다. 왜냐하면 90단위의 물에 의해 좌우되었던 충족들 중 가장 작은 중요성을 갖는 충족들이 이러한 즐거움들이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경우에 있어 그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단지 40단위에 불과할 때에는 보다 중요한 충족들이 각각의 구체적인 물의 단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보았다. 네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더 중요한 충족들이 각각의 구체적인 단위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다. 연속되는 이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그의 수중에 남겨지는 단위들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보다 중요한 충족들이 그것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었다.

이제 보다 더 복잡한(사회적) 관계로 넘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즉 항해하고 있는 배 한 척이 있는데 육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20일간의 항해를 계속 해야만 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어떤 사고로 인하여 그 배가 비축하고 있던 식량이 거의 완전히 소실되어 버렸다고 하자. 그리하여 한 가지 종류의 식량, 예컨대 비스킷만이 남아 있으며 그 분량은 선원들 각각이 20일간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는데 충분할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자. 따라서 이 경우는 한편으로는 항해하고 있는 이 배의 선원들의 필요들이 주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정확히 주어진 재화의 양을 이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상황은 이 선원들의 필요의 충족 여부가 그들이 이용 가능한 재화의 양에 전적으로 좌우되도록 한다. 만일 오직 선원들 각자가 매일 반 파운드의 비스킷을 소비하는 경우에만 이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각 선원은 실제로 10파운드의 비스킷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양의 식량은 각 선원에게 있어 자신의 생명의 유지가 갖는 중요성만큼의

137

양의 식량을 식료품이 아닌 다른 재화와 - 설사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값나가는 물건일지라도 - 바꾸도록 설득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컨대 그 배를 타고 여행 중이던 부자 하나가 그러한 적은 배급량에 따라 불가피하게 겪는 배고픔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 파운드의 금을 그것과 같은 무게의 비스킷과 바꾸자는 제안을 한다면 그는 그러한 거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어떤 선원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그 배의 승객들이 각각 기존에 가지고 있던 10파운드의 비스킷 외에 5파운드의 비스킷을 더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그들의 생명은 더 이상 한 파운드의 비스킷의 지배 여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자신들의 지배 하에 있던 한 파운드의 비스킷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식량 이외의 다른 재화와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의 생명이 더 이상 한 파운드의 식량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한 파운드의 식량은 배고픔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들의 건강을 보존시키는 역할 또한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수중에 단지 10파운드의 비스킷만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러한 영양부족이 20일 동안 계속된다면 그것은 필경 그들의 후생 곧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비록 한 파운드의 비스킷이 그들에게 있어 더 이상 자신들의 생명의 유지가 갖는 중요성만큼의 중요성을 갖지는 않는다고 할 지라도 적어도 모두가 자신의 건강과 후생에 부여하는 중요성만큼의 중요성은 가질 것이다. 적어도 자신의 건강과 후생이 이 한 파운드의 비스킷에 의

해 좌우되는 한에서는 그러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식량들이 사고로 인해 완전히 유실되었으며, 승객들 역시 따로 여분의 식량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뒀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 배에는 수십만 파운드의 비스킷이 화물로 실려 있었으며, 그 배의 선장은 이 사고의 결과로서 초래될 불행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비스킷을 먹어도 좋다고 허락했다고 가정하자. 물론 그 배의 승객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 그 비스킷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앞으로 20일 동안 비스킷만을 먹어야 하는 승객에 있어 한 조각의 맛있는 고기가 매우 커다란 가치를 가지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한 파운드의 비스킷은 그에게 있어 아주 적은 가치를 가지거나 아마도 전혀 가치를 갖지 않을 것이다.

138 한 파운드의 비스킷이 왜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의 유지가 갖는 가치만큼이나 큰 중요성을 가지며,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꽤 큰 중요성을 가지며, 세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중요성을 갖지 않거나 갖는다고 해도 아주 적은 중요성만을 갖는 것인가?

이 세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승객들의 필요는 동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격이 변한 것도 아니며 그들의 필요량 requirements이 변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변한 것은 각 경우에 있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식량의 양이었다. 각 경우에 있어 승객들은 식량에 대해 동일한 필요량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한 사람 당 10파운드의 식량만이 존재했으며,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큰 양의 비스킷이 있었고, 세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큰 양의 비스킷이 존재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로 넘어감에 따라 한 단위의 식량에 의해 좌우되는 충족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더 감소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관찰결과, 곧 첫 번째 경우인 고립된 개인에 있어서의 관찰결과와 두 번째 경우인 세상 사람들로부터 일시적으로 고립되었던 작은 그룹의 사람들에 있어서의 관찰결과는 사람들간의 보다 복잡한 상호관계 및 일반적인 인간사회에 있어서도 역시 유효하다. 흉작 이후 평균적인 수확 이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작이 있었던 해 이후에 한 나라의 국민들이 직면하는 상황은 본질적으로 위에서 묘사된 사람들이 직면했던 상황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성을 갖는다. 여기서도 역시 어떤 일정한 필요량의 맞은 편에,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 보다 첫 번째 경우에 있어, 보다 작은 양의 이용 가능한 식량이 존재하는 것이며, 세 번째 경우에 있어 보다 두 번째 경우에 있어, 보다 더 작은 양의 이용 가능한 식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도 역시 총 공급량 중의 한 단위에 의해 좌우되는 충족들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게 변하게 된다.

만일 바로 풍작을 맞았던 나라에 있어서 10만 부셸bushel의 밀을 저장했던 창고가 불타 소실되었다면 그 재난의 결과는 기껏해야 보다 적은 술이 생산되는 것이거나 그 나라 사람들 중 보다 가난한 계층이 먹을 것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게 되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손실로 인해 크게 고통을 당하지는 않는 정도일 것이다. 만일 그 재난이 평균적인 수확 이후에 일어날 경우, 많은 사람

들이 보다 중요성을 갖는 자신들의 충족행위를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불행한 사고가 기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시기에 일어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인해 죽을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경우들 각각에 있어서 매우 다른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139 충족들이,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각각의 구체적인 곡식 단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 단위의 곡식의 가치는 그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매우 크게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말한 것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러한 탐구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얻게 된다.

(1) 우리들에게 있어 재화들이 갖는 중요성, 곧 우리들이 가치라고 부르는 중요성은 단지 (우리에 의해)부여된 것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단지 충족들만이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후생이 그 충족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러한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재화들, 곧 이러한 충족들의 달성 여부가 그것들의 이용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재화들에 부여한다.

(2) 구체적인 필요들에 대한 서로 다른 충족들(개별적인 재화들을 이용하여 실현될 수 있는 각각의 충족들)이 우리에게 있어 갖는 중요성의 크기는 서로 같지 않다. 그리고 그것들의 크기는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과 후생의 유지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의 정도에 따른다.

(3) 따라서 재화들에 부여된 중요성, 곧 우리의 충족들이 갖는 중요성의 크기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의 가치의 크기들 역시 서로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들의 크기는 문제의 재화들에 의존하고 있

는 충족들이 우리에게 있어 갖는 중요성의 크기에 따른다.

(4) 각각의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한 재화의 이용 가능한 총량에 의해 보장되는 모든 충족들 중에서 오직 -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economizing 개인에게 있어 - 가장 적은 중요성을 갖는 충족들만이 총량 중 주어진 일정량의 지배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5) 따라서 한 특정 재화의 가치, 혹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의 수준에 있는 한 재화의 총량 중 주어진 일정량의 가치는 그에게 있어 이용 가능한 총량에 의해 보장되는 충족들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한 충족(그리고 그 주어진 일정량과 동일한 그 어떤 양에 의해서도 채워질 수 있는 충족)이 갖는 중요성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문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있어 한 재화의 주어진 양 또는 그 특정 재화의 이용 가능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바로 이 가장 중요성이 적은 충족이기 때문이다.

140 이 지점까지의 우리의 탐구에 있어서 우리는 재화들의 가치에 있어서의 차이의 궁극적인 요인들까지 밝혀 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모든 재화들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는 궁극적인 기준, 곧 진정한 기준 역시 밝혀 내었다.

만일 이제까지 설명한 것이 올바르게 이해되었다면, 둘 또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재화(또는 일정량의 재화들)의 가치들간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예컨대 왜 한 파운드의 금 또는 다이아몬드 중의 미세한 일부는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갖는 반면에 우리가 마시는 물 한 파운드는 일상적인 환경 하에서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다음과 같다. 다이아몬드와 금은 너무 희소해서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의 총량은 -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 한 개의 금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이며 모든 금은 큰 방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이다. 반면에 우리가 마시는 물은 지구상에 너무 많은 양이 발견되어 그러한 물 모두를 담을 수 있는 저장소는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금과 다이아몬드가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들 중 가장 중요한 필요들만을 충족시킬 수 있다. 반면에 그들은 물에 대한 자신들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많은 부분이 쓰여지지 않은 채로 흘러가도록 한다. 자신들이 이용 가능한 물의 총량을 다 써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환경 하에서는 설사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분량의 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의 필요도 충족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반면에 금과 다이아몬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용 가능한 총량에 의해 보장되던 충족들 중의 가장 적은 중요성을 갖는 충족들조차도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economizing 사람들에게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가 마시는 물의 구체적인 일정량들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는 반면에 금과 다이아몬드의 구체적인 일정량들은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일상적인 생활환경 하에서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이 엄청난 반면에 금과 다이아몬드의 양은 매우 작은 경우에만 유효하다. 여행자의 생명이 종종 한 방울의

물에 의해 좌우되는 사막에서는 한 개인에게 있어 한 파운드의 금보다 한 파운드의 물에 의해 보다 중요한 충족들이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141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의 개인에 있어 한 파운드의 물의 가치는 한 파운드의 금의 가치보다 더 클 것이다. 그리고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 곧 그와 같은 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가 내가 앞서 묘사했던 경제적 상황이 있는 곳에서는 실제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C. 재화들의 품질에 있어서의 차이가 그것들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의 필요는 종종 서로 다른 타입의 상품들에 의해, 그리고 보다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에 의해 충족되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편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어떤 주어진 복합적인 필요들을 다루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들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재화들의 양을 다룰 경우, 그 필요들은 항상 동일한 재화들의 일정 수량에 의해서만 충족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필요들은 서로 다른 타입의 재화들에 의해, 그리고 보다 더 많은 경우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들에 의해 충족되어진다.

이제까지 나는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재화들간의 차이에 대한 고려를 생략해 왔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특히 이미 달성된 충족의 정도에 따라 그 충족의 중요성이 감소해 가는 과정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완전히 동질적

인 재화들의 일정량이 어떤 특정한 타입의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경우만을 고려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이용 가능한 재화들의 양에 있어서의 차이가 재화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보다 큰 강조점을 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고려해야 할 경우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즉 어떤 주어진 필요들이 서로 다른 타입 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재화들에 의해 충족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어떤 주어진 필요량 requirements이 일정한 이용 가능한 재화들과 맞서 있는 경우로서 그 재화들의 각 부분들이 질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비록 그 차이가 형태에 있어서의 차이건 종류에 있어서의 차이건 간에 재화들간의 차이는, 만일 그 차이에 의해 사람들의 필요의 충족 여부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주어진 공급량의 각 단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재화들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비록 그 재화들이 외모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서로 다른 타입이나 종류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142 타입이나 형태 측면에 있어서의 두 재화간의 차이가 그것들의 가치에 있어서의 차이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있어서도 역시 서로 다른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질quality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져야만 한다. 따라서 질적 차이가 특정 재화들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제부터의 탐구의 주제가 된다.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 재화들간의 질적 차이는 2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의 필요는 설사 그것이 동일한 수량의 질적으로 서로 다른 재화들에 의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측면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각 다른 식으로 충족될 수 있다. 예컨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에 대한 필요는 어떤 주어진 양의 밤나무로 동일한 양의 전나무보다 양적으로 훨씬 더 크게 충족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가치를 갖는 동일한 양의 두 가지 식료품들이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음식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컨대 어떤 한 종류의 요리에 대한 소비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반면, 다른 종류의 요리는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 못하거나 그 보다 훨씬 적은 즐거움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첫 번째 범주의 재화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의 품질이 보다 많은 양에 의해 충분히 보상될 수 있지만, 두 번째 범주의 재화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다. 전나무나 오리나무 또는 소나무는 따뜻하게 한다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밤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보다 낮은 탄소 함량을 가지고 있는 석탄, 보다 적은 탄닌tannin 성분을 가지고 있는 떡갈나무 껍질, 그리고 느리게 비능률적으로 일하는 날뽕팔이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노동들은, 만일 그것들이 충분히 많은 양만 공급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보다 높은 질의 재화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과 음료수들, 어둡고 축축한 방들, 형편없는 의사들의 서비스 등등은, 설사 양적인 측면에서 최대로 공급된다고 할지라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그러한 재화들에 대응하는 보다 질 좋은 재화들만큼 우리들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어느 한 재화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바와 같이, 순전히 그 재화의 지배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자신들의 필요의 충족이 갖는 중요성을 평가하는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어떤 주어진 충족을 가져다 줄 한 재화의 수량은 가치 평가에 있어서 단지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만일 보다 작은 수량이기는 하지만 보다 질이 우수한 재화들을 가지고 보다 많은 수량이기는 하지만 보다 질이 떨어지는 재화들을 가지고 충족시키는 정도와 동일하게(즉, 양적, 질적으로 동일하게)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경우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보다 적은 수량이기는 하지만 보다 높은 질을 가지고 있는 재화들이 보다 많은 수량이기는 하지만 보다 낮은 질을 가지고 있는 재화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서로 다른 질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양의 재화들은 그 크기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지 않은 가치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예컨대 떡갈나무 껍질의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의 탄닌 성분만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첫 번째 등급의 700파운드가 두 번째 등급의 800파운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떡갈나무를 사용하는 장인들에게 있어서 후자의 수량과 동일한 가치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들을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양으로 환원시킴으로써(이는 실제로 이와 같은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사람들의 경제활동 속에서 이용되는 과정이다), 서로 다른 질을 갖는 주어진 수량의 재화들이 갖는 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고려 중인 보다 복잡한 경우는 앞서 설명한 바 있

는 단순한 관계로 환원되어 진다.

재화들간의 질적인 차이로 인해 사람들이 갖는 필요들이 질적으로 다른 식으로 충족되어야만 하는 경우, 질적인 차이들이 특정 재화들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보다 복잡해진다. 가치결과와 관련한 일반적인 원리들에 대해 살펴보았던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만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재화를 가지지 못했을 경우, 그런데 그 재화가 단지 일반적인 타입의 재화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수한 질적 특성을 갖는 재화일 경우, 그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그 재화를 지배하지 못함으로써 충족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게 될 필요들이 갖는 중요성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논의에 있어서 내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가치 결정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원리가 이러한 재화들에 적용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갖는) 여러 종류의 필요들 전체가 다음과 같은 재화들과 맞서 있는 경우, 즉 그 재화들의 다양한 단위들이 이들 필요들을 질적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화들과 맞서 있는 경우,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재화에 의해 좌우되는 특정한 충족이 무엇인지(또는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가치결정의 일반적인 원리를 실제의 경제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고려로부터 나온다.

144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재화들간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때, 이러한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이용 가능한 일정한 양의 재화들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자신의 수중에 서로 다

른 등급의 곡식을 가지고 있는 농부는 가장 낮은 등급의 곡식을 종자로 사용하지 않고 중간 정도의 질을 갖는 곡식을 가축 먹이로 사용하지도 않으며, 가장 좋은 등급의 곡식을 음식물로 사용하거나 마실 것을 생산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또한 서로 다른 등급의 곡식들을 한 가지 목적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그는 자신의 필요requirements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등급의 곡식을 종자로 사용하며, 그리고도 남은 좋은 등급의 곡식을 음식과 마실 것을 위하여 사용하며, 가장 저질의 곡식을 가축을 먹이는데 사용한다.

각 단위들이 상호 동질적인 재화들의 경우 어떤 한 재화의 이용 가능한 총량은 그것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필요들의 전체 집합의 맞은 편에 서있게 된다. 그러나 한 재화의 각각의 단위들이 서로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우, 한 재화의 이용 가능한 총량은 더 이상 필요들의 총 집합의 맞은 편에 서있지 못하게 된다. 그 대신에 특수한 질적 특성을 갖는 각각의 이용 가능한 양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특수한 필요들에 대응하여 그것들의 맞은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주어진 소비 목적과 관련하여 일정한 질을 갖는 한 재화가 또 다른 질을 갖는 다른 재화들에 의해 전혀 대체될 수 없다면, 앞서 우리가 입증했던 가치 결정의 원리는 그 재화의 특정한 수량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적용된다. 따라서 그러한 재화의 어떤 특정한 단위가 갖는 가치는 이 특정한 질을 갖는 재화의 이용 가능한 총량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충족 중 가장 적은 중요성을 갖는 충족의 중요성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질을

갖는 특정한 단위의 지배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충족의 측면에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일한 필요가 서로 다른 질적 특성을 갖는 재화들에 의해 - 비록 질적으로 다른 방식이기는 해도 - 충족될 수 있다. 만일 한 가지 질적 특성을 갖는 재화들이 다른 질적 특성을 갖는 재화들에 의해 - 비록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 대체될 수 있다면 보다 우수한 질적 속성을 갖는 재화 한 단위가 갖는 가치는 그 우수한 질적 속성을 갖는 재화들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충족 중 가장 적은 중요성을 갖는 충족의 중요성에서 가치할당a value 145 quota을 뺀 만큼과 동일하다. 그런데 이 가치할당은, (1) 문제의 그 특정한 필요가 보다 질적으로 떨어지는 재화들에 의해서도 충족되어질 수 있다고 할 때, 그 질적으로 열등한 재화들의 가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커지며, (2) 질적으로 우수한 재화를 가지고 그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갖는 중요성과 질적으로 열등한 재화를 가지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갖는 중요성간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커진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즉, 필요들의 복합체가 서로 다른 질적 속성을 갖는 재화들의 일정량의 맞은 편에 서 있는 경우들에 있어서 조차 주어진 강도의 만족들은 항상 이러한 재화들의 각 부분적인 양 또는 각각의 구체적인 단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논의된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앞서 내가 공식화했던 가치 결정의 원리는 여전히 완벽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 가치 크기의 주관적인 성격, 노동과 가치, 오류

앞서 가치의 본질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는, 가치라는 것이 재화 자체에 고유한 것이 절대 아니며 재화의 속성도 아니라는 것을 보 146 았다. 하지만 가치가 어떤 독립적인 것도 아니다. 하나의 재화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치를 갖다가 다른 환경 하에 있는 다른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가치의 크기는 그 본질에 있어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하나의 재화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가치를 가질 수가 있으며, 또 다른 개인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가치만을 가질 수 있으며, 제 3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그 재화에 대한 그들의 필요량(requirements)과 이용 가능한 그 재화의 수량 간의 차이에 의해 좌우된다. 어떤 한 사람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거나 아주 적은 가치밖에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는 큰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버린 것을 종종 다른 사람이 줍는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 사람이 어떤 주어진 양의 한 재화와 보다 큰 양의 다른 재화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반면에,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정반대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

따라서 가치의 본질뿐만 아니라 가치의 크기도 주관적인 것이다. 재화들은 항상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어떤 개인들에게 있어 가치를 갖는 것이며, 이 가치는 오직 이들 개인들에 의해서만 결정되

어지는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 개인이 하나의 재화에 부여하는 가치는 그 재화의 지배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특정한 충족이 갖는 중요성과 동일하다. 한 재화의 가치와 그 재화의 생산에 노동과 원료와 같은 여타 재화들이 투입되었는지의 여부간 또는 이 후자가 얼마만큼 투입되었는지의 여부간에는 아무런 직접적이거나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 하나의 비경제재(예컨대, 처녀림 속에 있는 일정량의 목재)는 설사 그것의 생산에 많은 수의 노동이나 여타 경제재들이 투입되었다고 할 지라도 가치를 갖지 못한다.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우연히 발견된 것인지 혹은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수 천 명의 노동을 고용하여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그것의 가치와 전혀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현실생활에 있어서 그 누구도 한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그것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 재화가 자신에게 가져다 줄 서비스, 다시 말해서 그 재화를 자신의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경우 포기했어야만 할 서비스만을 생각한다. 그 생산에 많은 노동이 쓰여진 재화들이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는 반면, 다른 재화들 곧 그것의 생산에 아주 적은 노동이 쓰여지거나 아무런 노동도 쓰여지지 않은 재화들이 매우 높은 가치를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많은 노동이 쓰여진 재화들과 아무런 노동도 쓰여지지 않거나 아주 적은 노동만이 쓰여진 다른 재화들이 종종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그러므로 재화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 또는 여타 생산 수단들의 수량들은 147 한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물론 한 재화의 가치와 그것의 생산에 사용된 생산 수단들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과연 그리고 얼마나 그것의 생산 곧 지나간 과거의 활동으로서의 생

산이 적합하거나 경제적이었는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된 재화들의 수량들은 그 재화의 가치에 대하여 필연적인 영향력을 갖지도 못하며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영향력을 갖지도 못한다.

마찬가지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 다음과 같은 견해 즉 재화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것들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또는 여타 생산 수단들의 수량이라는 견해이다. 상당수의 재화들이 재생산될 수 없다.(예컨대 고가구, 옛 거장들에 의해 그려진 미술품들이 그런 경우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는 가치를 관찰할 수는 있으나 재생산의 가능성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반적으로 재생산과 연관된 그 어떤 요소도 가치를 결정하는 원리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경험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많은 재화들(예컨대 과거에 유행했던 의상들과 낡은 기계들)의 재생산에 필요한 생산 수단들의 가치는 어떤 때는 그 재화들 자체의 가치보다도 훨씬 높으며 또 어떤 때는 훨씬 낮다.

그렇다면 한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양이나 다른 재화의 양도 아니며, 그 재화의 재생산에 필요한 양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충족들, 곧 그 달성 여부가 그 재화의 지배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충족들이 갖는 중요성일 뿐이다. 이러한 가치 결정의 원리는 보편적으로 유효하며, 인간경제(human economy)에 있어서 그에 대한 그 어떤 예외도 발견 될 수 없다.

하나의 충족이 우리에게 있어 갖는 중요성은 임의적인 결정의 결과 가 아니다. 그것은 그 충족이 우리의 생명 또는 후생과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에 의해 측정되며, 따라서 결코 자의적이지 않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충족들과 연속적인 충족 행위들이 갖는 중요성의 상대적인 정도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편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러한 중요성의 정도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잘못될 수가 있다.

우리는 앞서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충족들이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중요성을 갖는 충족들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중요성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오는 충족들이, 그들의 후생수준이 그에 의해 좌우되는(곧, 동일한 강도라면 보다 길게 지속되는 충족에 의해, 그리고 동일한 지속 시간이라면 보다 강한 충족에 의해 좌우되는 식으로) 충족들이라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던 것이 결코 다음과 같은 가능성, 곧 어리석은 사람들이 때때로 자신들의 불완전한 지식의 결과로서, 여러 가지 충족들이 갖는 중요성을 그것들이 실제로 갖는 중요성과는 정반대로 평가할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따라서 자신들의 경제활동의 정확한 기초를 얻기 위해, 각각의 충족들이 진정으로 얼마만한 중요성을 갖는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조차도 오류에 빠지기 쉽다. 오류는 모든 인간 지식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들에게 순간적으로 강한 즐거움을 주는, 그러나 자신들의 후생에는 단지 찰나적으로만 기여하는 그러한 충족들의 중요성을 과대 평가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그들은 보다 약한 강도로 보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충족들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종종 일시적이고도 강한 즐거움을 자신들의 영속적인 후생보다도 높게 평가하며, 나아가 때로는 자신들의 생명보다

도 더 높게 평가한다.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종종 가치결정의 주관적인 요소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과 관련하여 오류를 범한다고 할 때 (즉 그것이 단지 자기 자신의 마음상태에 대한 평가의 문제에 불과할 뿐일 때에도 사람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한다고 할 때) 만일 그것이 가치결정의 객관적 요소에 대한 인식의 문제일 경우(특히 그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의 이용 가능한 수량들의 크기 및 재화들의 서로 다른 질적 속성들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관련한 문제일 경우) 그들은 훨씬 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러한 이유들 (곧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갖가지 오류들)만으로도 왜 특정 재화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 어려운지가 명백해진다. 그러나 사람들의 필요의 변화로부터 비롯되는 가치의 변화, 이용 가능한 재화들의 양의 변화로부터 비롯되는 가치의 변화 그리고 재화들의 물리적 속성들의 변화로부터 비롯되는 가치의 변화 이외에도 우리는 단지 재화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후생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에 있어서의 변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재화들의 가치의 변화 또한 관찰할 수 있다.

149

3.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를 지배하는 법칙들

The laws governing the value of goods of higher order

A.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원리

이제까지의 경제학의 발전과정 속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던 근본적인 오류들 중 가장 터무니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다음과 같은 주장, 곧 재화들이 우리들에게 있어 가치를 갖는 것은 그 재화들을 생산하는데 우리에게 있어 가치를 갖는 재화들이 쓰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책의 뒤에서 보다 높은 순위 재화들의 가격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나는 이러한 오류를 가져 왔던 원인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가격이론 - 물론 모든 종류의 특수한 조항들에 의해 제약되는 형태의 가격 이론이다 - 의 기초가 되게 하였던 원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여기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는 너무도 배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설사 그것이 재화들의 가치를 설명하는 원리의 확립 문제에 형식적인 측면에서formally 정확한 답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거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주장은 이 마지막 목적조차도 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우리가 생산물products이라고 지칭하는 재화들의 가치에 대한 설명만을 제공할 뿐, 원래의 생산요소original factors of production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여타 재화들의 가치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주장은 자연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재화들의 가치, 특히 땅이 제공하는 서비스services of land의 가치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는 우리가 뒤에서 보듯이 그것은 자본이 제공하는 서비스services of capital의 가치도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재화들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논리, 곧 재화들은 그것들의 생산에 쓰여진 재화들의 가치로부터 자신들의 가치를 끌어 내온다 라는 논리에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논리는 (생산에 쓰여진)재화들의 가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재화의 가치에 대해 보편적으로 타당한 설명을 발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답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현실의 경험적 사실과 부합되는 답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한편으로 그것은 경험과 배치되는 주장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는 재화들의 결합의 결과로 생산되는 생산물이 아닌 재화들을 다루어야만 하는 모든 곳에 명백하게 적용 불가능한 주장이다. 따라서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goods of lower order의 가치는 그것들의 생산에 쓰여진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 goods of higher order의 가치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가 항상 그리고 예외 없이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곧 높은 순위의 재화들이 투입되어 생산되는 재화들)의 예상가치prospective value에 의해 결정된다.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에 대한 우리의 필요량requirements의 존재 여부는 경제적 성격을 가질 것으로(따라서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생산하려고 했던 (그리고 바로 그 생산과정에서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이 쓰여진)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의 필요들needs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량requirements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기대 가치 expected value를 갖지 않는 -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아무런 필요requirements를 갖지 않기 때문에 - 낮은 순위의 재화들의 생산에 쓰여질 수 있는 재화들을 지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 곧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는 그것들이 투입되어 생산하게 될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의 기대가치expected value에 의해 좌우된다는 원리를 얻게 된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은 우리들에게 있어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재화들을 생

산하는데 쓰일 경우에만, 또는 쓰이는 한에 있어서만 가치를 획득할 수 있거나(일단 가치를 획득했을 경우 그것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확립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 또한 명백해진다. 즉 보다 높은 순위 재화들의 가치는 그에 조응하는 보다 낮은 순위 재화들의 기대 가치prospective value의 결정 요소determining factor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이미 쓰여진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는 그 재화의 현재 가치present value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도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경우에 있어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는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의 예상가치prospective value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리고 바로 이 낮은 순위의 재화들의 생산을 위해 높은 순위의 재화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economizing men에 의해 배분되었거나 배분될 것이다.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의 예상가치prospective value는 - 종종 이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 - 유사한 재화들이 현재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 - 바로 이 재화들을 이용하여 우리는 어떤 장래의 시점에 있어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을 갖게 될 것이다 - 는 결코 보다 낮은 순위의 유사한 재화들의 현재가치에 의해 측정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그것들이 투입되어 생산하게 될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의 예상가치prospective value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예를 들어 일정한 양의 화약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칠레 초석, 유황, 목탄, 전문화된 노동력labor services, 기계설비, 등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재화들을 이용하여 3개월 후에는

151 일정량의 화약을 갖게 된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3개월 후에 이 화약이 우리에게 있어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치가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의 동일한 양의 화약의 가치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후자보다 크거나 작을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한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의 크기는 현재 시점에서의 화약의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기간의 마지막 시점에서 생산물이 갖게 되는 예상가치prospective value에 의해 규정된다. 사실 보다 낮은 순위의 또는 첫 번째 순위의 어떤 한 재화(예컨대, 겨울철의 얼음)가 현 시점에 있어서는 전혀 가치를 갖지 않는 반면 그에 대응되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역시 이용 가능한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 다시 말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양의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을 얻도록 해주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예컨대, 인공 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원료들과 기구들)은 이 미래 시점과 관련하여 가치를 갖는 경우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들도 상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 있어서의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 또는 첫 번째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와 그러한 재화들의 생산에 쓰여지는 보다 높은 순위의, 현재 이용 가능한 재화들의 가치간에는 아무런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없다. 전자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의 이용 가능한 수량과 필요량requirements간의 관계로부터 생겨난다. 반면에 후자의 가치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생산물들이 이용 가능하게 될 미래 시점에 있어서 이용 가능하게 될 수량과 필요량간의 관계에 대한 기대로부터 생겨난다. 보다 낮은 순위의 한 재화의 미래 기대 가치prospective future value가 오를 경우, 만

일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곧, 그에 대한 지배 여부가 미래 시점에 있어서의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에 대한 지배 역시 좌우하게 될 재화들)의 가치 역시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보다 낮은 순위의 한 재화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과 현재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에 대응하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과는 아무런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는 그와 대응되는 현재의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물의 예상가치prospective value에 의해 규정된다는 원리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 결정에 관한 보편 타당한universally valid 원리이다.

152 우리의 필요들에 대한 충족만이 우리에게 있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의 정도는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충족들이 우리의 생명 및 후생과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에 의해 측정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 각각의 특정한 재화들에게, 곧 문제의 충족들이 그 재화들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각각의 특정한 재화들에게 이러한 중요성의 정확한 양적인 크기를 부여한다 다시 말해서 앞장에서 설명한 원리들principles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첫 번째 순위의 경제재들에게 그것을 부여한다. 첫 번째 순위의 재화들에 의해 우리의 필요requirements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혹은 단지 불완전하게만 충족되는 경우들에 있어서, 따라서 첫 번째 순위의 재화들이 우리에게 있어 가치를 갖는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필요를 가능한 한 완전하게 충족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써 우리는 그 재화들에 대응

하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에게로 관심을 전환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첫 번째 순위의 재화들에게 부여했던 가치를 이번에는 두 번째 순위, 세 번째 순위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에게 부여하는데, 이러한 가치부여는 이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이 경제적 성격(economic character)을 갖는 한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분석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 있어서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후생에 부여하는 중요성의 특수한 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첫 번째 순위의 재화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이 갖는 가치의 궁극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은 충족들, 곧 문제의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이용 가능성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충족들에게 우리가 부여하는 중요성이다. 하지만 재화들간의 인과적 연관관계(causal connections)로 인해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이 갖는 가치는 최후의 충족(final satisfaction)이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성(the expected importance)에 의해 직접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의 기대 가치(expected value)에 의해 측정된다.

B. 자본의 생산성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로부터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로의 전환은 여타의 모든 변화과정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 이들 재화들의 순위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현재 자신들의 수준에 있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로부터 첫 번째 순위의 재화들을

얻는데 드는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것이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수록 이용 가능한 소비재의 양이 계속해서 증대할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증대는 사람들의 미래 지향적인 활동들(provident activities)이 시간적으로 보다 긴(반) 시기까지 확장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원시 인디언은 단지 자신의 며칠 동안의 필요량(requirements)을 얻는 일로 인해 늘 바쁘다. 자신의 수준에 있는 가축들을 소비하지 않고 그 새끼들을 얻기 위해 그것들을 사육하기로 결정한 한 유목민은 몇 달 후에나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재화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문명화 된 사회에 있어서도 사회 구성원들 중의 상당 부분이 사람들의 직접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기까지 몇 년 또는 몇 십 년이 걸릴 재화들을 생산하는데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채집경제를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사용에 있어서의 진보를 이룩함으로써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재들을 가장 확실하게 증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만 그러하다. 곧 그들의 관심(과 지식)이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에게까지 확대되고 따라서 자신들의 미래 지향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수행되는) 기간을 확장시킨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러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제적 진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약이 되는 것이 있다.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바의 하나는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생명과 후생의 유지에 필요한 소비재

들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망은 그 갈망이 지속되어야 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본성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유지 여부가 우리의 필요들에 대한 충족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한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보다 빨리 제기되는 필요의 충족에 대한 보장은 시기적으로 보다 늦게 제기되는 필요에 대한 관심보다 필연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정한 수량의 재화에 대한 지배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단지 우리의 지속적인 후생(무엇보다도 건강)일 경우에서조차 일반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의 후생의 달성은 보다 먼 미래에 있어서의 후생의 선결 조건 prerequisite이다. 현재로부터 먼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후생을 유지시켜 줄 수단을 가지게 된다고 해도, 만일 그보다 앞선 시기에 이미 빈궁과 재난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발전을 저해했을 경우 그러한 수단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지 즐거움이라는 중요성만을 갖는 충족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제까지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현재의 즐거움 또는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의 즐거움이 보다 먼 미래에 있어서의 동일한 강도의 즐거움보다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154 인간의 생명은 이전의 발전에 의해 미래의 발전과정이 항상 영향을 받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것은 일단 중단되었을 경우 계속되어질 수 없는 과정이며, 그 질서가 심각하게 깨어졌을 경우 결코 완전하게 복원될 수 없는 과정이다. 미래에 있어서의 우리의 생명의 유지와 우리의 발전을 위해 대비함에 있어 잊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선행조건의 하나는, 그 이전 시기에 있어서의 우리의 생명에 대한 배

려이다. 경제적 활동의 불규칙성을 논외로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까운 미래의 필요들에 대한 충족을 먼저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보다 먼 미래의 시기들에 있어서의 필요를 현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것부터 차례로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보다 많이(생산에) 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제동을 거는 환경은 그들이 현 시점에서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재화들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가까운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충족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보다 먼 미래를 위해 그 재화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만, 즉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의 필요 requirements를 다 충족시키고도 남은 재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보다 먼 미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만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사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 economic gain을 얻을 수 있다.

문명발전의 초기 단계들에 있어서 그리고 문명발전의 모든 새로운 단계의 초기에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최초의 발전자들, 발명가들, 그리고 기업가들)이 처음으로 이전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사용하도록 전환의 계기를 만들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즉 그 이전까지 존재하여 왔지만 아직 인간경제에 있어서 그 어떤 방식으로도 활용되지 못해 왔던 재화들, 따라서 그에 대하여 그 어떤 필요량 requirements도 존재하지 않아 왔던 재화들은

당연히 비경제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유목민들이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는 단계로 전환할 경우, 이전까지는 사용되지 않아 오다가 사람들의 필요 충족을 위해 이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땅과 재료들(예컨대 석회, 목재, 건축 석재 등)은 보통 이러한 전환이 시작된 이후에도 얼마 동안은 계속해서 비경제적 성격(non-economic character)을 갖는다. 따라서 문명의 초기 단계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 충족을 위해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러한 진보적인 시도들은 결코 그(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양이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되는 것은 아니다.

155

하지만 대체적으로 새로운 순위의 재화들을 사용하는 단계로 전환하기 전부터 이런 혹은 저런 생산부문에 있어서 사람들의 필요 충족을 위해 이미 사용되어 왔던, 따라서 그 이전부터 경제적 성격(economic character)을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부류의 보다 높은 순위의 보완재적 재화들(complementary goods)도 있다. 채집경제의 단계로부터 농경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곡식의 종자 및 노동 서비스(labor services)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재화들, 곧 전환 단계에 있는 그 개인이 이전까지는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로서 사용하여 왔던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로서 사용할 수도 있는 이 재화들은 만일 그가 앞서 말한 경제적 이득(economic gain)을 취하기를 바란다면 이제부터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로서 사용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그가 자신의 이용 가능한 재화들을 사용하여 앞서 말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그 재화들을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 혹은 보다 먼 미래 중 어떤 시기에 있어서의 필요 충족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그 자신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편 문명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됨에 따라 이전까지는 비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상당수의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예컨대, 토지, 석회석, 모래, 목재 등등)은 경제적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이 일어날 때 각 개인은 순수한 채집생활만을 할 때와는 달리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사용에 따른(그리고 생산수단들이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로 제한되어 있을 때와는 달리 보다 높은 문명의 단계에 있어서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생산수단으로 사용함에 따른) 경제적 이득(economic gains)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이득은 오직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만, 즉 그가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필요 충족을 위해 쓰여질 일정량의 보다 높은 순위의 경제재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조건, 다시 말해서 그가 자본(capital)을 가지고 있다는 조건 하에서만 얻어질 수 있다(물론 상거래가 이미 활기차게 발전되어 모든 종류의 재화들이 상호 교환되어질 때는 그것이 어떤 종류이건 간에 일정량의 경제재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이 될 것이다).

156

이러한 명제와 함께 이제 우리는 경제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의 하나인 자본의 생산성(productivity of capital)이라는 개념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제가 다음과 같은 의미로, 곧 보다 나중을 위해 그 보다 앞선 시기에 있어 일정량의 경제재들을 지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재들의 양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지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 일정량의 경제재들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필

요를 보다 잘, 그리고 보다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 따라서 이용 가능한 자본 서비스(capital services)의 양이 그에 대한 필요량(requirements)보다 적은 모든 경우에 있어 그것은 하나의 재화(good) 또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의 경제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보다 완전히 충족시키느냐 아니면 보다 덜 충족시키느냐의 여부는 여타 경제재들에 대한 지배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만큼이나 일정 기간 동안에 있어서 일정량의 경제재(곧, 자본 서비스)를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본 서비스(capital services)는 사람들에게 의해 가치를 부여 받는 대상이 되며, 또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듯이 상업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자 지불을 자본의 소유자가 그것을 쓰지 않고 절제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러한 관점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절제는 그 자체 만으로서는 재화적 성격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가치 또한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본이 항상 절제로부터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예컨대, 점차로 증가하는 사회적 필요량으로 인해 이전까지 보다 높은 순위의 비경제재들이 경제적 성격을 갖게 될 때마다) 단지 점유의 결과로써 생긴다. 따라서 이자의 지불은 자본의 소유자가 보여준 절제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하나의 경제재(자본의 사용)와 다른 경제재(예컨대 화폐)간의 교환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하지만 카레이(Carey⁴²)는 정반대의 오류에 빠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나친 검약은

42) 이것은 단지 보다 더 높은 순위의 재화로 간주되어야만 하는 기술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해 보다 더 높은 순위의 다른 재화와 결합됨으로써 인간의 필요

자본의 창출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157 C. 보완재적인 성격을 갖는 일정량의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이 갖는 가치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⁴³)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수적으로 흘러야만 한다. 따라서 경제재들이 생산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자본 서비스를 반드시 지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기간의 길고 짧음은 생산과정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그 어떤 주어진 생산 부문에 있어서든지 간에 그 기간은 인간의 필요 충족에 쓰여질 재화들의 순위가 높을수록 길어진다. 하지만 그 어떤 생산과정에 있어서도 일정한 시간의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기간 중에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경제재들(곧, 자본)의 양은 고정되어 있으며, 여타의 생산 목적을 위해 쓰여질 수도 없다. 하나 또는 일정량의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을 미래의 시점에 있어서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시점에 있어서 그에 대응하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아주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들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반드시 계속해서 보유(사용)할 수 있어야만 하며, 또 그 일정 기간

충족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모든 재화이다. 오직 자본을 사용함으로써만 그리고 선박비용을 부담하고 여러 특수한 노동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만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넘길 수 있는 상품은 보다 더 높은 순위의 재화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투기꾼조차도 자신의 투기 대상에 적어도 자신의 기업가적 활동과 자본서비스, 그리고 종종 저장서비스, 창고료 등등을 추가시킨다.

43) Henry C. Carey, *Principles of social Science*, Philadelphia, 1859, III, 60-61.

동안의 생산과정에 있어서(투입되는) 재화들의 양이 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각각의 특정한 생산과정의 성격에 따라 그 길이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앞장에서 여타 경제재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치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일정량의 경제재를 지배command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보다 낮은 순위의, 어떤 한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이 갖는 현재가치의 합계는 생산 기간 중에 자본 서비스의 가치가 그에 포함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 생산물의 예상가치prospective value와 같아질 수 있다.

158 예를 들어 앞으로 일년 후에 어떤 주어진 양의 곡식을 지배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를 결정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곡식 종자, 토지의 서비스, 전문화된 농업 노동서비스 등의 가치, 그리고 그 주어진 양의 곡식의 생산에 필요한 여타의 모든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는 그 해의 마지막 시점에 있어서의 곡식의 예상가치prospective value와 일치할 것이다. 다만 이는 오직 다음과 같은 (곧 이들 경제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에게 있어 한 해 동안 이러한 경제재들을 지배command한다는 것이 갖는 가치가 그 합계에 포함된다)조건 하에서만 일치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을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자. 즉 그 해의 마지막 시점에 있어서 이용 가능하게 될 생산물의 예상가치prospective value가 100이라고 하고, 그 생산에 필요한 일정량의 보다 높은 순위의 경제재들을 일년 동안 지배command하는 것이 갖는 가치(곧, 자본 서비스의 가치)가 10이라고 하자. 그렇다고 할 때

그 생산물의 생산에 요구되는 모든 보다 높은 순위의 보완재complementary goods들의 가치의 총합은 만일 거기에 자본 서비스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100이 되지 않으며, 단지 90에 머무를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그리고 만일 자본서비스의 가치가 15라면 여타의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현재가치는 단지 85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각각의 개인들에게 있어서 재화들이 갖는 가치는 가격형성price formation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관찰하게 된다. 즉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은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을 생산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⁴⁴⁾ 보완재적인 생산수단들을 구입하는데 있어 결코 (그것들을 이용해 생산하는)생산물의 예상가격만큼을 다 지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그 구매자들은 늘 생산물의 가격 보다 얼마간이라도 낮은 가격만을 그 생산수단들에 부여하려고만 하는 입장에서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판매하는 것은 산출된 수치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생산물의 예상가격prospective price에 대해 할인해주는 것discounting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앞서 말한 논증argument에 의거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159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자신의 수중에 확보하고 있는 한 개인은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을 지배(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 생산과정의 특성에 따라 좀 더

44) Leopold v. Hasner, *system der politischen oekonomie*, prag, 1860, I, 29.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라야만 그는 낮은 순위의 재화들을 지배(소유)할 수 있다. 만일 그가 자신이 갖고 있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그에 대응되는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과 지금 당장 교환하기를 원한다면, 또는 - 발전된 거래 관계 속에서는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지만 - 만일 그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화들을 그에 상응하는 화폐량과 교환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분명 다음과 같은 사람, 곧 미래의 어느 한 시점(예컨대 6개월 후)에 일정량의 화폐를 받기로 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과 매우 유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만일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에 대한 소유자가 그 재화들을 제 3자에게 넘기고자 하면서 단지 그 생산과정이 끝난 후에나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아무런 “할인효과discounting”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재화들이 외상(신용)으로 팔릴 경우 그 가격들은(위험에 따른 프리미엄과는 별도로) 양자간에 합의된 지불날짜가 현재로부터 먼 미래에 있을수록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또한 왜 사람들의 생산활동이 신용에 의해 크게 촉진되는지를 설명해준다. 수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신용거래credit transactions란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다른 사람들, 곧 그것들을 그에 대응하는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로 전환시키는 사람들에게로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직 신용을 통해서만 생산 그 자체가 가능하거나, 또는 적어도 이전 보다 많은 수량의 조립이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용의 흐름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생산 활동의 중단과 단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로의 전환과 정 역시 만일 그것이 여타 측면들에 있어서 경제적이라고 한다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개인에 의해 마음속에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 항상 계획되고 수행되어야만 한다. 이 개인은 내가 이제까지 말해 왔던 그 경제적 계산economic computations을 완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생산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술적인 노동서비스technical labor services를 포함시키는 가운데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실제로 한데로 모아야만(또는 그것들이 한데로 모이도록 해야만) 한다. 이러한 소위 기업가적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y 속에 어떠한 기능들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제기된 바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즉 기업가 자신의 기술적인 노동서비스는 생산목적을 위해 그가 자신의 수중에 확보하고 있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그는 자신의 기술적인 노동서비스에 - 다른 사람들의 서비스들에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 생산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한다. 잡지사의 사주는 종종 자기 자신의 잡지에(예컨대 글을 씀으로써) 기여한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는 종종 자기 자신의 공장에서 일을 한다. 그들 각각은 다 하나의 기업가이다. 그러나 그들이 기업가인 것은 그들이 생산과정 속에 기술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지 기초적인 경제적 계산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특정한 생산 목적들에 할당하는 실제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기업가적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포함된다. (a) 경제 상황에 관한 정보 획득; (b) 경제적 계산 - 하나의 생산과정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만일 그것이 여타 측면에 있어서 경제적이라면) 수행되어야만 하는 모든 다양한 계산들; (c)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또는 - 그 어떤 경제재라도 그 어떤 다른 재화와 교환될 수 있을 정도로 상업이 발전했다는 조건 하에서는 - 일반적인 재화들)을 특정한 생산과정에 할당시키는 의지적 행동act of will; (d) 생산이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계획의 실행과정에 대한 감독supervision. 작은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업가적 활동에 쓰여지는 시간은 엄청나서 보통 기업가가 쓸 수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마련이다. 대기업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가 자신뿐만 아니라 종종 여러 명의 조력자들의 역시 이러한 활동들에 완전히 전념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들 조력자들이 활동들이 아무리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열거한 네 가지 기능들은 기업가의 행동들에 있어서 항상 관찰될 수 있다. 설사 그러한 기업가적 활동들이(법인의 경우에 있어서처럼)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 곧 단지 일반적인 범주에 따라 부wealth의 일정 부분들을 특정한 생산적인 목적에 할당하는 것을 결정하는 역할, 그리고 사람들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역할에 국한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에 비추어 볼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즉 나는 생산과정에 있어서 기업가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험감수risk bearing라고 주장하는 만골트 Mangoldt⁴⁵⁾에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험risk은 단지 부수적인incidental 것일 뿐이며 손실을 입을 기회는 이익을 얻을 기회와 상쇄되기 때문이다.

문명의 초기 단계들에 있어서, 그리고 소규모 제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후까지도 기업가적 활동은 보통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일인에 의해 수행되며, 이때 이 기업가의 기술적인 노동 서비스 또한 생산과정 중에 쓰여지는 생산요소의 하나를 구성한다. 분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리고 기업들의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기업가적 활동은 종종 기업가의 모든 시간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업가의 기술적 노동서비스가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생산)요소인 것처럼 기업가적 활동 역시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생산)요소가 된다. 따라서 그것은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와 같은 성격을 가지며 가치 또한 갖는다. 왜냐하면 여타의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일반적으로 경제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일정량의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현재가치를 결정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생산물의 예상가치prospective value는 오직 기업가적 활동의 가치가 총 가치 중에 포함되는 조건 하에서만 그러한 모든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총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제 이 장에서 얻은 결과들을 요약해보자. 보다 낮은 순위 혹은 첫 번째 순위의 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일정량의(보완재적 성격의) 모든 보다 높은 순위의 모든 재화들(즉 모든 원재료들, 노동 서비스들, 토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 기계들, 도구들 등등)의 현재가치는 생산물의 예상가치prospective value와 동일하다. 다만 이때 그 합계 속에는 생산물의 생산을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활동 및 자본서비스 역시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역시 이미 지적인 기술적인 필수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필

45) H. v. Mangoldt, *Die Lehre vom Unternehmerngewinn*, Leipzig, 1855, pp.36ff.

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의 기술적 요소들의 현재가치는 그 자체만으로는 생산물의 예상가치(prospective value)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자본 서비스 및 기업가적 활동의 가치가 항상 그 차이를 메우게 된다.

162 D. 보다 높은 순위의 개별적 재화들의 가치

한 특정한 재화(또는 주어진 일정량의 재화들)를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있어 그 특정한 재화가 갖는 가치는, 만일 그가 그것을 갖지(지배하지) 못했다면 포기해야만 했을 (필요) 충족에 그가 부여하는 중요성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이로부터 우리는 쉽게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 곧 보다 높은 순위의 한 재화는 그 자체만으로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될 수 없으며,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는 다른 재화들(곧, 보완재들)과 결합하는 조건에서만 인간의 필요충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논외로 한다면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각 단위가 갖는 가치는 그 단위를 지배(소유)함으로써 보장되는(필요)충족이 갖는 중요성과 일치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견해란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들의 충족 여부는 하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재화(또는 어떤 한 종류의 재화의 구체적인 일정량)에 대한 우리의 지배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재적인 성격을 갖는 일정량의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에 대한 우리의 지배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오직 보완재적인 성격을 갖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집합체만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있어 독립적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물론 우리가 오직 보완재적인 성격을 갖는 일정량의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통해서만 일정량의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것은, 그 다양한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이 생산과정에 있어서 항상 고정된 비율로(즉, 어떤 주어진 화학적 복합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직 일정한 무게의 한 물질과 역시 일정하게 주어진 무게만큼의 다른 물질이 결합해야만 하는 화학적인 반응의 경우에 있어서나 관찰될 수 있는 그러한 고정된 비율로) 결합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다. 가장 일상적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도록 해준다. 즉 보다 낮은 순위의 어떤 한 재화의 주어진 수량이, 서로 간에 매우 다른 양적 관계를 맺고 있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로부터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있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이 여타의 몇몇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그룹과 보완재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할 때, 전자가 전혀(생산과정에) 투입되지 않아도 나머지의 보완재적인 성격의 재화들이 가지고 있는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를 생산하는 능력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는다. 토지 서비스, 종자, 노동서비스, 비료, 농업용 기구들의 서비스, 등등은 곡식을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음과 같은 사실(곧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일상적으로 쓰는 농업용 기구들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곡식의 생산에 사용되는 여타의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을 그 만큼 더 늘린다면 동일한 양의 곡식이 생산될 수 있다는)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63 만일 우리가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 (곧 보다 낮은 순위의 재

화들을 생산함에 있어서 보다 높은 순위의 몇몇 보완재적 성격의 재화들의 투입이 생략될 수 있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자주 다음과 같은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주어진 생산물들이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양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생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산물들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들의 비율이 실제로 변하고 있거나 변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 곧 동일한 토질을 가지고 있는 경작지에서조차 어떤 주어진 양의 곡식을 생산하기 위해 보다 넓은 크기의 면적이 사용될 수도 있고 보다 적은 크기의 면적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는 그 경작지가 보다 집약적으로 경작되는가 아니면 덜 집약적으로 경작되는가 다시 말해서 보완재적 성격의 여타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이 보다 많이 생산에 투입되었는가 아니면 보다 적게 투입되었는가에 좌우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비료가 부족하다고 할 때 이는 보다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보다 좋은 기계를 씌으로써, 또는 보다 집약적인 노동 서비스의 투입을 통해 보완되어질 수 있다. 다른 모든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만일 이 재화들의 수량이 감소하여 부족할 경우 여타 보완재들을 그 만큼 더 많이 투입함으로써 보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이 여타의 보완재들의 일정량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조차, 그리하여 보다 높은 순위의 어떤 특정한 재화의 수량이 감소할 때 그러한 양적인 감소가 그에 대응하는 생산물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예컨대 어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차, 이 생산물이 부족한 상태라면 그것의 생산에 쓰이는 일정량의 여타 생산 수단들의 가치는 사

라지지 않는다. 그 생산 수단들은 보통의 경우 다른 소비재들의 생산에 계속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필요들을 충족시키는데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충족되는 필요들needs은 보통, 만일 현재 부족상태에 있는 그 일정한 양만큼의 보완재들이 보충되어 원래대로 생산에 투입되었다면 충족되었을 필요들보다는 덜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164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 주어진 일정량의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그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일정량의 생산물에 대한 지배(소유)가 아니다. 대개의 경우 그것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단지 그 생산물의 일정 부분이거나 그것의 보다 높은 품질일 뿐이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는 하나의 특정한 재화의 주어진 양이 갖는 가치는, 그것이 생산해내는 총생산물에 기초하고 있는(인간의 필요) 충족이 갖는 중요성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충족, 곧 만일 우리가 그 주어진 양의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를 지배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생산되지 못했을 (총생산물 중) 일정 부분의 생산물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필요) 충족이 갖는 중요성과 일치할 뿐이다. (생산에)사용될 수 있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의 양이 감소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생산물의 수량의 감소가 아니라 품질 저하일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는 한 재화의 주어진 양이 갖는 가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충족이 갖는 중요성간의 차이와 동일하다. 즉 보다 높은 품질의 생산물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필요)충족이 갖는 중요성과 보다 낮은 품질의 생산물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충족이 갖는 중요성간의 차이와 일치한다. 따라서 앞서 본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

는 어떤 특정한 재화의 주어진 양에 대한 지배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그 주어진 재화의 양이(다른 보완재들과 더불어) 생산해내는 총생산물에 의해 제공되는 충족이 아니라 단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중요성만을 갖는 충족일 뿐이다.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는 어떤 특정한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할 때 - 그러한 감소로 인해 생산물(예컨대 어떤 화학복합물)의 양 역시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차 - 보완재적 성격을 갖는 일정량의 여타 재화들(역시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는)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 재화들과 보완재적인 관계에 있던 생산요소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들은 보다 낮은 순위에 속하는 여타 재화들의 생산에 계속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의 필요의 충족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러한 필요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아마도 약간 덜 중요성을 갖는 필요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는 어떤 특정 재화의 부족으로 인해 잃게 되는 생산물의 총가치가 이 특정 재화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이 특정 재화의 가치는 단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충족간의 중요성의 차이, 곧 우리가 그 가치를 결정하고자 하는 그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를 지배할 경우 얻게 될 충족이 갖는 중요성과, 만일 그 재화를 지배하지 못할 경우 결국 얻게 될 충족이 갖는 중요성간의 차이에 해당할 뿐이다.

165 이러한 세 가지 경우들을 요약해 보면, 우리는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는 어떤 한 재화의 구체적인 수량이 갖는 가치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일반적인 법칙을 얻게 된다.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는 모든 이용 가능한 재화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는 한 재화의

구체적인 일정량이 갖는 가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충족들이 갖는 중요성간의 차이, 곧 우리가 그 가치를 결정하고자 하는 보다 높은 순위의 일정량의 재화를 지배(소유)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충족이 갖는 중요성과 우리가 그 일정량의 재화를 지배(소유)하지 못했을 경우 궁극적으로 달성되어질 충족이 갖는 중요성간의 차이와 일치한다.

이 법칙은 가치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과 정확히 부합된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서 우리가 본 법칙에 있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차이라는 것은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는 어떤 한 주어진 재화에 대한 우리의 지배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충족들이 갖는 중요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제 이 법칙을 일찍이 앞에서 언급했던 것, 곧 하나의 소비재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일정량의 보완재적인 성격의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치에 대해 언급했던 것과 연관 지워 검토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원리를 얻게 된다.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는 한 재화의 가치는 (1) 생산에 필요한 여타 보완재들의 가치가 동일한 채로 있다면 생산되는 생산물의 예상가치(prospective value)가 클수록 크며 (2)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보완재들(complementary goods)의 가치가 작을수록 클 것이다.

E. 토지서비스 및 자본서비스, 그리고 특히 노동서비스의 가치

토지는 재화들 중에서 전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한다. 만일 그것이 소비재(장식용 정원, 사냥터, 등등)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첫 번째 순위의 재화이다. 만일 그것이 다른 재화들의 생산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다른 많은 재화들처럼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이다. 따라서 토지의 가치 또는 토지서비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토지서비스의 가치는 가치결정의 일반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만일 일정한 면적의 토지가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의 성격을 가질 경우 그것의 가치는 내가 앞 절에서 설명했던 보다 높은 순위의 가치 결정법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166 많은 경제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 곧 토지의 가치는 결코 노동 또는 자본서비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로부터 토지에 예외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도출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갖는 방법론적 결함은 쉽게 발견된다. 많은 그리고 중요한 현상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다루는 일반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은 그 과학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산 증거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음과 같은 주장, 즉 본질에 있어서는 그것과 정확하게 유사한 여타의 모든 관찰 대상들로부터 한 그룹의 현상들을 분리하여 그 두 그룹의 각각에 적용할 특수한 원리들principles을 만들어내려는 가장 미심쩍은 방법론적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수에 대한 인식은 보다 최근 들어 토지와 토지서비스를 여타 모든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이론체계의 틀 내로 끼워 맞추려는, 그리하여 그것들의 가치 및 사람들이 책정하는 가격의 근거를 - 이미 받아들여진 이론들⁴⁶⁾과 부합되도록 - 인간노동

또는 자본서비스로부터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재화들에 대해, 그리고 특수하게는 토지에 대해 그와 같은 시도들이 범했던 잘못은(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명백하다. 한 구획의 땅은 수많은 인간노동의 투입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바다를 막음으로써 얻어질 수도 있고, 강의 범람으로 인한 토사의 퇴적으로 인해 아무런 노동의 투입이 없이 얻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원래 정글로 뒤덮여 있거나 돌들만 있던 곳으로서 엄청난 노력과 경제적인 대가를 치른 덕택에 개간된 곳일 수도 있고 애초부터 나무가 전혀 없는 비옥한 곳이었을 수도 있다. 그 땅의 과거 역사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은 그 땅의 자연적인 비옥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며, 또한(그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경제재들을 그 땅에 투입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리고 경제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하지만 토지와 관련한 일반적인 경제적 연관관계들general economic relationships, 그리고 특히 그것의 가치가 이슈가 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토지의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반적인 경제적 연관관계들, 그리고 특히 가치는 단지 우리의 미래의(필요)충족을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인해 재화들이 우리에게 있어 갖게 되는 중요성하고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다. 즉 내가 토지서비스를 언급할 때에는 언제나 인간경제에 있어 우리가 실제로 발견하는 대로의 토지의 일부분의 서비스, 특히 일정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그 양이) 측정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는 것이며, 결코 토지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 능력original power의 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만이 인간의 경제적 행위의 대상objects of

46) N.F.Canard, *Principes d'économie politique*, Paris, 1901, pp.5ff.; Carey, *op.cit.*, III, 131ff.; Frédéric Bastiat, *Harmonies économiques*, in *Oeuvres complètes de F. Bastiat*, Paris, 1893, VI, 297ff.; Max Wirth, *Grundzüge der National-Oekonomie*, Köln, 1871, I, 284ff.; Hermann Roesler,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Rostock, 1864, pp.500-513.

human economizing이기 때문이며, 후자는 많은 구체적인 경우들에 있어 기껏해야 가망이 없는 역사적 탐구의 대상에 불과하며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economizing men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어떤 농부가 일년 혹은 몇 년 동안 한 구획의 땅을 임차할 경우 그는 그 땅이 비옥한 것이 온갖 종류의 자본 투자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비옥한 것인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러한 환경들은 그가 그 땅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구획의 토지를 사려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사려고 하는 토지의 미래이지 그 과거가 결코 아닌 것이다.

167 따라서 토지 또는 토지서비스의 가치를 노동서비스 또는 자본서비스로 환원시킴으로써 설명하고자 하는 보다 최근의 시도들은 단지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에 대한 - 널리 유포되어 있는 - 잘못된 이해들과(많은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이론인 지대이론(상대적으로 현실생활에서 보는 현상들과 가장 덜 모순적인 경제학의 일부분)이 상호 일관성을 갖도록 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대이론, 특히 리카아도⁴⁷⁾에 의해 제시된 형태의 지대이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더욱 더 비판받아야만 한다. 사실 리카아도Ricardo의 지대이론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토지서비스의 가치를 설명하는 원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⁴⁸⁾ 단지 토지의 가치에 있어서의 차이 및 그와 연관성을 갖는 하나의 고립된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고

47) Ricardo,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ed. by E.C.K.Gonner, London, 1891, pp.44-61 and 392-420.

48) Karl Rodbertus, *Zur Beleuchtung der sozialen Frage*, Berlin, 1890, I, 89ff.

립된 요소를 원리principle로 내세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일정한 양의 토지의 위치 및 비옥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토지서비스 및 토지 자체의 가치에 있어서의 차이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들 이외에도 이 재화들의 가치에 있어서의 차이를 초래하는 다른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비옥도 및 위치에 있어서의 차이는 이러한 다른 요인들을 초래하는 요인이 아니며 토지 및 토지서비스의 가치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원리는 더욱 더 아니다.

168 만일 모든 토지들이 동일한 비옥도를 가지고 있고 또 모두가 똑같이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토지들은 리카아도에 따르면 전혀 지대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토지들이 가져다주는 지대들간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단 한가지 요소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지대 그 자체 및 지대들간의 모든 차이가 필연적으로 사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토지가 부족한 나라에 있어서의 가장 덜 비옥한, 그리고 가장 나쁜 곳에 위치해 있는(일정량의) 토지조차 지대를 - 곧 리카아도의 이론에서는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지대를 - 가져다주리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관찰하는 구체적인 형태에 있어서 토지와 토지서비스가 다른 모든 재화들에 대한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평가의 대상들이다. 다른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토지서비스는 우리의 필요충족이 어느 정도로 그것들에 대한 지배 여부에 의해서 좌우되는가에 따라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일반적인 재화들의 가치를 탐구하는 과정

에서⁴⁹⁾ 우리가 일찍이 보았던 요소들과 동일하다. 따라서 토지 및 토지서비스의 가치들의 차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는 오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만 (즉 경제학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토지 및 토지서비스를 접근함으로써만, 그리고 그것들이 보다 높은 순위 재화인 한 그것들을, 그것들과 대응하는 보다 낮은 순위 재화들과 연관 지음으로써만 그리고 특히 그것들의 보완재들과 연관 지음으로써만) 얻어질 수 있다.

169 앞 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 곧 어느 한 소비재의 생산에 필요한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여기에는 자본서비스 및 기업가적 활동도 포함됨)의 가치의 합계는 그 생산물의 예상가치(prospective value)와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토지 서비스들이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투입된다면, 이러한 토지 서비스들의 가치는 여타 보완재들의 가치와 합칠 경우 그것들에 의해 생산되는 보다 낮은 순위의 재화 또는 첫 번째 순위의 재화의 예상가치와 일치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가치가 보다 높은지 또는 보다 낮은지에 따라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보완재들의 총가치 역시 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이다. 다른 재화들의 가치와 분리되어 일정량의 토지 또는 토지서비스가 따로 독립적으로 갖는 가치에 관한 한, 그것은 - 여타의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는 재화들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즉, 다른 조건들이 불변일 경우 보다 높

은 순위에 속하는 한 재화의 가치는 (1) 생산물의 예상가치가 클수록 커질 것이며, (2) 역시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는 보완재들의 가치가 작을수록 커질 것이라는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⁵⁰⁾

따라서 토지서비스의 가치는 기계서비스, 도구서비스, 주택서비스, 공장서비스 등의 가치, 또는 그 외의 그 어떤 종류의 경제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법칙들과 다른 어떤 법칙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여타 수많은 종류의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토지 및 토지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토지는 일정한 양만큼만 이용 가능하며 그 양은 쉽게 증대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토지는 또한 그 위치에 있어서도 고정적이다. 그리고 그 등급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다양하다. 토지 및 토지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치 현상들의 모든 특수성들의 유래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로부터 찾아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효용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특수하게는 어떤 영토내의 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의 질과 수량하고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성들은 가치결정에 있어서 꼭 토지 및 토지서비스의 가치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기인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바로 모든 재화들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가치는 아무런

49) Rodbertus(*op.cit.*, pp.117ff.)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자본 및 토지의 소유자들이 노동의 산물의 일부를 노동자들로부터 취하고 그럼으로써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제도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잘못된 가정, 곧 생산과정의 모든 결과가 노동의 산물로서 간주되어야만 한다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 하지만 노동서비스들은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여러 (생산)요소들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토지서비스 및 자본서비스를 포함한 여타 생산요소들보다 더 높은 정도로 생산에 기여하는 경제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자본가들과 지주들은, 그들이 노동자들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노동서비스와 똑같이 개인들 및 사회에 있어 가치를 갖는 자신들의 토지서비스 및 자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50) 한 평의 토지의 가치는 그 토지서비스의 기대가치(the expected value of its services)에 의해 결정된다. 한 평의 토지의 가치는 미래의 모든 토지서비스의 기대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토지서비스의 기대가치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본서비스의 가치가 보다 적어질수록, 토지의 가치는 보다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뒤에서, 재화의 가치가 그 재화들의 가격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토지의 가격이 경제적인 성장기에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토지임차의 증대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차율의 하락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성격도 갖지 않는다.

170 노동서비스labor services의 가격은 토지서비스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결코 그것들의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요소들의 가격에서 유래되어 질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부류의 가격들과 관련하여 특수한 원리들을 확립하도록 이끌었다. 가장 평범한 노동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을 부양해야만 한다고 말해진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그의 노동서비스는 영구적으로 사회에 기여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의 노동은 그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것만을 그에게 제공한다고 말해진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의 수는 증가할 것이고 이는 다시 노동서비스의 가격을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서는 최소생계비minimum of subsistence가 가장 평범한 노동의 가격을 규정하는 원리이다. 한편 다른 노동서비스들의 보다 높은 가격들은 그것들을 자본투자 또는(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능력 때문에 지불되는 지대에 환원시킴으로써 설명되어진다.

하지만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전혀 쓸모 없는 심지어는 해롭기조차 한 노동서비스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재화가 아니다. 또 다른 노동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재화적 성격goods-character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경제적 성격economic character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전혀 가치를 갖지 못하는 노동서비스들이다(이런 혹은 저런 이유로 인해 그 사회에 너무나 많은 이용 가능한 양이 있어 비경제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모든 노동서비스들 - 예컨대 봉급이 지불되지 않는 일과 연관된 노동서비스들 - 이 두 번째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듯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노동서비스들은 가격 또한 가질 수 없다. 따

라서 노동서비스들은 단지 그것들이 노동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재화가 되거나 경제재가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가치를 갖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모든 노동서비스가 항상 하나의 가격을 갖는 것이 아니며 항상 어떤 특정한 가격을 갖는 것은 더욱 아니다.

경험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많은 노동서비스들이 가장 필수적인 생계수단과도 교환될 수 없는⁵¹⁾ 반면, 한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양보다 열 배, 스무 배, 심지어는 백 배만큼의 재화들이 다른 노동서비스들과 쉽게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 사람의 노동서비스들이 실제로 단지 그의 생계수단하고만 교환되는 경우, 그것은 그의 노동서비스가 가격형성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 그 특정한 가격과 교환되는 어떤 우연적인 환경의 결과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 노동자의 생계수단이 노동서비스의 가격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결정원리가 될 수 없으며 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비 역시 노동서비스의 가격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결정원리가 될 수 없다.⁵²⁾

171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듯이, 현실에 있어서 실제 노동서비스의 가격은 다른 모든 재화들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노동서비스의 가치values에 의해 규정된다. 그런데 노동서비스의 가치는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지배(소유)하지 못할 경우 달성되지 못한 채

51) 베를린에서 하루에15시간을 일하는 한 명의 여자 재봉사는 자신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만큼도 별지 못한다. 그녀의 소득은 식료품과 집세 그리고 장작을 살 수 있는 돈 정도에 불과하다. 설사 그녀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녀는 의상을 살 만큼의 돈을 벌 수는 없다.(Camap, in *Deutsche Vierteljahrsschrift*, 1868, part II, p.165). 이와 유사한 조건들은 대부분의 여타 대도시들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52)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그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그의 소득이 그의 생활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이상스러운 혼동 속에서 후자와 같은 논리가 종종 주장되어 왔다.

남아있을(필요)충족들이 갖는 중요성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서비스가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에 속할 경우 노동서비스의 가치는 다음의 원리, 곧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는 한 재화의 가치는 (1) 보다 높은 순위에 속하는 보완재들의 가치가 일정하다면 생산물의 예상가치가 클수록 커질 것이며, (2)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보완재들의 가치가 작을수록 커질 것이라는 원리에 따라(거의 그리고 직접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노동서비스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노동서비스의 한 특수한 성격은 다음과 같은 사실, 곧 몇몇 가지의 노동서비스들은 노동자에게 불유쾌한 연상을 가져다준다는 것, 따라서 그것을 보상하는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경우에만 이러한 서비스들이 수행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노동서비스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비경제적인 성격을 쉽게 획득할 수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있어 활동하지 않는 상태inactivity가 갖는 가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직업적인 업무는 그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며 따라서 그것 자체가 그들의 필요를 진정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사람들이 생계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하도록 강요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조차 사람들은 아마도 보다 적은 정도라도 혹은 수정된 방식으로라도 직업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모든 정상적인 인간에 있어서 하나의 필요need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제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일을

한다는 사실은 노동의 불유쾌함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실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remunerative 노동에 참여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72 기업가적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y은 분명히 노동서비스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대체로 하나의 경제재이며 그 자체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치value를 갖는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노동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a) 그것들은 본질상(교환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들이 아니며, 따라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무런 가격을 갖지 않는다; (b) 그것들은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서 자본서비스들을 지배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실행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요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기업가적 활동의 양을 제한한다. 만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제의 개인들이 많은 양의 자본서비스를 수중에 확보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양의 기업가적 활동에만 제약을 가할 것이다. 신용credit은 그 수량을 증대시키며 법적 불확실성legal uncertainties은 그 수량을 감소시킨다.

자본서비스services of capital의 가격이 문제가 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생산에 투입되는 보다 높은 순위의 재화들의 가격에 의해 재화들의 가격을 설명하는 이론의 부적합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나는 이 장의 초반부에서 이러한 재화들의 가치 및 그것들이 갖는 경제적 성격의 궁극적인 원인들을 설명하였으며, 자본서비스의 가격을 자본 소유자의 절제(행위)에 대한 하나의 보상으로서 설명하는 이론이 갖는 오류를 지적하였다.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본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얻어질 수 있는 가격은 여타의 재화들의 가격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자본서비스가 갖는 경제적 성격economic character의 결과일 뿐이며, 따라서 그것이 갖는 가치value의 결과일 뿐이다. 자본서비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원리는 일반적인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원리와 동일하다.⁵³⁾

173 토지서비스, 자본서비스, 그리고 노동서비스의 가격 등은, 또는 달리 표현하여 지대, 이자, 그리고 임금 등은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듯이) 결코 노동의 양 혹은 생산비용costs of production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이론들에 대한 옹호자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 종류의 재화들에 있어서의 가격형성의 원리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렇게 개발된 원리들은 여타의 모든 재화들에 적용되는 원리들과는 전혀 다른 원리들이었다. 앞 절에서 나는 모든 종류의 재화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곧 가치에 관한 모든 현상들은 그 본질과 기원에 있어서 동일하며 가치의 크기는 항상 동일한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더구나 다음 두 장에서 보게 되듯이 한 재화의 가격price은 경제적 효용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것이 갖는 가치value의 결과이며, 따라서 그것이 갖는 가격의 크기는 항상 그것이 갖는 가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지대, 이자 및 임금은 모두 동일한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또한 명백해진다. 하지만 이 절에서 나는 단지 토지서비스, 자본서비스 및 노동서비스의 가치만을 다루었다. 나

는 여기서 얻어진 결과들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원리들, 곧 그 원리들에 따라 이들 세 가지 재화들의 가격들이 결정되는 그러한 원리들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전에 먼저 일반적인 가격이론을 설명할 것이다.

과학적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이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대와 이자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또는 그것들이 비윤리적immoral인가 하는 문제이다. 경제학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임무 즉, 왜 그리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 토지서비스와 자본서비스가 경제적 성격을 드러내며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지, 그리하여 일정량의 다른 재화들(곧 가격에 해당함)과 교환되어 질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갖는 법적 혹은 윤리적 성격에 관한 문제는 경제학의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토지서비스와 자본서비스가 하나의 가격을 갖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항상 그것들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어 갖는 가치는 임의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들이 갖는 경제적 성격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들(곧, 토지서비스와 자본서비스)의 가격은 그것들이 발생하는 일정한 경제적 상황의 필연적 산물이며 한 나라의 법률 시스템이 더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나라의 사회 윤리가 올바르게 올수록 그만큼 더욱 더 확실하게 얻어질 것이다.

174 인간애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 곧 종종 자본 혹은 한 구획의 땅에 대한 소유가 주어진 일정한 기간동안에 그 소유자에게 높은 수입, 곧 노동자가 동일한 기간 동안에 가장 강도

53)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듯이, 자본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형성 price formation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자본서비스들이 보통 자본 그 자체를 자본서비스를 사는 사람의 손으로 넘기지 않고서는 판매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로 인해 자본의 소유주로서는 프리미엄 premium으로 보상되어야만 하는 위험risk을 떠 안게 되는 것이다.

높은 노동을 한 대가로 받는 수입보다도 높은 수입을 얻도록 해준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운 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보다 중요성을 갖는 필요의 충족이 노동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주어진 양의 자본 혹은 주어진 구획의 토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다 더 좌우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소비재들 중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몫이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선동은 실제로는 노동에 대해 그것이 갖는 가치보다 더 많이 지불하라는 요구일 뿐 그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보다 높은 임금에 대한 요구가 노동자들의 보다 철저한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과 병행되지 않는다면, 혹은 그런 요구가 보다 더 자유로운 경쟁에 대한 옹호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노동자들의 서비스가 그 사회에 있어서 가지는 가치에 따라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보다 안락한 생활 수준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생계부담 및 소비재에 대한 보다 평등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의 문제 해결은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의 사회질서에 대한 완전한 변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⁵⁴⁾

54) Schüz, Ueber die Renten der Grundeigenthümer und den angeblichen Conflict ihrer Interessen mit denen der übrigen Volksklassen, Zeitschrift für die gesammte Staatswissenschaft, XI(1855), 171ff. 참조

1. 경제적 교환의 기초들

한가지 물건을 다른 물건과 거래하고

물들에게서도 발견되지 않는 성향이 확실하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다.⁵⁵⁾

먼저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즉 서로 이웃하고 있는 두 농부가 풍작으로 인해 각각 동일한 종류의 보리를 아주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며, 이 둘 간에 보리를 교환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아무런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두 농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 곧 거래하고자 하는 경향이 마음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서로간에 마음대로 보리를 그것이 100부셀bushels 이든 혹은 어떤 다른 양이든 간에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만일 재화들을 교환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이들 교환 당사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이들이 거래를 그만둬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가 서로간에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나는 믿는다. 만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교환행위를 해야만 한다면,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거래를 즐긴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다른 개인들에 의해서 정신이 나간 사람insane으로 간주될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즉 한 사냥꾼이 가죽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고, 따라서 옷을 만들 재료를 풍부히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반면에 그가 식량은 아주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옷에 대한 그의 필요는 완전히 충족되겠지만 식량에 대한 그의 필요는 매우 불충분한 정도로만 충족될 것

55) Adam Smith, *op.cit.*, p.13. 참조

이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농부는 그와 정확히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또한 이 때 사냥꾼의 식량과 농부의 옷 재료를 서로 교환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이들 재화들간의 교환이 일어날 가능성은 첫 번째 경우보다도 훨씬 적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만일 사냥꾼이 자신의 부족한 식량 중 일부를 역시 충분치 못하게 농부가 가지고 있는 가죽 중의 일부와 교환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남아돌던 사냥꾼의 옷 재료와 역시 그렇지 않아도 남아돌던 농부의 식량은 교환 전보다 더 많이 남아돌게 될 것이다. 식량에 대한 사냥꾼의 필요 충족과 의복에 대한 농부의 필요 충족이 이미 불충분하게 이루어져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 두 거래자의 경제적인 지위는 결정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두 사람이 그와 같은 교환에서 즐거움을 경험했으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 오히려 사냥꾼과 농부가 모두 자신들의 후생수준을 결정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또는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 거래에 참여하기를 강력하게 거부할 것임이 무엇보다도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교환이 이루어졌다면 이 두 사람에게 있어 그것을 취소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거래 성향은 거래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에서 그 이유가 찾아져야 할 것이다. 만일 거래행위가 그 자체로 즐거움이라면, 따라서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라면, 그리고 위험 및 경제적 희생과 연관되어 있는 고된 활동이 아니라면, 우리가 방금 살펴 본 경우에 있어서나 그

177 밖의 다른 수 천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인간이 거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인간이 수 없이 거래하고 다시 그 거래를 물리고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교환을 사전에 주의 깊게 고려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두 개인이 그 이상으로는 거래를 더 계속하지 않게 되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교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또한 교환 그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 즐거움인 것은 더욱 아니란 점이 분명히 밝혀졌으므로 앞으로의 문제는 교환의 본질과 기원을 설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가장 간단한 경우에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자. 즉 A와 B라는 두 농부가 이전부터 각자 독립적으로 가정 경제를 꾸려왔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이라고 할만한 풍작으로 인해 농부 A는 자신의 필요 충족을 위해 아무리 헐뜯게 쓴다 할지라도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쓸 수 없는 만큼의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다고 하자. 한편 이웃에 사는 농부 B 역시 같은 해에 매우 훌륭한 포도주를 생산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이 농부의 포도주 저장고는 이미 지난해부터 꽉 채워져 있었다고 하자. 따라서 생산된 포도주를 담아 놓을 추가적인 용기(containers)가 부족한 이 농부는 포도수확이 좋지 않은 해에 담았던 낡은 포도주의 일부분을 쏟아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각각의 농부에게 한 재화는 남아돌고 다른 재화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고 하자. 즉 곡식이 남아도는 농부는 포도밭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에 포도주를 전혀 소비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활해야 한다. 그리고 포도주가 남아도는 농부는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농부 A는 한편에 있어서는 한 통keg의 포도주만 있다면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수많은 부셸bushel의 곡식을 밭에서 그냥 썩게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농부 B는 한편에 있어서는 단 몇 부셸bushel의 곡식만 있으면 가족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아쉬운 상황에 있으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한 통keg만이 아닌 여러 통의 포도주를 버리려고 하는 상황에 있다. 첫 번째 농부는 술을 갈망하고 있으며 두 번째 농부는 굶주리고 있다. 즉 두 사람 모두 농부 A가 자기 밭에서 썩도록 내버려 둘 곡식과, 농부 B가 쏟아 버리기로 마음먹은 포도주에 의해 각각 갈증과 굶주림을 해소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은 술에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다른 한 사람은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부 A는 식량에 대한 자기 자신 및 자기 가족의 필요를 계속해서 전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그에 더해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고, 농부 B는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포도주를 즐길 수 있으면서도 더 이상 굶주릴 필요가 없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면하였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즉 일정 양의 A의 재화에 대한 지배command가 B로 이전된다면 그리고 일정 양의 B의 재화에 대한 지배command가 A로 이전된다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두 사람의 필요는 이러한 상호간의(재화의) 이전이 없었던 경우보다 모두 훨씬 더 잘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다.

178 내가 방금 설명한 경우, 즉 교환하기 전에는 각자에게 있어 가치

를 갖지 않던 재화를 상호 이전시킴으로써 두 사람의 필요가 이전보다 더 잘 충족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어느 쪽에게도 아무런 경제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이 경우는 거래에 이끄는 경제적인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명쾌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주는 아주 적절한 예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의 관심을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만 한정시킬 경우, 즉 한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첫 번째 재화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두 번째 재화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이 두 번째 재화는 비교적 넘치게 갖고 있는 대신 첫 번째 재화가 부족한 그런 경우들에만 한정하는 경우, 우리는 이(경제적) 관계를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의 이(경제적) 관계는 다음과 같이 그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 즉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정량의 재화들이 두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정량의 또 다른 재화들보다 적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 두 번째 사람은 정 반대의 위치에서 정 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들에 있어서도 역시 관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로서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고립적으로 살아 온 두 사람의 농부 중 첫 번째 사람은 곡식 중의 일부를 밭에서 썩게 내버려 둘 수 있을 만큼의, 그러면서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양의 곡식을 추수하지 못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두 번째 농부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포도주 중의 일부를 쏟아 버릴 정도의, 그러면서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킴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양의 포도주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가정하자. 그 대신에 이들 각각은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그 재화의 총량을 어느 정도 유용하게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농부는 자신의 보다 중요한 필요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뒤에 남게 되는 곡식 전부를 자신의 가족들을 먹이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농부는 쏟아 버려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의 포도주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다 수고한 노예들에게 상으로 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포도주는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곡식을 재배하는 농부에게 있어 자신이 가진 곡식의 일정 양(예컨대, 한 부셴), 그리고 포도나무 재배자에게 있어 자신이 가진 포도주의 일정 양(예컨대, 한 통)은 아주 작은 가치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그의 필요들 중 일부의 충족은 바로 이 일정 양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한 부셴과 같은 주어진 양의 곡식이 첫 번째 농부에게 일정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이 다음과 같은 가능성, 곧 일정 양(예컨대 한 통)의 포도주가 그에게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179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즉 한 통의 포도주가 그에게 주는 즐거움이 가족을 더 잘 먹이는 일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농부에게 있어서도 한 부셴의 밀로 인해 자신과 가족이 더 잘 먹을 수 있고 심지어 배고픔의 고통까지 피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한 통의 포도주가 그에게 일정한 가치를 갖는다고 해도 그러한 사실이 그에게 있어 한 부셴의 밀이 한 통의 포도주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간의 거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경제적)관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 개인 A는 자신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일정 양의 어떤 재화(첫 번째 재화)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또 다른 개인 B는 일정량의 또 다른 재화(두 번째 재화)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 A는 자신의 수중에 있는 이 일정량의 첫 번째 재화가 개인 B의 수중에 있는 일정량의 두 번째 재화보다 적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개인 B는 정반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양의 두 번째 재화가 개인 A가 소유한 일정 양의 첫 번째 재화보다 적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한다. A가 소유한 첫 번째 재화의 양을 $10a$ 로, B가 소유한 두 번째 재화의 양을 $10b$ 라고 하자. A에게 있어 $1a$ 가 갖는 가치를 W 로 가정하고, 만일 그가 $1b$ 를 지배(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A에게 있어 갖는 가치를 $W+x$ 로 가정하자. 한편 B에게 있어서 $1b$ 가 갖는 가치를 w 로 가정하고, 만일 그가 $1a$ 를 지배(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B에게 있어 갖는 가치를 $w+y$ 라고 가정하자. 이때 $1a$ 를 A의 소유로부터 B의 소유로 이전시키면 B가 $1b$ 를 B의 소유로부터 A의 소유로 이전시킴으로써 A는 x 만큼의 가치를 더 얻게 되고, B는 y 만큼의 가치를 더 얻게 될 것이 명백하다. 다시 말해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A는 그에게 있어 x 의 가치를 갖는 재화가 마치 그의 부wealth에 추가된 것과 같은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B 역시 자신에게 있어 y 의 가치를 갖는 재화가 마치 자신의 부에 추가된 것 같은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만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두 개인이 (a)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b) 재화들의 이전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상호간의 단순한 합의만으로도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곧,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자신들의 필요를 보다 잘 충족시키거나 보다 더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경제적)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원리(principle)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경제적 활동을 이끄러가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 주변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속의 유용한 물건들을 찾아보게 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도록 그들을 이끌며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동일한 원리, 즉 자신들의 필요를 가능한 한 완벽하게 충족시키려는 노력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서나 이러한(경제적) 관계를 가장 부지런히 찾아내도록 이끌며 자신들의 필요를 보다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경제적) 관계를 활용하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방금 기술한 상황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두 개인은 틀림없이 재화들의 이전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바로 자신의 필요를 가능한 한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리가 교환(exchange)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모든 경제적 현상의 원인인 것이다. 이 용어는 대중적인 의미 또는 특별히 법률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 보다 우리의 학문인 경제학에서 사용될 때 훨씬 더 광범위한 적용을 갖는 특수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 이 용어는 구입과 판매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보상을 목적으로 한 경제체의 모든 부분적인 이전들(차용, 입차, 대여 등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을 요약한다면 우리는 이제까지의 탐구의 결

과로서 다음과 같은 명제들을 얻게 된다. 사람들을 교환으로 이끄는 원리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경제적 행동을 이끌어 가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필요들을 가능한 한 최대로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재화들을 경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그로부터 사람들이 얻게 되는 즐거움은 어떤 사건들이 없었을 경우보다 어떤 사건들이 있음으로 해서 자신들의 필요들을 더 잘 충족시키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기쁨의 감정이다. 그러나 재화들간의 상호 교환이 주는 이득(benefits)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다음 세 가지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 (a) 어떤 일정량의 재화를 지배(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 개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일정량의 재화의 가치가, 또 다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정량의 또 다른 재화의 가치보다 적다고 평가함과 동시에 다른 개인은 정반대로 자신의 재화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b)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두 개인은 이러한(경제적)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c) 그들은 재화들간의 교환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들 조건 중 단 하나라도 결여할 경우 그것은 경제적인 교환의 필수 조건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두 개인간에 경제적인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81 2. 경제적 교환의 한계

만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각각의 개인이 각 종류별로 재화를 오직 한 개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들 각 재화가 그 재화적

성격(goods-character)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분리 불가능하다면 주어진 각 경우에 있어서 어떤 한도까지 교환행위가 일어나서 각각의 참여자가 가장 큰 경제적 이득(economic gain)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는가 하는 문제를 탐구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제 A는 유리로 된 술잔을 가지고 있고, B는 동일한 재료로 된 보석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가 각 품목을 한 개 이상 갖고 있지 못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앞 절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오직 두 가지 상황만이 있을 수 있다. 즉 이 두 재화들과 관련하여 두 개인간의 경제적인 교환(economic exchange)의 기초가 존재하든가 또는 존재하지 않든 가의 두 가지 상황만이 존재할 수 있다. 만일 그 기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 교환 문제가 전혀 제기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그 기초가 존재한다면 두 재화간에 실제로 교환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당연히 A와 B간에 더 이상 동일한 종류의 재화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의 지배(소유) 하에 있는 일정한 양의 재화들이 그 어떤 크기로라도 원하는 대로 나뉘어 질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는 그 재화들이 몇 개의 불연속적인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정이 달라지게 된다.

미국의 서부개척자인 A는 말은 여러 마리 가지고 있지만 소는 한 마리도 없는 반면, 그의 이웃인 B는 많은 수의 소를 가지고 있지만 말은 한 마리도 없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A가 우유나 유제품을 필요로 하며 B는 짐수레를 끌 동물이 필요하다면 교환의 기초가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누구도 다음과 같이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즉 예를 들어 A가 가진 말 중 하나를 B가 가진 소 중의 하나와 교환하는 것이 A와 B간에 존재해 왔던, 이들 재화들과 관련한 경제적 교환의 기초를 필연적으로 소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확실한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들의 총량간에 교환의 기초가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말을 여섯 마리 소유하고 있는 A는 자신의 말 한 마리, 두 마리, 또는 아마도 세 마리까지도 B의 소와 교환할 경우, 자신의 필요를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즉 그가 자기가 가진 말 모두를 B가 가진 모든 소와 바꾸어야만 한다면 이러한 교환으로부터 그가 반드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
182 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처음의 경제적 상황이 A와 B간의 경제적 교환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교환을 너무 확대할 경우 두 계약 당사자의 필요가 교환 이전보다 덜 충족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관계(relationship), 즉 단지 하나의 재화가 아닌 일정량의 재화들을 사람들이 소유하고 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는 인간경제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경제적 효용성을 추구하는 두 개인들이 일정량의 서로 다른 재화들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경제적인 교환의 기초가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서 그 두 개인이 서로간에 너무 적게 교환해야만 한다면 그로부터 얻

게 될 이득이 단지 불완전하게 될 경우들 그리고 상호간에 교환을 너무 많이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이득이 다시 줄어들어 제로 상태가 되거나 오히려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들 역시 우리는 수없이 많이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러한 경우들, 곧 교환이 너무 적게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경제적) 관계로부터 이끌어내어 질 수는 있는 충분한 이득이 얻어지지 못하는 경우들과, 반대로 교환이 너무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나아가 두 거래자의 경제적 지위까지 쇠퇴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한도, 곧 그 한도에서는 주어진 관계의 활용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적 이득이 달성되어지는 그러한 한도, 그리고 그 한도를 넘어설 경우 그 이상의 수량들간의 그 어떠한 교환도 비경제적이 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한도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부터 시작할 우리의 탐구의 목적이다.

나는 이 목적을 위해 아주 단순한 경우부터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이 단순한 경우에서 - 부차적인 영향들에 의해 저해 받지 않음으로 인해 -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관계를 가장 깊게 관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처녀림 속에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두 사람의 개척자들이 살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두 사람은 서로 간에 우호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들의 필요의 정도와 범위는 정확히 똑같다고 가정하자. 이들은 각각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여러 마리의 말을 필요로 한다. 만

일 그가 자신 및 자신의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자. 그리고 자기 자신 및 자신의 가족들이 적절한 정도의 식사를 하는데 필요한 좀 더 많은 양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말 한 마리가 더 필요하다고 하자.

183 농부들 각각은 자신에게 필요한 목재와 장작들을 숲에서 자신의 집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래와 돌 등등의 짐들을 끌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 및 자신의 가족들이 즐기기 위한 얼마간의 고급 식량들을 경작하기 위한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의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의 말은 단지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다섯 번째의 말은 다른 말들 중의 하나가 일할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그것의 대체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한 중요성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 각각은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자신의 필요requirements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섯 마리의 소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생산물들에 대한 그들의 필요가 갖는 중요성은 동일하게 등급 매겨져 있으면 여섯 번째 소는 둘 중 그 누구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 없다고 가정하자.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 방금 기술한 상황을 수치적인 형태로 다시 표현해보자. 우리는 두 명의 개척자들의 소유물들에 의해 달성되는 충족들의 중요성, 특히 각 등급으로 구분되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등차급수로 감소하는 일련의 수치들로 예컨대 50, 40, 30, 20, 10, 0과 같은 급수로 나타낼 수 있다.⁵⁶⁾

56) 본문에 있는 숫자들이, 여기서 문제시되고 있는(사람들의) 충족들이 갖는 중요성의 절대적인 수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그 상대적인 크기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내가 예컨대 40과 20으로 두 가지 충족이 갖는 중요성

첫 번째 개척자인 A는 6 마리의 말과 단 한 마리의 소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또 다른 개척자인 B는 한 마리의 말과 여섯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두 사람의 소유물들에 의해 달성되어지는 충족들이 갖는 중요성의 연속적인 등급은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내어 질 수 있다.

| A | | B | |
|--------|------|--------|------|
| Horses | Cows | Horses | Cows |
| 50 | 50 | 50 | 50 |
| 40 | | | 40 |
| 30 | | | 30 |
| 20 | | | 20 |
| 10 | | | 10 |
| 0 | | | 0 |

이 장의 앞 절에서 설명했던 내용에 비추어 볼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경우에 있어 경제적 교환의 기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184 쉽게 발견할 수 있다. A에게 있어 한 마리의 말이 갖는 중요성은 0이며, 두 번째 소가 갖는 중요성은 40이 될 것이다. 한편 B에게 있어 한 마리의 소가 갖는 가치는 0인 반면, 두 번째 소는 40만큼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만일 A가 B에게 한 마리의 말을 주고 B는 A에게 그 대가로 한 마리의 소를 준다면, A와 B 모두 자신들의 필요를 보다 더 잘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이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이라면 실제로 이러한 교환

을 나타낼 경우, 나는 단지 판단의 주체인 개인에게 있어 둘 중 첫 번째 것이 갖는 중요성이 두 번째 것이 갖는 중요성 보다 두 배정도 크다는 것을 말하고자 할뿐인 것이다.

을 실행하리라는 것은 의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 첫 번째 교환이 이루어진 후에 이 두 사람의 소유물들에 의해 달성된 충족들이 갖는 중요성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A | | B | |
|--------|------|--------|------|
| Horses | Cows | Horses | Cows |
| 50 | 50 | 50 | 50 |
| 40 | 40 | 40 | 40 |
| 30 | | | 30 |
| 20 | | | 20 |
| 10 | | | 10 |

우리는 이 표를 통해 두 거래자 모두가 이 첫 번째 교환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득은 각각에게 있어 40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한 재화만큼 그의 부wealth가 더 증가함으로써 그가 얻게 될 이득과 마찬가지로의 이득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⁵⁷⁾

하지만 이 첫 번째 교환으로 인해 경제적인 교환의 기초가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확실하다. 왜냐하면 A에게 있어 한 마리의 말은 추가적인 한 마리의 소가 그에게 있어 가질 가치보다 훨

57) 이러한 사실들은 상거래trade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productivity of trade을 부정했던 수많은 경제학자들(보다 최근의 독일 경제학자들 중에서 예를 들자면 Lotz 와 Rau 등)의 주장을 반증한다. 재화들간의 경제적인 교환이 거래하는 두 당사자의 경제적인 지위에 미치는 효과는, 부wealth를 구성하는 하나의 새로운 물체가 그의 소유가 되었을 때와 똑 같은 것이다. 따라서 상거래trade는 산업 활동이나 농업 활동보다 결코 덜 생산적이지 않다.

싼 낮은 가치를 가지는데(추가적인 한 마리의 소의 가치는 30인 반면에 말의 가치는 10에 불과하므로) 반면 B에게 있어서 추가적인 한 마리의 말이 30만큼의 가치를 갖는데 반해 한 마리의 소는 단지 10만큼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따라서 B에게 있어 한 마리의 말의 가치는 한 마리의 소의 가치의 3배이다) 따라서 두 번째 교환을 수행하는 것이 경제적 효용성을 추구하는 두 개인 모두에게 있어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

두 번째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질 수 있다.

| | | |
|-----|---------------------------|---------------------------|
| 185 | A | B |
| | <i>Horses</i> <i>Cows</i> | <i>Horses</i> <i>Cows</i> |
| | 50 50 | 50 50 |
| | 40 40 | 40 40 |
| | 30 30 | 30 30 |
| | 20 | 20 |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 모두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으며, 각각은 20의 가치를 갖는 재화를 얻음으로 해서 자신들의 부wealth가 증대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교환을 계속해서 더 수행할 수 있는 기초가 있는지를 보자. A에게 있어 한 마리의 말은 20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또 한 마리의 소 역시 20만큼의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B역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 이제까지 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하에서 A의 말 중의 하나와 B의 소 중의 하나를 교환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가 세 번째 교환을 수행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교환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경제적 희생(운송비용, 시간의 손실, 등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이 두 사람의 경제적 지위는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다.58)

이 세 번째 교환 이후에 상황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 |
|---------------------------|---------------------------|
| A | B |
| <i>Horses</i> <i>Cows</i> | <i>Horses</i> <i>Cows</i> |
| 50 50 | 50 50 |
| 40 40 | 40 40 |
| 30 30 | 30 30 |
| | 20 |
| | 20 |

이제 A의 말 중의 하나와 B의 소 중의 하나를 계속해서 더 교환할 경우 어떠한 경제적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자. 네 번째 교환 이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 |
|---------------------------|---------------------------|
| A | B |
| <i>Horses</i> <i>Cows</i> | <i>Horses</i> <i>Cows</i> |
| 50 50 | 50 50 |
| 40 40 | 40 40 |
| | 30 |
| | 20 |
| | 10 |

58) 이와 같이 확실히 비경제적인 교환을 나는 비 차별적 교환indifferent exchanges으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환들이 수반할 모든 경제적 희생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람들의 교환행위가 맹목적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6 이 표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네 번째 교환 이후에 A와 B의 경제적 상황은 모두 그 이전에 비해 악화되게 된다. A의 경우 다섯 번째 소를 획득함으로써 그에게 있어 10만크의 중요성을 갖는 필요의 충족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그는 자신에게 있어 30만크의 중요성을 갖는 말을 포기하였다. 이러한 교환 이후의 그의 경제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와 똑같은 것이다. 즉 그의 부 wealth를 구성하는 재화들 중에서 20만크의 가치를 갖는 한 재화가 감소했을 경우와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B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네 번째 교환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economic disadvantage)은 둘 모두에게 있어 일어난다. 즉, A와 B는 모두 그 교환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기는커녕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만일 A와 B 두 사람이 말과 소간의 교환을 더 계속 수행해 나간다면, 다섯 번째 교환 이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 A | | B | |
|---------------|-------------|---------------|-------------|
| <i>Horses</i> | <i>Cows</i> | <i>Horses</i> | <i>Cows</i> |
| 50 | 50 | 50 | 50 |
| 40 | 40 | 40 | 40 |
| | 30 | 30 | |
| | 20 | 20 | |
| | 10 | 10 | |
| | 0 | 0 | |

그리고 여섯 번째 교환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A | | B | |
|---------------|-------------|---------------|-------------|
| <i>Horses</i> | <i>Cows</i> | <i>Horses</i> | <i>Cows</i> |
| 50 | 50 | 50 | 50 |
| 40 | 40 | 40 | 40 |
| | 30 | 30 | |
| | 20 | 20 | |
| | 10 | 10 | |
| | 0 | 0 | |
| | 0 | 0 | |

A의 말과 B의 소를 다섯 번째로 교환한 이후에 두 거래자는, 자신들의 필요 충족을 위해 얼마만큼의 재화를 가지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볼 때 처음으로 교환을 시작했던 출발점과 동일한 상황으로 되돌아 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여섯 번째의 교환 이후에 이들의 경제적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비경제적인 교환을 되물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일 것이다.

187 이 한 가지 예에서 보았던 것을 다른 경우 곧 일정량의 서로 다른 재화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소유 하에 있는 경우 그리고 동시에 그 양자간에 경제적 교환의 기초가 존재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예를 선택한다고 해도 부차적인 환경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발견할지는 몰라도 앞서 설명한 관계의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무엇보다도 각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주어진 어떤 시점에 있어서 두 사람이 자신들의 재화들을 교환할 때 일정한 한도, 곧 그 한도 내에서는 상호간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그들의 경제적 지위는 보다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그 어디서나 일정한 한도, 곧 바로 그 점에서 교환관계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경제적 총 이득이 최대가 되는 그러한 한도를 관찰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 한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교환을 실행할 경우 이러한 이득은 감소하게 되며 그럼으로써 그 교환을 비경제적인 교환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두 거래자 중의 하나가 상대편 거래자의 수중에 있는 일정량의 다른 재화보다 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는 일정량의 재화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동시에 상대편 거래자는 정반대로 일정량의 그 두 재화를 평가할 때 그 한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현실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은 아무런 한도가 없는 가운데 무한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히려 주어진 어떤 시점에 있어서 어떤 주어진 종류의 재화와 관련하여 그리고 어떤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사람들은 더 이상의 교환을 실행하기를 멈추게 되는 일정한 한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 사회경제social economy는 개인 경제들individual economies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각 개인들에게 있어서 유효한 것처럼 국가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하나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다른 하나는 주로 산업에 종사하는 두 국가는 자체의 생산물 중의 일부를 다른 국가

의 생산물 중의 일부와 교환할 경우(즉, 첫 번째 국가는 자신의 농업생산물 중의 일부를 그리고 두 번째 국가는 자신의 산업생산물 중의 일부를 서로 교환할 경우) 자신들의 필요를 훨씬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국가는 아무런 한도 없이 무한하게 교환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한 주어진 시점에 있어서 두 국가는 어떤 한도, 곧 그 한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교환을 행할 경우 그 교환은 양 국가 모두에게 있어 비경제적이 되는 그러한 한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188 개인들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리고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는 더욱 더 현실생활 속에서 재화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갖는 가치는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은 물론 사실이다. 이러한 가치의 변동은 주로 새로운 수량의 재화들이 생산과정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다양한 개인들의 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 결과 경제적 교환의 기초는 끊임없이 변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교환거래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현상을 관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환거래의 연속 속에서도 우리는 -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 어떤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에 있어서, 또 특정한 종류의 재화들에 있어서 안정점들points of rest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안정점들에 있어서는 아무런 재화의 교환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는 교환에 있어서의 경제적 한도economic limit to exchange에 이미 도달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루어졌던 또 하나의 관찰은 경제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에 의해 획득되는 경제적 이득이 주어진 거래 기회를 계속 활용함으로써(곧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과 관련된 것이었

다. 경제성을 추구하는 개인들간의 첫 번째 거래 계약들이 보통 가장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래들이다. 보통의 경우 나중에서야 보다 작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거래 기회들이 실현되는 법이다. 이는 개인들간의 거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가들간의 무역에 있어서도 역시 진실이다. 만일 두 국가간의 경계선이나 항구들이 이전에는 항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상호 왕래하지 못하도록 폐쇄되어 오다가 갑자기 열려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또는 이전까지 있어 왔던 약간의 거래 장벽이 제거되지만 해도 즉각적으로 재화의 교환활동이 매우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활용될 수 있는 거래 기회의 수 및 얻어질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처음에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거래는 통상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만일 때때로 새로운 거래로부터 얻어야 할 충분한 이득이 즉각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은 경제적 교환의 또 다른 두 가지 전제 조건들, 곧 거래 기회에 관한 지식과 경제적이라고 알려진 교환, 곧 경제적 교환을 수행할 힘이 보통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거래 참가자들에 의해 획득되기 때문이다. 무역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노력들 중의 일부는 이 두 가지 범주 속에 있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데에(상업적 상황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통해서, 도로의 건설 및 여타 통신 및 운송수단의 건설 등을 통해서) 그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189 경제적 교환의 기초와 한도들에 대한 여기서의 논의를 마치기 전에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설명되어진 원리들이 정확히 이해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나는 다름 아닌 교환행위가 요구하는 경제적 희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물들(개인들의 경제들 *economies of individuals*) 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따라서 한 개인과 다른 개인간에 서로 소유하고 있는 재화들의 이전이 재화들의 선적이나 기타 많은 경제적 희생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교환거래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이득의 전부가 두 거래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들은 매우 드물다. 교환에 따른 경제적 희생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최소한에 그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전혀 아무런 경제적 희생을 - 설사 그것이 단지 시간의 손실에 그친다고 해도 - 수반하지 않는 가운데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를 현실에서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운송비용, 선적 비용, 사용료, 소비세, 선박보험료 및 기타 보험료, 상업적인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드는 총 비용, 상인들 및 그들이 고용한 모든 피고용인들이 지출하는 비용⁵⁹⁾ 등등은 다름 아닌 교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경제적 희생들이며 기존의 교환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의 일부는 거기에 할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제적 희생들은 이러한 지출들(*expenses* - 일반적으로 경제학적 의미에서 볼 때 이와 같이 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능했을 교환을 종종 불가능하게 만든다.

경제발전은 이러한 경제적 희생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그

59) Carey(*op.cit.*, III, 23-25)는 상인들을 경제적인 기생동물로 묘사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용가능한 경제적인 교환거래기회를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Carey의 묘사는 거래의 생산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것은 경제발전으로 인해 가장 먼 지역들 사이에서조차 이전에는 불가능했을 경제적 교환이 점점 더 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 190 이제까지 말한 것에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 무역에 있어서의 증대상에 해당하는 수 천명의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부터 자신들의 소득을 얻는가 하는 소득의 근원에 대한 설명이다. 그들이 재화들을 물리적인 의미에서 증대시키는 데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은 종종 비생산적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경제적인 교환은 사람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는데 기여하며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경제재들의 증대가 부의 증대에 기여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거래 참여자들의 부의 증대에 기여한다. 따라서 교환을 매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환이 경제적인 한에 있어서는 항상 농부나 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다. 왜냐하면 경제행위의 목적end of economy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재화의 증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의 필요를 가능한 한 완전히 충족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리고 매우 편파적인 시각 하에서 유일하게 생산적이라고 불려 왔던 사람들에게 못지 않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아무리 높은 가격들이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여 실제로 교환되어 지는 일정량의 재화들이 우리의 감각에 깊은 인상을 각인 시킨다고 해도, 그리고 바로 그로 인해 일상적으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그것들은 결코 교환이라는 경제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교환의 핵심적인 모습은 오히려 두 사람이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필요를 얼마나 더 잘 충족시키는 데에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의 경제적인 지위를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경제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거래를 통해 그 목적이 달성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재화들을 교환하는 것이다. 가격이란 단지 이러한 활동들의 우연적인 발현, 곧 개인들의 경제적 행위들(economies of individuals)간의 경제적 균형의 징후(symptoms of an economic equilibrium)일 뿐이다.

- 192 서로 다른 수위를 가진 두 저수지가 있다고 할 때 만일 그 사이를 연결하는 수문이 열린다면 고요했던 수면에는 파도가 일렁일 것이다. 그 파도는 점차적으로 가라 앉을 것이고 마침내 수면은 다시 고요해질 것이다. 이때 파도는 단지 이 과정에서 작용 중인 소위 중력 및 마찰이라고 불리우는 힘들의 징후에 불과할 뿐이다. 바로 이러한 파도들에 해당하는 것이 재화의 가격들이다. 이 재화 가격들은 개인들의 경제적 행위들(economies of individuals)간의 소유물의 배분에 있어서의 경제적 균형의 징후이기 때문이다. 표면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힘은 모든 경제적 활동의 궁극적이고 일반적인 원인, 다시 말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며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다. 가격들의 크기는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으며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교환 과정에 있어서 이와 같이 가격들이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유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가격의 크기를 교환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우며 다시 그러한 오류의 결과로서 교환되는 일정량의 두 재화들이 서로 동등하다고(equivalents -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 생각하는 더 큰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러한 오류는 우리의 과학, 곧 경제학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왜냐하면 바로 그로 인해 가격이론 분야의 경제학자들은 일정량의 두 재화의 가치가 동일한equality 원인을 발견해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방향을 잃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재화들에 투여된 노동의 양이 동일하다는 데에서 찾았으며 다른 사람들은 생산비용이 동일하다는 데에서 찾았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재화들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환되는지 아니면 그것들이 교환되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갖는지에 관한 논쟁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정량의 두 재화들간의 그러한 가치의 동일성equality of the values 곧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동일성은 현실생활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들은 하나의 오류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오류는 가격 현상을 관찰함에 있어서 이제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졌던 일면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경우 곧바로 드러나게 된다. 일정량의 재화들이(객관적인 의미에서) 서로 동등하다고equivalents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주어진 시점에 있어서 마음대로 교환될 수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일정량의 두 재화들 중의 하나를 제공할 경우 그 대가로 다른 하나를 획득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진실인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동등성equivalents은 사람들의 경제생활 중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재화들이 이러한 의미에서 동등하다면 시장조건이 불변인 한 모든 교환이 반대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반대 방향으로의 교환이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A가 자신의 집을 B의 농장 혹은 20,000 탈러Thalers와 교환했다고 가정하자. 거래에 따른 결과로서

이들 재화들이 객관적인 의미에서 동등하게equivalents 되었다면, 혹은 교환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 두 재화가 동등했었다면 그 두 거래참가자가 곧바로 반대 방향으로 거래를 하려고 해서는 안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 두 사람 중 그 누구도 그러한 반대 방향으로의 교환에 동의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93 가장 고도로 발달된 거래 조건들 하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잘 팔리는(곧 누구나 찾는) 상품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위에서 본 것과 동일한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곡물시장에서 곡물을 사게 하거나 또는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사게 한 후 시장조건에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다시 그것들을 되팔도록 하게 해 보라. 또는 그로 하여금 동일한 상품을 단위로 나누어 동시에 몇 단위는 사게 하고 몇 단위는 팔게 해 보라. 그럴 경우 그는, 공급가격과 수요가격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단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social economy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쉽게 확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정하게 정해진 수량(예컨대, 일정량의 화폐 그리고 일정량의 몇몇 다른 경제제)에 따라 상호간에 교환될 수 있는 상품들, 판매 또는 구매를 통해 마음대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상품들, 한 마디로 말해서 객관적인 의미에서 동등한 상품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 심지어 하나의 주어진 시점에 있어서 그리고 주어진 어떤 시장에 있어서조차 -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재화들간의 교환을 이끄는 원인들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간의 거래를 이끄는 원인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동

등성equivalents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러한 가치의 동일함equality이 사실에 있어서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올바른 가격 이론이라면 일정량의 두 재화들 간의 소위 가치의 동일equality of value을 설명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한 틀에서는 가치가 갖는 주관적인 성격과 교환의 본질은 완전히 잘못 이해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가격이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충족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재화들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재화들(곡, 일정한 양의 재화들)을 주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나는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채택해왔던 방법에 부합되게 이 문제를 탐구해나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격 형성과 관련하여 가장 단순한 현상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보다 복잡한 현상으로 넘어갈 것이다.

194 1. 고립된 교환에 있어서의 가격형성

재화들에 대한 경제적 교환의 가능성은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들의 가치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화들의 가치를 보다 높이 평가하고 상대방은 그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재화들과 상대방의 재화들을 평가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단지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우

리는, 그 어떤 주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가격형성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한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A에게 있어 곡식 100단위가 40단위의 포도주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A는 40단위의 포도주와 교환하기 위해 100단위 이상의 곡식을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그렇게 할 경우 그의 필요는 교환이 일어나기 전에 비해 덜 충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교환이 없었을 때에 비해 교환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보다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경우에만 재화들을 상대방과 교환하는 것에 동의하려 할 것이다. 즉, 그는 40단위의 포도주의 대가로 100단위 이하의 곡식을 주어야 할 경우에만 자신의 곡식을 포도주와 교환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의 곡식과 어떤 다른 사람의 포도주를 교환함에 있어서 포도주 40단위의 가격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가격은 - A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 곡식 100단위로까지 오를 수는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만일 A가 다음과 같은 사람 즉,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100단위보다 작은 양의 곡식이 40단위의 포도주보다도 더 큰 중요성을 갖는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A는 결코 자신의 곡식을 포도주와 교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두 재화간의 경제적 교환의 기초는 적어도 A에게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A가 또 다른 개인인 B를 발견한다면 그리고 B에게 있어서는 예컨대 80단위의 곡식이 40단위의 포도주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면, A와 B간에 경제적 교환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은 확실히 존재하게 된다.(이 두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호간에 교환을

실행하는데 있어 아무런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A의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 40단위의 포도주의 가격이 100단위의 곡식보다 낮아야 한다 면(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이 거래로부터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B의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40단위의 포도주의 대가로 80단위 이상의 곡식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A와 B간의 경제적 교환에 있어서 40단위의 포도주의 가격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라도 그것은 곡식 80단위와 100단위 사이에서 다시 말해서 80단위보다는 높고 100단위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 확실하다.

195 설사 A가 40단위의 포도주에 대한 대가로 99단위의 곡식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할지라도 A로서는(100단위를 지불하는 경우에 비해) 자신의 필요를 보다 더 충족시킬 수 있게 된 반면에, B로서는 설사 자신의 40단위의 포도주의 대가로 81단위의 곡식만을 받아야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은(80단위의 곡식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므로) 경제적으로 행동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두 개인 모두에게 있어 보다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개인들은 그 경제적 이득 중 가능한 한 최대한의 몫을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흥정(bargaining)이라고 부르는 현상인 것이다. 흥정을 하는 두 사람은 각각 교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경제적 이득 중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설사 그가 자신이 생각하는 정당한 몫에 해당하는 곡식을 얻기 위해 애쓴다고 할지라도 자신과 흥정하는 상대방의 경제적 조

건에 대해 이는 바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그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한도가 얼마인지에 대해 이는 바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는 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이 두개의 가격 사이에서 결정되어질 가격, 곧 그 수치적 결과는 무엇이 될까?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40단위의 포도주의 가격은 곡식 80단위보다는 높고 100단위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다음과 같은 점도 역시 확실하다. 즉 교환의 결과는 어떤 때는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에게 보다 유리하게 나올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상대방인 다른 사람에게 보다 유리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다양한 개성과 비즈니스 및 - 각 경우에 있어서 - 흥정하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그의 지식의 정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196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을 정식화함에 있어서 흥정을 하는 두 사람 중 어느 한 쪽이 보다 압도적인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다거나 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할 환경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경제적으로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환경을 가진 개인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고 흥정하는 두 사람의 노력은 상호 무력화될 것이고 따라서 가격은 결정될 수 있는 범위의 양극단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사례에 있어서 흥정하는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동의할 40단위의 포도주 가격은 곡물 80단위와 100단위의 범위 내에 있을 것이다. 즉 80보다 높고 100보다 낮을 것이다. 이 범위 내에서 가격

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만약 흥정하는 두 사람이 완전히 동등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가격은 90단위의 곡물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상황이 동등하지 못하다면 양극단 사이의 다른 어떤 가격에서의 교환도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례에서 가격형성에 관해 논의된 것은 다른 모든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재화의 경제적 교환의 기초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교환이 경제적 성격을 가진다면 그 안에서 가격형성이 이루어질 명확한 가격범위를 관계의 본질 자체가 결정한다. 이러한 범위는 각 흥정자에게 있어 동등한 가치를 갖는(주관적인 관점에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 재화의 양의 차이에 의해 주어진다.(예를 들면 위에 언급했듯이 100단위의 곡식이 A에게는 40단위의 포도주와 동등한 가치를 갖고 B에게는 80단위의 곡식이 40단위의 포도주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이 범위 내에서의 가격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두 단위량의 평균값(average)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그러므로 우리의 예에서는 80과 100단위의 평균값인 90단위의 곡물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교환에서 서로에게 제공되는 재화의 양은 각각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확히 결정된다. 인간의 변덕스러운 성향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교환이 경제적 성격을 잃지 않고도 교환되는 재화의 양이 변하는 가운데 교환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

197

래를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흥정하는 사람들의 상충된 노력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상호 무력화될 것이라는 점과 이에 따라 가격이 양 극단의 중간에서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똑같이 확실하다. 만약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외부적 환경 혹

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두 사람의 개성에 바탕을 둔 다른 요인들이 등장한다면 가격은 그 교환이 경제적 성격을 잃도록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앞서 설명한) 양 극단의 자연스런 중간점에서 일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탈은 본질적으로 비경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경제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개인적 특성들 혹은 특수한 외적 요인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독점 하에서의 가격형성

앞의 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경제적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두 개인 사이에서 재화의 교환이 발생하는 가장 간단한 사례를 먼저 고려함으로써 가격형성과 재화의 배분은 명확한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에 주목했었다. 고립된 교환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런 사례는 문명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 중요성은 후에 인구가 희박하고 진보가 느린 지역에 남아있었고 발전된 경제상황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두 개인에게만 가치가 있는 재화의 교환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다른 특수한 환경이 두 개인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우 고도로 발전된 경제상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재화의 경제적 교환의 기초가 단지 두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예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이 얻으려 했던 10부셀의 곡식의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갖

는 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는 11부셀의 곡식과 그 동물을 교환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 많은 양의 곡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말을 필요로 하는 농부 B에게 있어서는 한 마리의 말은 곡식 20부셀과 같은 가치를 가질 것이고, 따라서 A의 말에 19부셀의 곡식을 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농부 B2는 그 말에 대한 대가로 29부셀을 줄 용의가 있으며, 농부 B3는 39부셀을 줄 용의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앞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A와 다른 한 농부사이에만 두 재화의 경제적 교환을 위한 기초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A는 경제적 교환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말을 그 중 어떤 농부에게도 제공할 수 있고 그 중 어떤 농부든지 경제적인 교환을 통해 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8 내가 바로 전에 언급한 것은 곡식을 가진 농부들과의 경제적 교환의 기초가 A뿐만 아니라 말을 소유한 다른 여러 사람, 즉 A2, A3 등에게도 존재할 경우를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A2는 오직 곡식 8부셀이, A3는 6부셀이 그들의 말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적 교환의 기초가 말을 가진 각 개인과 곡식을 가진 각 농부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두 사례에서 우리는 이 장의 1절에서 설명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경제적 교환의 기초(넓은 의미에서의) 독점적 공급자와 주어진 교환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고 독점재화에 대해 서로 경쟁하는 여러 개인 사이에서 존재한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경제적 교환의 기초가

한 종류의 재화를 소유한 여러 명의 개인과 다른 종류의 재화를 소유한 여러 명의 개인 사이에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각각 서로에 대해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보다 간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 독점재화에 대해 여러 개인이 경쟁하는 사례부터 시작하여 후에 더 복잡한 사례인 양측에 모두 경쟁이 존재할 때의 가격형성에 대한 사례로 넘어가 보자.

199 A. 분할이 불가능한 하나의 독점재화에 대해 여러 경쟁자가 있는 경우의 가격형성 및 재화의 배분

고립된 교환에서의 가격형성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각 개의 사례에 있어 교환이 경제적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 가격형성이 일어날 수 있는 일정한 범위가 있고 이 범위의 크기는 그 각각의 특정한 교환 상황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알았다. 우리는 또한 형성되는 가격은 흥정하는 두 사람이 상호 대립적인 관계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똑같이 나눈 것이므로 주어진 각 사례에 있어서 가격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중간점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하여 나는 경제적 영향이 이 범위 내에서 가격형성이 일어나야 하는 가격점을 필연적으로 정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만일 한 개인 A가 곡식 10부셀보다 높지 않은 가치를 갖는 말을 가졌고, 동시에 B는 풍작으로 인해 많은 곡식을 가지게 되어 80부셀이 한 필의 말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한다면 A의 말과 B의 곡식의 경제적 교환의 기초는 존재하고, 또한 A와

B 모두 이 관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재화들 간의 교환을 실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말의 가격은 곡식 10부셀에서 80부셀의 넓은 범위 내에서 형성될 수 있고 교환의 경제적 성격을 잃지 않고도 둘 중 어느 한도에도 도달할 수 있다. 물론 말의 가격이 11부셀과 12부셀 혹은 78부셀과 79부셀의 곡식에서 정해진다는 것은 매우 있을 법하지 않다. 하지만 어떤 경제적 요인도 이러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 동시에 B 외에 A의 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수요자가 없는 한 거래는 자연스럽게 오직 A와 B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200 그러나 B1만큼 곡식을 풍부하게 가지지 못하거나, 말을 덜 급하게 필요로 하는 B2라는 경쟁자가 B1에게 있다고 가정해보자. B2는 한 마리의 말을 곡식 30부셀로 가치를 매김으로써 A의 말에 대한 대가로 29부셀의 곡식을 줄 경우 여전히 자신의 필요를 보다 더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특정한 양의 곡식과 한 마리 말 사이의 경제적 교환의 기초는 B2와 A, 또한 B1과 A간에 존재한다. 그러나 둘 중 한 사람만이 실제 말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a) 독점적 공급자 A가 둘 중 누구와 교환 거래를 체결할 것인가? (b) 어떤 범위 내에서 가격형성이 이루어질 것인가?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아래의 설명에서 드러난다. B2에게 있어서 A의 말의 가치는 30부셀의 곡식이다. 따라서 A에게 말에 대한 대가로 29부셀의 곡식을 줄 경우 그는 자신의 필요를 보다 더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결코 B2가 말에 대한 대가로 A에

게 29부셀을 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B2는 가능한 한 B1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 가격에도 거래를 결정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A의 말을 곡식 29부셀에 교환하는 데에서 얻을 수 있는 적은 이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그는 매우 비경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B2가 A의 말에 대한 경쟁에서 곡식 29부셀이라는 가격으로 그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B1은 분명히 비경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B1이 말에 대한 대가로 곡식 30부셀을 주거나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줌으로써 B2를 교환거래에서 경제적으로 배제시킬 경우 B1은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⁶⁰⁾

그러므로 교환거래가 B2에게 비경제적이 될 수 있으나 B1에게는 경제적일 수 있는 가격범위가 있다는 사실은 B1으로 하여금 그의 상대방을 경제적인 교환을 할 수 없도록 만듦으로써 자신만이 교환을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놓도록 한다.

201 만일 A가 가장 높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독점재화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곧 그가 명백히 비경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특정한 경제상황에서 교환 거래는 A와 B1 간에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

두 번째 의문(가격형성이 이루어질 범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B1이 A

60) 내가 B1이 B2를 경제적으로 배제시킨다고 말했다 때 나는 물리적인 힘의 사용, 혹은 법적 자력박탈에 의해 B2가 교환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뜻한 것이 아니다.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B2는 분명히 쉽게 수백 부셀의 곡식을 소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A의 말을 차지하거나 차지하지 않기를 선택할 물리적, 법률적인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얻지 못한다면, 그의 이유는 아마도 본질적으로 경제적 이유 때문일 것이다. 즉, 29부셀보다 더 많은 양의 곡식을 포기함으로써 그는 교환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자신의 필요를 더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에게 줄 가격은 곡식 80부셀에 못 미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B1에게 있어 이 가격에서의 거래는 경제성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은 곡식 30부셀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교환거래는 B2에게도 유리한 가격 범위 내로 떨어져 가격이 다시 30부셀이라는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경쟁에서 B2 역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에는 가격은 반드시 곡식 30부셀과 80부셀의 한도 내에서 형성되어야 한다.⁶¹⁾

따라서 B2와의 경쟁은 A와 B1간의 재화의 교환에서 가격형성이 더 이상 곡식 10부셀과 80부셀이라는 넓은 범위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고 더 좁은 범위인 곡식 30부셀과 80부셀 사이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이 이 범위 내에서 정해질 때에만 B2를 경쟁에서 제외하고 거래를 통해 A와 B1이 동시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고립된 교환의 간단한 관계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유일한 차이는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는 범위가 더욱 좁아졌다는 것이다. 이 차이를 제외하고는 고립된 교환의 사례에서 이미 설명했던 경제원칙이 여기에서도 완전하게 적용 가능하게 된다.

61) 우리가 설명한 경우에 있어서 가격이 곡식 30부셀과 80부셀 사이에 형성되는 대신에 정확히 30단위에 형성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가격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경매판매를 할 경우 혹은 가격이 30부셀의 곡식 이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에서든 A는 경매의 속성으로 인해 30부셀의 가격에 만족할 것을 강요당한다. 그리고 경매에서의 특수한 가격형성의 원인은 대개 유사한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 A가 처음부터 경매계약에 자신을 속박하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면 A와 B의 교환에서 말의 가격은 곡식 30부셀로 정해져서는 안될 이유가 전혀 없듯이 곡식 79부셀에서 정해져서는 안될 경제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

이제 앞의 A의 말에 대한 두 경쟁자 B1과 B2에 3번째 경쟁자 B3가 더해졌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 3번째 개인에 있어서 말의 가치는 곡식 50부셀과 같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래는 역시 A와 B1간에 이루어 질 것이지만 가격은 50부셀과 80부셀의 범위 내에서 형성될 것이 분명하다. 만약 4번째 개인 B4가 나타난다면 그리고 B4에게 있어서 A의 말이 곡식 70부셀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면 거래는 여전히 A와 B1간에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70부셀과 80부셀의 범위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다.

독점재화가 곡식 90부셀만큼의 가치를 갖는 수요자 B5가 나타날 경우에만 거래는 A와 이 마지막 경쟁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말의 가격은 곡식 80부셀과 90부셀 사이에 정해질 것이다. 이 새로운 경쟁자는 그에게 주어진 교환의 기회를 이용하려 할 것이고 교환에 있어서(B1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 명백하다. 가격형성이 곡식 80부셀과 90부셀 사이에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편으로는 적어도 곡식 80부셀의 가격이 되어야만 가격이 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경쟁자 B1이 거래에서 경제적으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은 곡식 90부셀을 초과하거나 그 수준에 도달할 수도 없는데 그럴 경우 그 거래는 B5에게 있어서 경제적 성격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은 분할이 불가능한 한 재화를 교환하는 독점적 공급자와 다른 한 재화를 제공하는 여러 개인들 사이에서 경제적 교환의 기초가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경우에서도 유효하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이끌어냈다. (1) 여러 개인들

각각에 있어 경제적 교환의 기초가 존재하는 가운데 그 여러 개인들이 하나의 분할 불가능한 독점재화를 놓고 경쟁할 때 그 재화를 얻는 개인은 교환에서 가장 많은 양의 재화를 대가로 제공한 사람일 것이다. (2) 가격형성은 교환을 함에 있어서 문제의 독점재화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그리고 경쟁에 있어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는 두 경쟁자에 의해 결정된 가격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3) 이 범위 내에서의 가격은 이미 서술한 고립된 교환에서의 가격형성의 원리에 따라 정해진다.

B. 다량의 독점재화에 대한 경쟁이 있을 때의 가격형성 및 재화배분

앞 절에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독점의 사례를 주제로 선택하였다. 즉, 이것은 독점적 공급자가 시장에 하나의 분할 불가능한 재화를 가져올 경우이고 가격형성과정이 재화에 대한 여러 개인들간의 경쟁의 영향 하에서 일어나는 사례이다.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좀더 복잡한 사례는 다량의 독점재화를 가진 독점적 공급자와 그와는 다른 재화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개인들 간에 동시에 경제적 교환의 기초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많은 양의 곡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말은 소유하지 못했던 농부 B1에게 있어 새로 획득된 말이 곡식 80부셀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해보자. 또 B2에게는 새로 획득된 말이 곡식 70부셀과 같은 가치를, B3에게는 60부셀, B4에게는 50부셀, B5에게는 40부셀, B6에게는 30부셀, B7에게는 20부셀, B8에게는 10부셀의 가치 밖에

갖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두 번째 말은 각 농부에게 있어 첫 번째 말보다 10부셀씩 적은 양의 곡식과 같은 가치를 가지며, 3번째 말은 2번째 말보다 10부셀 적은 양의 곡식만큼의 가치를 갖는 등 계속해서 각 추가되는 말마다 그 앞의 말보다 10부셀 만큼씩 적은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제적 상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

204 거래를 통해 추가적으로 획득되는 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곡식의 양

| | 1번째 말 | 2번째 말 | 3번째 말 | 4번째 말 | 5번째 말 | 6번째 말 | 7번째 말 | 8번째 말 |
|-----------|-------|-------|-------|-------|-------|-------|-------|-------|
| B1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 B2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
| B3 | 60 | 50 | 40 | 30 | 20 | 10 | | |
| B4 | 50 | 40 | 30 | 20 | 10 | | | |
| B5 | 40 | 30 | 20 | 10 | | | | |
| B6 | 30 | 20 | 10 | | | | | |
| B7 | 20 | 10 | | | | | | |
| B8 | 10 | | | | | | | |

만약 독점적 공급자 A가 시장에 오직 하나의 말을 가져온다면 앞 절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B1은 곡식 70부셀과 80부셀 사이 중 그 어딘가의 가격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점적 공급자가 단지 한 마리만 가져오지 않고 여러 마리의 말을 시장에 가져온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우리는 이 절에서의 탐구주체에 해당하는 사례를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8명의 농부 중 어떤 사람(혹은 사람들)이 독점적 공급자가 가져온 말을

얻게 되고 또 얼마의 가격에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답을 알아보기 위해 표를 살펴보자. B1에게 있어 첫 번째 말은 80부셀과 같은 가치를 갖을 것이고, 두 번째는 70부셀과 같은 가치, 3번째는 오직 60부셀의 곡식과 동일한 가치를 갖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B1은 하나의 말을 70부셀과 80부셀 사이의 가격에서 얻고자 함으로써 그리하여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교환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행동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만약 두 번째 말에 대한 대가로 70부셀 혹은 그 보다 더 많은 양의 곡식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두 번째 말에 관한 한 비경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환을 통해서는 그의 필요가 그 전보다 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말에 대한 대가로 B2를 거래에서 배제시키는 가격 따라서 최소한 곡식 70부셀과 같은 가격에 거래할 경우 B1의 경제적 손실과 그러한 교환의 비경제적 성격은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한편으로 B1은 각 말에 대해 곡식 70부셀 혹은 그 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공함으로써만이 모든 경쟁자들이 세 마리 중 어느 것도 얻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격에 오직 하나의 말만을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만약 다른 말들도 같은 가격에 사려고 한다면 이는 그의 경제적 지위를 악화시킬 것이다.

205 우리는 B1이 경제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이라고 가정했으므로 그는 맹목적으로 혹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서까지 교환에서 거래자를 배제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그들을 교환에서 배제시킬 것이다. 즉, 만일 그가 자신의 경쟁자들에

게 독점재화를 구매하도록 허용한다면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할 경제적 이득을 그들이 그 독점재화를 얻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들을 교환에서 배제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경제적 상황에 의해 독점재화에 대해 경쟁하고 있는 모든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것은 B1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는 B2가 독점재화의 구입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그는 독점재화의 단위 당 가격을 - 이 경우에는 말의 가격을 -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에 책정하는데 있어서 B2와 공통의 이익을 가질 것이다. 현재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서는 곡식 70부셀보다 높게 말의 가격을 책정할 때보다는 가능한 한 곡식 70부셀보다 낮은 가격에 책정할 때 B1과 B2는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B1과 B2는 다른 경쟁자들, 특히 B3의 경쟁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B1과 B2는 독점재화에 대한 다른 경쟁자들(B3을 포함한)이 경제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가격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마리 말의 사례에서는 가격이 곡식 60부셀과 70부셀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 범위 내에서 정해진 가격에 B1은 두 마리, B2는 한 마리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반면 나머지 수요자들은 모두 이 독점재화를 획득하는 데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 범위 내에서의 가격형성은 유일하게 가능한 결과이다. 만약 가격이 60부셀보다 낮았으면, B3가 거래에서 제외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는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B1과 B2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이고, 또한 60부셀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

는 위치에 있으므로 60부셀의 가격에서 교환이 일어나도록 허용하
 206 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만약 가격이 곡식 70부셀이라는 한도에 도
 달하거나 그 보다 초과할 경우 B1은 하나의 말만 구매할 수 있을
 것이고 B2는 하나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므로 판매되기로 한 말 중
 오직 하나의 말만이 팔릴 것이다. 따라서 세 마리 말의 사례에서 곡
 식 60부셀과 70부셀이라는 한도 밖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경제
 적인 측면에서만 볼 경우 불가능하다.

만약 A가 6마리의 말을 시장에 가져온다면 우리는 유사한 추론
 과정을 통해 B1은 3마리의 말을, B2는 2마리, B3은 1마리를 얻을
 것이고, 말의 가격은 곡식 50부셀과 60부셀 사이에 형성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만약 A가 10 마리의 말을 시장에 가져온다면
 B1은 4마리의 말을, B2는 3마리, B3는 2마리, B4는 1마리의 말을
 얻을 것이고 그 가격은 곡식 40과 50부셀 사이에서 형성될 것이다.
 만약 독점적 공급자 A가 판매를 목적으로 더 많은 양의 독점재화를
 제공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독점재화를 구매
 하는데 있어서 더 적은 수의 농부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양의 독점재화의 가격도 계속해서 보
 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B1, B2, 등등이 하나의 개개인들이 아닌 한 국가내의 여
 러 집단의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생각함으로써(B1이 독점재화를 얻기 위
 해 가장 열성적이고 이 거래에 있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개인의 집단을 나
 타내도록 하고 B2는 그 다음으로 독점재화를 얻는데 열성적이며 그 다음으로 경쟁
 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집단을 나타내도록 하는 등), 일상생활의 조건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독점거래의 모델을 얻게 된다.

우리는 매우 다른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층이 시장에서 독점재화

에 대해 경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증
 명되었듯이 일부 소비자층이 구매과정에서 다른 소비자층을 경제적
 으로 배제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시장에 가져오는 재
 화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독점재화를 소비할 수 없는 소비자층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시장에서 매매되는 양이 많으
 면 많을수록 독점재화는 구매력이 낮은 소비자층에도 스며들게 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변화들과 더불어 독점재화의 가격 또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7 앞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얻게 된다.

(1) 독점적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일정량의 독점재화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가장 많은 양의 재화를 제공하는 구매자가 얻을
 수 있다. 독점재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된다. 즉, 독점재화
 한 단위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따라서 그 대가로 교환되어지는 일
 정량의 재화는 그 독점재화의 일부를 구매하는 각 개인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게 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예컨대 한 마리의 말에 대해서 모
 두 50부셀의 곡식을 교환하는 식으로)

(2) 가격형성은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즉, 교환에
 서 경제적으로 배제된 경쟁자들 중에서 독점재화를 얻기 위해 가장
 열성적이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개인에게 있어서 한 단위의 독점재
 화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재화의 양과, 아직까지 계속해서 교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독점재화를 얻는데 가장 덜 열성적이고 그 중 가
 장 경쟁력이 없는 개인에게 있어서 한 단위의 독점재화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재화의 양 사이에서 가격형성은 이루어진다.

(3) 판매를 목적으로 독점적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독점재

화의 양이 많을수록 그것의 일부를 얻는 데에서 경제적으로 배제되는 수요자의 수는 적어질 것이며, 적은 양의 독점재화가 제공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독점재화의 일부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개인들은 보다 풍족하게 독점재화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4) 독점적 공급자가 제공하는 독점재화의 양이 많을수록 그 독점적 공급자는 구매력의 측면에 있어서나 거래를 하고자 하는 열의의 측면에 있어서나 보다 낮은 단계의 수요자들에게로 내려가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단위 당 독점재화의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208 C. 독점적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 독점재화의 판매량 및 경쟁자들간의 재화배분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독점적 공급자는 어떤 상황하에서든 시장에 가져온 독점재화의 양을 모두 판매한다거나 혹은 경매에서처럼 가격경쟁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의도를 가지고 독점재화를 시장에 가져오지 않는다. 그는 보통 독점재화의 일정한 양을 시장에 가져오거나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 그것에 대해 단위 당 고정된 가격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볼 때 실질적인 고려들 속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앞 절에서 표시된 바 있는 재화판매방법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실질적인 경제적 요인들의 총합적인 영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곧 그 독점재화에 대한 경쟁자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한자리에 동시에 모으는 것, 그리고 수많은 절차들을 준수하

는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고려들은 단지 특수한 경우들에 있어서만 이러한 마케팅 방법의 사용을 적합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독점적 공급자가 모든 혹은 적어도 충분한 수의 경쟁자들을 모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희생 없이 필요한 절차들이 준수될 수 있을 때(유명한 경매장에서 독점품목이 경매되는 경우처럼, 그것도 미리 얼마 전에 예고가 되는 경우처럼), 그는 앞 절에서 묘사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소유한 모든 독점재화를 경제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한정된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독점재화를 모두 판매해버려야 할 때 경매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독점적 공급자들이 채택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앞서 언급했듯이, 판매 가능한 독점재화의 수량 중 오직 일부분만을 그가 선정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독점적 공급자가 독점재화의 단위 당 가격을 책정하고 경쟁적 구매자들이 독점 재화에 대한 자신의 필요에 맞추어 책정된 가격에 입각하여 재화량을 택하도록 할 경우 따라서 가격형성에 대한 문제가 처음부터 당면한 문제에서 제외될 경우 우리가 탐구해야 할 문제는 (1) 어떤 소비자가 책정된 단위당 가격하에 독점재화를 획득하는 데에서 경제적으로 배제될 것인가? (2) 독점적 공급자가 책정한 가격 수준의 고저가 독점재화의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09 (3) 실제로 판매된 독점재화의 수량이 어떤 식으로 다양한 소비자간에 배분될 것인가? 등이다.

만일 독점적 공급자가 교환에 가장 열의가 있고(수요자들 중)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경쟁자조차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독점재화의 단위 당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면, (수요측의) 모든 경쟁자는 독점재화의 그 어떤 일부분을 얻는 것으로부터도 배제될 것이고 따라서 매매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 264쪽의 표에서 설명한 상황속에서 보면 - 독점적 공급자 A가 말의 가격을 곡식 100부셀로 고정시키거나 혹은(그 가격은 아니더라도) 80부셀보다 약간만이라도 높게 고정시켰을 때의 경우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에서 언급되어지는 독점재화에 대한 8명의 수요자 중에 그 누구도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경제적 교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점적 공급자가 말의 가격을 모든 수요자들이 그 독점재화의 일정량을 얻을 수 없도록 경제적으로 배제시키는 가격수준보다 좀더 낮게 고정시킨다고 가정해보자.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속에서 경쟁자들(수요자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자신들에게 제공된 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고 따라서 앞 절에서 설명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 공급자와 교환거래를 실제로 행할 것이다. 하지만 가격 수준이 이러한 거래들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예컨대 만약 A가 말의 가격을 곡식 75부셀로 책정한다면 B1은 경제적으로 한 마리의 말을 구매할 수 있다. 만약 말의 가격이 곡식 62부셀로 정해진다면 B1은 2마리의 말을 구매할 것이고 B2가 1마리를 구매할 것이다. 만약 가격이 곡식 54부셀이라면 B1은 3마리, B2는 2마리, B3은 1마리의 말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곡식 36부셀의 가격에서는 B1은 5마리, B2는 4마리, B3은 3마리, B4는 2마리 그리고 B5는 1마리의 말을 살 수 있는 등등 계속

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살 수 있는 수요자층이 넓어질 것이다.

만약 우리의 예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확대되어 B1, B2, B3 등등이 구매력과 거래에 대한 열의에 있어서 서로 다른 수요자집단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독점적 공급자에 의해 다양한 수준에서 고정되어진 가격수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가격이 높을수록 독점재화를 소비하는 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개인들, 또는 수요자층이 많아질 것이고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다른 수요자층에 공급되는 수량도 적어질 것이며 독점적 공급자가 판매할 수 있는 독점재화의 수량도 보다 더 작아질 것이다. 반대로 가격을 인하할수록 독점재화의 일정량을 얻는 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개인들 혹은 수요자층이 더 적어질 것이고 높은 가격에서도 거래에 참여하고 있던 수요자들에 대한 공급은 보다 더 완벽해질 것이며 독점적 공급자의 판매량도 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원리의 형태로 좀더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다:

(1) 독점적 공급자가 독점재화의 단위 당 가격을 정하는 경우, 그 재화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쟁자들(수요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한 단위의 독점재화는 그것과 교환되는 일정량의 재화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때 그 일정량의 가치가 독점재화의 가격보다 적거나 동일한 사람들이다.

(2) 다량의 독점재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경쟁자들(수요자들)은 즉, 그들에게 있어서 한 단위의 독점재화가 교환을 통해 그 대가로 제공되는 일정량의 재화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때 그 일정량의 재화가 독점적 공급자가 정한 가격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일정

한 한도까지는 그 독점재화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일정한 한도란 그들에게 있어서 한 단위의 독점재화가 그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일정량의 재화와 동등하다고 할 때, 그 일정량의 재화가 독점재화의 가격과 같게 되는 그러한 점을 말한다. 이들 경쟁자들 각자가 독점적 공급자에 의해 정해진 가격으로 획득할 독점재화의 양은 그 가격수준에서 각 개인마다 존재하는 경제적 교환의 기초에 의해서 결정된다.

(3) 독점적 공급자가 독점재화의 단위 당 가격을 높게 책정할수록 그것을 획득하는 데에서 배제되는 경쟁자들(수요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여타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독점재화를 보다 불완전하게 공급받게 될 것이며, 독점적 공급자의 판매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관계가 적용된다.

211 D. 독점거래의 원리들 (독점적 공급자의 정책)

앞의 두 절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독점 재화량의 많고 적음이 그것의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독점적 공급자가 정한 가격의 높고 낮음이 독점재화의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었다. 두 경우 모두에서 독점적 공급자에 의해 채택된 정책이 여러 경쟁자간의 독점재화의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독점적 공급자가 그러한 경제적 과정들을 결정하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보았다. 모든 재화의 경제적 교환에 대한 일반원리, 곧 양측 교환 당사자들 모두가 교환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어야 한다는 원리는 독점이라는 상황하에서도

그 유효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계속 유지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로 인해 제한을 받는 거래범위 내에서조차도 독점적 공급자가 전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가운데 경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독점적 공급자가 특정한 양의 독점재화를 판매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그 독점재화의 가격을 정할 수 없다. 만약 그가 독점재화의 가격을 임의로 책정할 경우 그는 자신이 책정한 가격에 따라 판매할 재화의 양까지 동시에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는 대규모의 독점재화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아주 적은 양을 판매했을 경우어나 도달했을 만큼의 높은 수준(high level)에서 가격이 정해지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수준에 가격을 책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 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나 판매할 수 있었을 만큼의 양을 판매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그에게 예외적인 위치를 부여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다. 즉 그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독점재화의 거래량을 결정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것 중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독점적 공급자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을 고려하는 가운데 스스로 이러한 선택을 한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자신의 경제적 이득에 부합하도록 독점재화의 판매량을 적게 혹은 많게 제공함으로써 가격을 조절할 수 있거나, 가격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독점재화의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212 따라서 만약 높은 가격에 적은 양의 독점재화를 판매함으로써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독점적 공급자들은 교환이 경제적 성격을 갖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독점재화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만약 낮은 가격에 많은 양

의 독점재화를 판매하는 것이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고 생각되면 그는 가격을 낮출 것이다. 만약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가장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독점적 공급자는 처음에는 가격을 가능한 한 높이 책정하여 오직 적은 양의 독점재화를 판매할 것이고, 후에 점차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판매를 늘림으로써 연속적으로 모든 수요자층을 공략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고려해 볼 때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독점적 공급자는 처음부터 많은 양의 독점재화를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이다. 독점적 공급자는 어떤 환경 하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독점재화의 일정량을 시장에 가져가는 대신 폐기처분 해버리거나 혹은 -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거나, 혹은 그가 소유한 생산수단의 일부를 독점재화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대신에 파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경우(즉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독점재화의 전체량을 판매하는 것이 - 매우 적은 구매력을 갖거나 그 재화에 대한 욕구를 별로 갖고 있지 않은 수요자층에게까지 독점재화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양이 판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공급가격이 매우 낮아 - 그가 소유한 독점재화의 일부를 처분해버리고 잔여 재화만을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수요자층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보다 더 적은 이득을 가져 다 줄 경우)에 그는 그러한 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독점재화의 가격이 항상 혹은 일반적으로 독점적 공급자에 의해 판매되는 양에 정확히 반비례하여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가정하거나 독점적 공급자가 책정한 가격과 독점재화의 판매량간에 유사한 반비례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예컨대 만약 독점적 공급자가 1,000단위의 독점재화 대신 2,000단위를 시장에 가져온다고 해도 그 재화의 단위 당 가격이 반드시 6플로린에서 3플로린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경제적 상

황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예컨대 5플로린 정도로 밖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2플로린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는 독점적 공급자가 보다 많은 양의 독점재화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총수입은 보다 적은 양의 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총수입과 정확히 같을 수도 있다. 반면에 다른 상황에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다. 만약 우리의 예에서 독점적 공급자가 1,000단위의 독점재화를 판매할 경우, 그의 총수익금은 6,000플로린이 될 것이다. 하지만 2,000단위를 판매한다고 하여 그가 반드시 6,000플로린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10,000플로린이 될 수도 있고 4,000플로린 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개인마다 상이한 재화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갖는 재화량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B는 자신이 획득하는 일정한 재화 중 첫 번째 독점재화가 교환에 있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제공할 재화 10단위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하는 반면, 2번째는 9단위, 3번째는 4단위 그리고 4번째는 단지 1단위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재화에 대해서는 위의 가치가 8, 7, 6, 5 등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 재화는 곡식이고 두 번째는 사치품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판매량의 증가가 어떤 한 계점을 넘어서자마자 곡식의 가격은 사치품의 가격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다.(마찬가지로 판매량의 감소는 곡식가격의 훨씬 빠른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만약에 모든 독점적 공급자들이 자신의 이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더불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들의 정책은 자연히 가격을 가능한 한 최저가에 고정시키거

나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독점재화를 판매하는 쪽으로 정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독점재화가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수요자 혹은 수요자집단에게 제공되거나, 각 개인에게 가능한 가장 많이 독점재화를 제공하는 쪽으로 정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독점적 공급자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다. 그의 경제 정책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일정량의 독점재화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독점재화의 모든 양을 경매에 부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가장 많은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미리 정한 양만을 214 가 예상했던 가격에 판매한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독점재화 모두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준에 정확하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에 가격을 고정시킨다. 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올바른 경제정책은 일정량의 독점재화만을 판매하든지 혹은 일정 수준에 가격을 책정하든지, 그 어떤 경우든지 간에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적은 양의 독점재화를 매매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양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독점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의 정책은 옳바르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가 자신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생산량을 제한하지 않고 생산량을 늘린다면, 그리하여 경제계의 소모 및 그 외 여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궁극적인 이익은 더욱 작아지도록 한다면 그는 더욱 더 비경제적으로 행동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함으로써 설사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있더라도 가격을 높이 책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은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 역시 옳은 정책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만약 그가 독점재화

의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그 가격에 경제적 교환이 가능한 모든 경쟁적 구매자들에게 독점재화를 완전히 공급해주지 못하여 일부는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의 정책은 역시 올바른 정책이 아닐 것이다. 이런 종류의 상황은 그가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경험과 역사에 의해 뒷받침된다. 모든 독점적 공급자의 정책은 그들의 경제활동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위와 같은 고려에 입각해서 시행되어져 왔다. 17세기에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는 몰루카제도 안에 있는 향료 재배지의 일부를 파괴했다. 많은 양의 향료가 동인도에서, 그리고 많은 양의 담배가 북미에서 빈번히 불에 태워졌다. 길드는 여러 수단을 통해(곧, 긴 견습기간이나 특정 수 이상의 도제의 제한 등을 통해) 최대한 직공의 수를 제한하고자 했다. 이런 모든 조치는 독점자적인 입장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여러 독점재화의 양은 독점적 공급자 혹은 독점회사에게 215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되었다. 더 자유로운 거래 공장의 출현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영향들이 길드가 시장에 들어오는 재화의 양을 독립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길드조직 전체가 - 독점적 성격에 관한 한 - 비효율적이 되어 버렸다. 직접적으로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적 공급자의 세금이나 유사한 조치는 시장에 유입된 많은 양의 재화의 충격 앞에 즉시 무릎을 꿇고 말았다. 본래 이 세금들은(가격을 깎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웠던) 개개인들, 곧 길드 전체의 이익 내지 독점적 공급자들이 만든 회사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개개인들에게 일정한 제한들, 특히 독점적 공급자 그룹에 이익이 되는 제한들을 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과되었던 세금들이었다. 그러나 시장에 유입되는 재화의 양을 조절하는 길드의 권한이 박탈되면서

그들은 더 이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길드의 모든 조합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수공품들이 항상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양만큼만 판매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었다. 이 통제권을 침해하는 자는 늘 길드에게 가장 위협한 상대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그들에 대항하여 길드는 끊임없이 정부의 보호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산업에 의해 공급된 많은 공장제품으로 인해 초래된 길드 통제권의 침해는 곧 길드체제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 절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독점적 공급자가 팔기로 결정한 각각의 재화의 일정량의 (시장)가격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된다. 또한 독점적 공급자가 독점재화의 단위 당 가격을 결정할 경우, 그 가격에 따른 판매량은 독립적으로(곧, 독점적 공급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재화의 배분은 정확한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경제적 과정은 우연이 아닌 몇 가지의 명확한 원리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다.

독점적 공급자가 우리가 보았듯이 오직 가격이나 판매량 중의 하나만을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의 의사결정이 그 어떤 경제현상의 비결정성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독점적 공급자가 가격의 수준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거나 또는 독점재화의 판매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능력이 있지만 시장에 유입된 독점재화의 가격과 판매량 중 그의 경제적 이익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특정한 가격과 특정한 양뿐이다. 따라서 만약 독점적 공급자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이라면 그는 자신이 판매할 독점재화의 양이나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명확한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각각의 주어진 경제 상황은 가격형

성과 재화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명확한 범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이나 재화의 분배는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독점거래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점에서 명확한 법칙에 엄격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오프나 불완전한 지식은 이 법칙으로부터의 이탈을 유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탈은 사회경제의 병리학적인 현상으로서, 병자의 생리적 증상이 생리학의 법칙을 반증하지 못하는 것처럼 경제학의 법칙을 반증하지 못한다.

3. 상호경쟁상태에서 상품의 가격형성과 배분

A. 경쟁의 기원

우리가 독점적 공급자를 국가나 어떤 사회기관에 의해 개인들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이해한다면, 독점적 공급자에 대하여 너무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재산 소유의 결과로서 혹은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 덕분에 다른 개인들이 경쟁적으로 제공하기가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재화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특별한 환경이 없는 경우에도 가끔 독점적 공급자의 출현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인 장벽이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지방에 정착한 장인, 그리고 그곳에는 그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아무도 없는 장인,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의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어떤 지역에 정착하는 상인, 의사, 변호사는 모두 어느 의미에

선 독점적 공급자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 사회에 제공하는 상품은 적어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로부터만 유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번창하고 있는 많은 도시의 역사는 그 지방이 과거에 작고 인구가 별로 없었을 때에 거기에 정착했던 첫 번째 직공에 대해 서술한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동유럽과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의 곳곳에서 여행자들은 이러한 특별한 종류의 독점적 공급자를 발
217 견할 수 있다. 자유경쟁에 대한 사회적 제한이 아닌 자연스런 현실 상태로서 이해되는 독점은 초기의 좀더 원시적인 현상이며 경쟁은 그 후에 따라오는 현상인 것이다. 경쟁 하에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독점거래의 현상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경쟁이 독점으로부터 발전하는 방식은 문명의 경제적 진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의 증가, 여러 경제활동주체의 수요증가 그리고 그들의 점점 증대하는 부는 비록 독점적 공급자가 생산을 증대시켜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 많은 경우에 있어서 - 점차적으로 보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의 독점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허락치 못하도록 하며 따라서 그로 하여금 독점재화의 가격을 점점 더 높이도록 한다. 그리하여 사회는 그에게 있어 점점 더 바람직스러운 독점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어느 특정분야의 첫 번째 장인, 첫 번째 의사 혹은 첫 번째 변호사는 각각의 지방에서 환영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경쟁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 지방이 번창하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얼마 후에는 보다 덜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좋지 않은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곳의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간주되게 될 것이다. 독점적 공급자는 그의

상품(혹은 노동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늘어나는 요구에 항상 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응한다 해도 그에 따른 판매증가가 그에게 항상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독점적 공급자는 고객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게 되며, 그 결과 그의 독점상품에 대한 일부의 경쟁자들(수요자들)은 전혀 아무 것도 얻지 못하거나 매우 불만족스럽게 그리고 불충분하게 그것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부유한 고객들도 종종 그의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소홀함과 그 높은 가격에 대해 불평을 하게 될 것이다.

방금 묘사한 경제적 환경은 보통 - 사회적인 또는 다른 장벽이 없는 한 - 경쟁자체에 대한 수요가 경쟁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따라서 우리의 다음 임무는 독점 하에서 관찰되어지는 여러 유사현상과 비교하는 가운데 경쟁의 출현이 상품의 배분, 판매 및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218 **B. 경쟁자들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의 수량이 가격형성에 미치는 효과; 경쟁자들에 의해 결정된 주어진 가격이 판매량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이 두 경우에 있어서 경쟁적 구매자들간에 재화의 배분에 미치는 효과⁶²⁾**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나는 - 이 문제에 대한 탐구의 기초로서 - 독점거래의 원리들에 대한 앞의 설명에서 예로 썼던 사례들을 사용할 것이다. 264쪽의 표에서 B1, B2, B3 등은 개별 농부나 농부의 그룹을 나타낸다. 각 농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새로이 획득하는 말

62) John Prince-Smith, Der Markt, eine Skizze, Vierteljahrsschrift für Volkswirtschaft und Kulturgeschichte, I, (1863), part IV, 148ff 참고.

은 첫 번째 열에 표시된 곡식의 양과 같은 가치를 가지며 각각의 추가되는 말은 그 앞의 말보다 10부셀 만큼씩 적은 가치를 갖는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서로 경쟁하는 여러 명의 판매자들에 의해 - 판매를 위해 - 제공되는 어떤 상품의 수량이 많고 적음이 그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재화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경쟁자들(수요자들)간의 재화의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공급측에 A1, A2라는 두 사람의 경쟁자가 있고 그들은 판매할 세 마리의 말을 갖고 있는데 A1은 두 마리, A2는 한 마리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앞서 언급한 바에 비추어 볼 때, 농부 B1이 두 마리의 말을 사고 B2가 한 마리를 사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 가격은 곡식 60부셀과 70부셀의 사이가 될 것이다. 70부셀보다 더 높은 가격은 두 농부 B1과 B2의 경제적 이득 때문에 불가능하며 60부셀보다 더 낮은 가격은 B3와의 경쟁 때문에 불가능하다. 만일 A1과 A2가 6마리의 판매할 말을 가지고 있다면 B1은 세 마리, B2는 두 마리 그리고 B3는 1마리를 사게 될 것이며 그 가격은 곡식 50부셀과 60부셀 사이가 될 것이라는 점 역시 명백하다.⁶³⁾

219 어떤 상품의 주어진 일정량이 여러 경쟁적 판매자에 의하여 판

63) 이로부터 다음 사실이 바로 명백해진다. 즉, 시장, 박람회, 거래소, 그리고 모든 일반적인 거래 집중장소가 인간경제에 있어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 것은, 거래관계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경제적인 가격형성이 실제로 이러한 제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들 시장에서 발전하는 투기speculation는 - 비경제적인 가격이 그 어떤 요인들에 의한 것인 간에 - 형성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또는 적어도 그것이 인간경제economic of men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갖는다.(Prince-Smith, *op. cit.*, pp.143ff; Otto Michaelis, *Die wirtschaftliche Rolle des Spekulationshandels*, *Vierteljahrsschrift für Volkswirtschaft und Kulturgeschichte*, II, (1864) part IV, 130ff, III (1865) part II, 77ff; Karl Scholz, *Der Wochenmarkt*, *ibid.*, V (1867) part I, 25ff; A. Emminghaus, *Märkte und Messen*, *ibid.*, 61ff.)

매됨에 따라 초래될 상품의 가격과 배분을 독점 하에서 나타나는 상황과 비교할 경우 우리는 완전한 유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일정량의 상품이 하나의 독점적 공급자에 의해 판매되든, 여러 명의 공급 경쟁자에게 의해 판매되든지 간에 - 상품이 애초에 경쟁적 판매자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었던지와는 상관없이 - 가격형성 및 그에 따른 경쟁적 구매자들 사이의 상품배분에 미치는 효과는 꼭 같은 것이다.

비록 판매 재화량의 많고 적음이 경쟁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독점 하에서의 가격과 재화의 배분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독점적 공급자만에 의해서든지 혹은 여러 경쟁적인 공급자들에 의해서든지간에 특정량의 상품이 공급된다는 사실은 방금 언급한 경제현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상품들이 주어진 일정한 가격에 판매되어지는 곳에서 유사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가격수준의 고저는 상품의 총판매량 뿐만 아니라 각각의 경쟁적 구매자가 실제로 얻게 되는 양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고정된 가격하에서) 재화가 유일한 독점적 공급자에 의해 시장에 공급되는지 혹은 여러 명의 경쟁적 공급자들에 의해 공급되는지의 여부는 여러 구매자들이 얻게 되는 공급량이나 총판매량에 아무런 직접적인 또는 필연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독점상품의 주어진 양이 그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밝혀진 원리들(263쪽), 주어진 가격이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밝혀진 원리들(268쪽),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 상품을 구매하려는 여러 경쟁자들 사이에

서의 상품배분과 관련하여 밝혀진 법칙들은 여러 명의 개인들(공급측의 경쟁자들)이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일정량의 상품에 대해 수많은 개인들(수요측의 경쟁자들)이 경쟁하는 모든 사례에 완전히 적용될 수 있다.

220 **C. 한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의 경쟁이 판매량과 판매가격에 미치는 효과(경쟁자들의 정책들)**

각각의 특정한 상품판매량에 대해 하나의 구체적인 가격이 결정되고, 또 일정하게 정해진 가격하에서는 일정한 판매량이 있으며, 이 두 경우에 있어서 판매되는 상품들에 대한 일정한 배분이 있다는 점을 방금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들에 있어서 그 판매재화의 수량이 독점적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지 혹은 다수경쟁자에 의해 공급되는지의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 또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기타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천 단위의 상품이 독점적 공급자에 의해 공급 판매되든 다수경쟁자에 의해 공급 판매되든 그 상품의 가격과 배분은 똑같을 것이다. 어떤 상품이 정해진 가격하에서(예를 들어 그 상품 한 단위가 세 단위의 다른 상품과 교환된다고 하자) 독점적 공급자에 의해 판매되든 다수의 경쟁자들에 의해 판매되든 간에 판매되는 총 수량 및 그 수량의 수많은 경쟁적 소비자들간의 배분은 정확히 똑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공급 측면에서의 경쟁이 상품의 가격형성과 총판매량, 경쟁적 소비자들간의 상품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위해서

는 판매를 위해 공급되는 재화의 수량이 달라야만 하거나 아니면 경쟁적 판매자들이 공급경쟁체제 하에서는 독점체제 하에서의 가격과는 다른 가격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어떤 상품의 공급 측면에서의 경쟁이 판매되는 그 상품의 수량과 배분 그리고 그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우리가 이하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이와 연관된 경제현상을 명확히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경우, 곧 독점적 공급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량의 독점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서로 경쟁하는 두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독점적 공급자가 죽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독점재화들 및 생산수단을 두 상속자들에게 똑같이 물려주었다고 하자. 이것은 방금 가정한 간단한 예이다. 독점적 공급자의 두 상속자가 서로 경쟁을 하는 대신에 하나의 회사에서 협력자로서 그들의 유언자의 독점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221 않을 것이다. 혹은 이 두 상속자는 소비자로부터 최대한 이득을 끌어낸다는데 있어서 상호 합의하고 이에 기초해서 재화의 판매량이나 그들이 정할 재화의 가격을 함께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그들은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상호간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소비자를 상대로 독점정책을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그 어디서나 흔히 관찰될 수 있는 이러한 경우들의 각각에 있어⁶⁴⁾ 우리는 앞서 독점거래에서 목격한 것과 동일한 현상에

64) 독점적 공급자가 가장 호전적인 자세로 경쟁자의 진입을 방해하여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현상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경쟁자의 위치가 확고해지면 독점적 공급자가 경쟁자와 합의하는 것 또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독점적 공급자들의 초미의 관심은 경쟁자

분명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개인은 공급측면에 있어 경쟁자가 아니고 독점적 공급자들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경우는 우리가 현재 논의할 범주 내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두 상속자가 독점재화의 판매를 독립적으로 추구할 것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경쟁의 사례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전에는 독점재화였던 이 물량이 이전 상황과 반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판매될 것이며 이 두 경쟁자들에 의해 공급가격은 어떻게 책정될 것인가?

앞 절에서 우리는 독점적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재화의 총량을 판매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것 따라서 그들이 독점재화의 일부를 파괴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보통 낮은 가격에 전체를 판매할 때보다 적은 양의 재화판매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222 이었다. 독점적 공급자가 1000파운드의 독점재화를 소유하고 있고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서 800파운드를 파운드당 은 9온스에 판매하거나 전체량을 은 6온스에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독점재화의 전체량에 대한 대가로 은 6000온스를 가지거나 800파운드에 대한 대가로 은 7200온스를 가지는 것은 그에게 달려 있다. 만약에 독점적 공급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라면 그의 선택은 불 보듯 뻔하다. 그는 자신의 독점재화를 손상시키거나 거래에서 제

가 기반을 잡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경쟁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면 그의 경제적 이익은, 경쟁자가 확립된 이후에도 독점정책이 가능하다고 입증되는 모든 경우에, 이 두 번째 회사와 협력하여 변경된 독점정책을 시행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과도한 경쟁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서 두 개인 모두에게 불이익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두 경쟁자는 처음에는 상호 적대적이다가도 곧 협조하게 된다.

외시킴으로써 200파운드의 독점재화를 파괴할 것이고 남은 800파운드만을 판매할 것이다. 또는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 독점적 공급자는 이와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수준에 가격을 정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전에 독점재화였던 1000파운드의 재화를 두 경쟁자(공급자)가 나누어 갖게 되었다면, 두 사람 각각에 있어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다. 만약 둘 중 하나가 일부의 분량을 처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거래에서 제외시킨다면 그는 물론 그의 재화에 대한 명확한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절대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또는 아주 드문 경우에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두 경쟁자 중 한 명인 A1(예를 들어 500파운드 가운데 200파운드의 독점재화를 파괴하거나 거래에서 제외시킨다면) 그의 행위는 의심의 여지없이 파운드 당 가격을 6온스에서 9온스로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더 많은 이익을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의 행동의 결과로 A2는 3000온스 대신에 4500온스를 얻게 되는 반면 그는 남은 300단위를 교환함으로써 오직 2700온스(3000온스 대신)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의도된 이익은 오직 그의 경쟁자에게만 발생하고 그 자신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급에 있어서의 경쟁의 출현이 주는 첫 번째 효과는 어떤 경쟁자도 이용 가능한 상품의 수량의 일부를 파괴하거나 교환에서 제거함으로써, 혹은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생산수단을 방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223 다는 것이다. 독점 하에서 특유하게 나타나는 두 번째 경제현상 역시 경쟁에 의해 제거된다. 다시 말해서 앞 절에서 언급했던 이득 곧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경쟁에 의해 제거된다. 앞서 우리는 처음에는 높은 가격에 적은 양의 독점 재화를 판매하고 점차적으로 많은 양을 낮은 구매력을 갖는 수요자 층에게 잇달아 판매하여 점진적인 방법으로 모든 층의 수요자들을 공략하는 것이 독점적 공급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방식은 경쟁이 존재할 경우 즉각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A1이 A2라는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계층들에 대해 이런 종류의 점진적인 공략을 시도하여 적은 초기물량의 재화만을 판매할 경우, 그는 아마도 그에게 이익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가격을 올릴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오히려 그의 경쟁자가 그의 행동으로 인해 생성된 공백을 채우고 의도된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화의 배분과 가격형성에 있어서 진정한 경쟁의 효과가 무엇이 됐든 사회적으로 가장 유해한 독점의 두 가지 영향이 경쟁을 통해 제거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급층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일부 물량을 파괴하거나 그 재화의 생산에 쓰일 생산수단의 일부를 파괴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인 각 경쟁자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계층을 연속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쟁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있어 또 다른,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과거의 독점재화)의 수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독점은 일반적으로 독점적 공급자의 수중에 있는 재화량의 일부만이 판매되도록 하거나 혹은 사용될 수 있는 생산수단의 일부만이 사용되도록 한다.

진정한 경쟁은 항상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킨다. 경쟁체제는 보통 이용 가능해지는 독점재화의 물량을 더욱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 이상의 경쟁구매자가 소유한 생산 수단들이 하나의 독점적 공급자가 소유하는 경우처럼 좁게 한정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독점적 공급자보다 다수의 공급자들이 더 많은 양의 재화를 판매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경쟁이 존재할 경우 현실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재화의 총량을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하게 되는 재화의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보다 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생산 수단에 있어 자연적 제한이 없을 경우, 이것은 보다 더 많은 사회계층이 점점 더 낮은 가격으로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일반적 재화의 공급이 점점 더 완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절에서 나는 왜 독점적 공급자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일정하게 정해진 양의 재화를 가져와 경매에서처럼 가격결정을 기다리지 않는지, 또한 왜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자신의 재화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을 먼저 책정하고 그것이 판매에 미치는 효과를 기다리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 상품을 판매하는 여러 명의 경쟁자들이 존재할 때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그들 각각은 자신의 재화를 고정된 가격에 제공한다. 이때 그 가격은 그들 각각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주도록 계산된 값이다. 이들의 행동을 독점적 공급자의 행동과 구별해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독점적 공급자는 종종 오직 독점재화의 일부만이 소비자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반면에 경쟁은 모든 경쟁자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총재화량 및 경쟁자가 가진 총재화량을 대상으로 그의 가격을 책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가격은 개개인들이 무지하지 않으며 아무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모든 경쟁적인 공급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재화량에 효과를 미치는 가운데 형성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가로 덧붙여져야 한다. 즉 우리가 보았듯이 경쟁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재화의 물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이다.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는 요인들이다.

한 재화의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들의 경제적 활동의 방향조차도 경쟁에 존재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독점적 공급자는 자연히 높은 사회계층만 달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독점재화를 놔두고 낮은 구매력을 가진 사회계층은 그 독점재화에 대한 소비에서 배제시키려 한다. 일반적으로 그에게 있어서는 적은 물량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많은 물량을 통해 적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훨씬
225 더 유리하고도 편리하다. 그러나 경쟁은 가장 적은 경제적 이익조차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므로, 그 어느 때라도 경제적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장 낮은 사회계층에게도 재화가 미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독점적 공급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시장에 유입되는 재화의 가격이나 수량 중의 하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는 보다 더 큰 구매력을 가진 계층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가장 가난한 사회계층에 의해 소비될 재화로부터 얻어지는 작은 이익은 기꺼이 포기한다. 그러나 경쟁체제 하에서는 개개의 경쟁자는 그 누

구도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이나 판매량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쟁체제 하에서는 각 경쟁자는 심지어 가장 적은 이익조차도 얻기를 원하며, 따라서 그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기를 더 이상 등한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쟁은 수많은 작은 이익들을 추구하는 경향 및 고도의 경제적 효율성을 갖는 대량생산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각 단위 당 이익이 적을수록 비경제적인 낭비는 보다 위험스러워지기 때문이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아무 생각 없이 구시대적인 방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일이 점점 더 불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A.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본질

교역이 거의 없고 다양한 가구들이 자신의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재화를 자가생산(自家生産)을 통해 직접 얻어야만 할 정도로 낙후된 경제를 상정해 보자. 이런 경제에서는 재화가 고립화된 경제 하려는 economizing 개인들에게 가치를 가지려면 이 재화들이 당사자나 그 가족들의 필요를 직접 충족시켜줄 수 있을 때뿐이다.⁶⁵⁾ 그러나 사람

65) Gustav Schumoller, "Die Lehre vom Einkommen in ihrem Zusammenhang mit den Grundprincipien der Steuerlehre,"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aatswissenschaft*, XIX (1863), 53 참조

들이 점차 자신의 경제적 이해에 민감해지면, 서로 교환관계를 맺고 물물교환을 시작한다. 사람들이 경제재를 소유하면, 교환을 통해 다른 종류의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상황이 마침내 도래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경제 하려는 개인들이 자신의 필요를 확실히 충족시키기 위해 이 필요를 충족시키는 특정 재화들을 직접 확보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보다 발전된 이런 사회 상황에서도 경제 하려는 개인들이 특정한 재화를 보유하고, 또 직접 사용하여 '필요의 충족'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에는 중전과 마찬가지로 이 재화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에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재화의 종류는 달라지겠지만 각 개인들은 자신의 필요를 직접 충족시켜주는 여타 재화들과 교환될 수 있는 구매력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립된 개별 가구들로 구성된 경제에서 재화가 가치를 가지기 위해 필요한 특수한 조건이 새로운 사회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가치는 자신의 필요들 중 하나를 충족하려면 그 재화를 지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문제의 재화를 가지지 못할 때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할 때) 그 재화가 우리에게 가지는 중요성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가치는 필요의 직접적인 충족이라는 조건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필요의 간접적인 충족을 배제하지 않는다. 가치를 가지려면 재화는 그 재화를 우리가 지배할 수 없었다면 제공되지 않았을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 의미에서 가치를 거론하는 경우,

재화가 제공하는 필요의 충족이 직접적이냐 혹은 간접적이냐는 가치의 존재와 상관없는 문제이다. 사냥으로 잡은 곰의 가죽은 자급자족적 사회에 사는 사냥꾼에게는 그 곰 가죽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충족시키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어떤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만 가치를 가질 것이다. 그 사냥꾼이 교환관계에 들어간다면, 그 가죽은 정확히 똑같은 이유에서 그에게 가치가 있을 것이다. 두 경우에 가치 현상value phenomenon의 본질적 성격에 미치는 차이란 전혀 없다. 첫 번째 경우, 만약 곰 가죽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그 사냥꾼은 살인적 추위에 노출되거나 **직접적** 방식으로 그 곰 가죽을 사용하여 충족시켰을

228 다른 필요를 포기해야 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두 번째 경우, 곰 가죽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그 곰 가죽을 가지고(교환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재화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그가 얻을 수 있었을 필요의 충족을 실제로는 포기해야 했을 것이다. 이 직접적·간접적 충족이란 차이 말고 두 경우가 재화의 가치의 본질에 미치는 차이는 없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의 곰 가죽의 가치이든 두 번째 경우의 곰 가죽의 가치이든 모두 경제 생활이란 동일한 현상의 두 가지 다른 형태일 따름이다. 두 경우 모두 가치는, 경제 하려는 개별 인간들이 자신의 필요 충족이 특정 재화들에 대한 지배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재화들이 그 개별 인간들에게 지니는 중요성이다. 두 경우 모두 가치현상에 특별한 성격을 부여하는 점은 재화들이 그 재화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하려는 개인들에게 중요성(우리가 첫 번째 경우엔 직접적으로 두 번째 경우엔 간접적으로 고용됨으로써 가치라고 부르는 중요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경우 모두 하나의 일반적인 가치현상의 두 가지 다른 형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특히 경제학에서 중요하므로 각각에 대한 별개 용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사용가치**, 그리고 두 번째 경우를 **교환가치**라 부른다.⁶⁶⁾

사용가치는 특정 재화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면 제공받지 못했을 필요의 충족을 **직접** 확보케 하기 때문에 재화들이 우리에게 지니는 중요도이다. 교환가치는 이 재화들의 소유가 동일한 결과를 간접적으로 확보해주기 때문에 이 재화들이 우리에게 지니는 중요도이다.

B. 재화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관계

229 자급자족 가수로 구성된 경제에서는, 경제재는 이 재화들을 소유한 경제 하려는 개인들에게 사용가치를 가지거나 아니면 전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문화적 발전이 상당히 진전된 사회와 상업활동이 활발한 사회에서도 재화를 소유한 경제 하려는 개인들 자신에게는 의심할 여지없이 높은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교환가치는 없는 재화들이 자주 관찰된다.

아주 특이하게 기형적인 사람의 목다리, 작가가 스스로 만들고 자신만 사용하는 노트, 가족 문서들, 여타 유사한 재화들은 특정 개인들에게는 상당한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이 재화들을 가지고 간접적 방식으로, 즉 교환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려 했다면 대개의 경우 실패로 끝났을 것이다. 선진 문명 사회에서는, 그 정반대의 관계가 더욱 흔히 일어난다. 외과수술에 필요한 기구들

66) 원저에서 원래 여기에 각주가 있으나, 부록G(390쪽)로 옮겨 실었음 - 영역자

은 그 생산자나 판매자에게는 전혀 사용가치가 없다. 극소수의 학자들이 해독하는 외국어로 쓰여진 서적들도 서점 주인에게는 아무런 사용가치도 없다. 마찬가지로 안경점의 안경이나 광학기구들은 통상 안경점 주인에게 사용가치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이들 재화들은, 교환의 잠재적 기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상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교환가치를 지닌다.

앞에서 든 예에서처럼 경제재들이 소유자에게 사용가치 혹은 교환가치 중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고 두 가치를 동시에 가지지 있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가치 중 어느 것이 관련된 개인들의 경제 활동에 보다 결정적이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인간의 경제적 삶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이다. 상업이 괄목할만한 수준 이상으로 발달한 경우, 경제 하려는 개인들은 통상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경제재들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사용할지 선택에 직면한다. 경제재들은 통상 그 소유자들에게 교환가치 뿐 아니라 사용가치도 제공한다. 우리가 소유한 의류, 가구류, 보석류, 수천의 여타 재화들은 대개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에게 사용가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상업이 발달한 경우, 우리는 이 재화들을 간접적으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쓸 수 있으므로 이 재화들은 분명 우리에게 교환가치도 제공한다.

우리가 보았듯이, 재화들이 우리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 고용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지는 중요성이란 하나의 일반적인 가치 현상의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들일 뿐이다. 그러나 이 재화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정도는 두 형태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복권에서 황금잔을
230 탄 가난한 사람에게 그 잔은 분명 높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

다. 그 잔 덕분에 그 사람은(간접적 방식인 교환을 통해) 잔을 타지 못했다 라면 충족시키지 못했을 많은 필요들을 이제는 충족시킬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황금잔의 사용가치는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소유자의 시력에 정확히 맞춘 안경은 아마도 그 안경 소유자에게 상당한 가치가 있지만 그 교환가치는 매우 작을 것이다.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서 경제재가 그 재화의 소유자인 경제 하려는 개인들에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는 무수히 많고 또 두 가지 형태의 가치는 그 크기가 다를 때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어떤 주어진 경우 두 가치 중 어느 것이 경제 계산과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두 형태의 가치 중 어느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경제적** 형태의 가치인가하고 묻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 경제 활동의 본질과 가치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통해 얻게된다.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에서 주도적인 생각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인간 필요들에 대한 최선의 충족이다. 만약 한 재화의 **직접적** 사용을 통해 경제 하려는 한 개인이 직면한 보다 중요한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그 재화를 간접적 방식으로 자신의 필요 충족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 사람의 보다 중요한 필요들은 충족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경우 의심할 여지없이 사용가치가 경제 하려는 당사자의 경제계산과 행동에서 결정적이 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교환가치가 결정적이 될 것이다. 첫 번째 경우, 경제 하려는 개인이 그 재화의 처분권자라면 그 사람의 선택은 그 재화의 직접적
231 고용에 의해 확보될 필요들의 충족일 것이다. 두 번째 경우, 그가 문

제의 재화에 대한 처분권이 있다면, 그는 그 재화의 간접적 고용을 통해 자신의 필요들을 충족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경우 만약 자신이 문제의 재화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지 않아서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처분권을 가졌더라면 이루어졌을 필요들의 충족이다. 그러므로 재화들이 그 소유자에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재화의 경제적 가치는 언제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중 그 크기가 더 큰 쪽이다. 그러나 4장의 논의로부터 경제 교환을 위한(제도적) 기초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어떤 재화의 사용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아닐 경우, 언제나 그 재화의 교환가치가 그 재화의 경제적 가치가 된다.

C. 재화가치의 경제적 중력센터의 변화⁶⁷⁾

경제 하려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들 중 하나가 재화들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는 일, 즉 항상 그 재화들의 사용가치 혹은 교환가치 중 어느 것이 경제적 가치인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두는 일이다. 어떤 재화들을 보유할지 말지 혹은 얼마나 보유할 지 그리고 또 어느 재화를 얼마만큼 팔기 위해 내어놓을 지에 대해 자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모두 이 지식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실제 경제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이다. 그 이유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잘 발달된 시장들에서도 모든 가능한 사용기회나 교환기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

67) “중력의 중심점”center of gravity는 “Schwerpunkt”의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다. 멩거의 제목은 “Ueber den Wechsel im ökonomischen Schwerpunkte des Güterwerthes”이다. 원문의 풍미를 잃지 않으면서 덜 어색한 번역을 할 수 없었다. - 역자주

며 무엇보다도 특히 이 문제의 정확한 해결에 기초가 되는 요인들이
232 변화할 소지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특정 재화의 사용가치를 감소시키는 어떤 요인도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분명 그 재화의 교환가치가 경제적 형태의 가치가 되도록 하고, 또 특정 재화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어떤 요인도 분명 그 재화의 교환가치를 다시 뒷마당으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지닌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재화의 교환가치의 증감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질 것이다. 특정재화의 경제적 형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한 재화가 개인에게 지니는 사용가치가 증가되거나 하락하는 경우,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경제 하려는 개인에게 그 재화가 주는 특정한 만족의 중요도는 변화한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담배나 포도주에 대한 선호를 잃게 되면, 자신이 소유한 담배나 포도주의 재고는 사용가치 대신 교환가치가 지배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냥광狂이나 스포츠광狂이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오락이 종전에 자신에게 의미했던 중요성이 사라지면 사냥 도구, 사냥개 등의 사용가치가 감소하므로 교환가치가 중요도에서 전면에 나서게 되어 이 재화들을 내다 팔 것이다.

인생의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때 특히 이런 유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동일한 욕구의 충족이라 해도 그 의미는 청소년일 때와 성인일 때 다르고, 또 성인일 때와 노인일 때 다르다. 그러므로 여타 요인이 개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 발달의 자연적 과정 하나만으로도 재화의 사용가치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킨다. 아동기의 단순한 장난감들은 사춘기가 되면 그 사용가치가 사라진다. 청년기의 지습서들은 성년이 되면 그 사용가치가 없어지고, 성인기의

생계를 얻기 위한 도구들은 노년기가 되면 그 사용가치가 사라진다. 각각의 경우 그 재화들의 교환가치가 지배적이 된다. 그러므로 사춘기가 되어 아동일 때 자신에게 높은 사용가치를 지녔던 물건들을 처분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다. 우리는 성인에 접어든 사람들이 흔히 과거 사춘기어나 적합했던 오락 도구들뿐 아니라 학생 때의 자습서들을 처분하는 것을 본다. 정력과 용기가 줄어든 노인들이 자신이 한창일 때 쓰던 오락 도구들이나 공장들, 기업체 등 생계수단이었던 도구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볼 수 있다. 만약 자연스런 결과로 비치는 이런 경제현상이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예상만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인간의 가정 생활에 있다. 늙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젊은 가족 구성원에게로 재화가 전수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애정의 결과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는 인간 경제 관계들의 안정성에 본질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233 그 소지자에게 어떤 재화의 사용가치가 증가하면 자연히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어떤 산의 숲에서 연중 산출되는 목재가 단지 교환가치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산림의 소유자가 철광을 녹이는 용광로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목재산출지의 모든 산출물을(빨감으로) 써야할 경우, 그 소유자는 아마도 즉시 자신의 목재와 다른 재화와의 교환을 그만둘 것이다. 자신의 작품을 종전에는 출판사에 팔았던 작가도 잡지사를 설립하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는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어떤 재화의 성격이 변하기만 해도 이 변화로 인해 그 재화의

소유자에게 사용가치는 변하지만 교환가치는 변하지 않거나, 교환가치가 사용가치의 변동 분만큼 등락하지 않으면, 재화 성격의 변화는 경제적 중요도의 중력 센터를 이동시킬 수 있다.

큰 부자들에게는 보통 의류, 말, 개, 마차 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흠이 조금만 생겨도 그 재화들의 사용가치는 거의 전부 상실된다. 이 재화들의 교환가치 또한 감소하지만, 이 경우 이 부자들에게 있어 사용가치의 상실은 교환가치의 상실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교환가치가 중요성에 있어 앞서게 된다.

반면 많은 경우 종전에는 교환가치가 경제적 가치였으나 그 교환가치가 사용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감소되는 방향으로 재화의 성격이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관 주인이나 식료품 가게 주인은 통상 외부 흠집이 난 식품들을 소비한다. 왜냐하면 이런 흠이 생겨 그 식품의 교환가치는 거의 전부 없어지지만 사용가치는 그대로이거나 하락하더라도 교환가치의 하락 폭보다는 하락폭이 작기 때문이다. 다른 업종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조그만 마을의 구두수선공이 왼쪽과 오른쪽이 제짝이 아닌(아마도 양쪽의 치수는 같은) 구두를 신고 있거나, 양복재단사가 정확히 재단되지 않은 양복을 입거나, 모자 제조공이 만드는 과정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었던 모자를 쓰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234 (3) 이제 재화 가치의 경제적 중력 센터를 변화시키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을 설명할 차례이다. 여기에서 세 번째 원인이란 바로 개별 경제주체가 처분할 수 있는 재화들의 양의 증대를 말한다.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을 때, 한 사람이 가진 어떤 재화의 양이 증대하면 거의 항상 그 재화의 각 단위가 자신에게 지니는 가치가 감소되고 교

환가치가 보다 중요해진다. 추수한 직후 농부에게는 곡물의 교환가치가 예외 없이 경제적 형태의 가치이며, 이 사실은 곡물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결과 그 농부에게 곡물의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보다 더 중요해질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부들이 여름까지 여전히 보유하는 곡물들의 경우에는 이 곡물들은 농부들에게 사용가치가 지배적이 된다. 이 책 4장 2절에서 재화들의 교환가치의 중요도가 사용가치와 비교하여 어떤 한도까지 떨어지는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미 충분한 가구(家具)를 소유한 상속자는 많은 가구를 유품으로 다시 상속받는 경우, 이 가구들 중(아마도 일부는 전혀 사용가치가 없을 것이고) 상당수는 자신에게 별 사용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상속자는 팔고 남게 된 가구가 다시 지배적인 사용가치를 가질 때까지 상속받은 가구의 처분을 지속할 것이다.

한편, 경제 하려는 개인들에게 이용가능한 재화의 양이 감소하면, 그 재화의 사용가치는 일반적으로 증가하며, 종전 같으면 교환에 내놓았을 재화의 양은 줄고 이제 사용가치가 지배적이 된다.

235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전체 부(富)의 변화 효과이다. 상업 관계가 잘 발달한 경우, 부의 증가 혹은 감소는 개인에 있어 거의 모든 종류의 재화의 증가 혹은 감소와 같은 효과를 지닌다. 가난해진 사람은 모든 필요의 충족에 있어 긴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러 필요들 중 일부는 질적 측면이나 양적 측면에서 보다 불완전하게 충족될 것이며 그 밖의 일부 필요는 아마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가 곤궁해진 다음에도 종전에 자신의 필요를 우아하게 충족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지금은 변화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최상급 제품이나 사치품이 수중에 있다고 해보자. 만약

그가 경제 하려는 개인이라면, 이 재화들을 팔 것이다. 그래서 그 수입으로 팔지 않았더라면 충족시키지 못했을 보다 중요한 자신과 가족의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데 쓸 것이다. 투기 실패나 여타 불운으로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날린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보석, 미술품, 기타 사치재들을 팔아 그 돈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품목들을 살 것이다. 부(富)의 증대는 유사하지만 정반대의 효과를 가진다. 왜냐하면 종전에 소유자에게 사용가치가 지배적이었던 재화들이 사용가치를 잃게 되는 반면, 교환가치가 커져 사용가치를 앞서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보통 예전에 자신에게 지배적인 사용가치를 지녔던 자신의 소박한 가구들, 초라한 장신구들, 자신의 부에 걸맞지 않는 주택들, 여타 재화들을 내다 판다.

1. 통상적 그리고 과학적 의미에서의 상품이란 개념

고립된 가구들로 구성된 경제에서는 각 경제 단위의 생산활동은 자
가 소비를 위한 재화의 생산으로 한정된다. 이 경제의 성격 자체로 인
해 교환을 목적으로 한 재화의 생산이 배제된다. 그러나 가구 구성원
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家長이 각자의 특별한 능력과 숙련
정도를 적절히 고려하여 다양한 과업들을 가족 구성원들과 자신이 거
느리는 하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립화된 가구들
로 구성된 경제의 특징적 측면은 노동의 분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적 성격, 즉 생산이 순전히 자가自家 소비를 위한 것이며
전혀 여타 재화와 교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 237 물론 이 경우 노동의 분업은 분명 고립된 가구 경제의 테두리 안에
서만 이루어지는 매우 좁게 한정된 성격의 것이다. 특정한 단일 재화
에 대한 어떤 한 가족의 필요의 규모란 너무나 작은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가족구성원 중 한사람이 이 재화의 생산에만 전적으로 매달리
기는 어렵고, 각자가 이 재화의 생산공정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단일
수작업手作業에만 매달릴 정도로 분업화되기는 더더구나 어렵다. 게
다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공급도 대개 상당수의 노동자들을 부양
하기에는 너무나 작다. 그러므로 낮은 발전단계에 있는 사회에서는
소수의 귀족 집안에서나 복잡한 노동분업의 예를 찾아볼 수 있을 뿐
이며, 여타 경제 하려는 개인들의 경우 거의 노동 분업이 없는 상태에
서 매우 좁게 한정된 욕구를 지속한다.

어떤 기술을 획득한 사람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고 그
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진 원료들을 받아 이를 가공하는 단계가
될 때, 그 민족a people은 경제 발전의 첫 걸음을 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테테스Thetes는 이런 유형의 장인匠人들이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오늘날에 와서도 동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런 유형의 장인들만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소비자들의 가정에서
자아낸 실은 직공織工에 의해 옷감으로 짜여진다. 소비자들에 의해
재배된 곡물은 제분공製粉工에 의해 밀가루로 빵아진다. 목공과 대장
장이조차도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주문한 원료들을 대형 고
객들로부터 공급받는다.

비록 장인匠人들이 여전히 종전처럼 주문이 있을 때만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들을 스스로 확보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될 때, 더 높은 복지 수준의 경제발전의 길로 한 발걸음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태는 별 예외 없이 아직 소규모 타운에서 어느 정도 관찰되며, 직종에 따라서는 대규모 타운에서도 관찰된다. 이 발전단계에서는 아직 장인들이 후일의 불확실한 판매를 위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장인들은 원료를 여러 번에 걸쳐 매우 비경제적인 방식으로 구입하거나 생산하지 않음에 따라 노력을 절약함으로써 이들은 이미 자신의 노동력이 허용하는 정도까지 고객들의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⁶⁸⁾

238 이런 재화 공급방식은 이미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경제성과 편의성의 상당한 진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공급방식은 양 집단 모두에게 몇 가지 점에서 여전히 매우 불편하다. 주문한 소비자는 여전히 제품을 기다려야 하고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만들어질 제품의 속성을 결코 확신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때로는 주문이 없거나 때로는 주문이 폭주하므로 생산자는 어떤 때는 빈둥거리야 하고 어떤 때는 주문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 이런 단점으로 인해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제품을 즉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재고를 준비하는 재화 공급방식, 즉 불확실한 미래 판매를 위해 미리 생산하는 체제가 출현하였다. 바로 이 재고를 통한 재화공급 방식이 지속적 경제발전과 함께 발전해 나감으로써 한편으로는 생산자에 의한 공장제 대량생산, 다른 한

편으로는 소비자에 의한(표준화된) 기성 상품의 구매라는 생산·소비 방식으로 진전되었다. 이 방식은 생산자에게는 노동 분업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 최대의 경제성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구매하기 전에 제품을 점검할 수 있어 최고의 구매안전성이라는 편익을 제공한다.

생산자나 상인이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이 **상품**이다. 통상적인 용법에서 상품이라는 용어는(화폐를 제외하고) 이동이 가능한, 유형적 재화들에 한정되어 쓰인다.⁶⁹⁾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즉각 교환에 쓸 수 있는(화폐의) 형태로 유지한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통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상품의 개념이 여전히 더 좁혀진다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통상 쓰는 의미에서 “상품들”이라는 용어는 아주 일반적으로 그 소유자의 의도가 판매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재화들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재화의 소유자는 그의 판매 의사를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대개 그는 자신의 상품들을 구매자들이 습관적으로 모여드는 장소에 전시함으로써 판매 의도를 표

239 현한다. 그런 장소들을 열거하자면 시장들, 정기적 장터fairs, 조직화된 거래소들organized exchanges, 혹은 상품들이 집적되거나 외양이나 현저한 특징적 표지標識(예컨대, 상점shop, 가게store, 도매창고warehouse 등)에 의해 상품의 집적소인 것을 알 수 있는 장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상품의 개념은 그 소유자의 판매의사가 누구에게나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외적 상황 아래 있는 경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혀진다.

어떤 한 민족에 의해 도달된 문명수준이 높고 경제 하려는 각 개인

68) Wilhelm Roscher, *Ansichten der Volkswirtschaft aus dem geschichtlichen Standpunkte*, Leipzig, 1861, p.117; Bruno Hildebrand, “Naturalwirtschaft, Geldwirtschaft und Creditwirtschaft,” *Jahrbücher für National-Oekonomie und Statistik*, I (1864), 17; H. v. Scheel, “Der Begriff des Geldes in seiner historisch-ökonomischen Entwicklung,” *ibid.*, VI (1866), 15; Gustav Schmoller,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Kleinewerbe im 19. Jahrhundert*, Halle, 1870, pp.165, 180, 511ff.

69) 이 절의 나머지 부분과 다음 절 부분은 원전에서는 여기에 하나의 각주로 나온다. - 역자

의 생산이 더 전문화될수록, 경제적 교환을 위한 기초가 더 광범해지고 언제나 상품의 성격을 지닐 수 있는 재화들의 절대적 및 상대적 양은 더 커진다. 그래서 마침내 위에서 언급한 관계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충분히 커지게 되면, 사회의 교환 활동의 지적知的인 부분 혹은 기계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교역으로부터의 나오는 이득의 일부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이런 활동에 대해 보상을 받는 특별한 계층이 탄생한다. 이런 특별한 계층이 탄생하는 상황이 되면, 경제제들은 대개 더 이상 생산자에게서 소비자로 직접 이전되지 않고 어느 정도 상당수의 중개상 등과 같은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된다.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특정한 경제제들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이 경제제들을 팔기 위해 보통 일반에게 공개된 특별한 장소들을 보유한다. 상품이란 용어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 중개상들과 생산자들의 손에 있는 팔려는 의도가 명백한 재화들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용법은 의심할 바 없이 이 재화들을 판매하려는 소유자들의 의도가 누구에게나 특히 쉽게 식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겨났다.(상품을 의미하는 *merchandise, marchandises, Kaufmannsguter, mercanzie* 등은 모두 판매의사가 내포된 용어들임.)

이러한 통상적 용법에서의 상품이라는 의미와는 별개로 학술적 논의에서는 재화의 유형성有形性tangibility, 이동성mobility, 혹은 노동의 산물이라는 성격이나, 그 판매자와 무관하게, 당장 판매할 수 있게 보유한 모든 경제제를 지칭하는 용어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상당수의 경제학자, 특히 독일 경제학자들은 상품을 **판매 의도가 있는 모든 종류의(경제적) 재화**로 정의하였다.

240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의미의 상품 개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률가들⁷⁰⁾과 많은 수의 경제학자들이 통상적 의미에서 상품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을 뿐 아니라 더 광의의 과학적인 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때때로 보다 좁고, 통상적인 의미 중 이런 저런 요소들을 상품의 정의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다.⁷¹⁾

조금 전에 언급된 학술적 의미에서의 상품의 정의로부터 살펴보면, 상품이란 성격은 어떤 재화에 내재된 그 어떤 것, 즉 재화의 속성이 아니라 단지 재화와 이 재화를 지배하는 사람들간의 특정한 관계일 뿐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 관계가 사라지면, 그 재화의 상품이란 특성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어떤 재화를 소유한 경제 하려는 개인이 그 재화를 판매하려는 의도를 버리면, 혹은 이 재화를 더 이상 교환하지 않고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면, 이 재화는 더 이상 상품이 아니게 된다. 모자 만드는 사람이나 옷 만드는 사람이 팔기 위해 자신의 가게에 진열한 모자나 비단 옷은 상품이지만, 모자를 자신이 쓰기로 한다거나 비단 옷 장수가 이 옷을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로 주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 모자나 비단 옷은 상품이 아니다. 한 봉지의 설탕이나 오렌지도 야채점포 주인의 손에 있을 때는 상품이지만 소비자의 손에 넘겨지는 순간 상품의 성격을 잃는다. 주조된 금속 coined metal도 그 소지자가 이것을 교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직접 어떤 소비적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면(예컨대 자신의 銀貨 Thalers를 은 세공업자에게 은 접시를 만들 목적으로 넘겨주면) 그 즉시 “상품”이 아니게 된다.

상품성商品性이란 따라서 재화의 속성이 결코 아니며 단지 재화와 경제 하려는 개인간의 **임시적** 관계일 뿐이다. 그 소유주가 여타 경제

70) 원저에서 여기에 각주로 나오는 부분은 부록H(393쪽)의 첫 번째 절을 보라. - 역자

71) 원저에서 여기에 각주로 나오는 부분은 부록H(393쪽)의 마지막 일곱 째 절을 보라. - 역자

하려는 개인들의 재화들과 교환하고자 하는 재화들은 초기 소지자로부터 마지막 소지자까지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된다. 그 동안 이 재화들은 “상품”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재화들이 이들의 경제적

241 목적지에(즉, 최종소비자의 손에) 도달하는 순간, 분명 상품이 아닌 “상품” 개념에 반대되는 좁은 의미에서의 “소비재”로 변한다. 그러나(특히 주조된) 금, 은의 경우에서 보게되는 것처럼 상품에서 소비재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재화들이 계속 상품성을 띠게 하는 관계 속에 들어 있는 한, 이들은 자연히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⁷²⁾

이로부터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진다. (1) 화폐는 “상품”이라는 자주 언급되는 명제는 **상품들 중 화폐의 특이한 위치**를 설명하는 데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는다. (2) “화폐 그 자체, 특히 주조된 형태의 화폐鑄貨는 어떤 소비 목적에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폐의 상품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지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화폐가 소비되지 않는다는 가정 속에 화폐의 중요한 기능에 대한 오해가 내재되어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논리의 주장이 모든 여타 경제재들의 상품성을 부인하는 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오해에 대해 말하자면) “상품들” 그 자체로는, 특히 이 재화들이 교역되는 형태로는(즉 덩어리, 짐작, 혹은 꾸러미의 형태로는) 어떤 재화도 소비 목적에 기여할 수 없다. 소비되기 위해서는 재화는 “상품”의 성질이 중지되어야 하며 교역될 당시의 형태를 떠나야 한다.(즉 그 재화가 녹여지거나, 분할되거나, 꾸러미에서 풀려 나와야 한다.) 주조화폐coin나 금·은괴는 귀금속이 교역되는 가장 통상적인 형태들

이다. 그러므로 귀금속이 소비되기 전에 이런 통상적 형태에서 변형되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코인이나 금·은괴의 상품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상품의 시장성⁷³⁾

A. 상품의 시장성에 가해지는 외부적 제약들

재화들이 서로 교환되는 비율과 그 비율이 변화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문제는 항상 경제학자들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는 경제학 논문 수만큼이나 무수히 많았다. 사실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가격이론 분야에서 논문을 썼지만 재화들마다 시장에서 쉽게 교환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별로 경제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상품들간에 명백하게 시장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광범위하며 따라서 그 실용적 중요성도 높은 경제현상이다. 즉 생산자와 상인들의 성공 여부는 시장성의 차이에 작용하는 영향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느냐에 크게 달려있다. 따라서 경제과학이 장기적으로 이 시장성 차이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 엄밀한 탐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논란 중인(가장 유동성이 높은) 화폐의 기원에 대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해결도 이 주제를 탐구할 때에만 도출될 것이다.

내가 관찰할 수 있었던 바로는 상품들의 시장성은 다음에 제시된

72) 여기에서 나오는 다음절은 원전에서는 각주였음. - 영역자

73) “Absatzfähigkeit” - 역자

4가지 측면에서 제약되어있다.

(1) **상품들의 시장성은 이 상품들이 판매될 수 있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제약되어 있다.** 상품의 소유자는 자기가 마음대로 살 사람을 선택하여 아무에게나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 상품이 판매될 수 있는 경제 하려는 개인들의 수⁷⁴⁾는 항상 정해져있다. 상품의 소유자는 다음의 사람들에게는 팔 기회가 없다. (a) 그 물건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b) 법적 혹은 물리적 상황에 의해 이 상품의 구매를 금지 당한 사람,⁷⁵⁾ (c) 자신에게 주어진 교환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⁷⁶⁾ 그리고 마지막으로 (d) 특정 수량의 상품

243

과 교환되기 위해 제공되어야할 특정 재화의 수량에 대해, 상품의 원래 소유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제공할 의사가 없는 사람.⁷⁷⁾

상품들의 시장성이 제약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관찰한다면 시장성에 있어 광범한 차이를 보이는 상품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빵과 고기를 팔 수 있는 사람의 숫자와 천문 관측기구들을 팔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비교해 보라. 혹은 와인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사람들

74) “Kreis” - 영역자

75) 여기에서 상품의 시장성에 가해진 제약들은 무엇보다도 사치규제법과 경찰규제들이었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한다. 예컨대 중세에서는 벨벳(우단)의 판매의 귀족이나 성직자 계급에 한정되었고 현대에 와서도 무기의 판매는 많은 나라에서 총기소지에 대한 공식 허락을 얻은 사람에게로 한정된다.

76)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품들(“아직 소개되지 않은 품목들”)은 이 상품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인해 고객의 규모가 매우 작다. 그러므로 생산자들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증대시키려고 상당한 경제적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자신들의 상품을 “알려지게”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개적 공지, 광고, 공표 등의 경제적 중요성을 설명해준다.

77) 상품들의 시장성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필요가 성장하고 부가 증대하면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나 이 요인들에 의해 오히려 시장성이 줄어드는 몇 가지 상품들이 있다. 이 상품들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잘 팔리지만, 그 나라가 경제적 성숙을 이루는 순간 거의 팔리지 않게 된다.(305-6쪽 참조)

수와 산스크리트어Sanskrit로 쓰인 작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수를 비교해 보라. 하위 범주에서는 다르게 분류되지만 일반적 범주에서는 동일한 종류로 분류되는 재화들이 보여주는 시장성의 차이도 아마 더 확연히 눈에 띄게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안경과 같은 광학기구를 파는 안경점에는 원시안과 근시안들을 위한 모든 도수의 안경이 당장 팔 수 있는 재고로 준비되어 있다. 모자와 장갑 상인들, 구두 파는 사람, 모피상인들은 다양한 사이즈와 질을 가진 모자, 장갑, 구두, 모피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도수 높은 안경이 팔릴 수 있는 사람의 수와 중간 도수의 안경이 팔릴 수 있는 사람의 수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중간 치수의 장갑이나 모자가 팔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와 대형 치수의 장갑이나 모자를 살 수 있는 사람의 수 사이에는 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2) **상품들의 시장성은 이 상품들이 팔릴 수 있는 지역의 측면에서 제약되어 있다.** 어떤 한 장소에서 상품이 팔리기 위해서는, 그 상품이 팔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종전의 조건 뿐 아니라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a) 그 장소로 상품을 운반하고 또 판매를 위한 진열을 하는 데 물리적, 법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b) 운반비용과 운반에 드는 여타 지출이 예상되는 교환기회로부터 얻는 이득을 소진 消盡하지 말아야 한다(244쪽).

244

상이한 상품들이 팔릴 수 있는 지역들의 지리적 차이는 이 상품들이 팔릴 수 있는 사람 수數의 차이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상품들에 대한 공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어떤 상품들은 하나의 타운이나 촌락 안에서만 판매될 수 있지만, 일부 상품들은 가까운 인근지역에서만 팔리고, 또 일부는 한 나라 안에서,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모

든 문명화된 나라들에서 팔리는가 하면, 어떤 상품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팔리기도 한다. (오스트리아 서부,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티롤산맥Tyrol의 일부 계곡에 사는 농촌 사람들이 쓰는 특이한 모자는 특정 계곡 지역에서만 팔린다. 독일 스와비아Swabia 지역이나 헝가리 지역의 농부들의 모자들은 스와비아나 헝가리 지역에서 말고는 쉽게 팔리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문명화된 세계의 시장들은 프랑스의 최신 패션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무거운 모피의 시장성은 북구에 한정되어 있고, 무거운 양털 제품의 시장성은 북쪽 온화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가벼운 목면 제품들은 거의 전 세계에서 팔릴 수 있다.

판매지역의 지리적 차이에 비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판매지역의 크기의 차이는 원거리에 있는 시장들에 상품들을 운송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희생들로 인해 발생한다.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또 수로水路에 위치하지 않은 채석장에서 채취한 석재石材의 판매지역이나 모래, 진흙이나 비료의 판매 지역은 2, 3마일을 넘지 못할 때가 많다. 철도가 깔려있는 경우에도 이 상품들의 판매지역들이 15 혹은 20마일을 넘는 경우는 아주 희귀하다. 석탄, 토탄土炭, 장작의 경우에는 그 판매 지역들이, 동일한 조건들 아래에서, 더 넓어질 수 있으나 여전히 좁게 한정되어 있다. 무쇠나 밀의 경우 판매지역은 상당히 더 넓다. 철강이나 밀가루의 판매지역은 무쇠나 밀의 경우보다 더 넓다. 귀금속, 보석, 진주의 판매지역은 이 재화들이 필요하고 또 이 상품에 대해 지불할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 거의 지구 전지역을 포함한다.

운송에 포함된 경제적 희생은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가격 격차로부터 회수되어야 한다. 낮은 가치의 상품들로서는 이 가격 격차가 분

245 명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장작은 브라질의 처녀림과 동유럽의 일부지역에서는 거의 공짜와 다름없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장작을 채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무게의 장작 가격은 어디에서도 충분히 높지 않아서, 그 지역에서의 장작 가격과 브라질 처녀림과 같은 장작 산출지의 장작가격 격차가(산출지의 장작가격이 완전 0이라 하더라도) 장거리 육상항로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 한편, 높은 가치의 상품, 예컨대 시계의 경우, 장작과 같은 무게의 시계가 생산지(예컨대, 제네바)에서 매매되는 가격과 가장 먼 시장들(예컨대, 뉴욕이나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매매되는 가격과의 격차는 충분히 커서 출발지 시장의 가격이 이미 상당히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을 먼 거리에 있는 판매지로 운송하는 비용을 충당하고 남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상품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질수록** 판매지역도 더 커진다.

(3) **상품들은 시장성에 있어 양적 측면에서 제약되어 있다.** 한 상품의 시장성은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필요량의 크기에 의해 양적으로도 제약되어 있다. 게다가, 그 상품의 시장성은 충족시키지 못한 필요량 중에서도 경제 교환을 할 이유가 있는 수량에 의해 제약되므로 그 수량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어떤 한 개인의 특정 상품에 대한 필요량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주어진 기간 동안 이 수량을 초과하는 이 상품에 대한 구매는 기대할 수 없다. 개인들 자신의 필요량의 한계 안에서 필요량 전부가 아니라 경제교환 활동을 해야 할 유인들이 존재하는 수량만큼만 교환을 통해 획득하고자 할 것이다. 특정 상품에 대한 일반적 수요는 그 상품을 원하는 다양한 경제 하려는 개인들의 수요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주어진 상황하에서도 사회구성

원들에게 팔 수 있는 어떤 한 상품의 총 수량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이 한계를 넘는 판매는 상상할 수 없다.

상이한 재화들간에는 그 시장성의 양적 제약은 현저하게 다르다. 일부 상품들은 이 상품들에 대한 매우 제한된 필요들로 인해 특정 시점에서는 결코 팔리지 않기도 한다. 다른 일부 상품들의 경우, 개인들

246의 필요량이 커서 결과적으로 시장성의 한계가 상당히 확장되기도 한다. 또 다른 일부 상품들은 실제 상정해볼 수 있는 어떤 수량으로도 대개 판매될 수 있다.

투피 인디언Tupi Indians의 언어에 대한 연구서적을 출판한 출판사는 별로 비싸지 않는 가격에서 아마 300부 정도의 판매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가에서도 600부 이상의 판매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수 전문가 집단만이 흥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 세대에 걸쳐 학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쓰여진 학술서적은 저자의 명성이 높아지고 장구한 시간이 지나야 예상 판매량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의 흥미를 끄는 과학에 관한 저술은 그 학술적 성격과는 무관하게 수천 부의 판매를 기록할지도 모른다. 대중적 과학 출판물은 2000에서 3000부 혹은 그 이상의 판매고를 달성할 수도 있다. 중요한 소설 작품들은, 좋은 상황 아래에서는 수 차례 판본을 거쳐 20,000에서 30,000부 혹은 그 이상 팔릴 수 있다. 페루에 대한 고고학 연구서와 프리드리히 쉴러Friedrich Schiller의 시집詩集을 비교하거나, 혹은 산스크리트어語에 대한 연구서와 셰익스피어의 연극들을 비교하여 시장성의 수량적 한계에 대한 차이를 느껴 보라! 그러나 상품들간 시장성의 수량적 제약에 대한 차이는 우리가 빵과 고기를 한쪽에 두고, 키니네quinine와 카스토레움castoreum(해리beaver의 생식선sex glands로부터

추출한 매우 강한 냄새를 가진 물질)을 다른 한편에 두고 고려해보거나 혹은 목면제품과 양털제품을 한편에, 천문학 기구와 해부 표본을 다른 한편에 두고 생각해 보면 더 현저하게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중간 사이즈와 초대형 사이즈의 모자와 장갑의 시장성의 수량적 한계를 비교해 보라.

(4) 마지막으로, 상품들은 또한 이 상품들이 팔릴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시장성이 제약되어 있다. 겨울에만 필요한 상품들이 있고, 어떤 경우엔 여름,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더 짧은 순간 동안에만 그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품들이 있다. 다가오는 페스티벌이나 미술품 전시회의 내용을 알리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신문들과 패션품목들은 이런 종류의 재화들이다. 사실 모든(야채류와 같이) 썩기 쉬운 재화들은 속성상 그 시장성이 좁은 시간time period으로 한정된다.

여기에서 첨언되어야 할 점은 상품들의 “재고” 보유는 통상적으로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경제적 희생을 포함

247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관료, 경비 비용 및 이자 손실 등의 경제적 희생이 시간의 차원에서 상품의 시장성에 대한 제약에 미치는 효과는 화물운송비와 여타 운송비가 공간의 차원에서 상품의 시장성에 대한 제약에 미치는 효과와 유사하다. 당장 도살하거나 팔 수 있는 가축들을 소유한 가축업자는 우리의 문명에서는 반드시 가축들을 일정한 시간 안에 팔기 위해 아주 조심스러워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축들이 도살하거나 팔기에 최상의 상태에 있지 못하거나, 이자의 손실을 보거나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는 동물들을 “상품들”로 소지한다는 사실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불해야할(사료비와 같은) 여타 경제적 희생들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양털이나 철 판매 상인이 보유한 상품들도 부분적으로는 물리적 속성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는(보관비용, 이자 손실과 같은) 경제적 이유들로 인해 일정한 시기로 그 시장성이 제약되어 있다.

상이한 상품들간에는 특정 시간 안에 판매되어야만 하는 시간의 길고 짧음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굴, 신선한 고기, 요리된 음식이나 음료, 생화(生花), 다가오는 페스티벌에 대한 프로그램, 정치적 팸플렛 등은 판매 시간상의 제한은 대체로 몇 일이거나 몇 시간에 불과하다. 신선한 과일, 사냥감, 화분에 심겨진 식물, 기타 무수한 유행품목 등의 판매 시간상의 제약은 몇 주일이다. 다른 유사한 상품들 중 일부는 그 제약이 몇 개월인 경우도 있다. 반면 충분히 장기간 보존될 수 있고 또 그 필요들이 지속되는 상품들의 경우에는, 이 상품들에 대한 시장성의 시간적 제약은 몇 년, 수십 년, 심지어 몇 세기까지 확장된다.

상품의 보존과 저장에 수반되는 경제적 희생도 상품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사실로부터 상품의 시장성에 대한 시간상 제약을 다르게 하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요인이 나타난다. 건축에 쓰이는 석재나 장작의 판매상들은 이 상품들을 개방된 들판에 저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판매상들은 보통 가구판매상에 비해 판매를 서두를 필요성이 낮아진다. 가구판매상 역시 말(horse) 거래상인에 비해 시간에 덜 쫓긴다. (이자 손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자 비용 이외에는 거의 추가 비용 없이 저장될 수 있는 금, 은, 보석 등은 앞서 언급한 여타 상품들보다 시장성의 시간적 제약이 훨씬 멀리 확장되는 재화이다.

248 B. 상품들간 시장성의 차이

앞 절에서 우리는 상품의 시장성이 때로는 많은 수의 때로는 적은 수의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고, 때로는 좁고 때로는 넓은 공간적·시간적 및 수량적 제약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은 단지 주어진 경제상황 아래에서 상품들이 판매될 수 있는 외부적 한계에 대한 묘사였을 뿐이다. 이러한 시장성의 외부적 제약 안에서 얼마나 쉽게 상품들이 판매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원인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품들의 성질과 그 소유자의 의도로부터 따져나가야 한다. 상품이란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경제재이다. 그러나 **무조건** 팔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소유자는 이를 팔고자 하지만 아무 가격에서나 팔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보석상 주인은 거의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계 하나에 1 탈러 Thaler(3마르크 은화)의 가격이라면 언제든지 모든 시계 재고를 다 팔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파괴적으로 저렴한 가격에서는 가죽제품 상인도 자신의 모든 재고를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상품들은 판매를 위한 것이지만 아무 가격에서가 아니라 **일반적** 경제상황에 상응하는 가격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두 상인이 판매 부진에 대해 걱정하고 불평하는 것은 말이 된다.

실제로 교환이 행해지는 가격들은 항상 현재의 경쟁 조건들의 결과이며(282쪽),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에서의 경쟁이 보다 완전할수록, 가격들은 당시의 **일반적** 경제상황에 더 잘 부합하게 형성된다. 만약 구매자들간에 상품의 획득을 위한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품의 가격은 당시의 일반적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공급 측면에서 경쟁의 제한이 발생하면, 그 상품의 가격은 이 수준을 상회할 것이다.

어떤 상품의 경우 경쟁이 잘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다고 해보자. 그래서 다른 상품이있더라면 그 소유자들에게 이런 위험이 전혀 없거나 그 정도가 앞의 상품보다 심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 상품의 소유자들은 경제적 가격에서 자신의 재고를 팔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해보자.

249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두 유형의 상품들 사이에 분명 중요한 시장성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다른 상품들의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인 소비자의 손까지 쉽게 또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있으나 시장이 잘 조직화되지 않은 이 상품의 경우에는 많은 경제적 희생(비용)을 지출해서야 비로소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아예 전혀 도달되지 못할 것이다.

장터market places, 정기 시장fairs, 상품거래소exchanges, (예컨대, 대형 항구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공공 경매public auctions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화된 공적 기관들은 경제적 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 특정 상품의 가격 매기기에 이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집합시키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조직화된 시장이 있는 상품들의 경우에는 상품 소유자들은 별 어려움 없이 당시의 일반적 경제상황에 부응하는 가격에서 이 상품들을 팔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조직화가 취약한 상품의 경우에는 이 상품들이 일관되지 못한 가격들에서 거래되거나 때로는 전혀 처분되지 못하기도 한다. 특정 품목에 대한 조직화된 시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생산자이거나 이 품목을 거래하는 여타 경제 하려는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의 상품을

경제적 가격에서 판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한 도시에 양털 시장 혹은 곡물시장을 개장하면 이 품목들을 생산하는 인근 산출지에서의 양털과 곡물의 시장성이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특정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소위 상장listing)를 허용하면 그 주식의 경제적 가격을 확정하는데 기여하며, 또 이 주식의 상장은 그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경제적 가격들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주기 때문에 이 주식의 시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게 된다.

소비자 모두가 어디에 가면 어떤 상품의 소유자를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상품이 경제적 가격에서 언제든지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시장성의 증대는 도매 거래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통상 관찰하듯이 도매상들은 자신의 창고들을 가능한 한 서로 가까이 두는 관행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관행 덕분에 발생하는 창고의 집중이 소비자들의 집중도 유발하게 한다. 소매 거래에서 이런 집중은 잘 일어나지 않는 데 이로 인해 소매 상업분야에서는 경제적 가격이 잘 확립되지 않는 250 다. 물론 이와 같은 집중의 부재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또 시간을 절약하면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가격에서의 판매가 거래 및 가격 형성의 집중 포인트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 유일한 결과는 아니다. 이 거래 센터들에서 형성되는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됨으로써 이 거래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거래하는 사람들도 당시 경제상황과 부합하는 가격들에서 언제든지 사업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대규모 판매자나 구매자들은 자신의 거래가 가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사업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매매 규모가 가격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작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거래 센터의 공개된 가격 정보를 이용하여 그 거래센터 밖에서도 경제적 방식으로 자신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거래센터 덕분에 그들은 자신이 방문해 보지도 않은 시장의 이익에 동참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런던 교외의 임차농(tenant farmer)은 「타임즈」 지誌에 공표된 마크 레인(Mark Lane) 곡물거래소의 곡물에 대한 시가(時價)를 근거로 제분업자와 사업을 한다. 비엔나에서는 소량의 등유(kerosene) 판매는 「노이에 프리에 프레세(Neue Freie Presse)」 지誌나 혹은 여타 신뢰성 있는 난 신문에 난 시가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다. 그래서 상품거래가 집중되는 장소가 있게 되면, 상품 소유자들이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개별 경제 주체 누구에게나 경제적 가격들에서 그 보유분을 팔 수 있는 위치가 되게 하는 상당히 일반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위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품들간에 시장성이 다른 첫 번째 원인은 첫 째, 이 상품들이 팔릴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다는 사실, 그리고 가격 매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집중되는 장소들이 때로는 잘, 때로는 서투르게 조직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다.

둘 째, 시장성의 공간적 제약 안에서는 거의 어디에서나 팔릴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가축, 곡물, 금속과 여타 통상 사용되는 품목들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거의 시장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작은 타운과 가장 작은 촌락조차도 일정한 시점들에서는 이들 재화에 대한 시장이 된다. (모피, 차, 염료(indigo)와 같은) 상품들의 경우에는

251 단지 몇 개의 크게 동떨어진 시장들만이 존재한다. 이 시장들은 가격

들의 형성에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만약 특정 시장이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보도는 모든 다른 주요 시장들로 전파된다. 경제 하려는 개인들 가운데 특별한 계층인 투기자들(speculators)은 다양한 시장들간에 나타나는 가격 격차가 운송비를 지나치게 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상품들간의 시장성 차이의 두 번째 원인은 상품의 판매가 제한된 지리적 범위가 때로는 넓고 때로는 좁다는 사실과 어떤 상품들은 경제적 가격들에서 팔릴 수 있는 많은 거래 장소들이 있는 반면, 다른 상품들은 그런 거래장소가 몇 군데 외에는 없다는 사실에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상품 소유자들은 넓은 거래 지역에서 경제적 가격으로 상품들을 의도대로 팔 수 있지만, 두 번째 유형의 상품 소유자들은 좁은 거래지역에서 소수의 몇몇 장소들에서만 상품들을 팔 수 있다.

셋 째, 어떤 상품들은 이 상품에 대한 생생하고 잘 조직화된 투기가 존재하여 특정 시점에서 당시의 필요들을 초과하는 양이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이 초과분을 흡수한다. 다른 상품들의 경우, 투기가 잘 행해지지 않거나 혹은 적어도 같은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품이 과잉 공급되면 가격이 급락하거나 팔리지 않은 채 회수되어야 한다. 첫 번째 유형의 재화들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시점에서 어떤 양이 실제로 공급되더라도 별 가격 손실 없이 팔릴 수 있는 반면, 투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은 현재의 필요를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는 큰 손실을 보아야 팔릴 수 있거나 전혀 팔릴 수 없게 된다.

나는 앞에서 특정한 그룹의 학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들의 시장성을 설명할 때 이 마지막 유형의 상품의 예를 든 적이 있다. 이 점에서 독립적인 사용처가 없고 단지 다른 상품들의 일부로서 구매되는 상품들

은 더 중요하다. 시계 스프링의 가격 혹은 증기엔진의(가스) 계기에 대한 수요량은 그 가격과 무관하게 생산되는 시계나 증기엔진의 숫자에 의해 거의 정확하게 결정된다. 이 숫자를 크게 초과하는 시계 스프링
 252 이나 증기엔진 가스 계기는 어떤 가격에서도 팔리지 못한다. 한편 공급량이 아주 제한된 반면 수요량은 반대로 거의 무한정한 금과 은 및 여타 상품들은 어떤 수량이라도 팔릴 수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지금보다 금의 양을 1000배 더, 혹은 은의 양을 100배 더 시장에 내다 놓더라도 여전히 구매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공급량의 급증은 금이나 은의 가격을 폭락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이나 은이 조그만 재산밖에 없는 사람들의 주방용품과 접시로 쓰여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의 장식품으로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폭발적으로 많은 양이 한꺼번에 시장에 공급되더라도 허시는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팔릴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의 학술적 업적, 가장 뛰어난 광학 기구, 혹은 빵과 고기와 같이 매우 중요한 상품들이 이와 비슷한 정도로 증가했다면 이런 폭발적 공급 증가는 분명 문자 그대로 이 상품들을 팔리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금과 은의 소유자는 언제나 당시 존재하는 이 재화들의 얼마만큼을 시장에 내다 놓든 상관없이 최악의 경우 일부 가격 손해만 보면 이 재화들을 즉각 팔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재화는 갑작스럽게 축적되면 더 큰 가격 폭락을 초래하거나 항상 이 재화들 가운데 일부는 전혀 팔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상품들의 시장성 차이의 세 번째 원인은 팔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적 제약이 어떤 때는 더 넓고 어떤 때는 더 좁다는 사실 그리고 이 제약 안에서 일부 상품들은 경제적 가격에서 잘 팔리는 반면 여타 상품들은 그렇지 못하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만큼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재화들은 거의 연속적인 시장이 존재한다. 증권이나 몇몇 주요 원재료들은 상품거래소들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는 날마다 매매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어떤 상품들은 일주일에 2일 혹은 3일 거래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곡물과 콩 등은 일주일 시장weekly markets이 서고, 공업제품들은 분기별 정기시장quarterly fairs이 서며, 말과 여타 가축들은 일년에 2번이나 그 이상 연중 페어annual fairs가 열린다.

따라서 상품들의 시장성 차이의 네 번째 원인은 상품들이 팔려야 하는 시간상의 제약이 때로는 더 넓고 때로는 더 좁다는 사실, 그리고
 253 이런 시간상의 제약 안에서 어떤 상품들은 언제나 경제적 가격들에서 팔릴 수 있는 데 반해 다른 상품들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시점들에서만 팔릴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현실 경제 현상을 돌아보고 다양한 상품들간에 존재하는 엄청난 시장성의 격차들을 관찰한다면, 이 격차들을 위에서 설명한 하나 혹은 여러 원인들로 환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정량의 곡물을 소유한 경우(상설) 곡물거래소가 있는 곳이라면 그 소유자는 거의 언제나라도 자신이 보유한 상품을 처분할 수 있다. 일주일 만에 한 번만 서는 시장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는 당시 경제상황과 부합하는 가격들에서 매주 곡물을 팔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매우 의미 있는 상업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곡물 소유자는 거의 “유동적인 현찰”인 상품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곡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 곡물의 시장성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및 수량적 제약이 매우 넓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곡물 시장들이 효율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 활발한 투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등에 있다.

모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곡물을 가진 사람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있다. 이 품목의 시장성에 대한 수량적 제약들은 훨씬 더 좁고, 곡물의 경우에 비해 시장의 조직화도 훨씬 낙후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모피 시장들은 공간, 시간적으로 서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모피에 대한 투기 역시 곡물에 비해 훨씬 활발하지 못하다. 밀wheat을 가진 사람은 현행 시장가격보다 몇 분의 1 페니만 깎아주기만 하면 자신의 보유분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모피의 경우에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다. 모피 소유자는 자신의 보유분을 상당히 큰 손실을 볼 때만 팔 수 있거나 혹은 아예 전혀 팔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므로 결국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고서야 팔 수 있을 것이다. 망원경, 해포석海泡石 장신구meerscham ornaments, 분재盆栽potted plants 등과 같은 품목들의 시장성과 곡물의 시장성을 비교하면 이들간의 시장성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아주 명백해진다. 혹은 이들보다 더 시장성이 낮은 상품들과 곡물을 비교해 보라!

254 C. 상품들이 쉽게 순환되는 정도

앞 절들에서 우리는 상품들간의 시장성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원인들과 특수한 원인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상품의 소유자가 경제적 가격에서 얼마나 쉽게 팔 수 있을지 예상하는, 그 용이성의 차이에 대한 원인들을 지적하였다. 시장성의 차이를 설명하고 난 후 우리는 상품들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순환하기 쉬운 정도의 문제도 함께 해결된 것처럼 여기고 싶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

품이 여러 사람 손을 거치며 이루어지는 상품의 순환이란 다만 몇 개의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며, 따라서 처음 소유자로부터 다른 경제 하려는 개인에게 별 어려움 없이 이전될 수 있는 상품은 두 번째 소유자로부터도 세 번째, 네 번째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쉽게 이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이것이 모든 상품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된다. 이 절에서는 어떤 상품들은 쉽게 손에서 손으로 순환되는데 비해 다른 상품들은, 높은 시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순환되지 않는 특수한 원인들을 탐구할 것이다.

어떤 상품들은 누구의 손에 있던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 청결하지 못한 트란실바니아Transylvanian 집시가 아라노스강the Aranyos River의 모래에서 추출한 금덩이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 집시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올바른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줄 안다면, 그것이 그의 손에 있더라도 금광의 소유자의 손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판매가 가능하다. 금덩이는 시장성에 어떤 하락도 전혀 미치지 않으면서 무수한 사람의 손을 거칠 수 있다. 그러나 의류, 침구beddings, 조리된 식품prepared foods 등은 집시의 손에 있으면, 비록 그 집시가 그 상품들을 한번도 쓴 적이 없고 또 처음부터 교환하려는 의도로 획득하였더라도, 이 상품들은 의심받고 거의 판매되지 못하거나 크게 할인된 가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종류의 상품들이 생산자 혹은 상인의 손에 있을 때 아무리 시장성이 높을지라도, 만약 이 상품들이 이미 사용되었을지 모른다거나 단지 불결한 사람들의 손에 있었다는 약간의 의구심만 생겨도, 이 상품들은 완전히 혹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시장
255 성을 상실한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경제교환에서 손에서 손으로

순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다른 상품들은 판매를 위해 특별한 지식, 기술, 허가, 정부 면허, 특권 등이 요구되며 따라서 이런 조건들을 획득할 수 없는 개인들의 손에 들어가면 전혀 팔리지 않거나 매우 팔리기 어렵게 된다. 아무튼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그 상품들은 가치가 떨어진다. 인디아^{India}나 남아프리카^{South Africa}와의 교역품, 조제약품 *pharmaceutical preparations*, 특허품 등은 특정 사람들 손에 있으면 극히 판매되기 쉬울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이 상품들의 시장성은 크게 상실된다. 이 상품들도 앞 단락에서 거론한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손에서 손으로 쉽게 순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계다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개별 소비자의 필요에 특별히 맞추어야만 하는 상품들은 어떤 소유자의 손에 있던 상관없이 똑같은 시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이즈의 구두, 모자, 그리고 유사한 상품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구두나 모자를 파는 사람들의 가게에는 수많은 고객들이 몰려들고 보통 이들 가게에는 일반적으로 구두나 모자를 고객들의 특별한 필요에 맞출 수 있는 설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들은 이들의 손에 있을 때는 항상 상당히 쉽게 판매되지만 다른 사람의 손에 있을 때에는 팔기가 쉽지 않으며 보통 큰 손해를 보고서야 팔 수 있다. 구두나 모자와 같은 상품들 역시 손에서 손으로 쉽게 순환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가격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많이 변동하는 상품들 또한 손에서 손으로 쉽게 이전되지 않는다. 이런 상품들의 구매자는 이 상품들에 대해 “과잉 지불”하는 위험에 직면하거나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이 상품들을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곡물거래소에 있는 곡물 한 더미, 혹은 증권거래소에 있는 유명

한 주식 한 묶음은 쉽게 몇 시간 내에 여러 손을 거칠 수 있다. 그러나 농장들, 공장들처럼 관련된 상황들을 조심스럽게 조사해야만 비로소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상품들은 전혀 신속한 순환에 적합하지 않다.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심한 가격변동이 없는 주식들을 현찰 대신 지불대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격심한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 상품들은 “시장 이하^{below the market}” 가격에서만 쉽게 순환될 것이다. 왜냐하면 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손실로부터 256 자신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격이 불확실하거나 심하게 변동하는 상품들 역시 손에서 손으로 쉽게 순환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상품들의 시장성을 제약하는 몇 가지 요인들은 손에서 손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한 기간에서 다른 기간으로, 이 상품들이 이전할 때마다 연쇄적인 비중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시장성이 작은 수의 사람들로 제약된, 판매 지역이 제약된, 짧은 기간 동안만 보존되는, 보존에 상당한 경제적 희생이 따르는, 한번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수량이 엄격히 제한된 가격이 잘 변동되는 이런 유형의 상품들은(비록 좁지만)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유롭게 순환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한 상품이 자유롭게 순환되기 위해서는, 이 상품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의 가장 넓은 의미에서 그 손을 거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제 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가 가능해야 하고, 또 이 사람들 각각에게 이 상품이 한 가지 측면에서만 아니라 위에서 논의한 네 가지 모든 측면에서 판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1. 화폐의 본질과 기원⁷⁸⁾

교역의 초기 단계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은 기존의 교역 기회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다. 모든 문화적 시작 단계의 단순함에 어울리게 이 단계에서 개별 경제

78) Theodor Mommsen, *Geschichte des römischen Münzwesens*, Berlin, 1860, pp.v-xx, and 167ff.; Carnap, "Zur Geschichte der Münzwissenschaft und der Werthzeichen", *Zeitschrift für die gesammte Staatswissenschaft*, XVI (1860), 348-396; Friedrich Kenner, "Die Anfänge des Geldes in Alterthum", *Sitzungsberichte der Kaiserli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Wien. Philologisch-Historische Classe*, XLIII (1863), 382-490; Roscher, *op cit.*, pp.36-40; Hildebrand, *op cit.*, p.5; Scheel, *op cit.*, pp.12-29; A. N. Bernardakis, "De l'origine des monnaies et de leurs noms", *Journal des Economistes*, (Third Series), XVIII (1870), 209-245.

주체들의 관심은 당연히 교역 기회들 가운데 가장 명백한 기회들에
258 집중된다. 각 개인들은 획득할 재화가 자신에게 제공할 사용가치만을
고려해서 교역을 통해 어떤 재화를 획득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자연히 수중에 있는 재화들이 상대방의 재화들에 비해 더 작은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반면, 상대방은 동일한 재화들에 대
해 정반대 방향으로 사용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만 실제 교환이 이루
어진다. A의 칼이 A에게 B의 쟁기보다 더 작은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
는 반면, B에게 동일한 쟁기가 A의 칼보다 더 작은 사용가치를 가지
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교역의 초창기에는 모든 교환 거래
는 이런 유형의 것이었다.

이런 조건 아래에서는 실제 교환거래 횟수가 매우 좁게 한정되었으
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론된다. 어떤 한 사람이 소유한 재화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소유한 사람의 재화보다 더 작은 사용가치가
있고 동시에 상대방은 정반대 방향으로 이 재화들의 사용가치를 평가
하고 있는 경우는 얼마나 드물 것인가! 이런 관계가 있다하더라도 실
제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는 상황은 더욱 드물 것이다. 고기잡이
그물을 가진 A가 이를 일정량의 대마^大와 교환할 의사가 있다고 해
보자. 실제로 이 교환이 실행되려면, 고기잡이 그물을 일정량의 대마
를 주고 가지고자 하는 다른 경제 하려는 사람 B가 있어야 할 뿐 아
니라, 특정한 희망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만나야 한다. 이제 농부 C
가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몇 가지 농기구들과 의류들과 교
환하고자 한다고 해보자. C의 말 한 마리가 필요하고 동시에 C가 원
하는 농기구들과 의류들을 실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을 C가 찾아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문제는 그 속성상 해결의 탈출구가 없었더라면 매우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따라서 노동 분업의 진보와 특히 미래 판매를 위한 재화 생산체제의 발달을 크게 저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내재하는 몇 가지 요인들 덕분에 특별 협약이나 심지어 정부의 강제
259 제가 없더라도 모든 곳에서 필연적으로 이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상태가 유발되었다.

인간의 모든 경제적 노력의 궁극적 의도는 자신의 필요를 직접 충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환 거래의 최종 목적은 자신의 상품들을 자신들에게 사용가치가 있는 재화로 교환하는 것이다. 이 최종 목적에 도달하려는 노력은 모든 단계의 문명에서 동등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며 경제적으로 완전히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최종 목적이 **즉시 그리고 직접적으로** 도달될 수 없는 모든 경우에, 경제 하려는 개인이 기회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분명 이 사람은 비경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호머 시대에 살던 어떤 대장장이가 2벌의 청동 갑옷을 만들어 이를 청동, 연료, 식료품과 교환하고자 한다고 해보자. 시장에 가서 이 재화들을 받고 그의 제품을 팔려고 내다 놓았다고 해보자. 마침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원료들과 음식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청동갑옷을 사려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대장장이는 의심할 바 없이 매우 기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갑옷처럼 팔기 힘든 물건을 언제든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의사를 지닌 사람들 중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재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분명 뜻밖의 행운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만약 자신에게 사용가치를 가진 재화들일 경우에만 이 갑옷과 교환하고, 만약 자신에게 사용가

치는 없지만 상품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상품보다는 더 큰 시장성을 가진 여타 재화일 경우에는 이 갑옷과 교환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상품을 팔 수 없거나 아니면 아주 길고 긴 시간을 기다려야 비로소 팔 수 있을 것이다. 시장성이 더 큰 상품들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필요한 재화를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이 상당히 쉬워질 것이다. 앞으로 논의될 것이지만, 고대 그리스 호머시대에는 가축이 상품들 중 가장 시장성이 높았다. 갑옷 제조공이 만약 자신의 직접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수의 가축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갑옷을 가축 몇 마리를 받고 교환하지 않는다면, 비경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물론 자신의 상품을(“상품”과 대조된 매우 좁은 의미의) 소비재와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역시 상품 - 성격을 지닌 재화와 교환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로써 그는 자신의 보다 팔기 어려운 상품을 처분하고 그 대신 더 큰 시장성을 가진 재화를 획득하였다. 높은 시장성을 지닌 상품의 보유는 분명 자신이 필요한 재화들을 그에게 팔려는 사람을 시장에서 찾을 기회를 배가시킨다. 따라서 갑옷 제조자가 자신의 개인적 이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는 강제하지 않아도 그리고 특별한 계약이 없었더라도, 당연히 자신의 갑옷을 이에 상응하는 가축으로 교환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획득된 더 팔기 쉬운 상품들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궁극적 목적**인 자신이 필요한 소비재인 청동, 연료, 그리고 식료품을 교환을 통해 얻기 위해 이 재화들을 파는 사람들에게로 갈 것이다. 이제 그는 보다 빠르게, 보다 경제적으로, 더 높아진 성공확률을 가지고 이 목적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제 하려는 개인 **각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점차 더 인식

하게 될수록, 어떤 협약, 입법적 강제, 혹은 심지어 공공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도 어떤 상품들이 당장 소비목적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시장성이 높은 상품들이 있으면, 자신의 이익에 의해 자신의 상품을 이 상품들과 교환하게끔 유도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적 진보와 함께 모든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은 몇 가지 특정한 재화들, 특히 주어진 시간과 공간상에서 가장 쉽게 판매될 수 있는 재화들이 **관습**의 강력한 영향 아래 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여타 다른 상품들과의 교환에 이용된다는 사실이다. 이 재화들은 우리 선조에 의해 “Geld”⁷⁹⁾라 불렸는데 이는 보상하다 혹은 지불하다라는 의미인 “gelten”으로부터 유래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에서 “Geld”란 바로 지불수단 자체를 의미한다.⁸⁰⁾

화폐의 기원에서 차지하는 **관습**의 커다란 중요성⁸¹⁾은 위에서 묘사한 것처럼 어떤 상품들이 화폐가 되는 과정을 고려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더 판매되기 어려운 상품들을 시장성이 더 높은 상품들로 교환하는 것은 모든 경제 하려는 개인들의 경제적 이해와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교환이 실제 이루어지려면 경제 하려는 개인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화를 주고 더 시장성이 나은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이 그 자체로는 아마 자신에게 별로 쓸모 없는 것이라 해도 이 상품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식은 민족경제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시에 획득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반대로 자신이 소비하고자 하

는 재화들과 자신의 상품을 직접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확실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상품을 보다 팔기 쉬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두면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처음에는 소수의 경제 하려는 개인들만이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익은 **하나의 상품만이 화폐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아래에서이든 이런 유형의 교환은 항상 경제 하려는 개인을 그 사람의 마지막 목적지인 소비하고자 하는 재화의 획득에 더 근접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적합한 방법을 써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것을 실제로 관찰하는 것만큼 사람들을 더 잘 계몽시키는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분별력 있고 유능한(경제 하려는) 개인들이 특별히 팔기 쉬운 상품들을 여타 모든 상품들과 교환해 두는 관행을 오랜 기간 동안 실행해 온 것만큼 화폐의 출현을 촉진한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관습과 관행은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가장 팔기 쉬웠던 상품들이 단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경제 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상품들과 기꺼이 교환되는 것을 수용하게(즉, 화폐가 되게) 하는 데 결코 작지 않게 기여하였다.⁸²⁾

국가의 경제 안에서 법질서가 상품들의 화폐-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비록 작다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화폐의 한 형태에 불과한 주화와 구별되는)화폐의 기원은,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완전히 자연적이며 따라서 가장 희귀한 경우에만 입법적 영향을 보여준다. 화폐는 국가의 발명품이 아니다. 화폐는 입법 행위의 산물이 아니다. 정

79) “Geld”와 “gelten”은 문맥상 당연히 번역하지 않았음 - 영역자

80) 부록J(397쪽)의 첫 두 단락에 원전에서 여기 각주로 나오는 부분이 전제되어 있음 - 영역자.

81) 화폐 기원의 한 요소로서 관습의 중요성은 다음에 강조되어 있음. Condillac, *op. cit.*, pp.286-290 그리고 G. F. Le Tronsne, *De L'intérêt social*, Paris, 1777, pp.43f.

82) 원전에서 각주로 실려있는 부분은 부록J(400쪽)를 참조 - 영역자

품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국가권력과 무관한 경제 관계들의 결과로 화폐가 되었다.

그러나 만약 교역의 필요에 부응하여, 한 재화가 화폐로 국가의 비준을 받으면, 국가에 대한 모든 지불뿐 아니라 다른 재화들로 지불하기로 명시되지 않은 다른 모든 지불 관계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재화로만 요구되거나 지불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특별히 중요한 결과도 발생한다. 원래 다른 재화들로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어떤 이유로 이 재화로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도 대체 지불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서 이 특별한 재화의 단위로만 요구되거나 제공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비준은 특정 재화의 교환에 있어 보편적 대체물의 속성을 부여한다. 국가가 이 재화의 화폐적 성격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 화폐적 성격을 상당히 개선할 수는 있다.⁸³⁾

2. 특정한 국민들, 특정한 역사단계에 적합한 화폐의 종류

화폐는 경제 하려는 사람들간 합의의 산물이 아닐 뿐더러 입법행위의 산물도 아니다. 아무도 화폐를 발명해 내지 않았다. 경제 하려는 개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점차 의식해 간다. 이에 따라 어디에서든 사람들은 판매(가능)성이 작은 상품들을 넘겨주고 이것이 더 큰 상품을 획득하는 것이 자신의 특정한 경제적 목적의 달성에 근접하게

83) Stein, *op. cit.*, p.55; 특히 Karl Knies, "Ueber die Geldentwerthung und die mit ihr in Verbindung gebrachten Erscheinungen," *Zeitschrift für die gesammte Staatwissenschaft*, XIV (1858), 266; 그리고 Mommsen, *op. cit.*, pp.vii-viii을 참조

한다는 간명한 지식을 획득하였다. 그래서 사회경제의 발전과 함께 많은 문명중심지들에서 독자적으로 화폐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폐가 인간 경제의 자연적 산물이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화폐의 구체적 형태들은 모든 곳에서 또 모든 시점에서 구체적이고 변화하는 경제상황들의 결과였다. 동일한 민족간 상이한 시점에서 또 동일한 시점에서 상이한 민족들간에 서로 다른 재화들이 위에서 설명했듯이 교역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경제발전의 최초 단계에서는 가축이 대다수 고대 민족들 사이에 가장 팔기 쉬운 상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축은 유목민들 사이에 그리고 유목경제에서 농경으로 진화하는 단계의 민족들 사이에 모든 개인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 항목이었다. 가축의 시장성은 말 그대로 모든 경제 하려는 개인들에게 확대되었고, 건설된 도로가 부족했다는 사실과 가축들은 "스스로를(고대 문명 시대에서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운송"한다는 사실로 인해 가축은 대개의 다른 상품들에 비해 더 광범한 지역에 걸쳐 판매될 수 있었다. 게다가 몇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축의 시장성에 가해진 양적, 시간적 제약이 크게 완화되었다. 소는 상당한 내구성을 가진 상품이다. 방목지가 풍부하고 열린 하늘 아래 방목이 가능한 곳에서는 유지비가 별로 들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되도록 많은 수의 가축무리를 보유하려고 하는 문명에서는 가축은 보통 일정 시점에 초과 공급량이 시장에 유입되지 않는다. 당시에는 어떤 다른 상품들이 넓은 시장성을 얻을 수 있는 전기轉機가 없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최소한 가축보다 그 교역의 발전 정도가 더 진전된 재화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가축은 모든 이용 가능한 재화들 중 가장 판매(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가축이 고대 문명기의 민족

들 사이의 자연적 화폐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⁸⁴⁾

상당히 분명한 발전 단계의 윤곽을 보여주는, 고대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민족인 그리스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교역과 상업은 발전 후기에 해당하는 호머의 시대에 와서도 주화^{coined money}의 흔적을 보이지 않으며 가축으로 지불이 행해졌다. 드라코^{Draco}조차 가축으로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런 관행은 솔론^{Solon}이 이를 바꿀 때까지 포기되지 않았다. 솔론은(아마도 가축들은 솔론 자신에게 가축이 필요한 기간을 넘어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양 한 마리에 1 드라크마^{drachma}, 암소 한 마리에 5 드라크마의 비율로 가축 단위에서 금속 화폐 단위로 벌금 부과 방식을 전환하였다. 가축-화폐의 흔적은 이탈리아 반도 민족들의 목축을 하던 조상들의 경우에도 그리스인의 경우보다 더 뚜렷하게 남아있다. 아주 후기까지 소, 그 다음으로는 양^{sheep}이 로마인들 사이에 교환의 수단이 되었다. 로마인들의 최초의 법적 형벌들은 가축 벌금(소나 양으로 부과)이었으며 가축 벌금은 기원전 454년의 「아테르니아 타르레이아 법^{the lex Aternia Tarpeia}」 에도 여전히 나오며, 24년 후에야 주조 화폐로 전환되었다.⁸⁵⁾

우리 자신의 조상들 중 고대 게르만^{German}족들은, 타시투스^{Tacitus}에 의하면, 은과 토기^{土器}를 같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많은 가축 떼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호머시대의 고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물물교환이 대부분이었고 말들은(그리고 무기를 역시) 이미 교환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가축은 고대 게르만족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던 재산이었으며 어떤 다른 재화보다 선호되었다. 법적 벌금은 가축과 무기로 지불되었고, 후기에 와서야 금속 화폐로 지불되었다.⁸⁶⁾ 오토 대제^{大帝 Otto the Great}에 와서도 여전히 가축으로 벌금이 부과되었다.

아랍족들^{Arabs} 사이에서 가축 표준은 상당히 후대에 속하는 모하메드의 시대까지 지속되었다.⁸⁷⁾ 조로아스터^{Zoroaster}의 경전, 젠다베스타^{Zendavesta}가 신성시되던 지역인 동쪽 소아시아^{Asia Minor} 민족들 사이에서는 인근 민족들이 금속 통화로 오래 전에 전환했으나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야 다른 형태의 화폐가 가축 표준을 대체하였다.⁸⁸⁾ 우리가 증거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사^{先史} 시대의 히부루족^{Hebrew}⁸⁹⁾ 소아시아 민족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거주민들이 가축을 통화로 썼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만약 유추를 통해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당시 이후의 발전 양상을 살펴볼 때 그리고 또 원시 사회에서는 금속 혹은 금속 도구로 대규모의 지불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사실⁹⁰⁾을 고려할 때, 이 부족들은 아마도 모두 가축 표준을 이미 넘어선 문명의 단계에서(역사의 기록을 보여주는) 역사 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명의 진보, 특히 노동의 분업 및(그 자연적 결과인 공업이 생업인 사람들의 거주하는) 도시의 점차적인 형성에 따라 명백히 모든 곳에서 가축의 시장성이 하락되는 동시에

86) Wilh. Wackernagel, "Gewerbe, Handel und Schiffahrt der Germanen," *Zeitschrift für deutsches Alterthum*, IX (1853), 548ff.; Jakob Grimm, *Deutsche Rechtsalterthümer*, 4th edition prepared by A. Heusler and R. Hübner, Leipzig, 1899, II, 123-124; Ad. Soetbeer, "Beiträge zur Geschichte des Geld- und Münzwesens in Deutschland," *Forschungen zur deutschen Geschichte*, I (1862), 215.

87) Aloys Sprenger, *Das Leben und die Lehre des Mohammad*, Berlin, 1861-65, III, 139.

88) Friedrich v. Spiegel, *Commentar über das Avesta*, Wien, 1864-68, I, 94ff.

89) Moritz A. Levy, *Geschichte der jüdischen Münzen*, Leipzig, 1862, p.7.

90) Roscher, *op cit.*, p.309 각주5.

84) 원전에서 각주로 여기에 붙어있던 부분은 부록(397쪽)의 마지막 두 문단을 참조 - 영역자

85) August Böckh, *Metrologische Untersuchungen über Gewichte, Münzfusse und Masse des Alterthums*, Berlin, 1838, pp.385ff., 420ff.; Mommsen, *op. cit.*, p.169; Friedrich O. Hultsch, *Griechische und römische Metrologie*, Berlin, 1862, pp.124ff., 188ff.

다른 재화, 특히 당시 사용되던 금속의 시장성이 제고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농부들과 교역을 시작한(도시에 거주하는) 장인(匠人)들은 가축을 화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일 때가 드물었다. 도시 거주자로서는 가축의 일시적 보유는 불편할 뿐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희생이 수반되는 일이었다. 가축의 보관 및 사육은 광활한 목초지를 가지고 있고 가축 방목에 익숙할 경우에만 별다른 경제적 희생이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문명의 진보와 함께 가축은 이를 팔 수 있는 사람의 수라는 측면에서, 또 경제적으로 팔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시장성의 범위를 크게 상실하였다. 동시에 가축은 시장성의 공간적, 수량적 제한의 측면에서 여타 재화들에 비해 점차 뒷전으로 밀려났다. 가축은 가장 팔리기 쉬운 상품, 즉 경제적 형태의 화폐의 위치를 잃게 되었고 마침내 화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가축이 종전에 화폐의 성격을 가졌던 모든 문명에서, 유목생활과 단순 농경생활로부터 수공예(手工藝)가 이루어지는 보다 복잡한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축-화폐는 기각되었고 당시 사용되던 금속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다. 추출이 쉽고 잘 퍼지는 속성으로 인해 266 인간이 최초로 가공했던 금속들로는 구리, 은, 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철 등이 있었다. 금속 도구들과 가공되지 않은 금속들 자체는 가축-통화와 함께 소액 지불에 이미 화폐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그럴 필요가 있으면 금속화폐를 사용한 거래가 상당히 부드럽게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구리는 농부의 쟁기, 전사(戰士)의 무기, 장인(匠人)의 도구들을 만들던 재료로 쓰인 최초의 금속이었다. 구리, 금 및 은은 그릇과 모든 중

류의 장식품에 쓰인 최초의 재료였다. 가축-화폐에서 전환되어 금속통화만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문명 단계에서는 구리와 아마도 구리 합금 일부는 매우 일반적으로 쓰이던 재화였으며, 금과 은의 경우에는 이 금속들이 원시 인간들의 가장 보편적 정열, 즉 부족의 다른 구성원들 앞에서 뛰어난 외양을 과시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으므로 금과 은은 가장 일반적으로 희구하던 재화가 되었다. 이 세 가지 금속은 몇 가지 되지 않는 용도라 하더라도 용도가 있는 한, 거의 모든 경우에 최종 가공된 형태로 유통되었다. 후에 와서 원재료로 유통되면서 사용의 측면에서 제약이 작아지고 더 큰 분할성(divisibility)을 가지게 되었다. 세 금속의 시장성은 소수의 경제 하려는 사람들로 한정되지도 않았으며, 모든 민족들에게 매우 유용했고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적 희생으로도 쉽게 운송되는 특성으로 인해 좁은 공간적 제약 속에 갇히지도 않게 되었다. 이 재화들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의 결과, 이 세 가지 금속은 판매 수량의 측면에서도 어떤 다른 재화들보다도 경제적 가격에서 보다 쉽게 팔릴 수 있었다(296쪽). 그래서 우리는 유목과 단순 농경에 뒤이은 역사 단계에서 이 세 가지 금속들이 가장 팔기 쉬운 재화여서 배타적으로 교환의 수단이 되었던 경제 상황을 관찰하게 된다.

이 전환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 사이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새로운 금속 표준은 가축 표준을 완전히 대체할 때까지 오랫동안 예전의 가축 표준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금속이 교역의 통화로서 가축을 완전히 대체한 후에도 가축 표준은 통화단위의 기초가 되었던 것 같다. 그리스인들의 데카보이온(Dekaboion), 테세라보이온(Tesseraboion), 및 헤카툼보이온(Hekatomboion), 그

267 리고 로마족들과 골Gaul족들의 최초의 금속 화폐는 아마도 이런 성격이었을 것이며, 금속화폐에 그려진 동물은 아마도 이 동물 가치를 상징한 것으로 추정된다.⁹¹⁾

사용되던 금속들 중 가장 중요했던 구리나 놋쇠가 최초의 교환 수단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귀금속들이 단지 후에 와서야 화폐의 기능을 획득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아마도 인도에서도 역시 구리 표준이 가장 완전한 발전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부 이탈리아에서도 역시 배타적인 구리 표준이 발달하였다. 한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의 고대문명에서는 종전의 배타적 구리 표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구리만으로는 제대로 행해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중해 무역의 발전에 따라 그리스, 시실리, 남부 이탈리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와 이집트에서는 구리 표준이 조금이라도 발달하던 모든 곳에서 그 독자적 발달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경제가 발달했던 물질적 상황들의 결과 구리 표준을 택하도록 유인되었던 모든 민족들이 문명의 발전, 특히 상업의 지리적 경계의 확대와 함께 저가 금속으로부터 고가 금속으로, 구리와 철로부터 은과 금으로 이전해 갔던 점은 확실하다. 게다가 은 표준이 확립된 모든 곳에서 금 표준으로 전환되어 갔다. 물론 이런 전환이 항상 실제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경향성은 분명하게 있었다.

(이탈리아 중부)고대古代 사빈족族 도시Sabine city에서 그 주변 지역과

좁은 범위의 상업을 영위했던 경우에는, 사빈 관습의 초기 단순성에 맞춘 가치 표준이 실용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잔존하고 있었지만, 구리가 농부들뿐 아니라 도시 거주자들의 실제적 목적에 가장 잘 봉사하였다. 구리는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던 금속이었으며, 확실히 시장성이 가장 많은 수의 사람에게 확장되었던 상품이었으며, 시장성의 268 수량적 제약도 다른 어떤 상품보다 더 작았다. 이 점은 원시 문명 단계에서 화폐로 기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이다. 게다가 구리는 소량을 쉽고 싸게 보관·저장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적당한 운송비용으로 인해 좁은 지리적 한계 안에서는 화폐의 목적에 아주 적합한 재화였다. 그러나 교역 지역이 넓어지고, 상품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귀금속들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팔기 쉬운 재화로 등장하면서, 구리는 자연스럽게 곧바로 화폐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동일 민족 내부의 교역이 전세계로 확대되면서, 자신의 상품의 회전이 빨라지면서, 노동의 분업이 증대되면서, 경제 하려는 각 개인들은 화폐를 몸에 지니고 다닐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 문명의 진보와 함께 귀금속들은 가장 판매하기 쉬운 상품들이 되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민족들의 화폐가 되었다.

여타 민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 발전과 이에 따른 화폐 제도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멕시코가 처음으로 유럽인들에게 침범되었을 때 당시 목격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멕시코는 이미 보기 드문 경제적 발전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 같다. 고대 아즈텍 Aztec인의 교역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매우 흥미롭다. (1)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를 가장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행동으로 유도하는) 인간의 경제적 사고가 모든 곳에서 유사한 경제현상을 설명한다는 점을

91) Plutarch, *Lives*, with an English translation by Bernadotte Perrin, London: William Heinemann, 1914, I, 55; Pliny, *The Natural History*, translated by John Bostock and H. T. Riley, London: H. G. Bohn, 1856, IV, 5-6; Heinrich Schreiber, "Die Metallringe der Kelten als Schmuck und Geld," *Taschenbuch für Geschichte und Alterthum*, II, 67-152, 240-247, and III, 401-408.

우리에게 증명한다. (2) 고대 멕시코는 순수 물물교환에서 화폐경제로 전환 중인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재화들이 여타 재화들보다 더 큰 우월성을 획득하고 화폐가 되는 특징적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스페인 정복자들과 당시 저술가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멕시코는 무수한 도시들이 많았으며 또 교역이 아주 잘 조직화되고 교역량도 인상적일 정도로 많았던 나라였다. 도시들에서는 1일 시장들이 있었고 5일 마다 주요 시장들이 있었는데 인근 도시의 시장이 개설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도시의 주요 시장들은 전국에 분산되어 개설되고 있었다. 각 도시에는 상품 교역을 위한 특별한 네모난 대형 광장이 있었으며, 특정 상품마다 광장의 특정 장소가 배정되고 이 장소를 벗어나서는 이 특정 상품의 교역이 금지되었다. 이 규칙의 단 하나의 예외는 식료품과 (목재, 가죽재료 등과 같은) 운송이 힘든 품목들뿐이었다. 수도 멕시코의 장터에 모인 사람들의 수는 1일 시장의 경우 20,000에서 25,000이고, 주요 시장이 서는 날에는 40,000에서 50,000 정도로 추정되며 매우 다양한 품목들이 거래되었다.⁹²⁾

여기서 우리가 제기하게 되는 흥미로운 의문은 고대 멕시코 시장은 너무나 많은 측면에서 유럽의 시장과 유사한데 그렇다면 고대 멕시코의 시장에서도 유럽에서 나타난 화폐의 속성 및 기원과 비슷한 현상이 이미 나타났는가 여부이다.

스페인 침입자들의 실제 보고에 따르면 자신들이 처음 그 나라로 들어갔을 때 멕시코의 교역은 단순한 물물교환의 범위를 벗어난 지 매우 오래되었으며, 그 대신 몇 상품들이 이미 내가 앞서 보다 광범하

게 논의했던 특별한 지위, 즉 화폐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었다. 8,000에서 24,000개의 코코아 열매를 담은 작은 자루, 조그만 목면 손수건, 금, (멕시코 사람들에게 아직 저울과 중량을 재는 도구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크기에 따라 받던 거위 깃털, 구리 조각, 마지막으로 얇은 주석 조각 등이 모든 사람에게 의해(화폐로) 흔쾌히 수용되고 있어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직접 교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상품들을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였다.

목격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멕시코 시장들에서 교역되던 상품들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살아 있거나 죽은 동물, 코코아, 여타 모든 음식물, 보석, 의료 식물, 약초, 고무, 송진, 토양, 조제약, 용설란century plant의 수염뿌리 · 야지수의 잎 · 동물 털로 만든 상품, 새 깃털 · 나무와 돌로 만든 상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구리, 주석, 목재, 돌, 피혁 제품, 짐승의 생가죽. 이제 이 상품 목록 뿐 아니라 다음의 사실들을 고려해 보자. (1) 유럽인들에 의해 발견될 당시, 멕시코는 이미 몇 개의 산업과 인구가 밀집된 도시들을 지닌 발달된 나라였다. (2) 유럽인들의 가축들 대부분은 아즈텍 민족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가축 표준은 완전히 불가능했다. (3) 코코아는 일상적인 음료였고, 슝은 의복의 가장 일반적인 재료였으며, 금, 구리, 주석은 아즈텍 민족이 가장 광범하게 쓰던 금속들이었다. 마지막으로 (4) 상품의 속성 및 일반적 사용으로 인해 이 상품들은 모든 다른 재화들보다 더 큰 시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나면 이제 어렵지 않게 왜 이 재화들이 아즈텍 민족의 화폐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품들은 비록 크게 발달하지는 못했지만, 고대 멕시코 사람들의 자연스런 통화였던 것이다.

92) Francesco Saverio Clavigero, *The History of Mexico*, Richmond, 1806, II, 188ff.

유사한 이유로 동물 가죽이 대외 교역을 하던 사냥 민족들 사이에 화폐가 되었다. 사냥 부족들 사이에는 모피는 과잉 공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사냥으로 가죽이 먹을 음식을 마련하게 되자 많은 짐승 가죽이 쌓이게 되고 사냥 부족들간에는 특별히 아름답거나 희귀한 종류의 가죽이 아니면 서로 얻고자 경쟁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모피의 과잉공급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만약 사냥 부족이 외부 부족들과 교역을 하게되고 이들의 선택에 따라 모피와 다양한 소비재들이 교환될 수 있는 가죽 시장이 생기면, 가죽이 시장성이 가장 높은 재화가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되면 가죽은 사냥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환에서조차 점차 선호되고 수용될 것이다. 물론 사냥꾼 A는 교환에서 받아들이는 사냥꾼 B의 가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장에서 가죽과 자신이 진정 필요한 다른 재화를 쉽게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가죽이 자신에게는 (소비재가 아닌) 상품의 성격만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수중에 있는 쉽게 팔리기 어려운 다른 상품보다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가죽을 가지고 외부 무역을 하는 거의 모든 사냥 부족들 사이에서 이런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⁹³⁾

93) 해리beaver의 가죽은 아직도 허드슨 베이 회사Hudson's Bay Company의 몇 지역들에서 교환가치의 단위가 되고 있다. 담비 모피 3장은 해리 가죽 하나, 백 여우 한 마리는 해리 두 마리, 흑 여우 한 마리 혹은 곰 한 마리는 해리 4마리, 장충 하나는 해리 15마리와 같다.("Die Jäger im nördlichen Amerika," *Das Ausland*, XIX, no. 21, [Jan. 21, 1846], 84) 에스토니아의 단어 "라하raha"(화폐)는 연관된 라플란드Lapländers의 언어에서 모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Philipp Krug, *Zur Münzkunde Russlands*, St. Petersburg, 1805). 러시아 중세의 모피 화폐에 관해서는 네스티Nestor의 보고를 참조(A. L. Schlözer, translator, *Nestor, Russische Annalen*, Göttingen, 1802-1809, III, 90) 고어 "kang"(화폐)은 실제 담비 모피를 의미했다. 1610년이란 매우 늦은 연대에서도 5450루블의 은과 7000루블 상당의 모피를 포함한 러시아 군자금의 거두어졌다.(Nikolai Karamzin, *Geschichte des russischen Reichs*, Riga, 1820-1833, XI, 183 참조) Roscher, *op. cit.*, p.309, Heinrich Storch, *Handbuch der National-Wirtschaftslehre*, ed. by K. H. Rau,

271 노예와 소금 덩어리가 아프리카 내륙지역에서 화폐가 되었다는 사실, 왁스 덩어리가 아마존 상류 지역에서, 대구cod가 아이슬란드와 뉴펀들랜드에서, 담배가 매릴랜드Maryland와 버지니아에서, 설탕이 영국령 서인도제도British West Indies에서, 그리고 상아가 포르투갈 식민지 근처에서 화폐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 재화들이 과거에 그리고 일부는 지금도 이 지역들로부터 수출되는 주요 품목이라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모피가 사냥 부족들 사이에 그랬던 것처럼 이 재화들이 그 해당 지역에서 특출한 시장성을 가지게된다.

한편 많은 여타 재화들의 국지적 화폐-성격도 이를 추적해보면 이 재화들이 가진 국지적으로 더 크고 일반적인 사용가치와 이에 따른 더 크고 일반적인 시장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국지적 화폐성격을 띤 재화의 예로는 시와Siwa의 오아시스에서의 대추야자 열매, 중앙 아시아와 시베리아에서의 차tea-brick, 아프리카 수단 북부지역인 누비아Nubia와 세나르Sennar에서의 유리 구슬, 아히르Ahir(아프리카)란 나라에서의 수수millet의 일종인 구수브ghussub 등이 있다. 두 요인들이 특정 재화의 화폐적 성격에 기여한 예로는 모두 공통적으로 원했던 장식품이었던 동시에 수출품이었던 별보배고동 껍질cowrieshell을 들 수 있다.⁹⁴⁾

화폐는 합의의 결과나 입법적 강제 혹은 우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화폐는 동시대에 서로 다른 민족들의 경제 상황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동일 민족의 경우, 역사상 서로 다른 시기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런 산물이다. 따라서 화폐는 특정 지역과 특정 시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출현한다.

Hamburg, 1820, III, 25-26 참조.
94) Roscher, *op. cit.*, pp.313-314의 각주13 참조.

272 3. “가격 측정치”와 교환 가능한 부의 경제적 저장형태로서의 화폐

교역의 진보적 발전과 화폐의 성립은 모든 종류의 상품들이 서로 교환되는 경제적 상황을 출현시키고, 또 활발한 경쟁에 따라 가격들이 형성되는 격차가 점차 좁아지기 때문에(260쪽) 주어진 장소와 시점에서는 모든 상품들이 서로 일정한 가격 관계에 있고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기꺼이 교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정 시장에서 주어진 시점에 상품들의 가격들이(절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다고 해보자.

| | 유효 가격(cwt.당) | 평균 가격(cwt.당) |
|-----|--------------|--------------|
| 설탕 | 24-26 탈러 | 25 탈러 |
| 숨 | 29-31 탈러 | 30 탈러 |
| 밀가루 | 5½-6½탈러 | 6 탈러 |

* 1cwt.는 112파운드, 1탈러Thaler는 옛 독일 3마르크 은화

이제 만약 한 재화의 평균 가격이 그 가격에서 살 수 있고 또 동시에 팔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한다면, 4 hundredweight(1 cwt.는 1 hundredweight)의 설탕은 위의 예에서 3⅓hundredweight의 숨과 “동등한 가치”이며 16⅔hundredweight의 밀가루, 100 탈러와 “동등한 가치”이며 그 역도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이런 의미에서) 어떤 한 재화 한 단위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여타 재화들의 일정량 중의 하나를 그 재화의 “교환 가치”라 부르기만 하면 되며, 경제학에서 지배적인 용어들

인 교환가치 일반의 개념이나 특히 “교환가치의 척도”로서의 화폐의 개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재화가 매매될 수 있는 화폐 일정량을 “여러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교환가치란 용어 중 선호되는 의미로서의 그 재화의 교환 가치”라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튀르고Turgot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업이 활발한 나라에서는 모든 종류의 재화는 여타 모든 재화로 표시될 수 있는 현행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떤 재화의 특정한 양이 모든 다른 종류의 재화의 특정한 양과 동등할 것이란 의미이다. 특정한 재화의 교환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분명 동등한 가치로 간주되는 다른 알려진 상품의 양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로부터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화들은 말하자면 서로에 대해 측정되고, 교역의 대상이 되는 그 어떤 상품도 모든 다른 상품들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95) 거의 모든 다른 경제학자들도 튀르고와 유사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튀르고가 국부의 기원과 분배에 관한 그의 유명한 에세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가능한 “교환가치의 측정치들” 중에서 화폐가 가장 적합하며 그래서 가장 공통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들은 이 측정치의 유일한 결점은 화폐 가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으며96) 그래서 화폐는 주어진 순간에 믿을 만한 “교환 가치”의 측정치를 보여주지만 서로 다른 시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가격 이론에 대한 논의에서, 객관적 의미에서의 재화

95) *Réflexions sur la formation et la distribution des richesses*, reprinted in *Oeuvres de Turgot*, ed. by G. Schelle, Paris, 1913-23, II, 554. Roscher, *op. cit.*, pp.297-303, Knies, *op. cit.*, p.262 참조.

96)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을 참조 J. A. R. v. Helferich, *Von den periodischen Schwankungen im Werth der edeln Metalle von der Entdeckung Amerikas bis zum Jahre 1830*, Nürnberg, 1843.

의 동등 가치들은 인간 경제의 어디에서도 결코 관측될 수 없다는 점을 보였다(250쪽). 그리고 화폐를 재화들의 “교환가치의 척도”로 제시하는 이론들은 모두 그 이론적 기초가 공상이므로, 즉 오류이므로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는 점을 보였다.

일정한 질을 가진 1 hundredweight의 양털이 양털 시장의 특정한 거래에서 103 플로린스florins에 팔렸다면, 동일한 시장에서, 동시에 더 높거나 더 낮은 가격들, 예컨대 104, 103½, 그리고 102, 102½ 플로린스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장에서 구매자들이 101 플로린스에서는 “취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하는 반면, 판매자들은 105 플로린스에서는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동시에 선언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경우, 무엇이 양털의 “교환가치”인가? 혹은 똑같은 질문을 역으로 던진다면, 예컨대 100 플로린스의 교환가치는 얼마만큼의 양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란

274 1 hundredweight의 양털은 당시 그 시장에서 101에서 105 플로린스 사이에서 매매될 것이란 사실뿐이다.⁹⁷⁾ 그러나 양털의 일정한 양 그리고 이만큼의 양털과 서로 교환될 수 있는 화폐의(혹은 어떤 다른 상품의) 일정한 양 - 즉 용어의 객관적 의미에서 동등한 가치들 - 이란 어디에서도 관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동등한 양의 측정치(“교환가치”의 측정치)란 전연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97) 이 한계들이 5장에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질 범위로 설명한 한계가 아니라는 점 또한 마찬가지로 분명하다. 다른 이해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의 “한계들”이란 용어는 단지 두 사람의 가격 협상자가 파는 사람은 가격을 올리고 사는 사람은 가격을 내리려는 가격을 두고 육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아무렇게나 출발점으로 제시된 bids와 offers인 것처럼 보인다. 그 문단의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5장에서 묘사한 한계들이라는 두 번째 문단에서의 맹거의 명백한 암시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들은 분명 여기에서의 양털 시장 “한계들”에서와 같은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 영역자

것이다.

실제 생활의 몇 가지 경제적 목적들은 개략적인 정확도로 가치평가, 특히 화폐 단위로 가치평가를 할 필요성을 야기한다. 단지 추정치가 개략적으로만 정확하면 되는 경우에는, 평균가격이 일반적으로 이 목적에 가장 적합하므로 평균가격을 가치평가의 기초로 쓰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평균가격으로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실제 생활에서도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히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 재화들의 정확한 가치평가가 필요하면, 추정을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세 가지 점이 구별되어야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의 관심을 다음을 추정하는 데 쏟아야 한다. (1) 시장에 내다놓을 때 어떤 재화들이 팔릴 수 있는 가격, (2) 어떤 종류와 질의 재화들이 시장에서 구입될 수 있는 가격, 그리고 (3) 특정 개인 자신에게 있어 어떤 한 재화 혹은 일정한 양의 재화들과 동등한 상품의 양 혹은 화폐의 양.

첫 두 가지 추정치를 추정하는 기초는 앞서 언급된 것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가격 형성은 항상 두 극단, 하나는 수요 가격(그 상품이 시장에서 청구된 가격asked price)이라 불릴 수 있는 하한下限과 공급 가격(그 상품이 시장에서 제공되는 가격)이라 불릴 수 있는 상한上界 사이에서 나온

275 다는 것을 알고 있다.⁹⁸⁾ 전자前者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추정을 할 때 그 기초가 될 것이며, 후자後者는 두 번째 추정의 기초가 된다. 세 번째 추정은 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이 추정이 되려면(주관적 의미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보려는 재화(혹은 재화들)의 양이 경제 하려는 개인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에 대한 평가가 이

98) 앞의 각주 97 참조 - 영역자

루어져야 하고 이 동등 가치를 추정할 때, 그는 그 재화가 자신에게 사용가치 혹은 교환 가치 중 어느 것이 지배적인지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재화의 양들이 관련되었을 때, 그는 그 재화의 어느 부분만큼이 지배적인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부분만큼이 지배적인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고려할 것이다.

A가 자신에게 지배적인 사용가치를 가진 재화 a, b, c와 자신에게 지배적인 교환가치를 가진 재화 d, e, f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자신이 첫 번째 유형의 재화들을 팔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화폐의 합은 자신에게 이 재화들의 동등가치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사용가치가 그에게는 더 높은 경제적 형태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동일한 재화들 혹은 자신에게 동일한 사용가치를 주는 재화들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의 양만이 자신에게 이 재화들과 동일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화 d, e, f는 상품이며 판매를 위한 것이다. 통상 이 재화들은 화폐와 교환된다. 경제 하려는 개인 A에 의해 이 재화들로부터 기대되는 가격은 일반적으로 진정 이 재화들의 동등 가치일 것이다.⁹⁹⁾ 그러므로 어떤 한 재화의 동등 가치는 그 소유자에 한해 그 사람에게 그 재화가 지니는 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추정될 수 있다. 재화들의 복합체(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동등 가치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제는 그 복합체 속의 각 소비재와 각 상품에 대한 개별적 추정이다.¹⁰⁰⁾

99) 즉, 이 재화들이 A에게 가진 주관적 동등가치는 A에 의해 기대되는 가격이다. 원래 독일어 문장은 다음과 같다. “*der voraussichtlich dafür zu erzielende Preis ist für das wirtschaftende Subject A allerdings der Regel nach das Aequivalent dieser Güter.*” - 영역자

100) 이 차이가 충분히 우리의 과학(경제학)에서 아직 충분히 관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학도들에게 이 차이는 아주 오랫동안 세밀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의문은 손해 청구가 있거나(예컨대 계약의 대체 충족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발생한다) 기타 여러 사례들에 있어서 법학도들에게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불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한

276 일반적 “교환가치” 이론과 특히 그 필연적 결과의 하나로서 “교환가치의 척도”로서의 화폐이론이 앞서 설명했듯이 지지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화폐의 속성과 기능에 대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바로 앞서 논의했던(재화들의 “교환가치”의 측정과 구별되는) 다양한 추정치 estimates들이 보통 화폐의 단위로 가장 적절하게 추정된다는 점을 알게된다. 첫 두 가지 가치평가의 목적은 어떤 한 상품이 주어진 시장에서 주어진 시점에 어떤 양만큼의 다른 재화들과 사거나 팔릴 수 있는지에 대한 추정이다. 예상된 거래들이 실제로 실행되고 그 결과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화폐의 합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자연적으로 가치평가라는 경제적 작업의 즉각적 목적이라면, 재화들의 이런 추정치는 보통 단지 화폐로만 구성된다.

고도의 교역이 행해지는 상황 아래에서는 모든 다른 재화들이 우회적 방법을 쓰지 않고 유일하게 화폐라는 상품에 의거해서만 평가된다. 좁은 의미에서의 물물교환이 사라지고 다양한 상품들의 가격들이 실제로 오로지(대개의 경우) 화폐의 합으로만 나타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화폐 단위 이외에는 가치평가의 신뢰할 만한 기초가 부족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곡물 혹은 양털의 가치평가를 화폐로 하게 되면 이는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양털을 곡물 단위로 그리고 곡물을 양털 단위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안고 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 두 재화의 직접적인 교환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단지 매우 예외적 경우에만 일어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치

과학자로 하여금 과학자의 도서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한 경우를 고려해 보자. 책들의 “시장 가격”은 과학자가 잃은 손실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도서관이 지배적인 교환가치를 가지게 될 그 과학자의 유산상속자에게는 바로 그 시장가격이 도서관의 정당한 동등가치가 될 것이다.

평가, 즉 각각의 유효 가격들이 지닌 기초가 박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가치평가는 보통 그 전제로 두 재화들에 대한 화폐단위의 종전의 평가를 포함한 계산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277 한편 한 재화를 화폐 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현존하는 유효 가격들의 기초 위에서 직접 행해질 수 있다.

그래서 화폐 단위로 상품들을 평가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통의 실제적 목적들에 대해 가장 잘 부응할 뿐 아니라 실제 계산에 있어서도 가장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화폐가 아닌 다른 상품 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더 복잡하다.

주관적 의미에서 재화들의 동등 가치를 추정하는 경우에도 이런 점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첫 두 가치 평가는 주관적 가치평가의 전제들이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화폐가 보통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준이 되는 유일한 상품인지 분명해진다. 이런 점에서 교역이 발달된 상황에서 가치 평가들이 일반적으로, 또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상품으로서 화폐는 우리가 원한다면 가격들의 척도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¹⁰¹⁾ ¹⁰²⁾

101)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화폐는 인간의 교역에서 척도로 쓰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 (*Ethica Nicomachea* v. 5. 1133b, 16; 그리고 ix. 1. 1164^a, 1) 화폐의 기원을 배타적으로 혹은 압도적으로 경제 하려는 인간의 “교환가치” 혹은 가격의 측정치의 필요성으로 추적하고, 귀금속의 화폐 성격을 이 목적에 특별한 적응성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저술가들 중 나는 여기에서 다음 사람들을 언급하고 싶다. Carlo Antonio Broggia, *Trattato delle monete*, (1743년 출간) in *Scrittori classici Italiani di economia politica*, Milano, 1803-05, IV, 304; Pompeo Neri, *Osservazioni sopra il prezzo legale delle monete*, (1751년 출간), in *ibid.*, VI, 134ff.; Ferdinando Galiani, *Della moneta*, in *ibid.*, XII, 23ff. 그리고 120ff; Antonio Genovesi, *Lezioni di economia civile*, in *ibid.*, XV, 291-313 그리고 333-341; Francis Hutcheson, *A System of Moral Philosophy*, London, 1755, II, 55-58; David Ricardo, *op. cit.*, p.40; Storch, *op. cit.*, I, 45ff; Lorenz v. Stein, *System der Staatswissenschaft*, Stuttgart, 1852, I, 217ff.; Albert E. F. Schäffle, *Das gesellschaftliche*

위에서 나는 왜 일반적으로 화폐의 성격을 획득한 상품이 존재할 때는 언제나 가치 평가의 추정치들이 이 상품 단위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또 왜 화폐가 된 상품의 독특성이 이러한 추정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 한, 보통 이 상품의 단위로 실제로 추정되는지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떤 상품의 화폐 성격의 **필연적인** 결과는 아
278 니다. 우리는 한 상품이 화폐 성격을 띠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척도”로 기능을 하는 경우들, 혹은 화폐 성격을 획득한 몇 가지 상품들의 유일한 혹은 또 다른 상품만이 이런 추가적 능력을 가지고 가격 측정치로 쓰이는 경우들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격의 척도로서의 기능은 반드시 화폐 성격을 획득한 상품들의 속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한 상품이 화폐가 되었다는 사실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면, 어떤 한 상품이 화폐가 되기 위한 전제이거나 원인은 더욱 아니다.

물론 실제에 있어 화폐는 일반적으로 가격의 척도로 매우 적합하다. 특히 금속 화폐의 경우 높은 가분성可分性 divisibility과 그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안정성 때문에 가격의 척도로 적합하다. 무기, 접시, 구리 가락지 등과 같이 화폐 성격을 획득했으나 결코 가격의 척도로 사용되지 못했던 상품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가격의 척도로서의 기능은 화폐의 **개념** 속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개념과 “가치 척도”의 개념을 함께 녹여 버렸으며 그 결과 화폐의 진정한 속성을 오해하게 되었다.

화폐가 보통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위인 유일한 상품이 되게

System der menschlichen Wirthschaft, Tübingen, 1873, I, 221f.

102) 다음 두 문단은 원전에서는 각주로 여기에 나옴 - 역역자

만든 똑 같은 요인들이 또한 화폐가 한 개인이 부富의 일부를 축적하여 이를 교환하여 다른 재화들(소비재 혹은 생산의 수단)을 획득하는 가장 좋은 매개물이 되게 만들었다. 경제 하려는 개인이 그의 부의 일부분을 소비재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먼저 화폐로 교환될 경우, 그 자신이 언제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게 된다. 또한 경제 하려는 개인의 자본 중 아직 생산의 전문화된 요소들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유로 다른 형태로가 아닌 화폐의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재화들은 생산에 필요해 구매하려는(전문화된) 생산수단과 교환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폐와 교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일상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개별 경제주체들은 소비재의 재고 일부를 화폐로 전환하고자 애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사람들은 소비재의 재고 중에서 보통 자신의 필요를 직접 충족시키는 데 더 이상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 부분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이를 화폐로 바꾸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의 자본 중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로 의도된 것이 아닌 부분은 먼저 화폐로 전환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목적들을 진행시키는 데에 작지 않은 발걸음을 땀 것이 된다.

그러나 화폐 자체에 “가치들”을 현재에서 미래로 이전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귀속시키려는 생각은 잘못이다. 금속 화폐는 그 내구성과 낮은 보관 비용으로 인해 의심할 여지없이 이 목적에도 적합하다 하더라도 다른 상품들도 분명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화폐보다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귀금속보다 보존이 힘든 재화들이 화폐-성격을 획득한 곳에서는 어디에서

나 이 재화들이 보통 순환의 목적에는 쓰이지만 “가치” 보존의 목적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¹⁰³⁾

280 전술했던 것을 요약하자면 화폐가 된 상품은(이런 화폐적 속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다고 한다면) 경제 하려는 인간의 실질적 목적에 부응하는 가치평가들, 교환 목적을 위한 펀드를 축적하기에도 가장 적합하다.(현재 경제학의 저술가들이 통상 화폐라고 말할 때 항상 대표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금속 화폐는 실제로 이 목적들에 상당히 잘 부응한다. 그러나 “가치의 측정치”가 되는 기능과 “가치의 저장소”가 되는 기능을 화폐 자체에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기능들은 화폐의 우연한 속

103) 이 이론의 주요 대표자들은 17세기의 위대한 영국 철학자들이다. 홉스Hobbes는 사람이 당장 소비에 쓰고자 하지 않는 썩어 없어지는 perishable 부富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홉스는 어떻게 썩어 없어지는 부를 금속 화폐로 전환(“concoctio”)함으로써 이 목적이 달성되는가를 보여준다. 홉스는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부가 더 쉽게 유지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Leviathan*, ed. by A. D. Lindsay, “Everyman’s Library”, London, 1914, p.133). 로크Locke는 홉스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Two Treatises of Government, and Further Considerations concerning Raising the Value of Money*, in *The Works of John Locke*, 12th edition, London, 1824, IV, 364-365 and 139ff.)

반디니Sallustio Antonio Bandini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 그 근원들이 있는 견해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는 순수 물물교환이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설명을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한 개인의 재화들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의 재화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재화를 이전해주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담보물pawn(“un mallevadore”)이 필요해지며 귀금속이 이 기능을 위해 선택되었다고 반디니는 주장한다.(*Discorso economico in Scrittori classici Italiani di economia politica*, Milano, 1803-05, VIII, 142ff.) 이탈리아에서 이 이론을 더 발전시킨 사람들로는 오르테스Giammaria Ortes (*Della economia nazionale*, in *ibid.*, XXIX, 271-276, and *Lettere in ibid.*, XXX, 258ff.), 카를리Gian-Rinaldo Carli (*Dell’origine e del commercio della moneta*, in *ibid.*, XX, 15-26) 그리고 코르야니Giambattista Coriani(*Riflessioni sulle monete, and Lettera ad un legislatore della Repubblica Cisalpina*, in *ibid.*, XLVI, 87-102 and 153ff.) 등이 있다. 프랑스에서 이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은 뒤토Dutot(*Réflexions politiques sur les finances et le commerce*, in E. Daire, ed., *Economistes financiers du XVIIIe Siècle*, Paris, 1843, p.895)였다. 독일에서는 그 이론은 슈말쯔T. A. Schmalz에 의해 수정되었다.(*Staatswirtschaftslehre in Briefen*, Berlin, 1818, I, 48ff.) 그리고 영국에서는 최근 맥리오드Henry Dunning Macleod에 의해 수정되었다.(*The Elements of Economics*, New York, 1881, I, 171ff.)

성일 뿐 화폐 개념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주조 화폐

화폐의 속성과 기원에 대한 앞선 논의로 볼 때 금속이 자연스럽게 문명화된 민족들간의 통상적인 교역에서 **경제적** 형태의 화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귀금속을 화폐 목적들로 사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결점이 동반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 하려는 인간에 의해 이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주요 결점으로는 (1) 귀금속인지의 여부와 순도를 결정하는데 수반하는 어려움, 그리고 (2) 딱딱한 물질을 각 특정 거래에 적합하도록 분할할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이 결점들은 시간 손실과 여타 경제적 희생 없이는 쉽게 제거할 수 없었다.

귀금속의 진위 여부와 순도의 테스트는 화학약품뿐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한 특별한 노동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딱딱한 귀금속을 특정 거래에 적합한 크기로 분할하는 것도 정확도가 요구되는 작업이므로

281 노동, 시간 손실 및 정밀 측정도구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분할과정에서 생기는 귀금속 부스러기의 유실과 반복적인 체련으로 인해) 귀금속 자체의 작지 않은 손실을 발생시킨다.

유명한 동남아 여행가 바스티안Bastian은 은이 아직 주조되지 않은 상태로 순환되던 나라였던 미얀마에 대한 글에서 귀금속을 화폐 목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묘사를 하고 있다.¹⁰⁴⁾

“한 사람이 미얀마에서 시장에 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한 조각의 은, 망치, 조각칼, 저울 그리고 필요한 저울추들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이 항아리는 얼마지요?’ ‘당신이 가진 돈을 보여주시오,’ 상인이 대답한다. 그리고는 돈을 검사한 후 이 혹은 저 무게에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면 구매자가 상인에게 조그만 모루anvil를 요청하고 정확한 중량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자신의 은 조각과 씨름을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저울에서 무게를 단다. 왜냐하면 상인의 저울은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량이 맞을 때까지 저울에서 은을 더 보태거나 빼내거나 한다. 물론 은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은이 손실된다. 그러므로 구매자는 보통 정확하게 원하는 양만큼 구매하기보다는 자신이 방금 분할한 은 조각에 상당하는 양을 구매하기를 더 선호한다. 최고의 순도를 가진 은으로만 행해지는 더 큰 규모의 구매에서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다. 왜냐하면 먼저 정확한 순도를 결정하는 평가사를 불러와야 하며 이 일에 대해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금속을 주조 화폐로 만들어 사용할 줄 모르던 때 모든 민족들의 교역에 수반되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분명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이런 애로를 자주 경험하면서 모든 경제 하려는 개인들은 틀림없이 이런 애로의 제거를 가장 바람직하게 여겼을 것이다.

두 가지 애로요인 중 아마도 첫 번째 금속의 순도를 결정하는 데 따른 애로의 제거가 그 중요성에서 두 번째 애로보다 먼저인 것으로

282 여겨졌던 것 같다. 관료 혹은 신뢰할만한 사람에 의해 금속 덩어리 위에 각인이 찍혀졌는데 이 각인은 무게가 아니라 그 순도를 보장하였

104) 멩거는 바스티안Bastian으로부터 인용한 구절들에 대한 참고문헌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아돌프 바스티안Adolph Bastian의 출간 저술들로부터는 이 구절들을 찾을 수 없었다. 멩거의 정보는 바스티안의 미출간 강의 혹은 개인적 교신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 영역자

고 그 결과 그 보유자는 각인의 신뢰성을 인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금속을 넘겼을 때, 부담이 많고 비용도 많이 드는 순도 테스트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검인이 찍힌 금속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교환될 때 여전히 중량을 달 필요가 있었으나 그 순도에 대한 검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또 다른 경우에는 아마도 약간 늦게 경제하려는 인간은 금속 조각에 유사한 방식으로 무게까지 표시하거나 금속을 처음부터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순도 뿐 아니라 무게까지 신뢰성을 얻도록 각인 해 두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던 것 같다. 이 목적은 자연히 귀금속을 교역의 필요에 맞게 작은 조각들로 분할하고, 이를 더 이상 값아 내려고 하면 금방 표시가 나도록 각인을 할 때 가장 잘 성취될 수 있었다. 즉 금속을 주조화폐로 주조함으로써 이 목적은 이루어졌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주조화폐가 탄생하였다. 그러므로 주화는 다름이 아니라 그 속성상 실제 경제생활에 충분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기詐欺로부터 보호되도록 그 순도와 중량이 신뢰할만한 방법으로 결정된 금속 조각일 뿐이다. 주화로 인해 우리가 모든 거래에서 순도 검사, 분할, 중량 달기와 같은 지루한 과정을 생략한 채 단순히 신뢰할만한 방법으로 귀금속의 필요한 중량을 헤아리기만 하면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화의 경제적 중요성은 이 화폐가 수용됨으로써(귀금속을 필요한 양만큼 분할하는 기계적 작업을 절약하게 했다는 점 이외에) 금속화폐의 진위 여부, 순도, 무게에 대한 검사 필요성을 절약하게 했다는 데에 있다. 주화는 우리가 이 화폐를 넘겨줄 때, 순도와 무게에 대한 **증명**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준다. 그래서 주화는 우리는 매우 짜증나고 진을 빼는 경제적 희생이 수

반되는 증명 과정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 결과 자연상태에서 높았던 귀금속의 시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주화의 총 중량과 보증된 순도에 대한 최선의 보장은 그 속성상 정부 자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화에 대한 범주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모든 사람에 의해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은 대개 교역에 필요한 주화 각인의 의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들 정부가 너무 자주 자신의 힘을 심하게 오용하였으며 그 결과 개별 경제 주체들은 주화란 고정된 순도와 무게를 가진 귀금속 조각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의 잊어버렸다.(주화의 순도와 중량은 주조국鑄造局이 정직하고 청렴할 때 보장되는 것이다.) 화폐가 하나의 상품인지 그 여부에 대한 의문마저 야기되었다. 마침내 화폐는(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편리성에 의거해서만 존재하는 완전히 머리 속에서 창안된 것이라고 선언되었다. 각국 정부들은 화폐를 이것이 실제로 인간의 일반적 편리성을 위한 산물에 불과하며 특히 자신들의 입법적 변덕의 산물인 것처럼 취급하였다. 이 사실은 화폐의 속성에 대해 오류를 확장시키는데 작지 않게 기여하였다.¹⁰⁵⁾

의심할 여지없이 화폐 금속들은 처음에는 상행위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쓰이던 무게 단위들에 상응하여 분할되었다. 로마Roman은 원래 1 파운드의 구리였다. 에드워드 1세 당시 영국의 파운드 스테링sterling은(타우어Tower 중량법에 따른)특정 순도의 은銀 1 파운드를 함유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샤를마뉴 대제 당시 프랑스 리브르livre는(트로예Troyes 중량법에 따른)은 1 파운드를 함유하고 있었다. 영국 실링과 페니 역시

105) 다음 문단은 원전에는 바로 앞 문단 끝에 각주로 붙어있다. - 영역자

상업에서 관습적으로 쓰이던 중량 단위였다. 헨리 3세 때의 고대 법령에는 “밀 1퀴터(8부셀)가 12실링의 무게이면, 1파싱farthing(1파싱=¼페니)의 와스텔wastel 빵은 11실링 4펜스의 무게가 나가야 한다When wheat is at twelve shillings the quarter, wastel bread of a farthing shall weigh eleven shillings and four pence.”¹⁰⁶⁾라는 조항이 있다. 독일의 마르크, 실링Schilling, 페니히pfennig (1페니히=1/100마르크) 등도 원래 상업에 쓰이던 중량 단위들이었다. 주조국鑄造局의 마스터들이 통화의 가치를 반복해서 침식해왔기 때문에 대개의 나라에서 금괴의 통상적 중량 단위와 교역에서(주화들로 헤아려) 사용될 때의 중량 단위가 크게 다르게 되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모든 자연스런 경제에서 표준 주화는 귀금속이 교역되던 중량으로 정의된 중량 단위 이외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격차의 발생은 화폐를(귀금속의 중량 단위와 구별되는) 특별한 “교환가치의 척도”²⁸⁴로 간주되게 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금괴의 중량 단위를 주화 단위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시도가 자주 있어 왔으며, 최근 19세기 관세동맹Zollverein의 파운드가 주화체계의 기본으로 선택되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시도를 하였다.

유럽 주화의 주요 결점들은 이 주화들이 완전히 정확한 중량으로 만들어질 수 없고 실제적 이유인 비용 때문에, 주조국에서 채택되는 통상적 제조 과정은 도달 가능한 최고의 중량의 정확도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조국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화의 이러한 결점들은 사용을 통해 순환되면서 증폭된다. 그 결과 똑같은 액면의 주화들 사이에 그 중량이 눈에 띌 만큼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런 결점들은 귀금속이 더 작은 단위로 분할될수록 더 뚜렷해진

다. 소매에 적합한 소액 단위로 귀금속을 주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우며, 적당한 주의를 기울여 분할했다 하더라도 주화의 액면 가치에 비해 너무 큰 경제적 희생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희생이 있는 반면, 소액 주화가 없으면 교역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바스티안Bastian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2 아나Annas(1 Anna는 1/16 루피)보다 더 작은 단위의 주화는 사이암Siam(Siam은 태국의 옛이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가격 아래에서 어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누구나 총지출이 2 아나가 되도록 만드는 새로운 추가적 욕구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예비 구매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구매할 다음 이를 나누어야 한다. 때로는 몇 개의 작은 톱 분량의 쌀이 화폐 대용물代用物로 쓰였으며, 소코트라Sokotra에서는 버터기름ghi 한 조각 혹은 버터 한 조각이 잔돈 역할을 했다.” 바스티안에 의하면, 멕시코의 도시에서는 비누 조각, 시골에서는 달걀을 잔돈으로 받았다고 한다. 페루의 산악지대에 사는 원주민들은 몇 개의 칸으로 나뉜 바구니를 가까이 두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바구니의 한 쪽 칸에는 바느질 바늘들이 들어있고, 다른 쪽 칸에는 실을 감은 실패들, 또 다른 쪽 칸에는 양초와 일상용품들이 들어있었다. 원주민들은 필요한 잔돈의 양과 동일한 가치만큼 이 물건들을 섞어 제공한다. 북부 버마(미얀마)에서는 납덩이가 과일, 엽권련cigar 등의 최소규모 구매에 사용되었으며 모든 상인은 자신의 상점에 커다란 상자를 두고 그 속에 납덩이들을 가득 채워두고 있다. 납덩이는 무게를 달 때 은을 다는 저울보다 더 큰 저울을 쓴다. 은에 대한 잔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촌락에서는 조그만 구매를 위해 하인들이 무거운 납 주머니를 들고

106) Adam Smith, *op. cit.*, p.26 참조

따라다녀야 한다.

대개의 문명화된 나라들에서는, (귀금속이 아닌)구리나 청동과 같은 통상의 금속을 주조화폐로 사용함으로써 (금이나 은과 같은)귀금속을 아주 작은 단위로 주조하는데 따른 기술적, 경제적 문제들을 피하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단지(소규모 지불에) 편리하기 때문에 구리나 청동 주화를 보유하는 것일 뿐이며 자신의 부富有의 상당 부분을 이 구리나 청동 주화들로 보유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면, 구리나 청동 주화는 교역에서 보조적 위치만을 가지게 된다. 만약 어떤 주화이든 언제든 주조국에서 귀금속 주화와 교환될 수 있다고만 한다면, 혹은 보조 주화를 조금만 발행하여 계속 순환되게 한다면, 일반인들이 더 편리하도록 이 주화들을 반수 혹은 더 작은 단위로 별 피해를 주지 않고도 주조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첫째 방법인 귀금속 주화로의 교환 보장이 보다 더 올바른 방법이며 이 방법이 주화의 발행을 통해 정부에 귀속되는 이익으로 인해 정부가 주화의 발행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보호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조 화폐를 보조 주화라 부른다. 보조 주화의 가치는 보조 주화의 원 재료의 가치보다 더 크다. 이런 추가적 가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정량의 보조 주화가 주조국에서 더 큰 액면 가치의 주화와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최소 단위의 완전 중량의 주화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은 이(불완전 중량의) 보조 주화를 가지고 정부나 그 누구에 대해서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쓸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구리 혹은 청동 보조 주화들이 제공하는 커다란 편의성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이 경우 기꺼이 조그마한 경제적 변칙을 참고 수용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운송이 쉽고 편리하다는 점이 중량이 완전한가 여부보다 더 중요하며 중량의 완전성은 결코

중요한 경제적 이해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귀금속인) 은의 경우에도 아주 가벼운 소액 은화가 주조되었다. 기술적 혹은 경제적 이유들로 인해 완전-중량의 주화 제조가 적합하지 않은 소액의 중량 단위에 한정해서 발행되기만 한다면 불완전 중량의 주화 발행은 해롭지 않다.

부 록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과 복지의 수단을 “재화”라고 부른다.(*Politics* I. 4. 1253, 23-5) 고대 민족들이 인간 관계들을 보던 지배적인 관점이었던 윤리적 관점은 효용과 재화의 속성에 대한 고대 저술가들의 견해에 반영되어 있다. 이는 중세의 저술에서 종교적 관점이 지배적인 것과 같은 현상이다. 암브로시우스Ambrosius는 “사람의 영생구제에 기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유용하지 않다.nihil utile, nisi quod ad vitae illius aeternae prosit gratiam,”고 말하고 있고, 중세 경제관에 속하던 토마신Louis Thomassin은 그의 『*Traité du négoce et de l'usure*』 (Paris, 1697, p.22)에서 효용 자체는 영생의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 l'utilité même se mesure par les considérations de la vie éternelle”라고 말하고 있다. 287 다. 더 최근의 저술가 중, 프랑소아 드 포르보네Francois V. de Forbonais는 재화 biens를 “귀한 물건이나 소비를 위한 천연산출물처럼 해마다 생산하지 못하는 소유물들이다Hes propriétés qui ne rendent pas une production annuell, telles que les meubles précieux, les fruits destinés à la consommation”라고 말하고(*Principes économiques* in E. Daire [ed.], *Mélanges d'économie politique*, Paris, 1847, I, 174-5) 재화를 “richesses” (수입을 발생시키는 재화)와 대조시키고 있다. 듀퐁Du Pont도 유사한 구분을 하고 있다.(*Physiocratie*, Leyden, 1768, p.cxviii)

재화라는 단어는, 이미 uillaume F. Le Trosne에 의해 오늘날 과학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De l'intérêt social*, Paris, 1777, PP.5-6) 그는 필요와 필요의 충족을 구분하고 후자를 재화biens라고 불렀다. Jacques Necker의 『*Sur la législation et le commerce des grains*』 (Paris, 1775, pp.17-24)도 참조하라. 장 밥티스트 세이Jean Baptiste Say도 재화biens를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les moyens que nous avons de satisfaire [nos besoins]”이라고 정의한다.(*Cours complet d'économie politique pratique*, Paris, 1840, I, 65.)

독일에서의 재화이론의 발달은 다음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소덴Julius v. Soden은 재화를 소비품목으로 정의한다.(*Die National-Oekonomie*, Leipzig, 1805, I, 39-40.) 야코브L. H. v. Jakob는 재화를 “인간의 필요의 충족에 적합한 것was zur Befriedigung menschlicher Bedürfnisse geschickt ist”¹⁰⁸⁾이라고 정의한

다.(*Grundsätze der National-Oekonomie*, Halle, 1825, p.30.) 휴페란트Gottlieb Hufeland는 재화를 “인간의 목적에 대한 모든 수단jedes Mittel zu einem Zwecke eines Menschen”¹⁰⁹⁾이라 정의한다.(*Neue Grundlegung der Staatswirtschaftskunst*, Wien, 1815, I, 15.) 스토르크Henri Storch는 “사물들의 효용에 대해 우리가 판단이 그 사물들을 재화들이 되게 한다.L'arret que notre jugement porte sur l'utilité des choses ... en fait des biens”¹¹⁰⁾고 말한다.(*Cours d'économie politique*, St. Petersburg, 1815, I, 56-57). 이러한 출발로 시작해 풀다Friedrich Carl Fulda는 재화를 “diejenige(Sachen), welche der Mensch zu diesem Zweck [Befriedigung geistiger und physischer Bedürfnisse] als Mittel anerkennt”¹¹¹⁾이라고 정의한다.(*Grundsätze der ökonomisch-politischen oder Kameralwissenschaften*, Tübingen, 1816, p.2.) (cf., 그러나 Hufeland, *op. cit.*, I, 22ff. 참조.) 로셔Wilhelm Roscher는 재화를 “인간의 진정한 필요의 충족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alles dasjenige was zur ... Befriedigung eines wahren menschlichen Bedürfnisses anerkannt brauchbar ist”¹¹²⁾이라고 정의한다.(*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Twentieth edition, Stuttgart, 1892, p.2.)

제임스 스튜어트 경Sir James Steuart은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Oeconomy*』 (London, 1767, I, 360ff.)에서 이미 재화를 사물, 개인적 서비스, 그리고 권리로 나누고 있다. 권리의 범주에 그는 시장성이 있는 특권이나 면책권들조차 포함시키고 있다.(p.370) 세이Say는 법률 관행, 상인이 누리는 영업권goodwill, 신문 사업, 그리고 군대 지도자의 명성조차 재화biens로 간주하고 있다.(*op. cit.*, pp.530-531.) 헤르만Friedrich v. Hermann은(호의, 사랑, 가족, 이득을 볼 수 있는 고용 등) 많은 수의 관계들도 외부 재화external goods의 개념 속에 포함하고 있으며(*Staatwirtschaftliche Untersuchungen*, München, 1874, pp.103ff.) 이 재화들을 유형의 재화나 특별한 범주의 재화인 개인 서비스로부터 구별하고 있다. 로셔Roscher는 “관계들”간의 상태를 재화로 간주하는 반면

108) “what is suited to the satisfaction of human needs.”

109) “every means to a purpose of a man.”

110) “the judgment we pass upon the utility of things ... makes goods of them.”

111) “those [things] which man recognizes as means to this end [satisfaction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needs].”

112) “all that is recognized as being applicable to the satisfaction of a true human need” (Menger의 이텔릭 강조).

107) 1장의 각주 14와 각주 18을 참조 - 영역자.

(*op. cit.*, p.8) 샤플Albert E. F. Schaffle은 “관계들”의 개념을 “경쟁의 배제와 공급의 사적 통제에 의해 배타적이 된 이전 가능한 지대地代 übertragbare, durch private Beherrschung des Absatzes und durch Verdrängung der Concurrenz ausschliessend gemachte Renten”¹¹³⁾로 한정한다.(*Die national ökonomische Theorie der ausschliessenden Absatzverhältnisse*, Tübingen, 1867, p.12.) 그 절에서 샤플은 그에게만 독특한 의미에서 “지대”rent란 용어를 사용한다.(Schaffle, *Das gesellschaftliche System der menschlichen Wirtschaft*, Tübingen, 1873, I, 208ff. 참조; 또 Solden, *op. cit.*, I, 25ff.와 Hufeland, *op. cit.*, I, 30도 참조)

B. 부富¹¹⁴⁾

경제체의 속성에 대한 탐구는 개인 경제에서 부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이 질문에 거의 손대지 못하고 있으나 그의 제안들은 부의 이론에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노동분업이 한번 철저하게 일어나고 나면,” 그가 말하기를, “... 한 인간은... 그가 지배할 수 있거나 구매할 여유가 있는 노동의 양에 따라 그는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될 것임에 틀림없다.”(*Wealth of Nations*, Modern Library Edition, New York, 1937, p.30.) 이로부터 스미스 이론의 일관된 확장으로써 어떤 재화가 우리에게 노동의 지배를 제공하느냐의 여부가(혹은, 스미스의 입장으로서서는 마찬가지로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가) (개인 경제에서) 부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이 판단될 기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세이Say 역시 스미스 식의 추론을 따르고 있다. 자신의 『정치경제론*Traité d'économie politique*』 (Paris, 1803, p.2)에서 세이는 교환가치를 가진 재화들과 그렇지 못한 재화들을 분리하고 후자後者를 부富에서 배제한다. (“어무런 가치를 전혀 가지지 않은 것은 부富가 될 수 없다. 이들 사물들은 정치 경제학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Ce qui n'a point de valeur, ne saurait être une richesse. Ces choses ne sont pas du domaine d'économie politique.”¹¹⁵⁾) 자신의 『정치경제와 조세의 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ed. by E. C. K. Gonner, London, 1891, p.258)에서 리카르도Ricardo 역시 가치와 재화riches를 구분하고 있다. 그는 단지 앞선 학자들과 세이가 사용한 “richesse”란 단어와 현저하게 다른 의미로 “riches”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다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op. cit.*, pp.314ff.)를 추종하여 맬더스Malthus는 재화가 유·무형인가의 여부로 재화의 부富-성격의 기준을 찾았고(*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1820, p.28), 후기 저술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의 개념을 물질적 재화로 한정하였다. 독일 학자들 중에 같은 의견이었던 학자들로는 스토르흐H. Storch(*Cours d'économie politique*, St. Petersburg, 1815, I, 108ff.), 풀더F. C. Fulda(*Grundsätze der ökonomisch-politischen oder Kameralwissenschaften*, Tübingen, 1816, p.2), 오베른도르퍼J. A. Oberndorfer(*System der Nationalökonomie*, Landshut, 1822, pp.64~65), 라우K. H. Rau(*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Heidelberg, 1847, p.1), 로쯔J. F. E. Lotz(*Handbuch der Staatswirtschaftslehre*, Erlangen, 1837, I, 19), 그리고 번하르디Theodor Bernhardt(*Versuch einer Kritik der Gründe die für großes und kleines Grundeigentum angeführt werden*, St. Petersburg, 1849, pp.134ff., 그리고 특히 pp.143ff.) 등을 들 수 있다.

무형 재화의 배제를 비판한 학자들로는 세이J. B. Say(*Cours complet d'économie politique pratique*, Paris, 1840, I, 89), 맥클로크J. R. McCulloch(*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1830, pp.6ff.), 헤르만F. v. Hermann(*Staatswirtschaftliche Untersuchungen*, München, 1874, pp.21ff.), 그리고 로셔Wilhelm Roscher(*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Twentieth edition, Stuttgart, 1892, p.16) 등을 들 수 있다. 맬더스는 이미 부의 개념이 유형 재화에만 한정하여 정확하게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Second Edition, London, 1836, p.34)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그가 부의 정의를 내리는데 일관되지 못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사실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290 영국 정치경제학의 가장 최근 대표자들은 부의 개념을 교환가치를 지닌 물건들로 거의 배타적으로 연관 지우고 있다. 예컨대 맥클로크McCulloch(*op. cit.*, p.6), 밀J. S. Mill(*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ed. by Sir W. J. Ashley, London, 1909, p.9), 그리고 시니어N. W. Senior(*An Outline of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 London, 1836, p.6) 등이 그러하다. 최근의 프랑스 학자들 중에는 특히 클레망Ambroise Clément과 왈라스Auguste Walras (*De la nature de la richesse et de l'origine*

113) “transferable rents made exclusive by private control of supply and elimination of competition.”

114) 2장의 각주 27와 32 참조 - 영역자

115) “That which has no value cannot be wealth. These things are not within the domain of political economy.”

de la valeur, ed. by Gaëtan Pirou, Paris, 1938, pp.146ff.) 등이 이런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경제학자들이 단지 부유인 재화와 그렇지 않은 재화를 구분하고 있는데 반해 헤르만Hermann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다.(op. cit., p.12) 그는 경제재(경제 하려는 대상)와 자유재free goods를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은 별 예외 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헤르만은 경제재란 “특정한 양의 노동력이나 혹은 화폐적 지출이라는 희생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 was nur gegen bestimmte Aufopferung, durch Arbeit oder Vergeltung hergestellt werden kann.”¹¹⁶⁾ 이라고 정의하여 경제재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재화의 경제적 성격이 노동 혹은 인간 사이의 교역에 달려 있다고 본다.(ibid., p.18)

그러나 고립된 개인이 노동을 하지 않고 나무에서 따 모을 수 있는 과일 의 경우, 만약 그 과일을 그가 필요한 양보다는 더 작은 양만큼 얻을 수 있다면, 그 과일은 그에게 경제재가 아닌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샘플 역시 경제재가 아닌가? 그 자신의 필요량을 넘는 양은 비경제재 a non-economic good가 아닌가?

로셔Roscher는 『Grundriss zu Vorlesungen über die Staatwirthschaft』 (Göttingen, 1843, p.3)에서는 경제재를 goods “die in den Verkehr kommen”이라 정의하고 그의 『System der Volkswirtschaft』 (Edition of 1857, p.3) 초기 판본들에서는 “교역될 수 있는 혹은 최소한 교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Güter, welches des Verkehrs fähig sind, oder wenigstens denselben fördern können”¹¹⁷⁾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의 주요 저술인 『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Twentieth edition, Stuttgart, 1877, p.4)의 가장 최근 판본들에서는 “경제하려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Zwecke unto Mittel der Wirthschaft”¹¹⁸⁾라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단지 정의되어야 할 개념을 바꾸어 말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저명한 학자인 로셔도 있어서도 경제재와 비경제재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샤플Schäffle의 『Das gesellschaftliche

116) “what can be obtained only for a definite sacrifice in the form of labor or monetary consideration.”

117) “That are capable of being traded, or that, at least, facilitate trade.”

118) “ends and means of economizing.”

System der menschlichen Wirthschaft』 (Tübingen, 1879, 1, 66f.)와 그의 “Die ethische Seite der nationalökonomischen Lehre vom Werthe”(원래 *Tübinger Universitätsschriften*, 1862에 출판되었고 A. E. F. Schäffle, *Gesammelte Aufsätze*, Tübingen, 1885, I, 184-195에 재 수록)도 참조할 것.

부유 개념의 정의를 시도하는 데 있어 비독일계 경제학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그들이 “경제재” 개념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맬더스Malthus의 저술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1820년에 출간된 그의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초판에서 그는 부유를 “인류에게 필요하거나 유용하고 혹은 마음에 드는 물질적 사물들those material objects which are necessary, useful, or agreeable to mankind” (p.28)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부”의 개념 속에 모든(물질적) 재화들, 즉 비경제재조차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맬더스의 부의 개념은 완전히 너무 광범하다. 7년 뒤에 출간된 그의 『Definitions in Political Economy』에서 그는 부유를 “인류에게 필요하거나 유용하고 혹은 마음에 드는 물질적 사물들로, 이를 활용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the material objects necessary, useful or agreeable to man, which have required some portion of human exertion to appropriate or produce”하여 정의하고 있다.(p.234) 『Principles』의 재판(London, 1836, pp.33-34, 각주)에서 그는 “부의 개념에 뒷부분이 첨가된 것은 공기, 빛, 빗물 등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정의조차 지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첨가하고 있다.(ibid.) “이 정의에 근면 혹은 노동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노동이 고용되지 않은 어떤 한 사물의 경우에도 부유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Principles』의 두 번째(1836) 판 33쪽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부의 정의에 도달한다. “나는 부를 인간에게 필요하거나 유용하고 혹은 마음에 드는 물질적 사물로서, 개인들이나 국가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전유專有된 것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이다.I should define wealth to be the material objects, necessary, useful, or agreeable to man, which are voluntarily appropriated by individuals or nations.” 그래서 맬더스는 한 재화가 어떤 경제 하려는 개인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그 재화의 부유-성격(즉, 그 재화의 경제적 성격)의 원천으로 만드는 새로운 오류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세이J. B. Say의 저술들에서도 부의 정의에 도달하려는 시도에서

그 논거가 유사하게 변하는 것을 발견한다. 『*Traité d'économie politique*』 (Paris, 1803, p.2)에서 세이는 가치(교환가치)가 재화의 부-성격의 원천인 것으로 다룬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부가가 될 수 없다 ce qui n'a point de valeur, ne saurait être une richesse.” 이 견해는 토렌스R. Torrens에 의해 공격받는다.(『*An Essay on the Production of Wealth*』 London, 1821, p.7.) 그리고 세이는 그의 『*Cours complet d'économie politique pratique*』 (Paris, 1840, I, 66)에서 부를 구성하는 재화를 종전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우리는 말하자면 노동, 경제, 금욕, 즉 한마디로 진정한 희생을 지불하고서 이들 재화들을 사도록 강제된다. Nous sommes forcés d'acheter, pour ainsi dire, ces . . . biens par des travaux, des économies, des privations; en un mot, par de véritables sacrifices.”¹¹⁹⁾ 이 구절에서 세이는 본질적으로 맬더스가 『*Definitions in Political Economy*』에서 취한 것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Cours complet*, p.66)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재화를 자산의 개념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이 재화들을 획득한 사람에게 이 재화들의 배타적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면 이 재화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 . 한편, 재산권은 일정한 형태의 사회, 계약들, 그리고 법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획득된 부는 사회적 부라고 불려도 좋을 것이다. On ne peut pas séparer de ses biens l'idée de la propriété. Ils n'existeraient pas si la possession exclusive n'en était assurée à celui qui les a acquis. . . . D'un autre côté, la propriété suppose une société quelconque, des conventions, des lois. On peut en conséquence nommer les richesses ainsi acquises, des richesses sociales.”¹²⁰⁾

C. 가치의 본질¹²¹⁾

재화의 모든 형태의 가치에 공통된 요인들을 결정하고 그래서 “가치”의

119) “We are forced, so to speak, to buy these . . . goods by labor, economy, abstinence, -- in a word by real sacrifices.”

120) “One cannot separate the idea of property from these goods. They would not exist if exclusive possession of them were not assured to the person who has acquired them. . . . On the other hand, property presupposes some form of society, contracts, and laws. Hence wealth so acquired may be called *social wealth*.”

121) 3장 1절 참조 - 영역자

일반적 개념을 형성하려는 시도들은 최근의 독일 학자들의 저술에서 발견된다. 이 독일 학자들은 독자적으로 가치 이론을 다루었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단순한 효용과 사용가치를 구분하려고 노력했다. 프리드리히Friedländer는 (“*Theorie des Werthes*”, *Dorpat Universitäts Program*, 1852, p.48)¹²²⁾ 가치를 “어떤 사물이 어떤 소망스런 목적의 성취에 필요한 수단이 된다는 인간의 판단에 의해 인지도된 관계das im menschlichen Urtheil erkannte Verhältniss, wozumach ein Ding Mittel für die Erfüllung eines erstrebenswerthen Zweckes sein kann”¹²³⁾라고 정의한다.(H. Storch, 『*Cours d'économie politique*』 St. Petersburg, 1815, I, 36도 참조.) 프리드리히Friedländer에 의해 묘사된 관계는(원하는 목적이 인간 필요의 충족이거나 혹은 인간 필요의 충족과 인과적으로 관련된 목적이라면) 사물의 효용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의 정의는 재화의 가치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인지된** 그 적합성, 혹은 한 사물의 효용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동일하다. 그러나 효용은 재화 성격의 일반적 전제이며 따라서 그의 정의는 가치의 본질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외에도 너무 광범하다. 진정 그는 비피경제재는 경제재만큼이나 인간 가치의 대상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op. cit.*, p.50)

많은 선배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칼 크니스Karl Knies는 가치를 인간의 목적들에 봉사하는 적합성의 정도라고 본다. (“*Die nationalökonomische Lehre vom Werth*”, *Zeitschrift für die gesammte Staatwissenschaft*, XI [1855], 423.) (Wilhelm Roscher의 『*Die 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의 초기 판본들, 특히 4판, Stuttgart, 1861, p.5도 참조.) 나는 이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치는 측정될 수 있는 크기라 하더라도, 공간이나 시간의 측정치가 공간이나 시간의 본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듯이 가치의 측정치도 가치의 본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크니스Knies 자신은 자신의 가치 개념이 궁극적으로 야기할 어려움을 감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도 유용성, 효용, 그리고 재화-성

122) 우리는 이 구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멩거의 참고문헌이 다음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Dorpat, Kaiserliche Universität, *Facultätsschriften der Kaiserlichen Universität Dorpat, dargebracht zur Feier ihres fünfzigjährigen Bestehens*, etc. Dorpat, 1852, (*Calatogue of the Printed Books in the Library of the British Museum*, London, 1881-1900, I, 202 참조) - 영역자

123) “the relationship recognized by human judgment that a thing can be a means to the fulfillment of some desired end.”

격조차 가치의 정의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몇 가지 경우에 있어, 가치이론은 실제로는 가치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의 조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구성되어 있다. die Werttheorie ···· [ist] ···· an einzelnen Stellen thatsächlich im Ganzen auf die Combination beider Bedeutungen des Wortes Werth aufgebaut”¹²⁴⁾ (*ibid.*, pp.423-424). 그러므로 그는 어떠한 일정한 가치의 원리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샤플 A. E. F. Schäffle은 다음과 같은 견해로부터 나아가고 있다. “경제하려는 행위 혹은 경제제에 대해 말할 수 있으려면, 사람들과 비인적인 외부 사물들간에 (사람에 의해 의식적으로 확립된) 잠재적 혹은 실제적 관계가 항상 존재하여야 한다. 이 관계가 그 경제제와 관련하여 혹은 그 경제하려는 개인의 입장에서 고려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그 재화의 효용이다. 주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그 재화의 가치이다. 효용(서비스제공가능성, 유용성)은 어떤 사물의 인간의 목적에 봉사하기에 적합한 정도이다.····그러나 가치는 재화가, 그 효용성으로 인해, 그 경제하려는 개인의 의식적 목적들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이다. eine potentielle oder actuelle vom Menschen mit bewusstem Willen gestaltete Beziehung zwischen Person und unpersönlichen Aussendungen ist also stets erforderlich, wenn vom Wirthschaften und von wirtschaftlichen Gütern soll die Rede sein können. Diese Beziehung lässt sich nun sowohl von Seite des wirtschaftlichen Objectes als von Seite des wirtschaftlichen Subjectes auffassen. Objectiv ist sie die Brauchbarkeit, subjectiv der Worth des Gutes. Brauchbarkeit (Dienlichkeit, Nützlichkeit) ist die Tauglichkeit der Sache, einem menschlichen Zwecke ···· zu dienen. Werth aber ist die Bedeutung, welche des Gut vermöge seiner Brauchbarkeit für das ökonomische Zweckbewusstsein der wirtschaftlichen Persönlichkeit hat.”¹²⁵⁾(*Ibid.*, p.186). (“Die

124) “in a number of instances, the theory of value ····[is]····actually erected entirely on a combination of the two meanings of the word value.”

125) “in order to be able to speak of economizing or of economic goods, a potential or actual relationship between persons and impersonal external objects consciously established by men must always exist. This relationship can be considered with reference to the economic object or from the standpoint of the economizing individual. Looked at objectively it is the utility of the good. Looked at subjectively it is the value of the good. Utility(serviceability, usefulness) is suitability of a thing to serve a human purpose···But value is the importance the good has, because of its utility, for the conscious economic purposes of the economizing individual.”

ethische Seite der nationalökonomischen Lehre vom Werthe” 원래 *Akademisches Programm zur Feier des Geburtsfestes Sr. Majestät des Königs Wilhelm*, Tübingen, 1862에 출판되었고 A. E. F. Schäffle, *Gesammelte Aufsätze*, Tübingen, 1885, I, 184-195에 재 수록.) 그러나 샤플 자신은 후기 저작에서(예컨대 *Das gesellschaftliche System der menschlichen Wirthschaft*, Tübingen, 1873, I, 162) 가치를 “한 재화를 획득하는데 들 어간 희생으로 인해 그 재화가 지닌 중요성die Bedeutung eines Gutes, um der dafür zu bringenden Opfer.”¹²⁶⁾이라고 정의할 때, 가치의 이런 정의는 분명 너무 넓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비경제제들도 역시 효용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인간의 목적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샤플의 초기의 정의는 실제로 너무 넓다. 그러므로 통찰력이 깊은 학자인 샤플은 가치가 결코 비경제제에 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초기 가치의 정의는 경제제로 한정되고 있지 않다.(*Gesammte Aufsätze*, p.187) 한편 그의 보다 최근의 정의는 너무 좁다. 왜냐하면 최소의 희생이 없 이도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무수한 경제제(예컨대 충적토alluvial land)가 있고 어떤 경제적 희생이 있더라도 결코 획득될 수 없는 다른 경제제들(예컨대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치의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중요한 요인을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하게 밝혀놓았다. 왜냐하면 그는 재화의 객관적 안정성 자체나 혹은 재화의 효용성의 정도가 아니라 재화 가치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경제 하려는 개인에게 그 재화가 가지는 중요성이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로에슬러H. Roesler는 가치의 정확한 개념에 흥미로운 기여를 하였다. (“Zur Theorie des Werthes”,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XI [1868] 279-313 and 406-419.) 로에슬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은 부정확하다. 그리고 가치의 개념은 어떤 방법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물들이라는 요인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반대로, 가치의 개념은 사물들의 부유-개념을 나타내고 재산권에 관한 법 제도의 결과로서 구체적 현상이 되는 균일한 것이다.die herkömmliche Unterscheidung zwischen Gebrauchs- und Tauschwert unrichtig sei unto mit dem Moment des nützlichen Gebrauchs der Dinge der Begriff des Werthes absolut nicht verwunden

126) “the importance of a good because of the sacrifices made in obtaining it.”

werden könne; dass vielmehr der Begriff des Werthes nur ein *einheitlicher* sei, die *Vermögensqualität* der Dinge bezeichne und durch Realisirung der Vermögensrechtsordnung zur concreten Erscheinung komme.”¹²⁷⁾(*Ibid.*, p.406.) 로에슬러의 독특한 관점은 이 문장에서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개념이 개념상의 진전을 의미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는 부를 구성하는 대상들의 영역을 정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재화들의 효용성과 그들의 가치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만약 로에슬러가 어떤 한 재화의 부-성격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 원리로 본다면,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한 재화의 부-성격과 그 가치 모두 동일한 (위의 글에서 묘사한) 양적 관계의 결과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로에슬러의 부-성격의 개념이 나로서는 의심쩍은 이유는 이 개념이 법률학으로부터 차용된 것이기 때문이다.(*ibid.*, pp.295 and 302ff. 참조. Christian von Schlözer, *Anfangsgründe der Staatswirthschaft*, Riga, 1805, p.14도 참조) 재화들은 그 경제적 성격과 마찬가지로 그 가치가 사회경제, 법질서, 그리고 인간 사회의 존재 그 자체와 독립적이다. 왜냐하면 가치는 고립된 경제에서도 관찰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법질서 위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치의 일반 개념을 정의하려는 초기 시도들 중에서 나는 다음 학자들에 언급하고자 한다. Geminiano Montanari(*Della moneta, in Scrittori Classici Italiani di economia politica*, Milano, 1803-5, II, 43); A. R. J. Turgot(“Valeurs et Monnaies” in *Oeuvres de Turgot*, ed. by G. Schelle, Paris, 1913-23, III, 79ff.); E. B. de Condillac(*Le commerce et le gouvernement*, reprinted in E. Daire, [ed.] *Mélanges d'économie politique*, Paris, 1847, I, 251ff.); G. Garnier(A. Smith의 *Wealth of Nations* 불어 번역판 *La Richesse des Nations*, Paris, 1843, I, 서문 중 xlvii ff.); 그리고 H. Storch(*op. cit.*, I, 56ff.). 이 중 특히 콩디락Condillac의 가치 정의가 최근 독일에서의 가치이론의 발전과 작지 않은 점에서 닮아있다.

127) “the traditional distinction between use value and exchange value is incorrect, and the concept of value cannot by any means be tied to the factor of things having useful employments. On the contrary, the concept of value is uniform, designating the wealth-character of things, and becoming a concrete phenomenon as a result of the institution of laws with respect to property.”(이탈릭체 강조는 멩거가 원문에 보탠 것) - 영역자.

D. 가치의 측정치¹²⁸⁾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일찍부터 재화의 사용가치의 척도를 찾고 사용가치를 교환가치의 기초로 제시하려는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Ethica Nicomachea*(v. 5, 1133^a, 26-1133^b, 10)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재화들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음에 틀림없다. 이 척도는 실재에 있어서는 모든 재화들을 비교하는 필요 이외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인간이 아무 것도 욕구하지 않거나 혹은 모든 재화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원한다면, 재화들간의 교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there must be something that can be the measure of all goods This measure is, in reality, nothing other than need, which compares all goods. For if men desire nothing or if they desire all goods in the same way, there would be no trade in goods.”¹²⁹⁾ 마찬가지로 정신으로 갈리아니Ferdinando Galiani는 “인간 정신의 취향들이 변하기 때문에 사물들의 가치 또한 변한다. ch'essendo varie le disposizioni degli animi umani e varj i bisogni, vario è il valor delle cose.”¹³⁰⁾라고 적고 있다.(*Della moneta in Scrittori classici Italiani di economia politica*, Milano, 1803-5, X, 58.)

튀르고A. R. J. Turgot는 그 일부만 전해오는 에세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Valeurs et Monnaies” in *Oeuvres de Turgot*, ed. by G. Schelle, Paris, 1913-23, III, 79-98). 튀르고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의 문명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인간은 자신의 필요의 정도와 재화들의 효용의 정도(*besoins*, 중농학파들에 의해 이런 의미로 자주 쓰이던 단어)에 따라 서로 다른 재화들을 확보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남의 경우와 서로 비교하기 시작한다.(pp.85ff.) 재화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인간은 또한 획득에 수반되는 크거나 작은 어려움을 고려한다. 그래서 튀르고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128) 3장의 2절 B-(5) 참조 - 영역자.

129)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인용되어 여기에 적절한 구절은 멩거에 의한 독일어 번역의 영어직역이다. 참고로 W. D. Ross에 의한 표준적 영역(*The Works of Aristotl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5, Vol. IX)은 다음과 같다. “all goods must therefore be measured by some one thing That demand holds things together as a single unit is shown by the fact that when men do not need one another they do not exchange, as we do when someone wants what one has oneself.” - 영역자.

130) “since the dispositions of human minds vary, the value of things varies.”

“고립된 개인에 있어서 어떤 사물에 대해 이를 존중하는 가치는 그 사물에 대한 그의 욕구에 대응하는, 즉 그가 그 욕구의 충족을 위해 지출하고자 하는 자신의 능력[노동력의 부분]의 일부분과 정확히 일치한다. la valeur estimative d'un objet, pour l'homme isolé, est précisément la portion du total de ses facultés qui répond au désir qu'il a de cet objet, ou celle qu'il veut employer à satisfaire ce désir.”¹³¹⁾(*Ibid.*, p.88)

퐁디악E. B. de Condillac은 다른 결과에 도달한다. 자신의 『*Le commerce et le gouvernement*』(원래 1777년 출판되었고 E. Daire [ed.], *Mélanges d'économie politique*, Paris, 1843, I, 247-445에 재 수록)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물은 그것이 우리의 필요들 중 하나를 충족시킬 때 유용하다고 말해 진다. ... 이러한 효용에 따라 그 사물을 더 혹은 덜 중시한다. ... 이제 이 존중하게 여김이 바로 우리가 가치라고 부르는 것이다. On dit qu'une chose est utile, lorsqu'elle sert à quel-ques-uns de nos besoins; ... D'après cette utilité, nous l'estimons plus ou moins; ... Or cette estime est ce que nous appellons valeur.”¹³²⁾ (*Ibid.*, pp.250-251) 튀르코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확보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을 그 사용가치로 보는 반면, 퐁디악Condillac은 재화의 효용이 재화의 사용가치의 측정치라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 근본적 견해들이 영국과 프랑스 경제학자들의 저술 이후 자주 재등장하였다.

사용가치 측정의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는 독일 학자들 사이에서만 볼 수 있다. 당시 지배적이던 가치 이론에 반대하는 푸르동Proudhon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에서 힐데브란트Bruno Hildebrand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용가치는 항상 어떤 사물의 인간과의 하나의 관계이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재화들의 사용가치는 그 재화의 종류가 충족시키는 인간의 필요들의 크기와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이 없고 따라서 필요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떠한 사용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필요들이 변하지 않는 한, 특정 종류의 재화의 총 사용가치가

불변이며 이 종류의 재화 한 단위의 사용가치는 이 총 사용가치를 총 수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므로 총 수량이 많을수록(적을수록), 이 종의 재화의 총 사용가치로부터 각 단위에 할당되는 부분은 더 작아질(커질) 것이다. Da der nutzwerth immer eine Relation der Sache zum Menschen ist, so hat jede Gütergattung das Mass ihres Nutzwerthes an der Summe und Rangordnung der menschlichen Bedürfnisse, welche sie befriedigt, und wo keine Menschen und keine Bedürfnisse existiren, dort giebt es auch keinen Nutzwerth. Die Summe des Nutzwerthes, welche jede Gütergattung besitzt, bleibt daher, sobald sich nicht die Bedürfnisse der menschlichen Gesellschaft ändern, unveränderlich, und vertheilt sich auf die einzelnen Stücke der Gattung, je nach der Quantität derselben. Je mehr die Summe der Stücke vergrößert, desto geringer wird der Antheil, welcher jedem Stücke vom Nutzwerthe der Gattung zufällt und umgekehrt.”¹³³⁾ (*Die Nationalökonomie der Gegenwart und Zukunft*, Frankfurt, 1848, pp.318ff.) 힐데브란트의 논법은 가치이론 연구에 비할 바 없는 자극을 주었으나 두 가지 결점들을 안고 있었으며 후대의 연구자들은 이 결점들을 느끼고(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를 제거하고자 온 힘을 다 기울였다. 인용된 문장에서 주어진 종류의 재화a given “species of goods”의 가치가 의미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인간 사회에 그 하나의 종류의 모든 재화의 총량이 인간 사회에 가지는 가치일 뿐이다. 그러나 이 가치는 진정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실제 세상의 어디에서도 관찰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치는 개인으로부터만 야기되며, 그리고 그 재화의 구체적 수량에 대해서만 가치가 나오기 때문이다(본문 116쪽 참조). 그리고 우리가 이 부정확성을 간과하고 또 힐데브란트의 “재화 한 종류의 가치”를 이 재화를 소유한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종의 모든 구체적 재화들이 지닌 가치의 합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의 설명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재화들이 다르게 배분되거나 그리고 단순히 이용가능한 양이 조금만 변해도 “재화 한 종류의 가치”는 변할

298

133) “Since use value is always a relation of a thing to man, the use value of every species of goods is determined by the magnitude and rank of the human needs the species of goods satisfies. Where there are no men and no needs, no use value exists. The total use value of any species of goods remains unchanged, therefore, as long as the needs of human society remain unchanged, and the use value of a single unit of the species is equal to this total use value divided by the number of units. Hence the larger the total number of units, the smaller becomes the portion of use value attributed to each unit from the total use value of the species and vice versa.”

131) “the esteem value of an object, for an isolated individual, is precisely equal to the portion of his total faculties [labor] that answers his desire for the object or that he wishes to employ for its satisfaction.”

132) “A thing is said to be useful when it serves for one of our needs; ... according to this utility we esteem it more or less ... Now, this esteem is what we call value.”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영물로 변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효용,” “인지된 효용,” 혹은 “효용의 정도” 등의 개념이 “가치” 개념과 혼동되지 않는 한, “재화 한 종류의 가치”란 개념은 실질적 본질도 없고 그 실체도 없는 것이다. 한편 주어진 한 종류의 재화의 모든 구체적 재화들이 사회 각 구성원들에게 주는 가치의 합이란 의미에서 “재화 한 종류의 가치”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필요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변의 크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힐데브란트가 가치 계산을 하는 기초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 뿐 아니라 만약 그가 **수량에 따라** 그 재화의 종의 다양한 단위들에 “그 종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는 인간의 다양한 **구체적** 필요들의 충족에 있어서의 중요성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Karl Knies, “Die nationalökonomische Lehre vom Werth,” *Zeitschrift für die gesammte Staatswissenschaft*, XI [1855], 463ff. 참조) 힐데브란트의 이론에서 정확한 요소는 재화의 사용가치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 때 증가하고 또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날카롭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관찰에 있다. 그러나 그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엄격한 비례성proportionality이 존재한다는 지나친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

프리드리히Friedländer는 이 문제를 푸는 그의 시도에서 다른 접근법을 채택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평균적인 구체적 필요-단위(사회의 다양한 계급들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개별적 필요들의 평균)는 객관적인 경제적 사용가치의 일반적 표현이다. 다양한 유용한 물건들이 그 필요-단위의 충족을 향해 기여하는 몫들을 표현하는 부분, 그리고 그 평균적인 구체적 필요-단위에 대한 이들의 가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은 다양한 유용한 사물들의 객관적 가치의 측정치를 제공한다.die durchschnittliche concrete Bedürfnisseinheit(das Mittel der innerhalb der verschiedenen Classen der Gesellschaft gefundenen besonderen Bedürfnisseinheiten) der allgemeine Ausdruck für den objectiven volkswirtschaftlichen Gebrauchswerth sei, und der Bruch, welcher die Quoten ausdrückt, welche die einzelnen Brauchlichkeiten zur Bedürfnisseinheit beitragen und das Werthverhältniss derselben zur mittleren concreten Bedürfnisseinheit anzeigt, das Mass für den objectiven Werth der einzelnen Brauchlichkeiten abgebe.”¹³⁴(“Die Theorie des Werthes,” *Dorpaters Universität*

134) The average concrete need-unit(the average of all the separate need- units found among the

299 *Schrift*, 1852, pp.60ff.)¹³⁵) 나는 이 해결방법이 “평균적 필요”를 가진 “평균적 인간”을 상정한다면, 이는 무엇보다도 특히 가치의 주관적 성격에 대한 완전한 오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동일한 재화가 가진 사용가치도 보통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매우 다르다. 왜냐하면 사용가치는 각자의 필요와 각자에게 사용가능한 양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균적 인간에게 지니는 사용가치의 결정”이란 개념으로는 이 문제를 진정한 의미에서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경우들에서 관찰될 수 있는 재화의 사용가치의 척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Friedländer는 단지 서로 다른 재화들의 “객관적 가치”의 척도의 정의에 도달했을 뿐이지만(*ibid.*, p.68)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종류의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칼 크니스Karl Knies 역시 내가 이미 언급한 에세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통찰력 있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429쪽에서 상당히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화들의 사용가치의 추정에 필요한 것들은 사용가치 그 자체의 기초적 요소들 속에서만 발견될 뿐 그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die Bedingungen für die Abschätzung des Gebrauchswerthes der Güter können in nichts Anderem als in den wesentlichen Elementen für den Begriff des Gebrauchswerthes gefunden werden.”¹³⁶) 그러나 크니스가 사용가치의 개념을 충분히 좁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앞의 부록C, 375쪽에서 보았듯이) 크니스를 가치의 척도의 결정에 관한 몇 가지 의심적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다. 크니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재화들의 사용가치의 크기는 (a) 그 재화들이 충족시키는 종류의 필요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필요성의 강도, 그리고 (b) 이 재화들이 이들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강도에 달려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필요의 분류와 크기, 그리고 이에 상응한 재화의 종류의 분류와 크기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Sonäch hangt die Grösse des

various classes of society) is the general expression for objective economic use value. The fraction that expresses the shares that the various useful things contribute toward [satisfaction of] the need-unit, and that indicates their value relationship to the average concrete need-unit, furnishes the measure for the objective value of the various useful things.

135) 이 저술에 대해서는 부록C의 각주 125 참조 - 영역자

136) “the requisites for the estimation of the use value of goods cannot be found anywhere but in the fundamental elements of the use value itself.”

Gebrauchswerthes der Güter ab (a) von der Intensivität des menschlichen Bedürfnisses, welches sie befriedigen, (b) von der Intensivität, in welcher sie ein menschliches Bedürfniss befriedigen... Hiernach stellt sich eine Classification und Stufenleiter der menschlichen Bedürfnisse ein, mit welcher eine Classification und Stufenleiter der Gütergattungen correspondirt.”¹³⁷⁾ 그러나 물의 필요는 인간 필요들 가운데 가장 강렬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이 필요의 충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샘플이 이런 필요를 가장 적절하게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크니스의 가치 측정의 원칙이 옳다면, 샘플은 재화의 종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점들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300

구체적 양의 이 재화도 보통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으며 내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 **종류의 재화**는 가치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 “재화들의 추상적 가치”의 척도에 대해 광범하게 검토한 후 그의 논문 중간에서 크니스 역시 한 개인의 경제에서 구체적 재화들의 사용가치에 대해 다루기 시작하고 있다(*ibid.*, p.461).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재화 한 종류의 가치”(정말 “효용”)와 구체적 재화의 가치의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물론 그렇게 차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크니스는 정확하게 한 사물의 효용의 척도는 그 가치의 척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란 명제를 올바르게 공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크니스는 시사점들이 풍성한 그의 에세이의 어떤 한 논점에서는(*ibid.*, p.441) 재화의 구체적 형태에서의 사용가치의 크기를 결정하는 원리에 매우 근접했었으나 이 원리를 공식화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137) “Thus the magnitudes of the use value of goods depend (a) on the intensity of the human needs they satisfy, and (b) on the intensity with which they satisfy these human needs ... Hence we find a classification and scale of human needs to which corresponds a classification and scale of species of goods.”

경제활동을 이끄는 의식 속에 이 재화의 중요성은 더 강하게 박힐 것이다. 가치의 크기와 그 변화에 대한 모든 제안들은 이 근본적 관계로 환원될 수 있다. Die Thätigkeit des Wirthschaftens wird um so energischer in Anregung kommen, je dringender das persönliche Bedürfniss für ein Gut, und je schwieriger das diesem Bedürfniss entsprechende Gut zu beschaffen ist. Je mehr diese beiden Factoren: Intensivität des Begehrens und Intensivität der Schwierigkeit des Erlangens, auf einander wirken, desto stärker tritt die Bedeutung des Gutes in das die wirtschaftliche Thätigkeit leitende Bewusstsein. Auf dieses Grundverhältniss führen alle Sätze über Mass und Bewegung des Werthes zurück.”¹³⁸⁾ 나는 샤플이 개인의 재화에 대한 필요가 가장 급할수록 문제의 재화를 획득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의 경제 하려는 활동이 더 열성적이 된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의견에 완전히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시급한 필요를 경험하는 많은 재화들은(예컨대 물은) 보통 어떤 가치도 가지지 않는 반면 훨씬 덜 시급한 필요의 충족에 적합할 뿐인 여타 재화들은(예컨대 사냥숙소, 인공적인 오리 연못 등은) 우리에게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비록 대개의 재화들이 그 강도가 다른 몇 가지 서로 다른 필요들의 충족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하더라도, 재화가 충족시킬 수 있는 필요의 시급성이 그 자체로 그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제안proposition에서 결정하는 규모가 확정될 수 없으므로, 의문점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한 재화를 획득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의 정도가 그 자체로 재화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분명하다. 별 가치를 가지지 않은 재화들도 가장 큰 힘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때가 많고, 인간의 경제 하려는 활동economizing activity이 그 어려움이 더 클수록 더 정열적이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경제 하려는

301

138) “Economic activity will be engaged in more energetically the more urgent a person’s need for a good and the more difficult it is to procure the good corresponding to that need. The more these two factors(intensity of desire and degree of difficulty of procurement) operate upon one another, the more strongly does the importance of the good enter into the consciousness that guides economic activity. All propositions about the magnitude of value and its changes are reducible to this fundamental relationship.” 이 구절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물의 에세이의 재출간본에서는 찾을 수 없다. 재출간본은 샤플의 원 논문의 불완전한 형태인 것 같다. 그러나 어느 경우가 사실이건 샤플의 다른 글들, 예컨대 *Das gesellschaftliche System der menschlichen Wirtschaft*(Tübingen, 1873, I, 172)를 고려해볼 때 맹거의 인용은 샤플의 견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영역자

활동을 재화의 필요성에 대한 시급성이 같다면, 가장 어렵지 않게 획득할 수 있는 재화들의 확보를 위해 투입한다. 사물의 두 개의 뿔을 가진 원칙은 그 어느 쪽도 그 자체로는 가치의 척도의 결정 원리가 될 수 없다. 사물은 두 요인들(욕구의 강도와 획득의 어려움)이 서로에게 작용할수록 경제활동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우리의 의식 속에 그 재화의 중요성이 더 강하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물이 명시적으로 가정한 것처럼 경제활동이 “삶이 윤리적으로 합리적인 목적들에 대한 모든 측면에서의 충족의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지향되고 있다.[ist] mit Bewusstsein gerichtet auf die allseitige Erfüllung der sittlich vernünftigen Lebenszwecke”¹³⁹⁾라고 (*ibid.*, p.185) 가정한다 하더라도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재화들이 합리적인 경제 하려는 개인들의 손에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 가정은 사물이 상당히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듯이, 그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본질적 요인이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상호 작용의 결과로 각 재화가 경제 하려는 인간에게 특정한 크기의 중요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가치 척도의 이론을 자신의 이론체계의 일부로 다루었던 가장 최근의 경제학자들로는 특히 이 주제를 독창적으로 다루었던 슈타인 L. v. Stein이 언급되어야 한다. 슈타인은 가치를 “주어진 재화의 측정치와 재화 일반의 총체적 수요와의 관계das Verhältniss des Masses eines bestimmten Gutes zum Leben der 302 Güter überhaupt”¹⁴⁰⁾라고 정의한다(*System der Staatswissenschaft*, Stuttgart, 1852, I, 169-170). 171쪽에서 슈타인은 가치 척도의 결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식 formula에 도달한다. “어떤 한 재화의 진정한 가치의 척도는 문제의 재화의 크기를 다른 재화들의 크기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재화들에 대한 공통의 분모(common denominator)가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공통의 분모, 혹은 재화들에 내재한 동질적 요소는 재화들의 동질적 속성으로부터만 발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물질, 노동, 생산, 필요, 유용성, 참된 소비가능성 등 여섯 가지 요소들 중 하나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물은 재화가 아니게 되므로 모든 참된 재화들은 이 여섯 가지 요소들로부터 유래된다는

사실로부터만 발견 될 수 있다. 이 요소들은 주어진 재화에 단지 특정한 정도만큼만 내재되어 있고 이 요소들의 크기가 각 진정한 재화를 따로 떼어놓고 보았을 때 각 재화의 척도를 결정한다. 이 사실로부터 모든 개별 재화들의 상호간의 양적 관계, 혹은 이들의 가치의 일반적 척도는 이 구성 요소들과 이들이 한 재화 속에 다른 재화에 비해 들어 있는 상대적 크기간의 비율에 의해 주어진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결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바로 가치의 참된 척도를 결정하는 것이다.Das wirkliche Wertmass eines Gutes wird daher gefunden, indem die Masse der übrigen Güter mit der Masse des fraglichen Gutes dividirt wird. Um dieses aber zu können, muss zuerst für die gesammte Gütermasse ein gleichnamiger Nenner gefunden werden. Dieser gleichartige Nenner oder die Gleichartigkeit der Güter isle für sie aber nur gegeben in ihrem gleichartigen Wesen; darin dass alles wirkliche Gut wieder aus den sechs Elementen des Stoffes, der Arbeit, des Erzeugnisses, des Bedürfnisses, der Verwendung und der wirklichen Consumtion besteht, indem, wo eins dieser Elemente wegfällt, das Objekt ein Gut zu sein aufhört. Diese Elemente eines jeden wirklichen Gutes sind nun in diesem Gut wieder in bestimmtem Masse enthalten, und das Mass dieser Elemente bestimmt das Mass des einzelnen, wirklichen Gutes für sich. Daraus folgt, dass das Massenverhältniss aller einzelnen Güter untereinander, oder ihr allgemeines Wertmass gegeben ist in dem Verhältniss der Güterelemente und ihrer Masse innerhalb des einen Gutes zu demjenigen innerhalb des andern. Und die Bestimmung und Berechnung dieses Verhältnisses ist mithin die Bestimmung des wirklichen Wertmasses.”¹⁴¹⁾ (가치 방정식에 대한 공식에 대해서는 *ibid.*, pp.181ff.를 참조)

141) “The true measure of the value of a good is found by dividing the magnitude of the good in question into the magnitudes of other goods. In order to be able to do this a common denominator for the magnitudes of all goods must be found. But this common denominator, or homogeneous element in goods can be found only in their homogeneous nature—that is, in the fact that all true goods originate from the six elements, matter, labor, production, need, usefulness, and true consumability, since if one of these elements disappears, an object ceases to be a good. These elements are contained in a given good only to a particular degree, and their magnitude determines the measure of each true good taken separately. From this it follows that the quantitative relationship of all the separate goods to one another, or the general measure of their value, is given by the ratio between these component elements of goods and their magnitude in one good relative to another. To determine and calculate this relationship is therefore to determine the true measure of value.”

139) “consciously directed to the all-around fulfillment of ethically rational purposes of life.”

140) “The relationship of the measure of a given good to the run of goods in general.”

자본의 분류에서 뿐 아니라 정의에서 가장 자주 범하는 오류는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기술적 관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이런 관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J. F. E. Lotz, *Handbuch der staatswirthschaftslehre*, Erlangen, 1837, I, 60ff. 및 F. B. W. v. Hermann, *Staatswirthschaftliche Untersuchungen*, München, 1874, pp.221ff.를 참조) 재화들을 생산 수단과 소비재로(높은 순위의 재화goods of higher order와 1차 재화goods of first order) 분류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이 분류는 부(富)를 자본과 비(非)자본으로 분류하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영구적 소득을 낳는 부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들을 뜻하고자 “자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내가 볼 때 마찬가지로 지지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부의 개념을 넓혀 여기에 노동력을 포함하고 소득의 개념을 확장하여 그 안에 소비재가 그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게 되면(Hermann, *op. cit.*, pp.582ff. 및 G. v. Schmoller, “Die Lehre vom Einkommen in ihrem Zusammenhang mit den Grund-principien der Steuerlehre,” *Zeitschrift für die gesammte Staatswissenschaft*, XIX (1863), 53ff. and 76ff.), 일관되게 이 원칙을 적용할 때 우리는 **노동력**(N. F. Canard, *Principes d'économie politique*, Paris, 1801, p.9 및 J. B. Say, *Cours complet d'économie politique pratique*, Paris, 1840, p.144), **토지**(Ehrenberg, *Die Staatswirthschaft nach Naturgesetzen*, Leipzig 1819, p.13; J. A. Oberndorfer, *System der Nationalökonomie*, Landshut, 1822, p.207; “Lord Lauderdale on Public Wealth,” *The Edinburgh Review*, IV, no. 8, [July, 1804], 364; Hermann, *op. cit.*, pp.221ff.; L. v. Hasner, *System der politischen Oekonomie*, Prague, 1860, p.294),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구성을 조금이라도 지닌 모든 소비재들을(Hermann, *op. cit.*, pp.225~226) 자본재로 불러야 한다는 공리(proposition)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올바르게 이해된 자본은 미래의 기간들을 위해 현재 우리에게 이용 가능하고, 그 속성과 경제적 성격을 내가 이 책의 본문 152쪽에서 상세히 논의한 사용처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경제재의 양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다음 조건들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떤 한 경제 하려는 개인이

304 경제재들의 필요량에 대해 지배하고 있는 기간이 (경제적 의미에서, 본문 p.157)

생산 과정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한다. 그리고 (2) 낮은 순위의 재화(lower order goods)들의 생산에 필요한 보완적인 높은 순위의 재화(higher order goods)들에 대해 경제 하려는 개인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재화들의 양과 종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생산성이 없게 될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혹은 아주 작은 양, 필요하지 않는 종류나 형태로 된, 경제 하려는 개인의 지배하에 있는 경제재들의 양들은 자본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자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부의 품목들(토지, 건물 등)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후자는 그 서비스 자체가 재화 성격과 경제적 성격을 가진 **구체적인** 내구재인 반면, 자본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 서비스들이 역시 경제적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소득을 발생하지만, 그 생산성이 자본이 아닌 내구적 부(富)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진, 높은 순위의 경제재들의 **조합**(즉 이 재화들의 보완적 수량들을) 나타낸다. 자본의 이론에서 발생했던 이론적 애로들 거의 대부분은 자본의 개념 속에서의 소득의 원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데에서 오는 언어적인 혼돈에 연유한다.

발전된 교역조건들 아래에서는 자본은 보통 화폐로 계산되고 또 자본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편리한 형태인 화폐로 제공된다는 된다는 사실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자본은 일반적으로 화폐의 합으로 이해되게 되었다. 분명 이 자본의 개념은 너무나 좁으며 이로 인해 자본의 특정한 한 형태가 자본 그 자체로 격상되게 되었다. 한편, 화폐 자본을 진정한 자본으로 전혀 간주하지 않고 단지 자본을 대변하는 것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두 견해 중 첫 번째 견해는 단지 화폐만을 “부(富)”로 간주하는 중상주의자들의 생각과 유사한 반면, 두 번째 견해는 중상주의의 반대자들 중 지나치게 반대한 나머지 화폐의 합에 진정한 부의 지위조차 부여하려 하지 않는 극단적 반(反)중상주의자들의 견해와 유사하다. (최근 학자들 중에는 특히 다음을 참조 Michel Chevalier, *Cours d'économie politique*, Paris, 1866, III, 584ff. 및 H. C. Carey, *Principles of Social Science*, Philadelphia, 1858, II, 337.) 현실에서는, 화폐 자본은 단지 발전된 교역 조건들 아래에서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한 하나의 편리한 형태의 자본일 뿐이다.(H. Blocker, “Zwei Worte

142) 3장 3절(B) 참조 - 영역자

über Kapital und Geld,”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VII (1866), 305 33~37.) 칼 크니스Karl Knies는 그의 『*Die politische Oekonomie vom Standpunkte der geschichtlichen Methode*』 (Braunschweig, 1853, p.87)에서 이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민족들의 발전은 자본이 모든 곳에서 그 경제적 위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급속 화폐가 도입되어 널리 사용된 이후였으며 또 자본이 보다 광범한 위력이 발휘되었던 것은 단지 더 높은 단계의 문명에서였다는 사실과 일정한 정도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Wir finden bei allen einzelnen Nationen in sofern eine Analogie der Entwicklung, als überall das Capital seine wirtschaftliche Kraft erst nach der Einführung und der verbreiteteren Anwendung des Metallgeldes stärker entwickeln, seine ausgedehntere Macht erst auf den höheren Culturstufen entfalten kann”¹⁴³⁾ 화폐는 물론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자본의 이전을 쉽게 만든다. 그리고 특히 자본재의 이전과 자본을 요구되는 형태(어떤 요망되는 사용으로든 자본의 적용)로 전환시키는 것을 원활하게 한다. 그러나 화폐의 개념은 자본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E. Dühring, “Kritik des Kapitalbegriffs und seiner Rolle in der Volkswirtschaftslehre,”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V [1865], 318~343 및 F. Kleinwächter, “Beitrag zur Lehre vom Kapitale.” *ibid.*, IX [1867], 369~421 참조)

F. 교환에서의 동등가치Equivalence¹⁴⁴⁾

교환되는 재화들의 양들을 등가물等價物로 간주하는 오류는 아주 오래 된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고 팔 때 자신의 원래 몫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이득을 본다고 말하고 더 적게 가지는 것을 손해를 본다고 한다. …… 그러나 더 많이도 적게도 가지지 않고 자신에게 속하는 만큼만 얻을 때, 사람들은

143) “We find that the development of all nations was analogous to this extent, that capital was everywhere able to develop its economic power strongly only after the introduction and widespread use of metallic money and to reveal its more extensive power only at higher levels of civilization”

144) 5장 참조 - 영역자.

자신의 몫을 가졌고 손해도 이득도 보지 않았다고 말한다.”(*Ethica Nicomachea*, V. 5. 1132^b, 13~18). 계속해서 “그렇다면 만약 먼저 재화들간에 비례적 동등성이 있고, 다음으로 상호적 행동이 있게 되면,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재화들이 어떤 측면에서건 동등하지 않으면 이런 비례성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Ibid.*, 1133^a, 10~26) 몬타나리 Geminiano Montanari도 유사한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Della moneta*, in *Scittori classici Italiani di economia Politica*, Milano, 1803-5, III, 119f.). 프랑소아 케네 Francois Quesnay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Dialogue sur les travaux des artisans*, reprinted in E. Daire(ed.), *Physiocrates*, Paris, 1846, p.196) “상업은 가치를 동일한 가치와의 교환이 아니다. le commerce n’est qu’un échange de l’valeur pour valeur égale.” 이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들도 참조. A. R. J. Turgot, 306 *Réflexions sur la formation et la distribution des richesses*, reprinted in *Oeuvres de Turgot*, ed. by Schelle, Paris, 1777, p.33;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Modern Library Edition, New York, 1937, p.33; David Ricardo,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ed. by E. C. K. Gomme, London, 1891, p.11 및 J. B. Say, *Cours complet d’économie politique pratique*, Paris, 1840, I, 303ff.

1776년에 이미 콩디악E. B. de Condillac은 비록 추론이 일방적이기는 하나 이미 이 견해를 반대하고 있다.(*Le commerce le gouvernement.*, reprinted in E. Daire(ed.), *Mélanges d’économie politique*, Paris, 1847, I, 267) 세이가 콩디악에 반대한 근거는(Say, *op. cit.*, pp.905~907) Condillac이 염두에 둔 사용가치(Condillac, *op. cit.*, p.750)와 세이가 염두에 두었던 재화들간의 동등가치의 의미로서의 교환가치간의 혼동에 있다. 그러나 이 혼동은 콩디악이 단어 “valeur”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데 있는 것 같다. 번하르디Theodor Bernhardt는 영국 가격이론에 대해 통찰력 깊은 비판을 하고 있다.(*Versuch einer Kritik der Gründe die für grosses und kleines Grundeigentum angeführt werden*, St.Petersburg, 1849, pp.67~236) 최근, 로에슬러H. Roesler와 코모르진스키Johann Komorzynski는 종전의 가격 이론들에 대해 철저한 비판을 가했다. (H. Roesler, “Zur Theorie des Preises,”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XII

[1869], 81-138; Johann Komorzynski, “Ist auf Grundlage der bisherigen wissenschaftlichen Forschung die Bestimmung der natürlichen Höhe der Güterpreise möglich,” *Zeitschrift für die gesammte Staatswissenschaft*, XXV [1869], 189-238. Karl Knies, “Die nationalökonomische Lehre vom Werth,” *Zeitschrift für die gesammte Staatwissenschaft*, XI [1855], 467도 참조.)

G. 사용가치와 교환가치¹⁴⁵⁾

번하르디Theodor Bernhardt는 최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Politics(i. 6.)에서 이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자주 인용되고 있으며 아담 스미스는 그리이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독립적으로 두 개념을 구별하였다고 말하고 있다.(*Versuch einer Kritik der Gründe die für grosses und kleines Grundeigentum angeführt werden*, St.Petersburg, 307 1849, p.79) 이에 반해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구절의 대부분이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Modern Library Edition, New York, 1937, p.28) 존 로John Law의 *Money and Trade Considered*, London, 1720, 4쪽의 구절과 단어 하나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게다가 튀르고A. R. J. Turgot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valeur estimative* and *valeur échangeable*)에 대한 날카로운 구분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Valours et Monnaies*” in *Oeuvres de Turgot*, ed. by G. Schelle, Paris, 1919-23, III, 86-93) 이 원리에 대한 역사에서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스승인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자 허치슨 Francis Hutcheson의 저술의 한 구절이 또한 흥미롭다. 이 구절에서 허치슨은 스미스가 사용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별하고 있다.(F. Hutcheson, *A System of Moral Philosophy*, London, 1755, II, 53ff. John Locke, “Some Considerations of the Consequences of lowering the Interest and raising the Value of Money,” in *The Works of John Locke*, London, 1823, V, 34 ff 및 G. F. Le Trosne, *De l'intérêt social*, Paris, 1777, PP.7-8도 참조)

145) 6장의 각주 66참조 - 영역자.

부록 D에 언급된 가치이론을 자신의 특별한 주제로 삼았던 더 최근의 몇몇 학자들--Friedländer, Knies, Schäffle, Roesler--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차이를 상세히 다루었다. 언급될 필요가 있는 다른 학자들로는 Otto Michaelis, “Das Kapitel vom Werthe,” *Vierteljahrsschrift für Volkswirtschaft und Culturgeschichte*, I(1863), 1~28; A. Lindwurm, “Die Theorie des Werthes,”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IV (1865), 165~218; Julius 7. Soden, *Die National-Oekonomie*, Leiptig, 1805-10, I, 38ff. and 23ff.; Gottlieb Hufeland, *Neue Grundlegung der Staatswirthschaftskunst*, Wien, 1815, 1, 95ff.; Henri Storch, *Cours d'économie politique*, St. Petersburg, 1815, I, 57ff.; J. F. E. Lotz, *Handbuch der Staatswirthschaftslehre*, Erlangen, 1837, I, 57ff.; Karl Rau, *Crundsätze der Volkswirthschaftslehre*, Heidelberg, 1847, pp.73ff.; Theodor Bernhardt, *op. cit.*, pp.67ff.; Wilhelm Roscher, *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Twentieth Edition, Stuttgart, 1892, pp.9-16; Karl Thomas, *Theorie des Verkehrs*, Berlin, 1841, p.11; 그리고 L. Stein, *System der Staatswissenschaft*, Stuttgart, 1852, I, 168ff 등이 있다. 독일 경제학의 철학적 관동의 경향과 영국 경제학의 실제적 감각이 독일과 영국 학자들에 의한 가치이론의 비교만큼 시사해주는 경우는 없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 데이비드 리카르도David Ricardo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ed. 308 by E. C. K. Conner, London, 1891, pp.361-369), 토마스 로버트 맬더스Thomas Robert Malthus(*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1820, p.51 및 *Definitions in Political Economy*, London, 1827, p.234), 그리고 밀John Stuart Mill은(*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ed. by W. J. Aallley, London, 1909, pp.436-437) “사용상의 가치 value in use”를 “효용”과 동의어로 쓰고 있다. 사실 Robert Torrens와(*An Essay on the Production of Wealth*, London, 1821, p.8), J. R. McCulloch는(*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1830, p.4) “사용상의 가치” 대신 “효용”이란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학자들 중 바스티아Frédéric Bastiat도 마찬가지로 행하고 있다.(*Harmonies économiques*, in *Oeuvres complètes de Frédéric Bastiat*, Paris, 1893, VI, 141) Lord Lauderdale과(*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Origin of Public Wealth*, Edinburgh, 1804, p.12) 시니어N. W. Senior는(*An Outline of*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 London, 1836, pp.6ff.) 효용을 교환가치의 전제로는 인지하고 있으나 사용가치로 보지 않으며 두 사람 모두 사용가치 개념을 부인하고 있다, 교환가치의 개념으로 이해된 것이 무엇인지는 다음의 John Stuart Mill의 구절에서 가장 잘 예시되고 있다(op. cit., p.437): “가치와 가격이라는 단어들은 초기 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며 리카르도에 의해서도 항상 이 단어들이 구분되어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현대의 학자들은 하나의 개념에 두 가지 훌륭한 과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낭비를 피하기 위해 가격은 화폐와 관련한 사물의 가치를 표현한다, 어떤 한 사물의 가치 혹은 교환 가치로 인해 그 사물과 교환될 화폐의 양을 의미하며, 이로써 우리는 이 사물의 일반적 구매력, 즉 이 사물의 소유가 부여하는 상품 일반에 대한 지배력을 이해하게 된다. The words Value and Price were used as synonymous by the early political economists, and are not always discriminated even by Ricardo. But the most accurate modern writers, to avoid the wasteful expenditure of two good scientific terms on a single idea, have employed Price to express the value of a thing in relation to money: the quantity of money for which it will exchange . . . by the value or exchange value of a thing, [we shall, therefore, understand] its general power of purchasing; the command which its possession gives over purchaseable commodities in general.”

H. 상품 개념¹⁴⁶⁾

독일 상업 법전the German Commercial code에도 “상품”이란 용어가 기술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통상적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이란 용어 대신 재화“good”(365조, 366조 및 367조), 재물“object”(349조, 359조), 혹은 이동 가능한 재물“movable thing”(Articles 777, Sol, and 947) 등의 용어가 쓰여진 것을 발견한다. 271조는 “교역을 위한 상품 혹은 여타 이동 가능한 재물, 혹은 증권들...”을 언급하고 있다. 부동산과 노동 서비스는 독일 상업 법전에서는 전혀 상품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기업들도 포함되고 있지 않다. 73조에 의하면, 기업들은 “비 상업적인 것res extra commercium”처럼 법

146) 7장 각주70과 각주71을 참조 - 영역자.

적 의미에서 그 기업의 이름을 달고 있는 사업과는 별개로 전혀 상품이 될 수 없다. 독일 상법에서는, 선박들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지만(67조), 몇 가지 다른 법전에서는 선박이 “움직일 수 있는 재물”이며 상품의 성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L. Goldschmidt, *Handbuch des Handelsrechts*, Erlangen, 1868, I, 527 참조) 골트슈미트Goldschmidt는 상품개념에 대한 법률 문헌을 검토하고 있다.(ibid., p.525) 그러나 그 자신은 자신의 상품의 정의에서 생산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게 준비된 재화들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그의 상품 정의는 너무나 협소하다.(ibid., I, 298) 로마의 법률 원전에서는 “merx,” “res promercialis,” “mercatura” 등이 때로는 좁은 의미의 교역의 대상이란 의미로 쓰이고 때로는 넓은 의미로 판매하려고 내놓은 물건이란 의미로 쓰였다.(L. 73, §4, Dig. de legat. 32, 3; L. 32, §4, Dig. de aur. arg. 34,2; L.1, pr. §1, Dig. de cont. emt.18,1; L.42, Dig. de fidejus.46,1) 오스트리아 민법전 The Austrian Civil Code은 상품을 채무에 대한 권한(채권)과 구별하고 있다.(991조)

별다른 예외 없이 상품이론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학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재화goods,” “marchandises,” “merci” 등은 기술적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교역품목,”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등 대중적 의미로 쓰였으며, 극단적으로 이질적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상품은 흔히 노동 서비스나 화폐에 대조되어 사용되었다.(Jacque Necker, *Sur la legislation et le commerce des grains*, Paris, 1775, PP.52-53; Antonio Genovesi, *Lezioni di economia civile*, in *Scrittori classici Italiani di economia politica*, Milano, 1803-5, XV, 294) 상품들은 통상적으로 부동산과 대조되었고(Horace Say, “Merchandises,” in Ch. Coquelin and Guillaumin, eds., *Dictionnaire de l'économie politique*, Paris, 1873, II, 131), 때로는 원료(Francois Quesnay, *Maximes générales du gouvernement économique d'un royaume agricole*, reprinted in E. Daire, ed., *Physiocrates*, Paris, 1846, p.98) 혹은 소비재denrées에(Dutot, *Réflexions politiques sur les finances et le commerce*, ed. by Paul Harsin, Paris, 1935, I, 72) 대조된 공업 생산물로 간주되었다. 한편,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marchandises”란 용어를 “소비재denrées”의 의미로 사용한다.(*De l'esprit des lois*, in *Oeuvres complètes de Montesquieu*, ed. by E. Laboulaye, Paris, 1877, V, 12) 토마스 문Thomas Mun의 동시대인인 루이스 로버츠Lewes Roberts는 “상인들이 협상하고 교역하는

310 물건the things wherewith the merchants negotiate and traffick”을 “상품merchandises”으로 정의하고 “상품merchandises”을 “제품wares”과 “화폐money”로 나누고 있다.(The Merchants Map of Commerce, Third ed., London, 1677, pp.6-7) 프랑스 아카데미the French Academy 의 사전(Institut de France, 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caise, Sixth ed., Paris, 1835, II, 165)은 “상품commodities”을 “도매 혹은 소매로 전문상점, 가게, 혹은 페어, 혹은 공동시장 등에서 팔리거나 공급되는 것 ce qui se vend, se débite, soit en gros, soit en détail, dans les boutiques, magasins, foires, marchés, etc.”¹⁴⁷⁾라고 정의한다.

상품을 보다 광의의 과학적 의미로 표시할 필요가 나타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완곡한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판매할 수량Quantité à vendre”(Necker), “교환할 수 있는 잉여superflu autant qu'il peut être échange”(Forbonnais), “최종적으로 사용할 사람들의 손에 다다르지 못한 사물들things which have not reached the hands of those who are finally to use them”(Adam Smith), and “어떤 사람에게 그 자신의 필요를 넘어 남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cio que soprabonda in alcuni per sussistere essi stessi, e ch'essi passano ad altri”¹⁴⁸⁾(Ortes). 1776년에 이미 드 콩디약E. B. de Condillac은 “상품merchandises”을 “사람들이 교환을 위해 내어놓은 물품들ces choses qu'on offre d'échanger”이라고 정의하였으며(*Le commerce et le gouvernement*, reprinted in E. Daire, ed., *Melanges d'économie politique*, Paris, 1847, I, 261)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프랑스어로 저술하던) 헨리 스크치 Henri Scorch의 선구자가 되었다. “교환될 예정인 물품들이 상품이라 불린다 Les choses destinées à l'échange se nomment marchandises”(Cours d'économie politique, St. Petersburg, 1815, I, 82).

독일 학자들 가운데 저스티Justi, 뷔쉬Büsch, 소넨펠스Sonnenfels, 그리고 야콥Jakob은 아직도 “상품commodity”이란 단어를 대중에서 쓰이는 의미로 사용한다. 율리우스 세덴Julius v. Seden은 “상품들”을 “모든 생산 물질all production materials”로 정의하며(*Die Nazional-Oekonomie*, Leipzig, 1810, IV, 96), 모든 원료와 제조품들을 “생산원료production materials”에 포함시킨다.(*ibid.*, p. 17)

147) “what is sold or supplied, wholesale or retail, in shops, stores, at fairs, markets, etc.”

148) “what is superfluous to a person for his support and which he passes on to others.”

고틀리프 후페란트Gottlieb Hufeland의 정의도 또한 너무 넓다. “상품이란 다른 사람에게 특히 다른 것과 교환하여 줄 수 있는 모든 것이다.Waare [ist] alles...was...weggegeben, besonders für etwas anderes weggegeben, werden kann.”¹⁴⁹⁾(*Neue Grundlegung der Staatwirthschaftskunst*, Wien, 1815, II, 15). 칼 라우 Karl H. Rau는 상품을 “즉각 교환할 수 있게 준비된 재화의 양Vorräthe von Gütern, welche zum Tausche bereit liegen”¹⁵⁰⁾로 정의하여 Storch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Grundsätze der Volkswirthschaftslehre*, Heidelberg, 1847, p.164). 그는 토지가 상품이 될 수 있으며 화폐는 상품 자체는 아니지만 화폐의 재료는 상품이라고 침언하고 있다.(*ibid.*, p.336, p.537) 라우의 “재화good” 개념에 대한 일반적 견해로부터 유형재有形財만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우의 견해와 거의 비슷한 견해가 칼 무하르트Karl Murhard의 견해이다.(*Theorie des Handels*, Göttingen, 1831, p.22) 칼 자카리아Karl S. Zachariä 역시 상품의 개념을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Vierzig Bücher vom Staate*, Heidelberg, 1832, V. part I, 2) 에두아르트 바움스타르크 Eduard Baumstark는 (*Kameralistische Encyclopädie*, Heidelberg, 1835, p.450) 상품개념을 다시 이동 가능한 재화들로 제한하고 더구나 일정한 정도의 시장성이 있어야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상품의 대중적 개념을 접근하고 있어 이 좁은 개념이 다시 풀다Fulda, 로쯔Lota, 쇤Schön, 그리고 헤르만Hermann의 문헌에 지배적이 되었다.

311 리이델A. F. Riedel과 빌헬름 로셔Wilhelm Roscher는 상품의 과학적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리이델은 상품을 “즉시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보관된 재화들ie zum Tausch oder Verkauf bereit liegenden Güter”¹⁵¹⁾ (*Nationalökonomie*, Berlin, 1838, p.336)으로 정의하고, 로셔Roscher는 상품은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모든 재화jedes zum Vertauschen bestimmte Gut”¹⁵²⁾라고 말하지만 여기에서 재화란 “경제재economic good”를 의미한다.(*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Stuttgart, 1892, p.227과 p.4) 이 두 학자의 선도先導는 망골트H. v.

149) “A commodity is anything ... that ... can be given to someone else, especially in exchange for something else.”

150) “stocks of goods that are kept ready for exchange.”

151) “goods kept ready for exchange or sale.”

152) “every good intended for sale.”

Mangoldt(*Grundriss der Volkswirtschaftslehre*, Stuttgart, n.d., p.45), (상품을 “교역을 위한 잉여의 재화für den Verkehr überschüssige Gütern”¹⁵³)로 정의하는 칼 크니스 Karl Knies(“Ueber die Geldentwerthung und die mit ihr in Verbindung gebrachten Erscheinungen,” *Zeitschrift für die gesammte Staatswissenschaft*, XIV, 1858, 266), (상품을 “판매될 예정인, 가치를 지닌 것들과 재화들Tauschwerthe und zum Tausch bestimmte Güter”¹⁵⁴)로 정의하는 렌쯔쉬H. Rentsch(Article “Waare” in *Handwörterbuch der Volkswirtschaftslehre*, Leipzig, 1870, p.1042), 그리고 대체적으로 하스너Leopold v. Hasner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하스너는 “추상적 교역 품목abstract trading stocks”의 개념을 부연하여 “상품 스톡”과 “현금 펀드”의 두 가지 하부그룹으로 나누고 있다.(*System der Politischen Oekonomie*, Prag, 1860, pp.288과 p.302ff.)

상품은 제조품이라는 아이디어를 고수하는 최근의 저술가로는 상품을 “거래되는 모든 생산물jedes Produkt welches in den Handel kommt”로 정의하는 글라서J. C. Glaser(*Die allgemeine Wirtschaftslehre*, Berlin, 1858, p.115), 상품을 “순환되거나 혹은 순환될 예정인 생산물die für den Umlauf bestimmten oder im Umlauf befindlichen Producte”¹⁵⁵)로 정의하는 로에슬러Hermann Roesler(*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Rostock, 1864, p.217), 상품이란 용어를 “die einzelnen zum Tausch bestimmten Produkte”에 적용하는 쉴H. v. Scheel이 있다.(“Der Begriff des Geldes in seiner historisch-ökonomischen Entwicklung,” in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VI [1866], 15)

쉬타인L. v. Stein 역시 상품이란 용어를 “독립적 재화로 나타나는 한 기
312 업의 각 생산물das einzelne Product der Unternehmung, als selbstständiges Gut dargestellt”¹⁵⁶)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Lehrbuch der Volkswirtschaft*, Wien, 1858, p.152) 현재 상당수의 매우 존경받는 학자들이 상품이란 용어를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쓰는 것으로 돌아갔다. 특히 브루노 힐데브란트 Bruno Hildebrand와 샤플A. E. F. Schäffle은 상품을 서비스와 대조시키고 있다.(Bruno Hildebrand, “Naturalwirthschaft, Geldwirthschaft, und Creditwirthschaft,”

153) “surplus goods intended for trade.”

154) “valuables and goods destined for sale.”

155) “products that circulate or are destined for circulation.”

156) “each product of an enterprise appearing as an independent good.”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II [1864], 14, 그리고 A. E. F. Schäffle, *Das gesellschaftliche System der menschlichen Wirtschaft*, Tübingen, 1873, II, 124-126) 그러나 상품의 과학적 개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샤플은 대중적 의미에서의 상품의 의미와 과학적 의미에서의 상품의 의미를 날카롭게 구별하고 후자를 “교환 가능한 물질적 재화exchangeable material goods”라고 부르고 있다.(*ibid.*, II, p.142와 기타 여러 곳)

그의 다른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쉬말쯔T. A. H. Schmalz의 상품 원리 역시 매우 독특하다. 화폐와 상품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쉬말쯔는 상품과 좁은 의미에서의 소비재를 혼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그는 상품의 과학적 정의와 정확히 정반대의 상품의 정의에 도달하고 있다(*Staatswirthschaftslehre in Briefen*, Berlin, 1818, I, 63f.).

I. 화폐의 액면 금액¹⁵⁷)

고대 독일어Old High German에서 “scaz”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화폐라는 단어를 대신하고 있었다. 비록 울필라스Ulpilas는(화폐 일반을 나타내는 것으로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나오는) ἀργύριον란 단어를 “*faihu*”(가축, 화폐)로 번역하고 있지만, 고딕어Gothic에서는 “*skatts*”란 단어가 쓰였다. 고대 독일어The Old High German 단어 “*gelt*”는 라틴어 “*aes*”의 번역어로서 10세기 성경 어휘에 “지불금payment,” “배상금ransom,” “벌금fine”의 의미로 사용되던 것이 발견된다. 한편, 고대 노르웨이어에서는 “*giald*”란 용어가 이미 현재의 화폐라는 의미로 통상 사용되고 있었다. 중세 독일어the Middle High German의 용어 “*gelt*”는 관습적으로 “지불금”(지불의 종류와 대상), “*wealth*”, 혹은 “*income*”을 의미하고 있었으나 흔히 현재의 화폐의 의미로도 쓰
313 여지고 있었다.(Hugo von Langenstein, *Martina*, ed. by Adelbert von Keller, *Bibliothek des Literarischen Vereins in Stuttgart*, Stuttgart, 1856, XXXVIII, 543 참조.) 여기에서 Langenstein은 “*ze gelte keren*”(화폐로 측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Peter Suchenwirt, *Werke*,(ed. by Alois Primmer, Wien, 1877, pp.29, 115 and passim, esp. p.329도 참조.) (그 외 E. G. Graff, *Althochdeutscher Sprachschatz*, Berlin,

157) 8장, 1절, 2절 및 각주80과 각주84 참조 - 영역자

1838, IV, 191; G. F. Benecke and Wilhelm Müller, *Mittelhochdeutsches Wörterbuch*, Leipzig, 1854, I, 522ff.; Lorenz Diefenbach, *Vergleichendes Wörterbuch der gothischen Sprache*, Frankfurt am Main, 1851, II, 403 참조)

다른 민족들은 화폐를 어떤 단어를 써서 명명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리스인, 유태인, 그리고 로마인들도 마찬가지로 화폐를 은silver이란 용어(ἀργύριον, *keseph*, *argentum*)를 써서 나타내었다. 프랑스인들은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다.(*argent*) 영국인, 스페인인, 포르투갈인, 그리고 다른 방식의 말에서 유태인, 그리스인, 프랑스인 역시, 화폐를 나타내기 위해 코인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한다.(*money*, *moneda*, *moeda*, *moeth*, νόμισμα, *monnaie*) 이탈리아인과 러시아인은 화폐 일반을 나타내고자 할 때 화폐적 금속의 조각들denars이라고 말하는데*danaro*, *dengi* 이는 스페인인과 포르투갈인들이 다른 방식으로 화폐를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폴란드인, 체코인, 그리고 슬로베니아인들은 화폐를 페니, 즉 화폐 금속의 조각(*pienadze*, *penize*, *penize*)이란 말을 쓰고 크로티아인, 보스니아인, 그리고 달마시아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덴마크인, 스웨덴인, 그리고 마자르인Magyars 역시 화폐를 나타내고자 할 때 화폐 금속의 조각, 즉 페니라는 단어를 쓴다(*penge*, *penniggar*, *penz*. 아랍인도 그들의 화폐를 나타내는 단어, “*fulus*”가 실제로 “*coins*”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나일강 상류에 살던 바리인the Bari의 언어에서는 “*nagalia*”라는 단어는 화폐뿐만 아니라 유리 구슬을 의미한다.(Friedrich Müller, “Die Sprache der Bari,” *Sitzungsberichte der Kaiserli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Wien, Philosophisch-Historische Classe*, XLV [1864], 117) 수단의 누비아 사막에 사는 누비아인 사이에서는 금속 화폐가 “*shongir*”이라 불렀는데 이는 글자를 넣은 조개(즉 문자가 새겨진 별보배고둥조개cowrie - 주조)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언어들에서 화폐의 명명과 가장 초창기에 교환의 매개물이었던 가축과도 관련이 있다.(14세기까지 노르웨이와 그 식민지에서 사용되던) 고대 스칸디나비아 말에서 “*naut*”는 암소와 화폐를 동시에 의미하였다. 고대 프리슬랜드 말에서 “*sker*” 역시 가축과 화폐를 의미하였다. 고딕어Gothic “*faihu*”, 앵글로-색슨어 “*feoh*”, 노르트훔브리안어 “*feh*” 그리고 독일의 모든 지방 사투리들에서 이에 상응하는 표현은 가축, 부, 화폐등을 서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Wilh. Wackernagel, “Gewerbe, Handel und

Schiffahrt der Germanen,” *Zeitschrift für deutsches Alterthum*, IX 1853, 549, note 101; 314 Diefenbach, *op. cit.*, I, 350ff. and II, 758; 및 Richard C. Trench, *A Select Glossary of English Words Used formerly in Senses Different from their Present*, London, 1873, p.30에 있는 흥미로운 주석 참조) (*Monumenta Germaniae Historica*, Hannover, 1863, XV, 695에 있는) 프리시오눔 법전the Lex Frisionum, 아디시오 사피엔티움 법전Additio Sapientium, 티트 10 법전Tit.X에서 우리는 “숯돌 혹은 그밖의 화폐적 지불equum vel quamlibet aliam pecuniam”¹⁵⁸이라는 구절을 읽게된다. 그리고 틀로사 카셀라내 법전the Glossa Casseianae에서 우리는 “*pecunia fihu*”라는 용어를 발견한다.(Johann Georg Eckhart, *Commentarii de Rebus Franciae Orientalis et Episcopatus Wirceburgensis*, Frankfurt, 1729, I, 853-855) 가축cattle을 의미하는 고대 슬라브어 “*skotum*”은 리투아니아어Lithuanian의 축약적 형태인 “*skatikas*” 혹은 “*skatiks*”로 그로트groat(영국의 옛 4펜스 은화)의 의미로 쓰였다.(Georg H. F. Nesselmann, *Wörterbuch der lituanischen Sprache*, Königsberg, 1850) 라틴어 *pecunia*, *peculium* 등의 어원이 *pecus*(가축)란 사실은 자주 지적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율리우스 폴룩스Julius Pollux에 의해 언급되고 있는 전설도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전설에 따르면, 아테네 사람들의 가장 초기의 화폐는 βούς(caw,소)로 불렀는데 이 명칭은 βούς ἐπὶ γλώττις (caw under tongue)¹⁵⁹라는 속담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테카보이온dekaboion, 테세라보이온tesseraboion, 그리고 헤카톰보이온hekatomboion과 같은 용어들은 화폐량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쓰였다고 전해진다. 이 용어들이 한 때 존재하였던 가축화폐로부터가 아니라 동물 표식이 그려진 최초 창기의 금속화폐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는 견해는 이미 폴룩스와 플루타크Plutarch의 저술에서 발견되며 더 최근에는 보이에Beule와 여타 저술가들에 의해 다시 제시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와 다른 견해, 즉 관행이던 가축표준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금속 표준으로 전환하면서 금속단위로 나타낸 가축의 가치가 새로운 통화의 처음에는 주요한 액면단위가 되었으며, 그래서 동물들의 수량을 나타내던 용어가 금속 코인들과 이 코인들의 수량에 이 전되었다는 견해가 보다 정확한 것으로 보고 싶다.

158) “a hone or some other monetary payment.”

159) 이 속담은 혀 위에 (무거운) 소를 얹혀 놓은 것처럼 중대한 이유로 입이 무거운 사람을 의미한다. - 역자 주

가축과 화폐의 개념들은 아랍어에서도 관련성이 있다. 아랍에 단어 “*mâl*”은 단수에서는 재산 혹은 가축을 의미하고 복수로는 부富 혹은 화폐 *amwâl*를 의미했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Georg W. Freytag, *Lexicon Arabic-Latinum*, Halle, 1837, IV, 221 및 Maninski, p.225.¹⁶⁰)

315 J. 화폐 기원에 대한 학설사¹⁶¹

고대의 대사상가들,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 동안 이름을 높인 후대의 가장 저명한 학자들은 경제학에서 어떤 다른 문제보다도 다음의 문제, 즉 (문명의 발달에 따라 주로 금화 혹은 은화로 귀착되었던) 몇 종류의 특정 재화들이 그 재화가 직접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그 필요가 이미 충분히 충족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즉각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가져왔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한 재화의 소유자가 이를 자신에게 보다 유용한 것과 교환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전체 사회의 모든 경제 하려는 개인이 자신의 상품들을, 극소수의 사람이외에는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금속 조각과 기꺼이 교환하고자 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비니F. K. v. Savigny와 같은 명석한 사상가조차 “신비하게” 느꼈다는 데에 놀라지 않게 된다.(*Das Obligationenrecht als Theil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Berlin, 1851-53, II, 406) (경제)과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동기가 표면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인간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왜 문제의 행위, 특히 주조화폐와 관련한 행위를 사람들 사이의 합의 혹은 사람들의 집단적 의지(법)에 귀속시키려 했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이 입장을 견지하였다. 플라톤은 화폐를 “교환을 목적으로 한 토큰 a token for purposes of exchange” (Republic, II, 371; B. Jowett, trans. & ed., *The Dialogues of Plato*,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892, III, 52 참조)이라 부르고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주 인용되는 문구에서 화폐가 관습에 의해 기인되었으며 자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 기인되었다고 말하고 있

160) 이 참고문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영역자 주

161) 8장 1절, 8장의 각주82를 참조 - 영역자.

다.(*Ethica Nicomachea*, v. 5, 1133^a, 29-32) 그는 그의 『정치학Politics』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상호간의 거래에서 어떤 것 ...예컨대 철, 은, 등을 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말하면서 이 견해를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고 이를 화폐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하고 있다.(*ibid.* 1257^a, 36-40)

로마의 법률가 파울루스Paulus의 화폐의 기원에 대한 견해는 유스티니아법전Justinian's code에 보존되어 있는데(L.1. Dig. de contre. emit. 18, 1) 그의 견해는 두 그리스 철학자의 견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16 그는 순수 물물교환제에 수반하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런 애로들이 공공제도(화폐)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견해로 제시하고 있다. 파울루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공적 평가가 다른 상품들의 가격변동으로부터 면제된 어떤 물질이 선정되어 이 물질은 항상 안정된 외적(명목)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외적 가치의) 표시가 이 물질의 표면에 사회에 의해 각인되었다. 그래서 교환가치는 이 물질 자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외적 명목 가치에 근거한 것이다.” 파울루스도 화폐의 기원을 공공 권위에 돌리고 있다.

방금 묘사한 견해와 함께 여타 상품에 비해 귀금속이 차지하게 된 특별한 위치를 귀금속의 특별한(물리적) 성질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는 고대 저술가들의 시도들도 발견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귀금속이 가공되거나 운송되는데 용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Politics*, I. 9. 1257^a, 39-41), 다른 저술에서는 귀금속 가격의 상대적 안정성을 지적하고 있다.(*Ethica Nicomachea*, v. 5. 1133^a, 13-15) 크세노폰Xenophon은 귀금속들, 주로 은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넓은 수량적 제약까지 관찰하고 있다. 그는 만약 대장장이나 구리-대장장이의 제품들이 혹은 포도주나 곡물조차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대량이 공급된다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것인 반면, 은銀은 그리고 약간 덜한 정도이긴 하지만 금金도 역시 항상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가격에서 교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Ways and Means: A Pamphlet of Revenues*, in H. K. Dakyns, translator, *The Works of Xenophon*, London, Macmillan Co., 1892, II, 335-336) 귀금속, 특히 금銀의 내구성과 비소멸성은 이미 플리니Pliny에 의해 강조되었다.(*The Natural History*, translated by John Bostock and H. T. Riley, London: H. G. Bohn, 1857, VI, 96-97 and 111-112)

필립 라베Philipp Labbé는 중세와 16세기의 매우 풍성한 문헌을 수집하였

다.(*Bibliotheca nummaria, ex Theologis, Juris cosoltis, Medicis, ac Philogis concinnata*, etc., Rouen, 1672) 르네 부델René Budel의 수집(*De monetis et re nummaria*, Cologne, 1591)과 마르카드 프리어Marquard Freher의 수집(*De re monetaria veterum Romanorum et hodierni apud Germanos Imperii*, Lyons, 1605)은 (니콜라우스 오레스미우스Nicolaus Oremius와 가브리엘 비엘Gabriel Biel의 논문을 포함하여)당시의 많은 팔목할만한 출판물들을 담고 있다. 로셔Roscher는 자신의 책 『*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Stuttgart, 1892, pp.301~302, note6)에서 이들 중 몇 개를 훌륭한 학자적 근면성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들은 화폐주조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특히 군주가 주화의 순도를 변화시키는 권리와 그 한계 및 이에 따른 국부國富의 변화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의 잦은 주화의 변조로 인해 매우 중요해졌다. 이런 맥락에서 몇몇 학자들은 화폐의 기원에 대해 논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들은 화폐기원의 문제를 고대 저술가들의 발견에 근거해서 통상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며 해결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보라. 니콜라우스 오레스미우스Nicolaus Oremius(Nicole Oresme으로도 불림, 1383년 사망)의 *Tractatus de origine, natura, jure et mutationibus monetarum*(ed. with a translation by L. Wolowski, Paris, 1864, p.ix and p.xciv), Gabriel Biel(1495년 사망)의 *De monetarum potestate et utilitate libellus*(in Gaspar Antonius Thesaurus, *De monetarum augmento variatione et diminutione*, Torion, 1609, p.1, 영역본, *Treatise on the Power and Utility of Moneys*, translated and edited by R. B. Burke, Philadelphia, 1930, p.19), Carolus Molinaeus의 *De mutatione monetarum quaestiones duo* (in R. Budel, ed., *De monetis et re nummaria*, p.485), Didacus Covarruvias의 *Veterum numismatum collatio*, in *ibid.*, p.648, Jacobus Menochius의 *Consilium XLIX*, in *ibid.*, p.705, René Budel의 *De monetis et re nummaria*, in *ibid.*, p.10, 그리고 Jehan de Malestroit의 *Les Paradoxes*(1566년 저술, L. Einaudi, editor, *Paradoxes inédits du seigneur de Malestroit*, Torino, 1937, p.97에 재 수록)

이 저술가들의 연구의 여정을 요약하자면, 이들은 거의 항상 순수 물물 교역에서 야기되는 애로사항들을 지적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런 다음 화폐의 도입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어떻게 제거되는가를 보여준다. 그들의 다음 논지로 귀금속이 화폐로 기능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면서 사람들의 입법으로 귀금속이 실

제로 화폐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레스미우스는 화폐가 “의도적으로 발명된 수단instrumentum artificialiter adinventum”, (*op. cit.*, p.xliv.) 이라고, 비엘은 화폐는 “그 자체의 속성으로부터 혹은 사람의 의도적 설계로부터vel ex sui natura vel hominum instituto,”¹⁶²⁾ (*op. cit.*, p.2)비롯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Molinaeus는 “화폐의 발명과 제도화는 민족(국가)들의 법으로부터 나온다.inventio et institutio monetæ … est de iure gentium,”¹⁶³⁾ (*op. cit.*, p.486)고 말하고 있다.] 이 저술가들이 군주들의 화폐 주조권 남용을 반대함으로써 큰 공헌을 하였다 하더라도 화폐의 기원에 관한 한 고대 저술가들의 견해를 개선하지는 못하였다.

초기 이탈리아 및 영국 학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1588년에 쓴 베르나르도 다반짜티Bernardo Davanzati의 저술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파올루스Paulus의 견해를 엄격히 따르면서 화폐의 기원을 국가의 권위(“per legge accorta”)에 귀속시키고 있다.(그의 *Lezione delle monete in Scittori classici Italiani di economia politica*, Milano, 1803-05, II, 24 참조) Geminiano Montanari (1687 사망)도 마찬가지로 논지를 펼쳤다(*Della moneta*, in *ibid.*, III, 17, 32 및 118 참조). 그리고 Lewes Roberts는 널리 읽혀졌던 1638년에 출간된 자신의 책 『*The Merchants Map of Commerce*』에서 17세기 영국의 경제의 견해를 당시 어떤 다른 저술보다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화폐의 기원을 동일한 원천, 즉 국가에서 찾고 있다.(1677년에 London에서 출간된 3판 15 쪽 참조)

18세기 전반기의 화폐에 관한 저술가들 중 존 로John Law는 화폐의 기원에 대한 연구로 걸출하였다. 존 로와 동시대에 살았던 보이짜르트Boizard는 여전히 화폐의 기원을 공공기관public authority에 두었고 뻬에르 부와스기에 베르Pierre Boisguillebert(*Dissertation sur la nature des richesses, de l'argent, et des tributs*, in *ibid.*, pp.396~398) 뿐 아니라 보반Vauban(*Projet d'une dixme royale*, 1707년 저술되고 E. Daire [ed.], *Economistes financiers du XVIIIe siècle*, Paris, 1843, p.51에 수록) 역시 화폐가 상업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머물고 더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로Law는

162) “either from its own nature or from man’s design”(Gabriel Biel, *Treatise on the Power and Utility of Moneys*, translated and edited by R. B. Burke, Philadelphia, 1930, pp.20-21 참조).

163) “the invention and institution of money … comes from the law of nations.”

계약설을 가장 확고하게 거부하고, 자신보다 앞선 시대의 학자들과는 달리 여타 재화와 구별되는 귀금속 재화의 특별한 성격을 인식하고 귀금속이 화폐성격을 가지게 된 것을 귀금속의 특별한 성격으로부터 도출하였다. 그래서 존 로는 화폐 기원에 대한 올바른 이론의 창시자이다.(그의 *Money and Trade Considered*, London, 1720, pp.4ff.와 그의 *Mémoire sur l'usage des monnaies*, 1706-07년 저술, Paul Harsin, ed., *John Law: Oeuvres complètes*, Paris, 1934, p.167에 재수록, 참조). 화폐의 기원을 사람들간의 계약에서 찾는 이론을 거부하는 존 로의 입장은 안토니오 제노베시Antonio Cenovesi(*Lezioni di economia civile*, in *Scrittori classici Italiani di economia politica*, Milano, 1803-05, VIII, 291~313)와 튀르고A. R.J. Turgot(*Réflexions sur la formation et la distribution des richesses*, 1776년 저술, G. Schelle, ed., *Oeuvres de Turgot*, Paris, 1913-23, II, 558~560에 재 수록)에 의해 계승되었다. 귀금속의 화폐적 성격의 발생을 귀금속의 특별한 성격으로부터 설명하려는 로의 시도는 아래에 열거한 학자들에 의해 취해지고 훌륭하게 성취되었다. 세자르 베카리아Cesare Beccaria(*Elementi di economia pubblica*, in *Scrittori classici Italiani di economia politica*, Milano, 1803-05, XIX, 10~18), 뻬에크로 베리Pietro Verri (*Meditazioni sulla economia politica*, in *ibid.*, XXII, 13-19와 *Sulle leggi vincolanti principalmente nel commercio de 'grani riflessioni*, in *ibid.*, XXIII, 21), 튀르고Turgot(*op. cit.*, II, 558~560과 “Deuxieme lettre à l'abbé de Cicé” in *ibid.*, I, 143ff.), 아담 스미스Adam Smith(*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319 *the Wealth of Nations*, *Modern Library Edition*, New York, 1937, pp.22~39)와 뷔시J. G. Büsch(*Abhandlung von dem Ceidsumlauf*, Hamburg, 1780, pp.279ff.) 등이 바로 이
들이다.

이 전통에 입각한 더 최근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맬더스T. R. Malthu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second edition, London, 1836, pp.50-60), 맥클러크 J. R. McCulloch(*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2판, London, 1830, pp.129-136),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Edited by Sir W. J. Ashley, London, 1909, pp.483-488), 지오야Melchiorre Gioja(*Nuovo prospetto delle scienze economiche*, Milano, 1815, I, 118ff.), 마우드릴라M. H. Baudrillard(*Manuel d'économie politique*, 4판, Paris, 1878, pp.252~262), 요셉 가니에Joseph Garnier(*Traité d'économie politique*, 7판, Paris, 1873, pp.309 ff.), 그리고 두 독일 경제학자 크라우스Ch. J. Kraus(*Staatswirtschaft*, Königsberg, 1808, I, 61ff.)와 뢰더Aug. Fr.

Lueder(*National-Industrie und Staatswirtschaft*, Berlin, 1800-04, I, 48ff.) 등이다.

19세기 초반기에 여타 독일 경제학자들은 역사적 연구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화폐 기원의 문제는 오베르도르퍼Johann A. Oberdorfer, 쾰리쯔Karl H. L. Pölitz, 로쯔J. F. E. Lotz, 자카리아Karl S. Zacharia, 헤르만F. B. W. v. Hermann 등의 연구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무시되었다. 이런 상황은 경제학 분야에서 역사 연구가 다시 재개됨에 따라 화폐 기원의 문제가 다시 칼 라우Karl H. Rau, 아이젤센Johann F. G. Eiselen, 빌헬름 로셔Wilhelm Roscher, 부루노 힐테브란트Bruno Hildebrand, 그리고 약간 더 초기의 칼 뮌하르트Karl Murhard 뿐 아니라 칼 크니스Karl Knies에 의해 다루어질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제껏 출판된 전공논문들은 화폐 기원의 문제에 대해 별로 진전된 연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담 뮐러Adam Müller는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욕구를 논의하면서 귀금속들이 이런 사람들과 국가와의 연맹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이를 그의 화폐의 기원에 대한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Versuche einer neuen Theorie des Geldes*, Reprint edition, Wien, 1922, pp.78ff.). 요한 호프만Johann G. Hoffmann은 화폐의 기원을 다시 사람들간의 계약에 귀속시키고 있다(*Die Lehre vom Gelde*, Berlin, 1838, p.10). 미셸 셰발리에Michel Chevalier에도 마찬가지로의 입장이다(*La monnaie*, in *Cours d'économie politique*, Paris, 1866, III, 5). 사무엘 오펜하임Samuel Oppenheim의 논문, *Die Natur des Geldes*(Mainz, 1855)는 비록 그 중요성이 화폐의 처음 기원에 대한 특별한 견해(pp.4ff.)에 있다기보다는 교환의 수단이 된 상품이 초기의 상품 성격을 상실하면서 궁극적으로 단순한 가치의 표현이 되는 과정의 설명에 있기는 하지만 매우 흥미롭다. 나는 비록 오펜하임의 이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지만 오펜하임의 주장에서 우리는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저술에서 왜 오류를 만나게 되는지 잘 설명해주는 아주 분명히 표현된 생각(혹은 차
320 라리 관찰)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찰이란 우리의 교역 메카니즘의 부드러운 작용으로 인해 산업용 금속으로서의 화폐의 성격이 자주 경제 하려는 개인들의 의식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화폐의 교환의 수단으로서의 성격만을 인지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인습의 힘은 너무나 강해서 사람들이 산업용 금속으로서의 성격을 더 이상 직

접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도 화폐로 쓰이는 금속이 화폐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는 능력은 확보된다. 이러한 관찰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어떤 물질이 화폐로 기능 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이 기초하고 있는 인습 뿐 아니라)은 만약 어떤 물질이 우연한 계기로 산업적 용도에 쓰일 수 있는 성격을 상실했다라면, 당장 사라졌을 것이다. 나는 교역이 매우 발달된 조건들 아래에서는 화폐가 무수한 경제 하려는 개인들에게 단순히 가치의 표시로만 간주된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한다. 그러나 만약 주조화폐가 산업적 원료로서의 성격을 상실했다라면, [이러한 산업적 성격 없이도 화폐가 성립할 수 있고 따라서 화폐는 단순히 가치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이러한 착각은 즉각 사라져 없어졌을 것이다.

색 인

Index

용어 색인

가격 측정치 349, 356
가격이론 182, 218, 249, 251, 312
가공의imaginery 재화 50
가분성 356
가치결정 174, 181, 207, 212
가치의 본질 129, 139, 154~156, 177, 293, 295, 298
가치평가 210, 352, 354, 355, 358
가치할당a value quota 176
경제활동economizing 105, 173, 180, 184, 278, 281, 289, 298
경쟁적 소비자 285
경제적 형태의 가치 298, 300, 303, 353
고대 아즈텍Aztec 344
공산주의 111
관세동맹 363
국가자산National Wealth 126
국부Volksvermögen 126, 350
금속화폐 341, 343, 361
기대 가치expected value 183, 184, 185
기술적인 노동 서비스 198, 200
기업가격 활동 198~201, 211, 216
노동분업 306
노동의 양 179, 217, 249
단순 농경생활 341
독일 경제학 309
독점권리 53
독점재화의 배분 273
독점적 공급자 257, 259, 262~264, 267~272, 274~291
독점정책 281, 286
드라크마drachma 339
물적 재화 52, 53
본질적 성격 295

부작위 52, 53
비경제재a non-economic 111, 132, 133, 135, 136, 178, 193
비경제적 재화 109~118, 122
사고과정mental process 132
수량적 관계quantitative relationship 105, 106, 117, 130~134, 136
양적 관계 73, 86, 104~106, 108~110, 113, 202
예상가치prospective value 183~186, 195, 200, 201, 206, 211, 212, 215
욕구의 충족 57, 62, 64, 65, 69, 79, 82, 85, 118, 126, 130
유용성Utility 49, 50, 55, 135, 136
인간경제human economy 111, 154, 155, 156, 179, 190, 208, 232
자본이 제공하는 서비스 182
자산Wealth 122~127
자연법칙 77
재화 공급방식 307
재화의 가치value of goods 125, 130, 131, 137, 139~141, 150, 168, 171, 173, 174, 178, 179, 156, 186, 205, 206, 212, 215, 217, 230, 249, 295, 352
재화의 성격goods-character 49~51, 53~59, 63~64, 66~48, 74, 111~114, 117, 120, 207, 301, 302
재화의 수량에 관한 지식 84, 98
제1순위 재화 54, 55, 57, 61, 85, 86, 121, 122
제2순위의 재화 55~61, 94, 95
제3순위의 재화 57, 59, 60, 61, 65, 68, 95
제4순위의 재화 56, 59, 95
직접 사용 71, 294
질quality 171
질적 속성 176, 181
채집경제 188, 191
채취 경제 77
총생산물 204, 205
총합개념 126
현재가치present value 184, 195, 196, 200, 201
화폐의 본질과 기원 331
후생수준 77, 138, 180, 223

교환가치 135, 293, 296~304, 350~351, 354, 363
사용가치 135, 136, 294, 297~305, 334~336, 350, 355
부의 증가 303
재고를 통한 재화공급 방식 307
학술적 논의 309
학술적 의미에서의 상품 310
통상적 의미의 상품 개념 309
상품성 310, 311, 312
상품의 시장성 312, 316, 318, 319, 320
시장성의 차이 312, 314, 320, 321, 327
순환 327~330, 358, 359, 363, 365
법적 구속력 337
분할성 342
유용한 물건 48, 229
개발 능력 88, 89

인명 색인

카레이Carey 193
리카아도Ricardo 209, 210
만골트Mangoldt 199
바스티안Bastian 359, 364
쉴러Friedrich Schiller 317
아담 스미스A.smith 75, 76, 158, 221
크루소Crusoe 160, 161
튀르코Turgot 350

칼 멩거(Carl Menger, 1840-1921)

오스트리아 학파의 창시자. 그의 주저<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는 효용, 가치 및 가격간의 관계에 대해 고전학과 구별되는 상세한 설명을 제시.

경력: 비엔나 대학교 정치경제학 교수, 크라쿠프 대학교(Cracow University) 법학 박사
대표적 저술:

1. 국민경제학의 기본 원리(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1871,1934,1950); 영문판 날짜
2. 경제학과 사회학의 문제(Problems of Economics and Sociology, ed. L. Schneider)
(1883,1963)

민경국閔庚菊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경제학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

현재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경제무역학부 교수한독 경상학회/독일 BMW 학술상 수상

주요 저서 :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자유기업원 1997

『한국 제3공화국의 경제정책(공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주요 역서 : 『하이에크의 감각적 질서』 자유기업원 2000

이상헌李相憲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파리 10대학 경제학 D.E.A.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현재 하나로통신 근무 (통신정책담당)

논문: “유럽연합(EU)의 경쟁정책과 산업 통상정책간의 관계에 관한 小考”

(『연세경제연구』, 1999.3)

“유럽연합(EU)의 통상정책 : 자동차부문을 중심으로”

김이석金二石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뉴욕대학교 시장과정이론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

현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주요 저서: 『지식정보혁명과 한국의 신산업(공저)』 이슈투데이 2001

주요 역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자유기업원 2000

『지식자본주의 혁명(공역)』 21세기북스2000

자유주의 시리즈의 책들

1. 규제와 재산권Property Rights and Regulation
김일중II-Joong Kim 저
2.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Economic Policy/The Anti-Capitalistic Mentality
미제스Ludwig von Mises 저/김진혁 역
3. 경쟁과 기업가정신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커즈너Israel M. Kirzner 저/이성순 역
4. 사회주의와 자본주의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호페Hans-Hermann Hoppe 저/이선환 역
5. 자유주의Liberalism
미제스Ludwig von Mises 저/이지순 역
6. 제도 · 제도변화 · 경제적 성과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노스Douglass C. North 저/이병기 역
7. 윤리와 경제진보Ethics and Economic Progress
뷰캐넌James M. Buchanan 저/이필우 역
8. 헌법적 질서의 경제학과 윤리학The Economics and Ethics of Constitutional Order
뷰캐넌James M. Buchanan 저/공병호 · 조창훈 역
9. 시장경제란 무엇인가What is the Free Market Economy
공병호Byeong-Ho Gong 저
10. 진화나 창조냐Evolution or Creation
민경국Kyong-Kuk Min 저
11. 시장의 도덕The Morals of Markets and Related Essays
액튼Harry Burrows Action 저/이종욱 · 유주현 역

자유주의 시리즈의 책들

12. 경제행위와 제도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s
에거스튼Thróinn Eggertsson 저/장현준 역
13. 치명적 자만 The Fatal Conceit
하이에크Friedrich Hayek 저/신중섭 역
14. 시장경제와 그 적들The Free Market Economy and Its Enemy
공병호Byeong-Ho Gong 저
15.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Economic Growth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Korea
전용덕Yong-Deok Jeon · 김영용Young-Yong Kim · 정기화Kee-Hwa Chung 저
16. 경제적 자유와 간섭주의Economic Freedom and Interventionism
미제스Ludwig von Mises 저/윤용준 역
17.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Law and Order of Market Economy
민경국Kyong-Kuk Min 저
- 18, 19. 자유헌정론 I · IIThe Constitution of Liberty I · II
하이에크Friedrich Hayek 저/김균 역
20. 도덕감성The Moral Sense
제임스 Q. 윌슨James Q. Willson 저/안재욱 · 이은영 역
21. 법 · 입법 그리고 자유II Law, Legislation and Liberty II
하이에크Friedrich Hayek 저/민경국 역
22. 법Law
바스티아Frederic Bastiat 저/김정호 역
23. 법 · 입법 그리고 자유III Law, Legislation and Liberty III
하이에크Friedrich Hayek 저/서병훈 역

자유주의 시리즈의 책들

24. 경쟁과 독점競爭と獨占
가즈노리越後和典 저/공병호 역
25. 경제학적 사고방식The Economic Way of Thinking
헤인Paul Heyne 저/주만수 · 한홍렬 역
26. 애덤 스미스의 지혜The Wisdom of Adam Smith
스미스Adam Smith 저/로지Benjamin Rogge 편/박순성 역
27. 개인주의와 경제질서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하이에크Friedrich Hayek 저/박상수 역
28. 기업가Entrepreneur
공병호Byeong-Ho Gong 저
29. 철학,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Philosophy: Who Needs It
랜드Ayn Rand 저/이종욱 · 유주현 역
30. 자본주의의 이상Capitalism: The Unknown Ideal
랜드Ayn Rand 저/강기춘 역
31. 선택받은 자들의 비전The Vision of the Anointed
소웰Thomas Sowell 저/노홍성 역
32. 자유를 위한 계획Planning for Freedom
미제스Ludwig von Mises 저/안재욱 · 이은영 역
33. 한국 민주정치와 삼권분립Korean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박효중Hyo-Chong Park 저
34. 시장경제와 민주주의Free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공병호Byeong-Ho Gong 저

자유주의 시리즈의 책들

35. 경제학의 교훈Economics in One Lesson
해즐릿Henry Hazlitt 저/장기춘 역
36.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바른 길Getting It Right
로버트 J. 바로Robert J. Barro 저/김동현 역
37. 집합행동과 자치제도Governing the Commons
오스트럼Elinor Ostrom 저/윤홍근 역
38.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Popper's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신중섭Joong-Sop Shin 저
39.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 저/김영청 역
40. 회사법의 경제학적 구조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이스터브룩Frank H. Easterbrook · 피셀Daniel R. Fischel 저/이문지 역
41. 서구세계의 성장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노스Douglass C. North · 토머스Robert Paul Thomas 저/이상호 역
42. 행동규칙과 자생적 시장질서Rules of Conduct and Spontaneous Market Order
임일섭II-Seop Rim 저
43. 감각적 질서The Sensory Order
하이에크Friedrich Hayek 저/민경국 역
44. 자유와 법Freedom and the Law
레오니Bruno Leoni 저/정순훈 역
45. 루트비히 폰 미세스Ludwig von Mises
버틀러Eamonn Butler 저/김이석 역

자유주의 시리즈의 책들

46. 근본자원 2The Ultimare Resource 2
사이몬Julian L. Simon 저/조영일 역
47. 근본자원 2-하The Ultimate Resource 2-Part 2
사이몬Julian L. Simon 저/조영일 역

자유와 개혁 시리즈의 책들

1. 노동시장의 유연성 Labor Market Flexibility
박동운 Dong-Un Park 저
2. 공무원 재임용제 A Proposal for Introduction of Contract-based Appointment System Which Will Increase Free Competition among Korean Public Bureaucrats
배득종 Deuk-Jong Bae 저
3. 은행진입규제와 법 Regulation of Banking Establishment and Law
전삼현 Sam-Hyun Chun 저
4. 공정거래법의 모순 The Inconsistency of Antitrust Law
전용덕 Yoong-Deok Jeon 저
5. 직업훈련과 정부역할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Vocational Training
심재용 Jae-Yong Shim 저
6.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 Critiques and Suggestions on the Medical License
김영용 Young-Yong Kim 저
7. 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A Critical Approach toward the Korean System of National Subsidies of Political Finance : Some Implications for Its Reform
박효종 Hyo-Chong Park 저
8. 한국 공정거래법 비판: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 금지의 문제점
Is the Korean Antitrust Law a Panacea? Antitrust Policy Issues on Prohibiting 'Unreasonable Mutual Support' among the Affiliated Corporates
이문지 Moon-Ji Rhee 저
9. 정리해고제한 비판과 대안 Restriction of Redundance, Criticism and Alternatives
유병남 Byung-Nam You 저
10. 부실대출의 원인과 대책
Causes of The Bad Loans of Korean Banks and Measures against Them
이종욱 Chong-Ook Rhee 저
11. 시장경제질서와 헌법 The Market Order and the Constitution
정순훈 Soon-Hoon Chung · 이진순 Jin-Soon Lee 저

자유와 개혁 시리즈의 책들

12. 한국의 사립대학교 The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안재욱 Jae-Wook An 저
13. 은행자유와 법 Freebanking and Law
전삼현 Sam-Hyun Chun 저
14. 지방정부와 인사자치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오성호 Seong-Ho Oh 저
15. 회계규제와 시장원리 Accounting Regulation and Market Principle Concentrating on the Mandatory of Disclosure and External Audit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이호열 Ho-Yull Lee 저
16. 오염배출권거래제 Tradable Emission Permits System
곽승준 Seung-Jun Kwak · 장태구 Tai-Koo Chang · 허세림 Se-Rim Hur · 조승국 Seung-Kuk Cho 저
17. 규제행정입법의 한계 The Limit of the Administration Initiative Legislation
고영훈 Young-Hoon Ko 저
18. 뉴질랜드 고용개혁 및 교훈
New Zealand Employment Reform : Policy, Legislation and Instruction to Korea
유병남 Byung-Nam You 저
19. 기업분할·합병과 조세
A Study on the Tax System of Business Merger & Demerger
이우택 Woo-Taik Rhee 저
20. 노동조합 정치세력화의 폐해
The III Effects of the Strengthened Political of Labor Unions
윤봉준 Bong-Joon Yoon 저
21.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Reforming Local Revenue System Toward Reinforcement of Local Financial Sustainency
김종순 Jong-Soon Kim 저